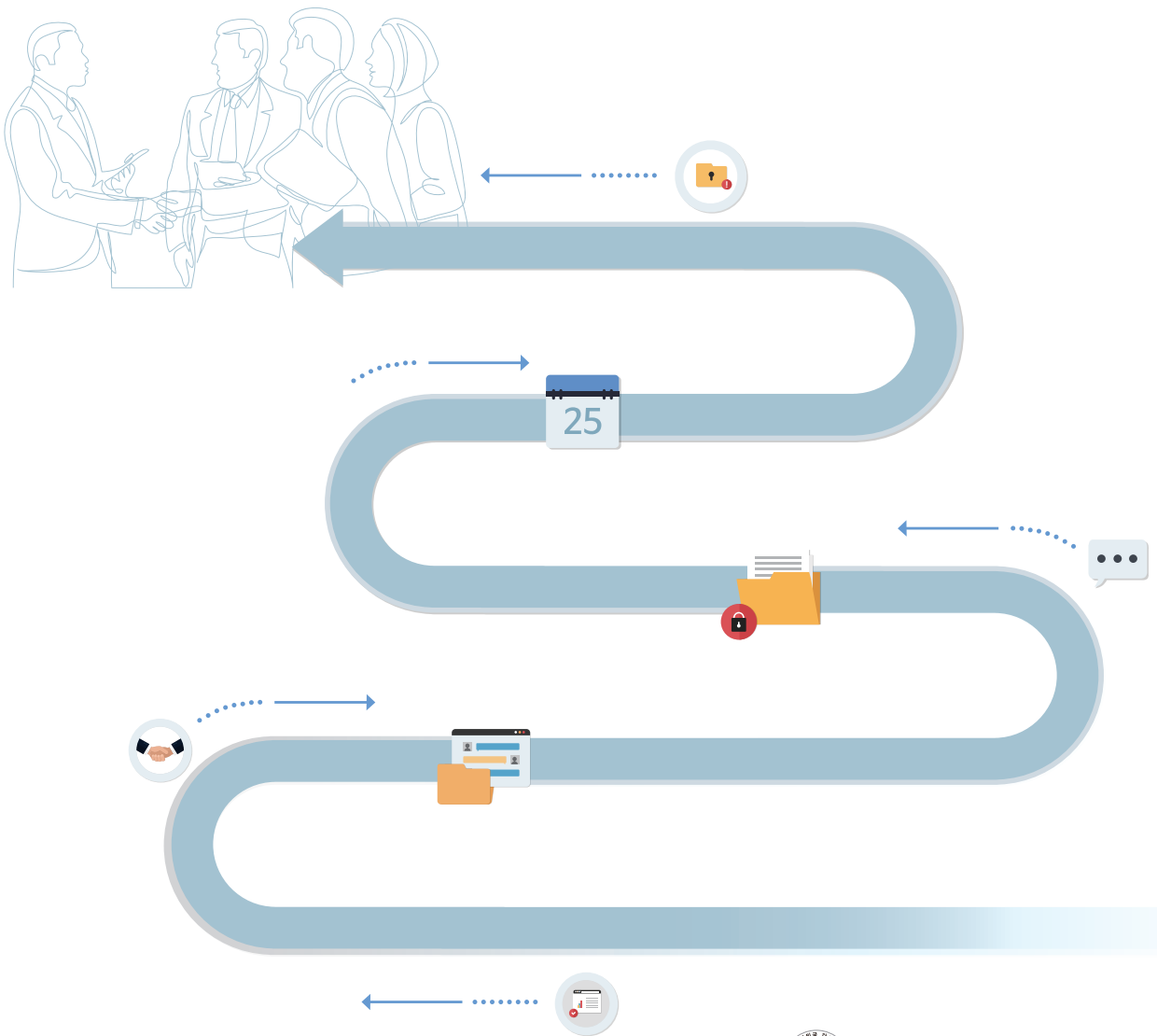


# 공공계약 실무가이드

A Guide to Handling Public Contracts



감사원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 발간 배경 및 활용방법

## 1. 발간 배경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에 따라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검사·감독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며,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업무는 대부분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잘못을 가려내는 형태로 수행되는 측면이 있어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2018년 2월 적극행정지원단을 신설하고 적극행정면책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등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2019년에는 일선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나 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감사지적이 빈번한 '계약분야'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계약 실무가이드” 및 “신규직원을 위한 계약업무 길라잡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선 현장에서 계약 관련 규정과 절차를 숙지하고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사전점검하게 되는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하였으며, 다수의 기관에서 계약실무 또는 교육자료 등에 활용하기 위해 추가배포를 요청하는 등 큰 호응을 보임에 따라 이번에 그간 변경된 계약규정을 현행화하고 유권해석 사례 등을 추가하여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 2. 내용 구성

이번 가이드북은 2019년 발간된 기본 구성을 유지하되 코로나로 인한 특례 등 변경된 계약규정을 현행화하고 실무적으로 자주 활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유권해석 사례 등을 추가하여 계약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이 보다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북은 본편과 별책의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편에는 계약제도의 변천과정 항목을 추가하여 계약절차, 처리 단계별 확인·유의사항, 감사지적 및 유권해석사례 등으로 내용을 구성하였고, 별책에는 예정가격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수의계약, 경쟁입찰계약 및 조달계약 사례, 예정가격 작성방법 등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3. 유의사항 및 기대효과

이와 같이 다양한 사례 등을 수록하여 여러 기관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작성하였으나 각 기관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고, 계약 관련 법규는 개정 빈도가 잦고 적용되는 상황도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가이드북의 내용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필히 제시된 관련 규정 및 적용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 기관의 상황 및 계약특성에 적합하게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수록된 유권해석 사례 등은 계약의 목적·성질 및 계약내용, 현장여건, 귀책사유 등에 따라 판단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닌 참고용으로 편집·작성된 것이므로 계약담당자는 발주 건별 개별상황, 관련된 사실관계 및 계약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하게 판단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라건데, 본 가이드북이 일선 현장에서 계약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분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어 공직사회 스스로가 불합리한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

1장 계약총론

- 1. 공공계약의 개념 및 특성 ..... 21
- 2. 공공계약의 적용 법규별 분류 및 집행기관 ..... 28
- 3. 공공계약의 일반절차 ..... 36
- 4. 공사·물품·용역계약 및 조달계약의 특징 ..... 39
- 5. 관련 법규 ..... 51

2

2장 계약준비 단계

제1절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절차

- 1.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 58
- 2. 발주 전 계약별 사전절차 ..... 59
- 3. 계약방법 등 검토 ..... 64

제2절 계약의 종류

- 1. 확정계약,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 67
- 2.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 75
- 3. 단년도계약,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 80
- 4. 단독계약과 공동계약 ..... 87

제3절 계약의 방법

- 1. 일반경쟁계약 ..... 100
- 2. 제한경쟁계약 ..... 107
- 3. 지명경쟁계약 ..... 142
- 4. 수의계약 ..... 146

제4절 입찰·낙찰자 결정방법

- 1. 적격심사낙찰제 ..... 194
- 2. 종합심사(평가)낙찰제 ..... 279
- 3. 설계·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 290
- 4. 희망수량경쟁입찰 ..... 295
- 5.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 297
- 6. 협상에 의한 계약 ..... 299
- 7.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 312
- 8.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종합낙찰제) ..... 315
- 9. 유사물품의 복수경쟁 ..... 316
- 10. 설계공모 ..... 317

제5절 예정가격

- 1.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등의 구분 ..... 319
- 2. 추정가격 ..... 320
- 3. 예정가격 ..... 322

3

3장 입찰 및 계약단계

제1절 입찰

- 1. 입찰공고 ..... 342
- 2. 현장설명·입찰참가신청 및 보증금 ..... 353
- 3. 입찰의 성립·무효 및 재입찰 ..... 356

제2절 계약

- 1. 낙찰자 결정 ..... 362
- 2. 계약 체결 ..... 363

## 4장 계약이행 단계

### 제1절 검사 및 대가지급

1. 계약금액 조정 .....	372
2. 검사 및 대가지급 .....	384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393

### 제2절 부정당업자 제재 등

1. 부정당업자 제재 .....	397
2. 지체상금(지연배상금) .....	404

## 5부록

색인 .....	410
참고문헌 .....	412

## 표 목차 List of Tables

[표 1] 계약제도 변천과정 주요 내용	27
[표 2] 공공계약 분류별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기관	29
[표 3] 조달청 계약 요청 의무사항	33
[표 4] 건설공사의 시행 절차	40
[표 5] 공사의 종류	42
[표 6]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43
[표 7] 공사계약에 필요한 자격요건	44
[표 8] 물품계약에 필요한 자격요건	45
[표 9] 용역의 종류	46
[표 10] 용역계약에 필요한 자격요건	48
[표 11] 공사·용역·물품의 조달계약 처리절차	49
[표 1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별 주요 내용	51
[표 13] 행정안전부 예규별 주요 내용	53
[표 14] 국가계약 및 지방계약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59
[표 15] 의무적 계약심사 대상	61
[표 16]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대상	62
[표 17] 서울특별시의 계약 전 사전심의절차	64
[표 18] 계약의 종류 및 입찰·낙찰자 결정방법	65
[표 19] 확정계약,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개념	67
[표 20]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의 개산계약 대상 비교	69
[표 21] 총액계약, 단가계약, 제3자 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의 개념	76
[표 2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대상	80
[표 23]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예시	83
[표 24]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의 차이점	84
[표 25] 단독계약 및 공동계약의 개념	87
[표 2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상 공동계약의 유형	89
[표 27]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차이점	90
[표 28] 주계약자 관리방식 주요 내용	91
[표 29]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자격요건 예시	93
[표 30] 지방계약의 공동계약 시 시공실적 등 평가 기준	94
[표 31] 공동계약 유형별 공동수급체 구성 기준	95
[표 32] 지역사무공동도급제도 대상	96

[표 33] 계약의 방법	98	[표 71]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간 경영상태 평가방법 비교	237
[표 34] 입찰참가자격 요건	100	[표 72] 국가계약의 재무비율 평가기준	238
[표 35] 제한경쟁계약의 대상 및 제한요건	107	[표 73] 지방계약의 재무비율 평가기준	239
[표 36]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기술보유상황에 의한 제한 기준 비교	114	[표 74] 평가요소가 "0"인 경우 처리방법	244
[표 37]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등 제한 관련 국가·지방계약의 차이점	115	[표 75] 국가계약의 신용평가기준	246
[표 38] 특허공법 보유자의 범위 및 기술사용협약 체결 대상	116	[표 76] 지방계약의 신용평가기준	247
[표 39]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	118	[표 77]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신인도 평가항목 비교 및 확인방법	251
[표 40] 특수한 성능·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	121	[표 78]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인도 평가 (+5, -7점)	253
[표 41] 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계약 관련 국가·지방계약의 차이점	122	[표 79]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262
[표 42] 지역제한 대상 계약	125	[표 80]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264
[표 43] 계약 종류별 지역제한 기준	126	[표 81] 국가계약의 하도급 관리계획 적정성 평가기준	268
[표 44] 판로지원법령상 우선조달계약 대상 및 입찰방법	132	[표 82] 지방계약의 하도급 관리계획 등 적정성 평가기준	269
[표 45] 중소기업자 관련 중복 제한 가능 대상	141	[표 83]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277
[표 46]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간 지명경쟁대상 비교	143	[표 84] 종합심사(평가)낙찰제 적용대상	280
[표 47] 지명경쟁입찰 참가자 지명기준	145	[표 85] 고난이도 공사	280
[표 48]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	164	[표 86] 지방계약의 유형별 시공실적 평가기준	282
[표 49] 계약 해제 등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	167	[표 87] 균형가격 산정 시 제외하는 입찰금액	283
[표 50] 1인 견적 가능 수의계약 대상	173	[표 88] 입찰가격 적정성 평가	284
[표 51] 소액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방법 등	177	[표 89] 사회적 책임 항목별 평가방법	289
[표 52] 견적서 제출 생략가능 수의계약	178	[표 90] 공사계약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290
[표 53] 나라장터 등을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179	[표 91] 기술형공사의 낙찰자 결정방식	291
[표 54] 소액수의계약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180	[표 92]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기간 비교	301
[표 55] 차순위자 선정 사유	181	[표 93]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간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규정 비교	307
[표 56]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간 계속공사의 낙찰을 이하 수의계약 가능 경우 비교	183	[표 94] 원가 구성 비목	330
[표 57] 낙찰자 결정방법의 적용대상 및 개념	191	[표 95] 단위당 가격의 확인방법	332
[표 58] 낙찰자 결정방법의 요건 및 근거법령	193	[표 96] 원가계산용역기관	333
[표 59] 공사규모별 낙찰하한율	197	[표 97]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의 적용 순위	336
[표 60] 난이도계수에 따른 낙찰하한율(조달청)	198	[표 98] 계약별 세부 공고기간	345
[표 61] 난이도계수에 따른 낙찰하한율(지방계약)	199	[표 99] 산출내역서 작성 방법 및 제출시기	355
[표 62] 낙찰자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별 처리방법	202	[표 100] 입찰무효 사유	357
[표 63] 국가계약의 적격심사기준	204	[표 101] 종합건설업체의 공사금액 하한	359
[표 64] 서울특별시 사업별 적격심사기준	205	[표 102]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의 낙찰자 결정방법	362
[표 65] 조달청의 시설공사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207	[표 103]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364
[표 66] 지방계약의 시설공사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208	[표 104] 법령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394
[표 67] 국가계약의 시공경험 평가기준	210	[표 105] 국가계약 예규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395
[표 68] 지방계약의 시공경험 평가기준	212	[표 106] 입찰참가제한기간 가중·감경 사유	400
[표 69] 지방계약 기술능력 평가기준·방법	230		
[표 70] 신기술현황 및 확인방법	233		

**그림** 목차 List of Figures

[그림 1] 계약업무 흐름도	38
[그림 2] 건설산업 체계도	39
[그림 3]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처리 절차	78
[그림 4] 다수공급자계약 처리 절차	79
[그림 5] 재공고 등 입찰결과에 따른 처리방법	172
[그림 6] 가격협상(수의시담) 절차	186
[그림 7] 적격심사 세부 절차	201
[그림 8]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종합심사(평가) 절차	281
[그림 9] 기술형공사계약 업무 흐름도	292
[그림 10]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처리 절차	298
[그림 11]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절차	301
[그림 12] 경쟁적 대화 및 평가 세부 절차	313
[그림 13] 추정가격, 예정가격, 추정금액의 비교	320
[그림 14] 예정가격 작성 절차(지방계약 기준)	322
[그림 15] 예정가격 결정 기준	324

**유권해석** 목차

지연배상금 외 추가배상 특약 가능 여부	22
입찰공고에 명시된 중요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무효 여부	24
국가계약법 적용 여부	30
지방자치단체 장이 조달청에 계약요청 시 적용 계약법	34
물품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여부	45
물품제조계약에서 “제조”의 범위	45
지방계약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수용 가능 여부	60
시설공사 입찰방법 심의 관련 지방계약법 준용 여부	62
확정계약에서 사후정산 관련 질의	68
개산계약에서 개산가격 결정	70
정산계약 관련 처리 방법	71
개산계약 체결 및 정산방법	71
개산계약 정산금액 기준	73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관련 질의	73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가능 여부	81
혼재된 사업의 장기계속계약 가능 여부	82
장기계속계약 관련 질의	86
계속비계약 관련 질의	87
공사계약에서 주계약자 관리방식 관련 질의	92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보유	93
설계 공모시 당선자의 입찰자격 보유 관련	94
국가계약에서 공동계약 관련 질의	95
공동계약에서 지역의무공동도급 가능 여부	97
중개인을 통한 계약 가능성 여부	99
국가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여부	101
중복제한 해당 여부	101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	106
신용평가 전송의무 위반 시 불이익 조치 관련	106
제한경쟁에서 제한 가능 사유	110
국가계약에서 실적인정 여부	11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실적 범위	112
신기술 공법이 포함되는 공사의 분리발주 가능 여부	116
실용신안등록 물품의 경쟁입찰 가능 여부	117
신기술 공법이 포함된 공사 계약방법	117

유권해석 목차

특허공법이 포함되는 공사의 기술보유자 관련 질의	117	계약체결 전 낙찰자의 계약부적격 판단 시 추후 처리 절차	170
실적제한경쟁입찰에서 실적인정 범위	120	계약체결 이후 계약 취소 시 후속 처리 절차	170
특정물품이 일부 포함된 사업의 입찰방법	120	일부 계약해지 시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범위	170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 “물품제조실적” 의미	120	국가계약에서 복수견적 의미	175
제한경쟁입찰에서 인증업체로 입찰참가자격제한 가능 여부	122	소액수의 계약에서 비교 가능 복수견적 의미	175
국가계약에서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관련 질의	123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여부	175
독점공급 물품에 대한 협약체결 필요 여부	123	소액수의 계약방법	176
기술지원확약서 미발급 상태로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123	재공고 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관련 질의	182
제한경쟁에서 중복제한 가능 여부	124	신고 등 자격없는 자와 수의계약 가능 여부	189
지역제한이 가능한 단가계약 기준금액	125	견적제출 후 계약을 포기한 자를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189
지역제한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127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평가 시 최근 5년의 판단 기준	219
중소기업제품 제조 구매에 공사, 용역의 포함 여부	131	최근 3년간의 시공실적 중 일부 누락된 실적을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 시 인정 여부	219
중복제한 가능 여부	140	적격심사 시 공사실적으로 물품과 시공비 합산 실적의 인정 여부	220
제한경쟁입찰에서 중복제한 가능 여부 질의	141	내부 규정을 근거로 위임·귀속한 용역실적의 인정 여부	220
지명경쟁 가능여부	144	설계용역에 대한 동일실적 인정 범위	221
수의계약의 일반경쟁 변경가능 여부	146	신인도 평가 시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된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의 인정 여부	267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147	신인도 평가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에서 해당지역의 의미	267
공사 수의계약에서 ‘직전 시공자’의 의미	150	새로운 하수급자 선정 시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의미	274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와 수의계약 가능 여부	150	일괄입찰공사에서 설계 제한 평가 방법	278
수의계약 가능여부	152	자격심사 경영평가 기준인 재무제표 오류 반영 가능 여부	278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에서 ‘물품 생산자 또는 소지자’의 범위	153	입찰자격 면허 말소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 시 낙찰자 선정 가능 여부	278
수의계약에서 ‘특정인’의 의미	155	시설공사 적격심사에서 수행능력 결격 사유 해당 여부	278
특정인과 수의계약 가능 여부	155	조달청 지침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7조 제2항 해석	283
보훈단체 등과의 수의계약 관련 질의	157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심사 대상	284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수의계약 관련 질의	158	종합심사낙찰제 배치기술자 관련 질의	286
매각계약에서 수의계약 가능 여부	161	공사 수의계약 가능 여부	293
국가사업 위탁 또는 대행자와의 수의계약 관련 질의	161	기술가격 동시입찰에서 입찰 유효 여부	298
국가계약법에서 ‘국가기관’의 범위	162	2단계 경쟁입찰 시 한 업체만 1단계를 통과한 경우 입찰성립 여부 판단	299
재공고입찰시 입찰참가자격 변경 여부	166	협상에 의한 계약 발주 시 공사계약 포함 가능 여부	300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여부	166	협상 계약에서 불확정 예산금액으로 공고 가능 여부	303
PQ계약에서 유찰판단 여부	166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시 입찰가격의 보완 요청 가능 여부	304
일부조건 변경 시 재공고 판단 여부	166	협상에 의한 용역계약 관련 입찰기준일	304
기술용역(PQ) 재공고 유찰 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166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원의 자격	308
계약부적격자 범위	170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서와 다른 입찰가격의 입찰무효 해당 여부	308

유권해석 목차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무효인 제안서의 평가 시 처리방법	308	입찰공고의 성격	352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입찰가격평가로 우선협상대상자 제외 가능 여부	309	입찰공고 명시 서류 미제출시 처리방법	352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계약 가능 범위	310	입찰공고 수정방법	352
부정당제재처분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상실 여부	310	입찰무효 해당여부	355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유찰판단 관련 질의	310	입찰무효 관련 질의	360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협상의 내용과 범위	311	본점·지점의 입찰참가자격 인정 여부	361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우선협상적격자 및 추정가격 산정 기준	311	개명 전의 대표자 명의로 입찰참가 가능 여부	36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 제3호에서 '개별적인 조달요구' 의미	321	계약체결 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가 참가한 입찰이 무효인지	363
예정가격 초과 입찰의 유·무효	323	계약문서의 종류 및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 불수용시 처리방법	365
유찰에 의한 예정가격 변경 가능 여부	325	국가계약 해당 여부	366
계약방법 변경에 의한 예정가격 변경 가능 여부	325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 가능 여부	366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1호의 조달청장 통보 가격의 의미	326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계산방법	369
예정가격 결정시 '거래실례가격' 의미	327	계약금액 조정관련 질의	375
거래실례가격의 의미	328	물가변동 금액 산정을 위한 공정표의 기준	376
예정가격 작성 시 거래실례가격 관련 질의	329	준공금 지급 후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377
거래실례가격에 정부지원금이 포함된 경우 처리방법	329	물가변동 시 신규단가 적용기준	377
예정가격 작성시 노무비 산정 관련 질의	331	공사계약 설계변경 단가 기준	378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경비 등 처리 방법	331	공사 설계변경 금지 가능 여부	379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이윤율 조정 가능 여부	331	협상계약의 설계변경 시 금액 계약 조정방법	379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각 호의 의미	331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379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 작성 시 노임단가의 가산 가능 여부	333	총액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의 산출내역서 정정 가능 여부	379
인터넷 가격의 거래실례 해당 여부	333	발주자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시 비용부담 주체	380
예정가격 작성기준 개정 관련 해석	334	민원에 의한 사업변경 가능 여부	380
원가계산용역 기관의 자격	335	용역계약 변경 관련 국가계약법 해석 요청	380
원가계산 적용 방법	335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및 산정	383
단순노무용역의 노임단가 결정 기준	335	법정경비 반영 가능 여부	383
원가계산 시 외주용역비 제외 여부	335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유휴장비비 인정 범위	384
원가계산 시 유사거래실례 적용 가능 여부	337	장기계속공사의 기성대가 지급	388
예정가격 작성 시 견적가격 사용 관련 질의	337	계약금액 사후정산 가능 여부	388
예정가격 작성시 매입세액 반영 여부	338	건강보험료 사후정산 가능 여부	388
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관련 질의	344	용역보험료 사후정산 방법	388
입찰공고 시 공동수급체로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345	공사정지 시 적용 대출금리	389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고기간	347	준공대가 지급 시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가능 여부	389
공고문 오기 처리 방법	347	선금지급 및 반환 관련 질의	391



유권해석 목차

계속비 사용의 선금 사용	392
공사의 일시정지 관련 잔여계약금액 관련 질의	392
선금지급 대상	392
선금 반환여부	393
선금반환 시 하도급 대가와 기성대가 미지급액 상계 순서	393
계약해지(해제) 관련 질의	396
대표자 변경 시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	399
법인 대표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력	399
부정당업자 제제(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질의	400
과징금 부과 관련 질의	404
지체상금 산정 관련 질의	405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부과 산정 기준	405
계약이행 지체 시 계약보증금 추가 산정 기준	406
지연배상금 외 추가부담 부과 가능 여부	406
준공된 1차공사의 하자를 사유로 2차공사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 가능 여부	406
지체상금 한도	406

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 목차

실내수영장 강사 강습료 지급여부 【신청일: 2020.9.15.】	22
장기유지보수계약 양수도 관련 【신청일: 2019.10.8.】	22
무단 적치된 폐기물에 대한 소송 중 처리가능 여부 【신청일: 2019.5.30.】	24
2020 디자인 특별전 「오래된 미래」(가제) 관련 【신청일: 2020.3.11.】	31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설계용역 계약 관련 【신청일: 2019.3.29.】	147
금융자동화기기 유지관리 계약 개선을 위한 법령 검토 관련 【신청일: 2021.7.22.】	152
수하물처리시설(BHS) 사업에 대한 발주방안 관련 【신청일: 2019.6.19.】	153
반도체 소부장 관련 중고(재제조) 연구장비 구매 관련 【신청일: 2021.12.1.】	154
지자체 출연기관의 설계용역 수의계약 관련 【신청일: 2019.2.14.】	154
유치원 교사시설 임대 수의계약 관련 【신청일: 2019.1.24.】	155
재공고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방법 관련 【신청일: 2019.5.22.】	167
설계용역계약 해지 후 기존 계약상대자와 재계약 관련 【신청일: 2019.4.30.】	169
항공등화시스템 구축사업 발주 관련【신청일: 2019.6.17.】	176
경쟁계약 유찰에 따른 예정가격 재산정 관련 【신청일: 2021.9.14.】	325
즉석식 인쇄복권 제조 용역 계약 변경 관련 【신청일: 2021.7.21.】	381
동일 부지 내 유사한 국비보조사업 통합 설계·공사 관련 【신청일: 2019.11.11.】	381
행정소송 사건위임 용역계약 변경 관련 【신청일: 2022.1.20.】	381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변경 관련 【신청일: 2020.7.17.】	382
기술혁신 시제품 구매계약 및 불용 관련 【신청일: 2019.7.15.】	386
저압전자식 전력량계 리콜업무 처리 관련 【신청일: 2019.9.18.】	386

# 01

## 계약총론

1. 공공계약의 개념 및 특성	21
2. 공공계약의 적용 법규별 분류 및 집행기관	28
3. 공공계약의 일반절차	36
4. 공사·물품·용역계약 및 조달계약의 특징	39
5. 관련 법규	51

# 01 계약총론

# 1 공공계약의 개념 및 특성

## 법령적용 기준

본 가이드북에서는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을 아래 개정사항까지 반영하였으며, 개정된 규정은 부칙의 시행일(적용례)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 실제 계약업무 진행 시에는 최신 현행규정을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일	시행일	개정일	시행일	개정일	시행일
국가계약	2021. 1. 5.	2021. 7. 6.	2022. 3. 25.	2022. 3. 25.	2021. 10. 28.	2021. 10. 28.
지방계약	2021. 1. 12.	2022. 1. 13.	2022. 3. 25.	2022. 3. 25.	2022. 1. 17.	2022. 1. 17.

구분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일	시행일	개정일	시행일	개정일	시행일
국가계약	2020. 12. 28.	2021. 1. 1.				
지방계약			2022. 1. 7.	2022. 1. 11.	2022. 1. 7.	2022. 1. 11.

## 약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운영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법 시행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판로지원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판로지원법 시행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법

## (1) 공공계약의 개념

계약이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 의사의 합치로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국가계약법 제5조에서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공계약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고, 계약당사자가 서로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약속하는 쌍무계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상 계약인 정부계약은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계약일반 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의해 해결을 도모한다.(※ 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사항은 행정처분으로 보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

다만, 공공계약의 사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은 일반 사인 간 거래의 계약자유의 원칙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고 궁극적으로 공익에 사용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을 위한 공공계약의 공법적 성격을 감안할 때 발주기관은 낙찰자 선정 등에 있어서 합법성, 공정성, 투명성 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나아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유권해석

#### □ 지연배상금 외 추가배상 특약 가능 여부

- Q.**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또한 연장될 경우 시공사에 지연 배상금 외에 추가로 건설사업관리 용역비를 부담하도록 특약이 가능한지?
- A.**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 상대자에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 성격인 지연배상금 외 추가 비용을 부과한다면 이중 배상의 여지가 있어 부당 특약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251, '19.10.1.】

### 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

#### □ 실내수영장 강사 강습료 지급여부【신청일: 2020.9.15】

- 개요** A공사는 실내수영장 강습을 위해 강사(개인사업자) 10명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정기간(67일) 수영장 시설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위탁계약서에 따르면 공사의 사정으로 일정기간 강습을 할 수 없을 경우 강습료 일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쟁점**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격상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의 운영중단 권고 등에 따른 수영장 휴장을 공사의 사정으로 보아 강습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 컨설팅 의견** 코로나19로 인한 휴장이 공사의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은 위탁계약서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협의조정 사항. 다만, 휴장기간 중 중수본의 집합제한명령에 따른 기간은 정부방침에 따른 것으로 강습료를 지급할 필요성이 높지 않아 보이나, 코로나19 위기 격상에 따른 휴장 및 관내 학교 휴교일정을 고려한 휴장기간은 공사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강습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장기유지보수계약 양수도 관련【신청일: 2019.10.8.】

- 개요** 수요기관 A는 발전설비 계약을 체결한 B사와 향후 유지보수 계약을 추가 체결하였으며, B사는 기 체결된 기술제휴협약을 근거로 실제 유지보수 업무를 C사에 위임하여 수행 중임
- 쟁점** B사와 체결된 유지보수 계약서의 위임규정에 의해 유지보수 업무의 계약당사자 지위를 C사에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 컨설팅 의견** 계약자 지위 양수도는 심사 등을 거쳐 적정하게 성립된 계약의 주체를 임의로 변경하게 되어 계약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입찰절차를 우회하여 요건 미달자를 계약 상대방으로 재선정하는 등 악용사례를 배제할 수 없는 바 계약상대자의 사업이 포괄양도되는 등의 특수한 사정없이 계약자 지위를 양도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2) 공공계약 법규의 특성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은 대부분 계약담당공무원 등이 계약 과정에 지켜야 할 절차와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체법으로서의 규범력이 있기보다는 절차법적 성격이 강하고 계약 담당공무원을 구속하는 내부적 훈시규정에 해당하여, 위 법령에 위반된 계약이라도 원인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외적으로 유효하다.

법원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사법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산회계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나(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9447, 판결), 적격심사기준과 같은 입찰집행기준에 대해서는 단순한 내부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낙찰자결정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 판례

- 국가계약법령이나 그 세부 심사규정은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입찰절차에서 이러한 법규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기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배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계약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1.12.11., 선고, 2001다22604, 판결】

즉,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사무 집행 시에 계약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계약법규들은 입찰자나 계약자를 직접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 계약법규를 입찰자나 계약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입찰 공고서나 계약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판례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의3 (나)목이 계약담당 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지켜야 할 내부규정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 변경등록을 해태한 경우 입찰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 참가자들에게 고지하거나 제시함으로써 이를 숙지하도록 하고 입찰 참가자들도 이를 전제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참가자의 입찰은 무효가 되어 해당 참가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된다.
【대법원2012.9.20., 자, 2012마1097, 결정】

유권해석

□ 입찰공고에 명시된 중요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무효 여부
Q.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동계약의 입찰참가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하는지?
A.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것으로 입찰공고 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5조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공동계약의 신청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제8호에 따라 입찰무효에 해당할 것임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400, '20.7.14.】

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

□ 무단 적치된 폐기물에 대한 소송 중 처리가능 여부【신청일: 2019.5.30.】
개요 A는 B부지에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데, C업체가 '12년부터 B부지 중 일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며 건설폐기물 등을 적치하여 A는 국유재산법 위반 등을 이유로 C를 고발. 그런데, C는 '15년 4월 D업체에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D는 적치한 폐기물 처리의무까지 승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리를 거부하여 결국 A는 D를 상대로 소송 제기하여 진행 중임
쟁점 국유지에 적치된 건설폐기물 처리주체에 대한 소송 진행 중 D가 비용을 부담하여 폐기물을 먼저 처리 하고,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는 것이 국가계약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지?
컨설팅 의견 소송 상대방인 D의 비용으로 건설폐기물을 우선 처리하고,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비용을 정산 하는 경우는 국고에 상응하는 지출 또는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계약법은 적용되지 않음. 다만, 향후 A가 소송 패소 시 비용 과다지급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처리비용 산정 방안 마련 필요

(3) 공공계약의 변천과정

가. 1990년대 : 계약법령의 체계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타결에 따른 정부조달시장의 개방(1997.1.1. 발효)에 대비하여 1995년에는 국가계약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예산회계법상 계약에 관하여 규정한 제6장을 대체하는 법률을 따로 제정한 것으로 정부조달협정 및 국제규범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부계약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정에 따라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 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자 중 최저가입찰자 또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하도록 적격심사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다.

나. 2000년대 : 전자조달의 시작 및 지방계약 특성 반영

그간 공공조달의 계약사무는 서류 중심으로 처리되고 있어 이로 인한 비효율과 투명성에 대하여 지속적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정부 11대 과제의 하나로 2002년 9월 나라장터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로 2020년 기준 이용자 수는 4.5배 (11.7만→53.2만), 거래규모는 3.1배(36.2조 원→112.7조 원) 증가하는 등 국가 공공조달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의 총액계약 및 단가계약 제도로는 물품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수요고객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등에서 활용되고 있던 다수공급자 계약제도(MAS)를 2005년 1월 도입하였다. 이후 투명성과 경쟁성 강화를 위한 2단계경쟁 제도를 2008년 6월 도입하였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현재 661,555개 품목('22.2월말 기준)이 등록되어 공공기관의 구매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제도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계약법이 2006년 1월 시행되었다. 주민참여에 의한 계약감독 제도 등이 도입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등이 마련되었다.

**다. 2010년대 : 전자조달의 고도화 및 최저가 낙찰제 폐지**

공공조달의 3분의 2 이상이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이 미비하여 전자조달체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3.9.22. 시행되었다. 이로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계약체결 등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이 명문화되었다.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1951년 도입된 최저가 낙찰제는 품질, 안전, 사회적 책임 등이 강조되면서 2017.8.9. 지방계약법에서 먼저 폐지되었으며, 2019.3.5. 국가계약법에서도 폐지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최저가 낙찰제의 대안으로 국가계약법 적용기관에 대하여 공공사업 공사비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공사수행능력·입찰금액·사회적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13.12월 도입되었다.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16년 본격 시행되었으며, '14년 18개 사업 → '21년 94개 사업으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에 대하여는 종합평가 낙찰제가 '16.5월 도입되었다.

**라. 2020년대 : 혁신조달 도입 및 코로나19 대응**

기존 공공조달은 검증된 제품 위주의 구매 관행으로 혁신기업과 기술을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공부문의 혁신제품 구매로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혁신제품 시범구매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범정부 혁신조달 지원 플랫폼인 혁신장터를 2020.2.4. 개통하면서 혁신제품 지정 건수도 2019년 66개 → 2020년 345개로 대폭 확대되었다.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자체 구매 확산을 위해 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는 구매목표 비율제도가 도입되었다.

코로나19가 2020년 3월 세계적 범유행으로 격상되면서 민생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계약제도 절차에 대한 대폭 완화가 추진되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재부·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동안 조달기업의 경기침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계약·입찰보증금 인하, 준공검사·대가지급기간 단축, 소액수의 허용기준 완화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 계약제도 변천과정 주요 내용**

일자	변천내용	주요내용
'93.7.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도입	'92년 신행주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부실공사 방지대책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입찰 전 시공능력 등을 심사
'95.7.6.	국가계약법 제정 및 시행	정부조달협정의 차질없는 이행 등을 위하여 국제규범을 반영한 정부계약에 관한 제도 마련
'95.7.6.	국가계약 적격심사제 도입	계약이행실적 및 능력,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 선정
'97.1.1.	정부조달시장 개방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정부조달시장 개방
'02.9.30.	조달청 나라장터 개통	전 공공기관의 조달업무 전자화를 위해 전자정부 11대 과제의 하나로 나라장터 시스템 구축
'05.1월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제도(MAS) 도입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수요물자를 선택하여 구매하는 제도
'06.1.1.	지방계약법 제정 및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제도 마련
'08.6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도입	공공기관이 일정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경우 품질·가격 등을 비교검토하여 구매
'10.4월	조달청 지문인식 전자입찰제도 도입	입찰자 신원확인을 통한 부정입찰 원천 차단
'13.9.23	지방계약법 제정 및 시행	전자조달의 절차 및 방법 등을 법률로 규정하여 전자조달 체계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13.12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공공사업 공사비 적정성 제고를 위해 공사수행능력, 입찰금액, 사회적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입·낙찰방식
'16.5.1.	종합평가낙찰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시공실적, 시공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19.3.5.	국가계약법 최저가낙찰제 폐지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영세한 업체가 적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는 부작용 발생
'19.9.17.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제도 도입	공공기관이 혁신시제품을 시범적으로 구매하여 기술개발 유인 및 산업경쟁력 제고
'20.2.24.	조달청 혁신장터 개통	혁신조달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전용 플랫폼
'20.7.14.	코로나19 관련 지방계약법 개정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수의계약 대상 금액 등 완화
'21.7.6.	코로나19 관련 국가계약법 개정	경기침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소액 수의계약 특례 상시화 등

## 2

### 공공계약의 적용 법규별 분류 및 집행기관

#### (1) 공공계약의 분류

공공계약은 관련 법령 및 적용대상 기관에 따라 다음 [표 1]과 같이 크게 국가계약, 지방계약 및 공공기관 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국가계약은 기획재정부가 관장하는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가 적용되고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기관(직접 적용)과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준용)이 적용을 받는다.

지방계약은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계약법령과 예규가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이 적용 대상이다.

####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의 차이

지방계약법은 2005.8.4. 국가계약법(1995.1.5. 제정)을 모태로 하여 제정(2006.1.1. 시행)되면서 지방계약법 제정 초기에는 국가계약법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였고 현재도 대부분의 내용이 국가계약법령과 유사하나 법령 소관부처가 달라 지방계약법령 개정 과정에 주민참여 감독관제도, 재해복구공사 개산계약제도 도입 등 지방의 특성이 반영되면서 일부 내용은 국가계약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  
※ 본 가이드북에서는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이 유사한 경우는 보다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 있는 쪽의 내용을 인용하였고, 차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각각 표기하였음

그리고 공공기관 계약의 경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령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예산규모 250억 원 이상의 기타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훈령인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의 적용을 받는데, 위 규칙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고,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한다.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법 제6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을 지정·발표함

[표 2] 공공계약 분류별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기관

구분	국가계약	지방계약	공공기관 계약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17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 예규(5개)	·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획재정부령)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기획재정부 훈령) · 국가계약법령
	<p><b>[공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li> <li>예정가격 작성기준</li> <li>적격심사기준</li> <li>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물품·용역)</li> <li>공동계약 운용요령</li> <li>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물품·용역)</li> </ul> <p><b>[물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li> <li>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li> </ul> <p><b>[용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역계약 일반조건</li> <li>용역입찰유의서</li> <li>용역계약종합심사낙찰제심사 기준</li> </ul> <p><b>[공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li> <li>공사계약 일반조건</li> <li>공사입찰유의서</li> <li>종합계약 집행요령</li> <li>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li> <li>공사계약종합심사낙찰제심사 기준</li> </ul>	<p><b>[공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li> <li>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li> </ul> <p>※ 위 2개 예규는 세부 목차별로 물품/용역/공사가 나뉨</p> <p><b>[공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li> <li>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li> </ul> <p><b>[용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li> </ul> <p>※ 각 시·도에서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각각 정하여 운용하고 있음</p>	<p>※ 적용 우선 순위</p> <p><b>[공기업·준정부기관]</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li> <li>2 국가계약법령</li> </ol> <p><b>[기타공공기관]</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li> <li>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li> <li>3 국가계약법령</li> </ol>
직접 적용 대상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광역시·도, 시·군·구 · 교육자치단체 -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 공립 초·중·고등학교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예산규모 250억 원 이상)
준용 대상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예산규모 250억 원 이상)	· 지방공기업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공동사항	· 조달사업법령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수요물자 구매 및 시설공사 등 조달요청 의무화 · 판로지원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도 적용 ·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특별법 적용 · 위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 적용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경우는 중앙 행정기관, 지방·교육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되는 바, 사립학교 등 국가·지방계약법령의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기관은 계약의 방법을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대부분 자체규정 등에서 국가·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업무를 처리해야 할 경우 발주기관이 국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공공기관인지를 구분하여 어느 법령이 적용되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 유권해석

□ 국가계약법 적용 여부

**Q1.** 국토관리사무는 국가계약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A1.** 국토해양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국토관리사무는 지자체 고유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이고, 사업예산이 국비로 집행되어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국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 계약 건은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667, '10.4.29.】

**Q2.** 회장사업 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A2.**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은 국가계약법령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기관이 아니며, 회장사업의 경우 위 재단법인의 수익사업으로서 특별법 및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사안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456, '10.12.2.】

**Q3.** 국립대 교수와 산학협력단의 연구수당 수령계약은 국가계약법령을 따르는지?  
**A3.**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가 국가 이외의 자와 세입의 원인 또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임. 따라서 공무원은 국가기관 이외의 자 또는 다른 국가기관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804, '10.12.31.】

### 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

□ 2020 디자인 특별전 「오래된 미래」(가제) 관련【신청일: 2020.3.11.】

**개요** 문화재청 소속기관 A는 해양문화재 전시를 위해 「2020 디자인특별전」 개최를 계획하면서 작가와 직접 계약을 통한 전시방법 도입 추진

**쟁점** 문화체육관광부 「미술분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자 하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과 내용이 상이해 적용에 어려움 ① 지식재산권 귀속에 있어 용역계약일반조건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소유하며,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으나 표준계약서에는 작가가 소유하며, 별도 예외조항 없음 ② 계약 목적물 귀속에 있어 용역계약일반조건에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통상 수요기관에 귀속되고 있는 반면,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작가와 전시기관 협의로 결정

**컨설팅 의견** 「예술인 복지법」에 의거 제정된 「미술분야 표준계약서」는 문화예술 용역 계약분야에서는 국가 계약법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어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한편,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와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련 법과 제도를 관장하고 있고, 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자(군수품 일부 포함)의 구매·공급·관리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 계약 사무는 조달청이, 방위력 개선사업·군수물자 조달 사무는 방위사업청이 각각 관장하면서 소관 공공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참고자료: 지방계약 관련 법령(서울특별시 “2021년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실무 매뉴얼”)

구분	종류	소관부처
기본법	계약결정방법, 입찰 및 계약절차, 계약관련 보증금, 검사, 대가지급 등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재정법</li> <li>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li> </ul>	
개별법	계약이행 자격, 하도급, 영업정지, 원가계산요령 등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산업기본법</li> <li>건설기술 진흥법</li> <li>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li> <li>건축사법</li> <li>건축법</li> </ul>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기물관리법</li> <li>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li> <li>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li> <li>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li> </ul>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중위생관리법</li> <li>장애인복지법</li> <li>국민건강보험법</li> <li>사회복지사업법</li> </ul>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공사사업법</li> <li>전기사업법</li> <li>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li> </ul>	산업통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로기준법</li> <li>최저임금법</li> <li>산업안전보건법</li> <li>고용보험법</li> <li>산업재해보상보험법</li> <li>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li> </ul>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지세법</li> <li>부가가치세법</li> </ul>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통신공사사업법</li> <li>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li> </ul>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소방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조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li> <li>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li> </ul>	중소벤처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재보호법</li> <li>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li> <li>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li> </ul>	문화재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회계예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li> <li>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li> </ul>

(2) 공공계약의 집행기관

공공계약은 수요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조달청장이 고시한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금액 이상의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은 의무적으로 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표 3] 조달청 계약 요청 의무사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근거 법령	· 조달사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공공기관운영법 제44조
의무적 조달 요청 대상	[물품·용역] · 추정가격 1억 원(외국산 물품은 20만 달러) 이상인 수요물자 구매계약 · 조달청장에 의해 체결된 다음의 수요물자 구매계약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다수공급자계약 - 국가계약법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 - 다수공급자계약 - 국가계약법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 [공사] · 추정가격 30억 원(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 원) 이상의 종합건설 공사	[물품·용역] · 조달청장에 의해 체결된 다음의 수요물자 구매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다수공급자계약 - 국가계약법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 [공사] · 자율계약(조달청 요청 가능)	[물품·용역] ·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2.1억 원) 이상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구매계약 [공사] · 자율계약(조달청 요청 가능)
	· 수요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체결한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장기계속 계약의 제2차 이후의 계약 ·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요청하도록 하거나 공사의 계약 체결을 위탁하고 있는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수요물자를 구매하거나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국방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하여야 하는 경우
-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 시공·감독, 하자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수공사로서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의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을 위임하는 경우

유권해석

□ 지방자치단체 장이 조달청에 계약요청 시 적용 계약법

Q.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중 어느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A.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을 적용

【법제처 07-0318, '07.12.7.】

고시금액

□ 국가 및 지방계약에서는 국가계약법 제4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기획재정부고시)과 지방계약법 제5조 및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에 따른 금액을 계약방법 등 여러가지 사항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으며, 관련 규정에서는 이를 '고시금액'이라고 칭한다.

○ 고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과 칠레 등 다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이 각각 규정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시금액이라 함은 세계무역기구의 개방대상금액을 말하며, 해당 금액 이상의 계약에 관하여는 외국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 그리고 다른 개별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협정 상 개방대상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의 개방대상금액은 2.1억 원이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상 개방대상금액은 1억 원이므로 미국기업은 1억 원 이상 계약에 대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고시금액이 서로 다르고 지방계약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섞여 있으므로 무조건 고시금액을 기획재정부 고시금액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해당 조문을 잘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이나 지방공기업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는 고시금액이 다르므로 이 또한 유의해야 할 것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2020. 12.30.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9호)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 원
    - 공사: 81억 원
  - 나. ~ 자. 생략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6억 5천만 원
    - 공사: 244억 원
  - 나. ~ 바. 생략
3.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가.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상 개방대상금액
    - 통신망장비 및 기타 통신기자재: 2억 1천만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2020.12. 31.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71호)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
  - 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상 개방대상범위
    - 1)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25개 구), 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16개 구·군),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10개 구·군)
    - 2) 대상금액 :
      - 가) 공사 244억 원 이상
      - 나) 물품·용역 3.3억 원 이상(대상기관 중 기초자치단체 경우는 6.5억 원 이상)
  - 나. ~ 마. 생략
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9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공기업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
  - 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상 개방대상범위
    - 1) 대상기관 :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 2) 대상금액 :
      - 가) 공사 244억 원 이상
      - 나) 물품·용역 6.5억 원 이상

# 3

## 공공계약의 일반절차

계약의 절차는 [그림 1]과 같이 크게 ① 계약준비, ② 계약체결, ③ 계약이행의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물품·용역·공사계약별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다르고, 국가계약인지 지방계약인지에 따라서도 그 절차가 일부 다를 수 있다.

각 단계별로 거쳐야 하는 주요 절차를 살펴보면, 계약준비 단계에서는 국가계약법 적용 대상인지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확보된 예산을 기초로 추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심의위원회나 일상감사 등 법령에 정해진 사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종 계약방침을 수립하면서 계약방법과 낙찰자 결정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입찰에 의한 계약인지 수의계약인지, 입찰에 의한 계약이라면 낙찰자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따라 관련 절차가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의 검토·결정이 전체적인 계약 절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계약방법 결정에 있어 또 하나의 주요 검토대상이 바로 판로지원법 적용 여부이며, 판로지원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자간 제한 또는 지명경쟁입찰 등을 통해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계약체결 대상의 추정가격이 얼마인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지[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 등을 검토하여 판로지원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일정금액 이상의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은 의무적으로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어 그에 해당되는 경우 조달청이 모든 계약체결 절차(대금지급은 수요기관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를 처리하게 되므로 조달사업법에 따른 조달청 계약요청 대상인지 여부도 주요 검토대상이라고 하겠고, 다른 법령에 따라 참가자격을 정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으므로 국가·지방계약법령 외에 해당 계약과 관련된 개별법령도 잘 검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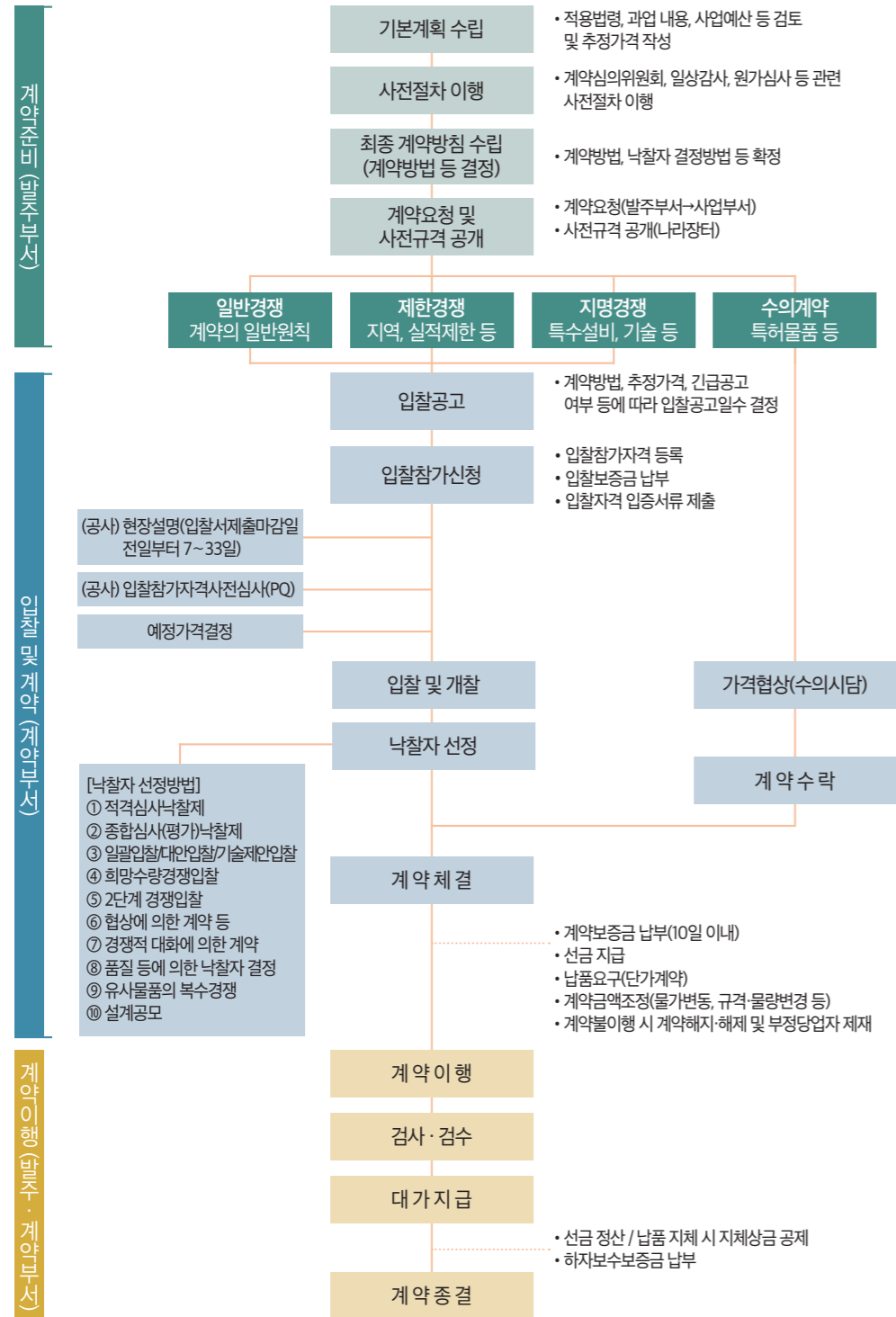
위와 같이 계약준비 단계에서 계약방법 등이 결정되면 이후 입찰 및 계약 단계에서 입찰 등을

거쳐 선정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계약체결 단계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 바로 예정가격 결정이다.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견적가격 등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2장 5절 예정가격” 편에서 별도로 설명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한다.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 단계에서는 계약업체는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계약보증금(공사계약은 이행보증) 등 여러 수단을 통해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담보장치를 마련함과 아울러 감독·검사를 통해 계약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대가를 지급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 선금, 계약금액 조정 및 계약이행의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각 단계별로 거쳐야 하는 세부적인 절차는 제2~4장에서 상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그림 1] 계약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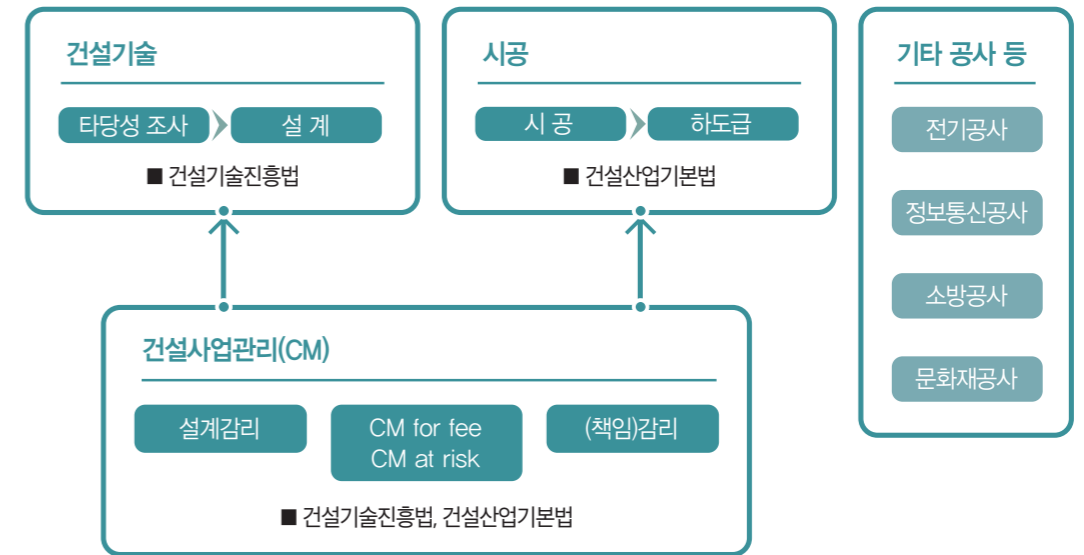
# 4

## 공사·물품·용역계약 및 조달계약의 특징

### (1) 공사계약

#### 가. 건설산업 체계

[그림 2] 건설산업 체계도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크게 타당성조사·설계·감리 등을 포함하는 건설기술분야, 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등을 포함하는 시공분야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CM : Construction Management)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에서는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분리 발주하고 있어 건설기술분야와 시공분야는 업무영역상 분리되는 체계이며, 시공분야 중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문화재공사는 근거법령이 달라 분리되는 체계이다.

※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서 각각 건설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 하도록 명시(단, 공사의 성질상 분리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 발주 가능)

또한, 건설사업관리분야는 CM for fee(자문제공형 건설사업관리)와 CM at risk(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9호)의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CM for fee는 발주과정에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고 시공과정에서는 책임감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이고, CM at risk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방식이다.

**나.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 [표 3]과 같은 절차로 시행된다.

국가재정투자사업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공사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도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등 일정 금액 이상 대형 공사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외부기관의 통제·관리를 받는다.

**[표 4] 건설공사의 시행 절차**

구분	절차	주체	주요 내용
계획수립	기본구상	발주기관	▶ 공사의 필요성, 공사비 등 사업의 기본적 내용 검토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	▶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검토(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추진 결정	기획재정부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시 사업 추진, 예산 배정
	타당성조사	발주기관	▶ 시행공사의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 측면에서 적정성 검토

구분	절차	주체	주요 내용
계획수립	건설공사기본계획 수립	발주기관	▶ 공사 목표, 공사기간, 재원조달계획, 시설물유지관리계획, 환경보전계획 등 수립
	공사수행방식 결정	발주기관	▶ 기본계획 수립·고시 후 건설기술 공모방식, 일괄입찰방식,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등 결정 ▶ 실시설계 후 대안입찰방식,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등 결정
	기본·실시설계	발주기관	▶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地盤)·토질, 개략 공사비, 실시설계 방침 등을 포함한 기본설계 실시 ▶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설계도, 시방서 등 작성)
설계·시공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발주기관	▶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 검토
	입찰 및 계약	발주기관 조달청	▶ 국가기관은 30억 원 미만의 종합건설공사(3억 원 미만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를, 그 외 기관은 모든 공사를 발주 기관이 직접 입찰·계약 ▶ 국가기관은 30억 원 이상 종합건설공사(3억 원 이상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의 조달청 계약 요청 의무화, 그 외 기관은 조달청 계약 요청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
	공사관리	발주기관	▶ 시공자가 공사관리계획과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을 적절히 이행하는지 관리·감독
평가	시공평가	발주기관	▶ 품질·공정·시공·하도급·환경관리 등의 적정성 평가(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사후평가	발주기관	▶ 예상 공사비, 공사기간과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 공사기간 등 비교·분석(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

**다. 공사의 종류**

공사는 건설공사(종합공사/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문화재공사 및 설비·지하수개발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에서는 위 공사종류별, 규모별로 각종 평가기준 등을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공사의 종류 및 개략적인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표 5] 공사의 종류

공사 종류	내용	근거법령
건설공사	<b>종합공사</b>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로서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의미	「건설산업기본법」
	<b>전문공사</b>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	
전기공사	「전기공사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전기설비(「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전기공사사업법」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소방공사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소방시설공사사업법」
문화재공사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 임시지정 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환경관련공사 · 폐기물처리시설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 가축분뇨처리시설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복구공사 지하수개발공사 등	「산지관리법」 「지하수법」

그 중 건설공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 포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을 설치·해체하는 공사 등을 말하며, 개별 법령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서 그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표 6]

과 같이 현재 5종의 종합공사와 29종의 전문공사로 구분되며, 종합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전문공사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표 6]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구분	건설업종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 토목공사업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2. 건축공사업	5. 조경공사업
	3. 토목건축공사업	
겸업 ↑ 가능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 실내건축공사업	16. 조경식재공사업
	2. 토공사업	17.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3. 습식·방수공사업	18. 강구조물공사업
	4. 석공사업	19. 철강재설치공사업
	5. 도장공사업	20. 석도설치공사업
	6.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21. 준설공사업
	7.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22. 승강기설치공사업
	8.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23.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4.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10. 기계설비공사업	25.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1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6. 난방시공업(제1종)
	12. 보링·그라우팅공사업	27. 난방시공업(제2종)
	13. 철도·궤도공사업	28. 난방시공업(제3종)
	14. 포장공사업	29. 시설물유지관리업
	15. 수중공사업	

라. 공사 관련 법령 및 입찰참가자격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상대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표 6]과 같이 기본적으로 각각의 공사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표 7] 공사계약에 필요한 자격요건

구분	자격요건	근거규정
건설공사	■ 종합·전문건설업 등록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 등록	■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소방시설공사	■ 소방시설업 등록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문화재수리공사	■ 문화재수리업 등록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2) 물품계약

가. 물품계약의 종류

물품계약은 이미 만들어진 완성품을 구매하는 물품구매계약과 별도 주문한 규격에 맞게 계약 상대방이 물품을 새로 제작하여 납품하는 물품제조계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제조업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이라고 되어 있어 원재료를 다른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포함된 경우는 물품제조계약, 제조활동이 없는 경우는 물품구매계약으로 분류된다.

관련 법규에서 물품제조계약의 대상을 살펴보면, 조달청의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23조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조자로 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물품제조계약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발주자(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의 규격서, 시방서, 도면(승인도면 포함)에 따라 제조하여 납품하는 물품
- ② 시중유통물품(기성규격)을 상당부분에 걸쳐 별도의 가공, 제조공정을 거쳐야 하는 물품
- ③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에 의해서 작성하는 물품
- ④ 기타 필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

한편, 물품제조계약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물품을 제조하는 활동이 포함되므로 당연히 당해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유권해석

□ 물품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여부

- Q. 물품 구매 일반경쟁 입찰 공고 시 입찰자격을 생산업자나 판매업자 중 한쪽만으로 제한하는 입찰이 가능한지?
- A. 국가기관에서 일반경쟁입찰에 부쳐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제조구매” 또는 단순한 “구매”에 의한 구입인지의 여부에 따라 그 자격요건을 달리하는 바, “제조구매”의 경우는 당해 제조업을 영입으로 하는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단순한 “구매”의 경우에는 제조업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입찰참가 가능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제125-1059, '87.5.11.】

□ 물품제조계약에서 “제조”의 범위

- Q. 입찰참가자격을 제조업체로 제한한 공고에서 낙찰된 계약업체가 일부 제품을 다른 3개 제조업체에게 하청하여 납품하는 것이 가능한지?
- A. 당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동 제조설비를 갖춘 업체가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다만, 물품 제조를 위해 소요되는 자재 중 일부를 불가피하게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봄
- 그러나 계약상대자인 제조업체가 당초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탈락된 제조업체 각각의 생산물품을 조립 또는 혼합하여 납품하는 것은 국가계약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678, '06.3.27.】

나. 물품계약 관련 법령 및 입찰참가자격

물품의 경우 대부분 해당 물품에 관한 사업자등록만을 요구하고 공사나 용역에 비해 관련 법령에서 입찰·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로 결정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사항이 있다.

[표 8] 물품계약에 필요한 자격요건

구분	자격요건	근거규정
물품	유류 ■ 석유판매업 등록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구분	자격요건	근거규정
의료기기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 「의료기기법」 제17조
물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면허제도는 아니나 생산공장, 생산시설·인력 등 직접생산 여부 확인 필요(중소벤처기업부)
		■ 「판로지원법」 제9조

(3) 용역계약

가. 용역의 종류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용역계약은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술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이며, 이를 제외한 용역은 ‘일반용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9] 용역의 종류

용역 종류	내용
기술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아래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 업무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지반조사 포함)·설계(건축설계 제외)·감리·시험·평가·측량(해양조사 포함)·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li> <li>▶ 시설물의 운영·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li> <li>▶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li> <li>▶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li> <li>▶ 건설사업관리</li> <li>▶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li> <li>▶ 정보통신체계를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li> <li>▶ 건설공사의 견적</li> </ul> </li> </ul>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의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및 그에 대한 사업관리</li> <li>▶ 견적(見積)</li> <li>▶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li> <li>▶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li> </ul> </li> </ul>

용역 종류	내용
기술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공사감리</li> <li>▶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공사감리</li> <li>▶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설계·감리</li> <li>▶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감리·하자보수</li> <li>▶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측량</li> </ul>
일반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술진흥법」 제2조 등에 따른 학술로서 학술연구분야분류표(한국연구재단 발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 따른 학문 분야 및 과정 등에 대한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li> <li>■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용역으로, 소프트웨어 사업 및 관련 장비 유지보수용역으로 구분</li> <li>■ 시설물 관리업무, 시설물 경비업무, 청소 등 위생관리 업무 및 이에 준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용역(「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경비업법」 등)</li> <li>■ 쓰레기, 연소재 등 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파쇄·고형화·매립 등의 방법에 의해 처리하는 용역</li> <li>■ 운송장비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 운송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용역</li> <li>■ 전시·행사대행, 보험, 광고·디자인, 장비 유지·보수, 교육, 의료서비스 등</li> </ul>



나. 용역 관련 법령 및 입찰참가자격

용역계약에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상대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표 10]와 같이 기본적으로 각각의 용역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표 10] 용역계약에 필요한 자격요건

구분	인가, 허가, 신고 등 자격명	근거규정
건설기술 (타당성 조사, 설계, 감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용역업 등록</li> <li>■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li> <li>■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li> <li>■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li> <li>■ 「기술사법」 제6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량업 등록(측지측량업, 지적측량업,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 연안조사측량업, 항공촬영업, 공간영상도화업, 영상처리업, 수치지도제작업, 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 측량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li> </ul>
건설기술 (타당성 조사, 설계, 감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li> </ul>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사법」 제23조</li> </ul>
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공사감리업 등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li> </ul>
소프트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li> </ul>
시설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중위생영업 신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비업 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비업법」 제4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수조청소업 신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법」 제34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파견사업 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li> </ul>
건설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li> </ul>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처리업 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관리법」 제25조</li> </ul>
석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면조사기관 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li> </ul>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업 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업법」 제4조</li> </ul>

(4) 조달계약

공사·물품 및 용역계약과 조달계약은 분류기준이 달라 비교대상으로 볼 수 없으나 공공계약의 상당 부분이 조달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조달계약 부분을 추가로 살펴보고자 한다.

조달계약의 근거법령은 조달사업법으로서 조달사업법령에서는 국가계약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도와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수요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달사업법령에 따라 조달청이 수요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아 처리하는 계약 대상은 [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정금액 이상 물품·용역구매 및 공사계약(국가계약만 해당), 단가계약, 제3자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등이다.

단가계약, 제3자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은 제2장 제2절 2. (2)~(4)에서 상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조달청에 요청하는 계약사항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간단히 살펴본다.

먼저 조달계약의 처리절차는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공사·용역·물품의 조달계약 처리절차

구분	처리절차
공사·용역	조달계약요청(수요기관, G2B) → 계약체결(조달청) → 조달수수료 납부(수요기관) → 감독관 지정 및 사업 이행(수요기관) → 선금, 기성금, 준공금 지급(수요기관) ※ 용역 대금지급은 조달청 대지급도 가능
물품	조달계약요청(수요기관, G2B) → 계약체결(조달청) → 물품검사 및 수령(수요기관) → 대금지급(조달청) → 대금 및 조달수수료 고지서발급(조달청) → 청구금액 입금(수요기관) ※ 물품 대금지급은 수요기관 직불도 가능

※ 보다 상세한 업무처리절차는 조달청 홈페이지-업무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음

조달계약의 이행대금은 수요기관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품업체의 규모, 계약 방법, 자체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지급(이하 “대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정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대지급한다.(조달사업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8조)

즉, 공사계약은 조달청이 대금을 대지급하는 경우가 없고, 물품 및 용역은 다음 대지급 기준에 따라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이 지급한다.

□ 단가계약, 제3자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납품대금  
 □ 계약금액의 총액이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인 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의 경우

- ▶ 수요물자 대지급 대상(조달청 고시)
- ① 계약금액의 총액이 1억 원 이하의 납품대금. 단,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5억 원 이하의 납품대금
  - ② 수요기관에서 임차료 예산으로 장기분할납부 요청한 경우 5억 원 이하 납품 대금
  - ③ 위 ①의 금액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수요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의 계약이행 지원을 위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조달청장에게 대지급을 요청한 경우

□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군부대 등 조달업체의 접근이 제한되는 수요기관의 납품대금으로서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요기관의 장이 지급을 요청한 납품대금의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조달수수료는 「조달수수료 고시」(조달청 고시), 「조달수수료 면제에 관한 지침」(조달청 훈령)에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조달청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5 관련 법규

계약과 관련된 법령은 앞의 [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령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17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지방계약의 경우 지방계약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5개 행정안전부 예규, 공공기관계약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법령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 규정」(기획재정부 훈령)이 적용된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예규 운용상 차이점은, 국가계약의 경우 [표 12]와 같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공통사항을 정하고 나머지는 16개 예규로 각각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계약은 [표 13]과 같이 2개 예규에 각 장별로 계약업무 추진 시 필요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문화재 수리 포함)과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관련 내용에 해당되는 예규를 검토·적용할 필요가 있다.

[표 1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별 주요 내용

계약예규명	주요 내용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계약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li> <li>- 제한경쟁입찰의 대상·운영기준</li> <li>- 수의계약 집행기준 및 소액수의계약 체결 절차</li> <li>- 선금 지급, 물가변동 조정을 산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사항, 필수 검토</li> </ul>
예정가격 작성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에 관한 사항 규정</li> <li>- 원가계산의 비목별 가격결정 원칙, 제조·공사·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방법,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방법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에 의해 작성하는 경우</li> </ul>

계약예규명	주요 내용	검토가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공사계약일반조건</b></li> <li>· <b>용역계약일반조건</b></li> <li>· <b>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 계약문서 중 하나임</li> <li>- 계약문서의 구성, 계약보증금의 처리, 계약금액의 조정</li> <li>- 납품, 검사, 대가 지급, 지체상금,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분쟁해결방법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 용역, 물품계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공사입찰유의서</b></li> <li>· <b>용역입찰유의서</b></li> <li>· <b>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 참가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규정, 계약문서 중 하나임</li> <li>-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참가신청방법, 입찰보증금, 입찰서 작성·제출, 입찰무효 사유</li> <li>- 재입찰·재공고입찰, 낙찰자 결정, 계약 체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li> <li>※ 수의계약은 검토 불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 운영요령 규정</li> <li>- 사전심사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 사전심사 절차, 방법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계약사항(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 및 문화재수리공사는 의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적격심사기준</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심사기준 등 규정</li> <li>- 적격심사 절차,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심사방법, 낙찰자 결정기준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격심사낙찰제에 의한 계약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등 규정</li> <li>- 입찰절차, 제안서 평가 방법, 협상적격자 선정 및 가격 협상 방법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상에 의한 계약사항</li> <li>※ 물품·용역계약만 해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공동계약 운용요령</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계약 운용에 필요한 사항 규정</li> <li>- 공동계약의 유형,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 공동수급체 구성방법, 공동도급내용의 변경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계약사항</li> <li>※ 주로 공사계약에 해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2019. 3. 5. 신설)</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적인 제품·서비스 등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입찰대상자들과 경쟁적·기술적 대화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평가기준 등 규정</li> <li>- 입찰공고, 경쟁적 대화 절차, 제안서평가 기준·방법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용역계약만 해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종합계약 집행요령</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관 중 2개 기관 이상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한 집행요령 규정</li> <li>-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협정서 작성, 계약 및 입찰공고 방법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계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관련한 낙찰자 결정 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계약</li> </ul>

계약예규명	주요 내용	검토가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공사계약/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계약의 낙찰자 결정 방법 규정</li> <li>- 심사방법·항목·배점한도 등 심사기준, 입찰공고 방법 등</li> <li>※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 중 문화재 수리공사의 심사 기준(문화재청 예규)으로 별도 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 기술용역계약</li> </ul>

[표 13] 행정안전부 예규별 주요 내용

예규명	주요 내용	검토가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계약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 제1절 총칙</li> <li>· (공사) 제2절 내역입찰 집행</li> <li>· (공통) 제3절 지명입찰업체 선정</li> <li>· (공사) 제4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li> <li>· (공사)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li> <li>· (공통) 제6절 물가변동 조정을 산출</li> <li>· (공통) 제7절 실비 산정</li> <li>· (공통)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li> <li>· (공사) 제9절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li> </ul> </li> <li>- (공통)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li> <li>- (공통)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li> <li>- (공통)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li> <li>- (공통)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li> <li>- (공통)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li> <li>- (공통)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li> <li>- (공사)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li> <li>- (공통) 제9장 종합계약 운영요령</li> <li>- (공통) 제10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li> <li>- (공통) 제11장 입찰 유의서</li> <li>- (공사) 제12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li> <li>- (공사)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li> <li>- (용역)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li> <li>- (물품)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li> <li>- (공통) 제16장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요령</li> <li>- (공사) 제17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사항 등 필수 검토</li> </ul>

예규명	주요 내용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에 관련된 사항을 모아 별도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기술용역)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li> <li>- (공사)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li> <li>- (기술용역)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li> <li>- (물품)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li> <li>- (물품·기술용역)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li> <li>- (공사) 제6장 일괄입찰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li> <li>- (공사) 제7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li> <li>- (용역) 제8장 설계공모 운영요령</li> <li>- (물품·용역) 제9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li> <li>- (공사) 제10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물품·용역 필수사항 검토</li> </ul>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 종합평가낙찰제 대상 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기준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방법·항목·배점한도 등 심사기준, 입찰공고 방법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계약</li> </ul>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수리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기준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절차,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 수리 공사</li> </ul>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 등이 집행하는 학술연구용역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심사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 낙찰자 결정기준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술연구용역</li> </ul>

# 공공계약 실무가이드

A Guide to Handling Public Contracts



# 02

## 계약준비 단계

제1절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절차		3. 단년도계약,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80	제4절 입찰·낙찰자 결정방법		8.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종합낙찰제)	315
1.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58	4. 단독계약과 공동계약	87	1. 적격심사낙찰제	194	9. 유사물품의 복수경쟁	316
2. 발주 전 계약별 사전절차	59			2. 종합심사(평가)낙찰제	279	10. 설계공모	317
3. 계약방법 등 검토	64	제3절 계약의 방법		3. 설계·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290	제5절 예정가격	
제2절 계약의 종류		1. 일반경쟁계약	100	4. 희망수량경쟁입찰	295	1.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등의 구분	319
1. 확정계약,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67	2. 제한경쟁계약	107	5.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297	2. 추정가격	320
2.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75	3. 지명경쟁계약	142	6. 협상에 의한 계약	299	3. 예정가격	322
		4. 수의계약	146	7.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312		

## 제1절

###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절차

#### 1.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공사계약, 물품제조·구매계약 및 용역계약을 포함한 모든 예산집행은 예산 확보에서부터 시작된다. 필요한 경비를 다음 연도 예산안으로 요구하여 예산안이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결로 확정되면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불가피한 사유로 편성된 예산액이 필요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예산 이·전용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계약이 가능하다.

물품구매를 예로 들면, 구매계획 수립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구매·제조 필요성, 구매 내용(구매사양 또는 규격), 경쟁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계약체결방법, 관련 법규, 예산과목, 소요예산(추정가격) 등이다.

<구매계획서 작성 사례>

**◇◇◇ 장비 구매 계획**

- 구매 필요성 : 보유현황, 구매사유, 적용법규 등
- 구매 내용 : 품명, 규격, 수량
- 구매 예산 : 예산과목, 소요예산(추정)
- 구매방법
  - 계약방법 : 총액/단가, 장기계속/계속비, 단독/공동 등
  - 경쟁방법 : 경쟁(일반, 제한, 지명), 수의
  - 입찰참가자격 :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자격요건
  -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2단계 경쟁입찰 등
  - 납품기한, 하자보수기간 등

#### 2. 발주 전 계약별 사전절차

##### (1) 계약심의위원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4조와 지방계약법 제32조에서는 입찰참가 자격요건 등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국가계약법이 '자문에 응하도록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반면, 지방계약법은 '심의를 위하여 설치·운영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자문 또는 심의의 대상도 아래 표와 같이 지방계약법령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4] 국가계약 및 지방계약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구분	관계 법령	심의대상
국가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4조	①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 ②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지방계약	지방계약법 제32조, 시행령 제108조	① 아래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사항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 시·도: 추정가격 70억 원 이상 공사, 20억 원 이상 물품·용역계약                          · 시·군·구: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공사, 10억 원 이상 물품·용역계약                     </div> -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 관련 업체가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②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③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따라서 발주부서의 담당자는 해당 기관에 위 계약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지 혹은 다른 명칭의 심의절차가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해당 계약사항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절차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 등은 계약심의회(국방부), 계약 사전심사 실무위원회(병무청), 계약심사협의회(조달청) 등 다른 명칭으로 위 제도를 운영하기도 함

유권해석

□ 지방계약심의회위원회 심의결과 수용 가능 여부

- Q. 자체감사 결과 관련규정 위반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에 대하여 (지방)계약심의회위원회가 무혐의 처분 의결을 한 경우 처분권자가 수용하여야 하는지?
- A. 계약심사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니라 심의기구이므로 처분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것임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의회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나, 심의결과가 지방계약법령의 취지와 반하거나 적절성과 적법성을 벗어나는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계약심의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판단에 따라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음【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920, '16.6.9.】

(2) 계약심사

지방계약에서는 계약심의회위원회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에서

① 기초금액·예정가격의 적정성(원가심사)과 ②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설계변경심사)을 심사·검토하는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 국가계약법령에는 계약심사제도와 관련한 규정이 없으나 병무청과 같이 유사한 제도(「병무청 계약 사전심사 업무처리 규정」)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국가기관의 계약담당자는 해당 기관의 절차를 필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계약심사를 위해 시·도에서는 계약심사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하고 시·군·구는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심사담당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용역·물품계약에 대하여 원가 및 설계변경심사를 하여야 한다.

【표 15】 의무적 계약심사 대상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시·도	시·군·구
원가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 : 추정금액 5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 원) 이상</li> <li>• 용역 : 추정금액 2억 원 이상</li> <li>•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 : 추정금액 3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 원) 이상</li> <li>• 용역 : 추정금액 7천만 원 이상</li> <li>•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li> </ul>
설계변경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 변경의 경우 누적금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 변경의 경우 누적금액)</li> </ul>

보다 구체적인 심사절차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에 상세히 나와 있으므로 생략한다.

(3) 일상감사

공공감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3조에 따르면 계약업무를 집행하는 부서의 장은 업무 집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감사부서의 장은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업무담당자는 해당 기관에서 규칙이나 조례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대상·기준 등을 확인하여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일상감사를 받아야 한다.

(4)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에서는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지 않거나,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더라도 설계에 대한 대안 또는 검토제안서를 제출하여 입찰하는 기술형공사(일괄입찰, 대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와 관련하여 국가계약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계약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방법, 낙찰자결정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사용과 관련한 설계변경 관련 사항 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표 16]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구분	심의대상
기술형공사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찰방법,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li> <li>기술제안서 또는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등</li> </ul>
설계변경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새로운 기술·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등이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li> </ul>

그리고 지방계약과 관련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자체 심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등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심의대상 대형공사 등이 전문성이 필요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자체 심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심의대상 대형공사 등이 국가시책사업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 해당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뇌물수수 등으로 물의가 발생하거나 공정성에 시비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따라서 발주부서의 담당자는 해당 계약사항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절차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국방부는 국방·군사시설·건설공사에 관한 설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유권해석

- 시설공사 입찰방법 심의 관련 지방계약법 준용 여부
  - Q.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한국환경공단이 지방계약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경우로서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어느 위원회(중앙 또는 지방)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 A. 지방계약법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임【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497, '15.11.4.】

(5) 사전규격 공개

물품 및 용역계약을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공고 전 구매규격을 사전 공개하여 관련 업체가 구매규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구매규격 사전공개)]**

□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또는 용역

**[(지방계약법 시행령 32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
- 구매를 비밀로 하여야 하는 물품 또는 용역
-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또는 용역
-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 음식물(재료 또는 가공품인 경우 포함) 또는 농·축·수산물

사전공개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5일간(긴급한 경우 3일간) 공개하며, 의견이 제기될 경우 국가계약의 경우 ‘수요목적 범위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규정된 반면 지방계약에서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6) 기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상 규정된 위 3가지 절차 외에도 별도 규정이나 조례를 통해 각종 심의절차를 마련해 운영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일례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전심의절차를 운영 중이다.



[표 17] 서울특별시의 계약 전 사전심의절차

사전절차명	주요 내용
계약심사단	■ 변호사·회계사 등으로 계약심사단을 구성하여 민간투자사업, 민간위탁사업 등 계약(협약) 체결 전 법률·회계상 적정성 심사
학술용역심의	■ 내·외부 위원으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학술용역과제의 필요성·타당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을 심의(조례)
정보화심의	■ 정보화사업 담당부서에서 정보화사업의 사업내용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기술적 실현가능성, 중복투자 및 통합·연계가능 여부 등 심사(규칙)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 기술심사 담당부서에서 모든 기술용역에 대해 초기 단계에서 기술용역 시행 필요성 및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을 검토(시장방침)
홍보물·영상물·간행물 심의	■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에서 각종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제작의 필요성 여부 등 심의(조례)
계약심사과 원가심사	■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사업비 내역에 대해 심층적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적정 사업비 산정 및 예산낭비 요인 사전방지(규칙)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서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 필요 여부 등 심의(조례)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검토	■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해 발주 적정성, 공종분리 및 종합공사 발주 가능 여부 검토
녹색제품 구매심사	■ 물품 구매 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확인 및 구매가능 여부 사전 검토(규칙)

### 3. 계약방법 등 검토

계약목적물별 계약의 종류, 경쟁형태에 따른 계약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은 다음과 같고,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관련 절차가 달라지므로 계약 체결 전에 관계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 후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표 18] 계약의 종류 및 입찰·낙찰자 결정방법

계약목적물별	계약체결형태별	경쟁형태별	낙찰자 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등</li> </ul> </li> <li>물품제조·구매계약</li> <li>용역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용역/일반용역</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확정계약,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li> <li>총액계약, 단가계약, 제3자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li> <li>단년도계약,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li> <li>단독계약, 공동계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쟁입찰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경쟁계약</li> <li>-제한경쟁계약</li> <li>-지명경쟁계약</li> </ul> </li> <li>수의계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격심사낙찰제</li> <li>종합심사(평가)낙찰제</li> <li>일괄입찰/대안입찰/기술제안입찰</li> <li>희망수량경쟁입찰</li> <li>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li> <li>협상에 의한 계약</li> <li>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li> <li>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종합낙찰제)</li> <li>유사물품의 복수경쟁</li> <li>설계공모</li> </ul>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한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 등을 통해서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자에게 알려지게 되는데, 다음 입찰공고 사례를 통해 각 계약방법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해당 계약은 계약목적물인 선박을 제조하여 구매하는 계약으로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소지한 자로 참가자격을 정하고 있으므로 ① 물품제조구매에 해당하고, 총 제조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계약이행 완료 후 별도 정산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② 확정계약이며,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단가가 아닌 총액으로 입찰한다는 점에서 ③ 총액계약에 해당한다.

또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규모 이상의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④ 제한 경쟁입찰에 해당하고,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입찰한다는 점에서 ⑤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⑥ 단독계약이고, 입찰참가자(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⑦ 적격심사낙찰제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희망수량경쟁입찰, 2단계 경쟁입찰 등 다른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음(판로지원법 제7조 제2항)

○○○ 30톤급 감시정(건조) 조달구매 입찰공고

- 1. 추정가격 : 2,092,727,273원 (부가가치세 별도) ..... ② 확정계약  
③ 총액계약
- 2. 입찰(개찰)일시 : 2016. 10. 13. 15:00
- 3. 입찰방식
  - 가. 전자입찰(국내입찰)
  - 나. 낙찰자선정방법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 다. 납품기한 : 2017. 07. 31.
  - 라.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상세내용은 계약특수조건 참조)
- 4. 입찰참가자격 ..... ④ 제한경쟁입찰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세관감시선(세부품명번호 10자리 25112004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서, 단일계약건으로 총톤수(G/T) 30톤 이상 및 최대속력 30Knots 이상의 재질이 FRP인 선박(동력선에 한함)을 건조·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 ※ 단, 실적은 단일건조계약 실적만을 인정하며, 공동건조계약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⑤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세관감시선,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2511200401]를 소지한 자로서, 특이사항에 합성수지선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 ④ 공동도급 : 허용 안함 ..... ⑥ 단독계약
- 5. 낙찰자 결정 ..... ⑦ 적격심사낙찰제
  - ㉠ 계약이행능력심사(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별표 1)
    - \* 계약이행능력심사 이행실적에 적용되는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에 대한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행실적 평가 기준 실적금액 : 2,092,727,273원 (부가가치세 별도)
    - 동등이상 물품 : 단일계약건으로 총톤수 30톤 이상 및 최대속력 30Knots 이상의 재질이 FRP인 선박(동력선에 한함)을 건조·납품한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납품완료된 기간에 관계없이 요구조건을 만족하면 모두 인정)
    - \* 낙찰하한율 : 87.995%

## 제2절 계약의 종류

### 1. 확정계약,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계약금액을 계약 시 확정하는지 사후정산하는지에 따라 확정계약,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표 19] 확정계약,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개념

구분	확정계약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개념	·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방법 · 정부계약의 원칙, 통상적인 계약 형태	·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략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정산하는 형태의 계약방법	·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해당 비목의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는 방식의 계약방법
근거 법령	· 국가계약법 제11조 · 지방계약법 제14조	· 국가계약법 제23조, 시행령 제70조 · 지방계약법 제27조, 시행령 제81조 ~86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 (1) 확정계약

확정계약은 계약체결 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통상적인 계약방법으로서, 공공계약은 대부분 확정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확정계약이 체결되면 발주기관은 실제 지출된 비용에 관계없이 미리 확정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1억 원에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면서 사후에 정산한다는 조건을 정하지 않는 한 실제 지출비용이 9천만 원이라고 하여 9천만 원만 지급할 수는 없으며

반대로 실제 1억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고 1억 1천만 원을 지급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유권해석

□ 확정계약에서 사후정산 관련 질의

Q. 계약이행 완료된 일반용역(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 사후에 계약금액 정산이 가능한지?

A.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0조의 개산계약, 제73조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과 계약서에 일부 비목에 대하여 정산하기로 정한 계약을 제외하고 총액 확정계약으로 체결된 계약에서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지출내역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확정계약서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보다 비용을 적게 지출하였다고 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거나 계약금액 지급 후에 그 차액을 반납토록 하는 것은 확정계약의 성질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158, '12.9.4.】

다만, 국가계약법령에서는 개산계약과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확정계약이라는 용어는 별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국가계약법 제11조에 따르면 ‘계약담당 공무원 등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금액, 이행기간 등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되어 있어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계약서에는 ‘확정 계약’이라고 별도로 표기하지 않으며 계약금액 정산 등 별도의 조건 없이 계약금액을 명시하였다면 확정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2) 개산계약

개산계약은 미리 계약목적물의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 개략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정산하는 형태의 계약방법이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법은 모두 ①시제품 제조, ②시험·조사·연구용역, ③공공기관(지방은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관계법령에 따른 위탁계약, ④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의 4가지 경우를 개산계약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계약은 재해복구공사에 대해서 금액 기준으로 그 대상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개산계약 체결 및 정산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령에서는 개산계약 체결 내용을 감사원

에 통지하고, 정산 결과에 대하여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계약법령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표 20]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의 개산계약 대상 비교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시제품(開發試製品)의 제조계약</li> <li>· 시험·조사·연구 용역계약</li> <li>· 공공기관 위탁·대행 계약</li> <li>·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시제품(開發試製品)의 제조계약</li> <li>· 시험·조사·연구용역의 계약</li> <li>·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과의 위탁·대행 등 계약</li> <li>·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개산가격 30억 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외의 공사는 6억 원)의 도로, 하천, 상하수도, 농경지 피해복구공사 및 해당 공사와 관련된 2억 원 미만의 설계·감리 등의 용역계약</li> </ul>

① 개산가격의 결정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산계약의 요건인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라는 것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긴급한 재해복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아무런 금액도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산계약도 계약의 이행에 소요되는 개략적인 금액인 ‘개산가격’을 결정하여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게 된다.

그리고 ‘개산가격’은 발주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견적서나 표준가격(공사의 경우 건설공사표준 품셈 등을 이용한 공종별 단가 또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등)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면 된다.

유권해석

□ 개산계약에서 개산가격 결정

- Q. 물품 제조구매 시 외자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하는 기술적 특수성으로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없을시, 「예산 회계법」 제70조(현 국가계약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및 개산가격 결정방법
- A.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의 경우 계산계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이 때 개산 가격은 견적가격 등을 참고할 수 있음【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제 1210-1272, '81.6.19.】

② 원가검토 기준 등 설정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해야 하며, 이를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후정산 기준을 정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정산의 범위를 개산계약 금액 범위 내로 하여야 하고 계약특수조건에 개산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개산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정산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저가입찰이 가능하여 공정한 경쟁을 해치게 되고, 이행과정에서도 원가절감 노력을 하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문업체이므로 발주기관이 제시한 개산가격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개산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 것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도 아니다.

둘째, 계약이행 완료 후 정산기간, 제출서류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일부 계약상대자의 경우 중요한 서류의 제출을 미리 정한 것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셋째,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는 지급하되 정산에 따른 감액 예상금액 등에 대한 유보율을 마련, 일정 대금은 지급을 유보하는 등 유보금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이행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적정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유권해석

□ 정산계약 관련 처리 방법

- Q. 정산계약의 대가지급 및 유보금 처리방법?
- A. 계약이행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른 대가의 지급은 계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정산은 유보금에 관한 사항 등 미리 정한 정산기준의 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858, '05.9.7.】

넷째, 정산을 항목별로 할 것인지 총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는 낙찰률을 곱할 것인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지방계약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공사·용역의 경우 개산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의 낙찰률(개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개산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입찰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한 경우라면 낙찰률을 반영하여 정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계약완료 후 정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사후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미리 설정한 정산기준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유권해석

□ 개산계약 체결 및 정산방법

- Q1. 다음연도 교과서 가격은 다음연도에 결정되나, 가격 결정 후 구매 시 공급차질 우려가 있으므로, 당해연도 가격으로 개산계약을 체결하고 다음연도 내에 가격이 결정되면 그 시점에 차액 정산이 가능한지?
- A1. 개산계약은 「예산회계법」 제70조(현 국가계약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개산가격에 대한 정산처리는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함【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제 1210-1788, '80.9.11】
- Q2. 개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경우 정산 시 단가의 적용시점은?
- A2. 국가기관이 체결한 개산계약에 있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정산처리는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제 1210-6083, '71.12.31.】

### (3)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은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해당 비목의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는 방식의 계약방법으로서, 주로 외국의 첨단부품을 수입하거나 제작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수물품 조달 시에 이용되는 계약방법이다.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대상, 절차 등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에 별다른 차이는 없다.

#### 개산계약과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차이점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은 입찰 전에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예정가격 비목에 대해서는 확정계약을 하고 확정이 불가능한 비목에 대해서만 사후정산한다는 점에서 계약금액 전체를 사후정산하는 개산계약과 구별된다. 즉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은 확정계약과 개산계약이 혼용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 ① 사후원가검토 대상 비목 및 사후정산 한도액 결정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후에 정산대상이 되는 비목과 사후정산 한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사후원가검토 기준 등 설정

개산계약과 마찬가지로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후원가검토 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개산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해야 하고 정산기간, 제출서류 및 유보금에 대해서 명확히 정해야 한다.

#### 유권해석

□개산계약 정산금액 기준

- Q. 계약완료 후 대가를 정산하기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산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실비 정산이 가능한지?
- A. 배정된 예산범위에서 계약체결이 가능한 국가계약의 특성상 국가계약법 제23조의 개산계약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은 계약금액 범위에서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발주기관이 과업을 추가하는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 경우라면 추가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정산할 수 있을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40, '12.2.8.】

#### ③ 계약완료 후 정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사후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미리 설정한 사후 원가검토 기준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정산 과정에 각 비목별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목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은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체결하는 것이므로 직접재료비나 외주가공비 등 비목별 금액에 대해 각각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각각의 비목별로 정산하는 방식이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만일 비목별로 정산하는 방식이 극히 계약상대자에게 불합리하여 부당특약에 해당할 정도가 된다면 이 때는 사후정산의 대상이 되는 비목 전체의 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 유권해석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관련 질의

- Q. 복수 비목을 대상으로 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에서 개별비목이 아닌 복수 비목 총액 기준 정산이 가능한지?
- A.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따라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경우에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비목별로 정산할 수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할 때 비목별로 정산하도록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다만, 사후정산의 대상이 되는 비목 전체의 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목적물의 특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67, '14.2.12.】

#### ④ 조달청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관련 규정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에서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구체적인 대상과 정산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 훈령) 등 조달청 내부규정에서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참조하여 계약방법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등은 조달청이 처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조달청에 계약요청을 한 경우에 당해 계약 건에 대해서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으나 그 외의 경우는 준수 의무가 없음. 그러나 조달청요청을 하지 않은 기관이 직접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 규정 등을 통해 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의 처리 기준 및 절차를 참조함으로써 오류 또는 분쟁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임

#### 조달청 규정 상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관련 내용

- 관련 규정: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 훈령),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표준 매뉴얼(2016. 3.)
- 내용
  - ① 계약 대상(「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6조 제1항)
    - 수입자재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물품
    - 세부규격이 불분명하여 원가변동 요인이 있는 물품
    - 가격자료 미비로 예정가격기초조사가 미흡한 물품
    - 기타 사후원가검토가 필요한 물품
  - ② 계약서상 분명히 할 사항(매뉴얼)
    - 사후원가검토 대상 비목 또는 품목의 범위
    - 사후원가검토 기준
    - 계약금액 중 사후원가검토 할 부분의 금액
    - 계약금액 지급유보 비율 및 유보한다는 내용
  - ③ 사후원가검토·조정(매뉴얼)
    -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예정가격 결정기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및 위 사후원가검토 기준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조정
    - 수입면장 가격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당초 계약 단가를 기준으로 수입면장에 의한 실수입가격과 비교 정산함 [회계 1210-452, '83. 2. 16.]
  - ④ 계약이행 후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을 서류(매뉴얼)
    - 사후원가계산서(투입 수량, 단가, 제비용 등)
    - 관계연도 결산서(제조원가보고서, 손익계산서 등)
    - 수입신고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 기타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자료
    - 노무공수(투입 수량) 산출근거서류

- ⑤ 계약금액지급 유보(「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6조 제3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3조 제4항)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한 비율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사후원가검토 완료시까지 동 비율에 해당되는 계약금액만큼은 납품대가에서 지급 유보
  - 유보금에 대한 이자는 미지급
  - 다만,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의한 보증서를 계약자가 제출한 때에는 해당 유보금을 지급
- ⑥ 사후원가검토 및 계약금액 감액(「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6조 제5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3조 제2항)
  - 납품이 완료된 때에는 계약자로부터 사후원가검토 관계증빙자료를 받아 계약조건에 따라 검토하여 사후원가검토금액 산출
  - 검토금액과 계약금액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대금을 확정
    -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한 금액
    - 검토금액이 계약금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
    - 검토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예산, 사후원가 인정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 전에 협의한 범위 내 금액
  - 계약금액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감액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청구하거나 증액한 금액을 지급

## 2.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계약금액의 결정방법에 따라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고, 단가계약에 있어서는 국가 및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가계약 외에 조달사업법에서 계약방법의 특례로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을 별도로 규정하여 조달청이 이를 운영하고 있다.

제3자 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모든 계약절차를 수행하고 수요기관은 필요 시 계약된 업체로부터 수요물자를 공급받게 되므로 본 가이드북을 주로 활용하게 될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조달청 내부의 자세한 계약절차를 이해할 필요는 없으나 조달청 규정상 수요기관이 납품요구를 할 때에 필요한 사항은 정확히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표 21] 총액계약, 단가계약, 제3자 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의 개념

구분	총액계약	단가계약	제3자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사업법에 따른 계약방법의 특례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하는 계약방법</li> <li>통상적인 계약 형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에 대하여 체결하는 계약방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달청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은 계약된 단가로 납품요구하여 조달받는 계약방법</li> <li>※ 지방계약의 경우 시도 지사가 제3자 단가계약 체결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달청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방법</li> </ul>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계약법 제22조</li> <li>지방계약법 제25조, 시행령 제79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li> <li>지방계약법 제26조, 시행령 제80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3조</li> <li>「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등</li> </ul>

(1) 총액계약

총액계약은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단가가 아닌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공공계약은 총액계약 형태로 이루어진다. 다만, ‘총액계약’이라는 용어는 국가·지방계약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단가계약’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2) 단가계약

단가계약은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체결하는 계약방법이다.

즉, 단가계약은 수요빈도가 많은 품목에 대하여 단가에 의하여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위한 가격 협상을 실시하고, 예정수량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단가계약은 정부의 각종 사무용품 등의 납품이나 도로 등의 유지·보수 계약에 많이 활용되고, 일정기간 동안 계약목적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의 차이점

단가계약은 해당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 예정수량을 곱한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산정하며, 계약보증금에 있어서도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는 등 총액계약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구분	총액계약	단가계약
추정가격	총 소요 금액	추정단가×조달 예정수량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코로나19 관련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동안 5) 이상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코로나19 관련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동안 5) 이상

(3)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란 조달청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에 대한 제조·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체결하고 각 수요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납품을 요구하여 구매하는 제도로서, 단가계약물품의 신속 공급이 가능하며, 수요기관이 수요물자를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가계약은 수요기관(조달청 포함)이 필요에 의해 직접 계약을 체결하나 제3자 단가계약은 조달청이 제3자인 수요기관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3자 단가계약은 [그림 3]과 같이 조달청에서 입찰을 통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 상품을 등록하면 수요기관이 필요한 제품을 요구하여 납품받는 절차로 운영된다.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국가계약법 제22조에 따라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이 단가계약(조달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포함)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물품정보를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

[그림 3]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처리 절차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체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상품 등록
수요기관	분할납품요구	나라장터를 통해 전산으로 요구
계약업체	계약 이행	계약업체는 수요기관에 해당 물품 납품 후 나라장터를 통해 검사·검수 요청
수요기관	물품인수 및 검사·검수	수요기관은 물품 인수, 검사·검수 후 나라장터를 통해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계약업체에 발급
조달청·수요기관	대금지급	계약업체가 나라장터를 통해 대금을 청구하면 조달청이 대지급 ※ 조달청은 대지급하였거나 대지급할 대금을 수요기관에 미리 납입고지

한편, 지방계약법령(법 제26조, 시행령 제80조)에서는 조달사업법상 조달청장이 이미 단가계약을 체결한 품목 외에 시·군·구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시·군·구의 요청에 따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도의 제3자 단가계약 절차

시·군·구 수요물품 파악(시·도) → 단가입찰 → 계약(시·도) → 물품납품 요구(시·군·구) → 계약이행(사업자) → 대금지급(시·군·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은 수의계약에 의한 우수조달물품(계약자 규격으로 제조·공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 개념 :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
- 법적근거 : 조달사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국가계약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 등
- 신청대상 :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
  -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따라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 구매 실증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혁신제품
- 지정효과 : 지정된 우수조달물품은 수의에 의한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함이 원칙

(4) 다수공급자계약

다수공급자 계약이란 조달청이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제3자 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의 차이점

기본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은 제3자 단가계약의 한 유형이나, 제3자 단가계약은 입찰을 통해 1개 품목에 1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하는 반면, 다수공급자계약은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모든 업체와 계약한다는 점이 다르다.

다수공급자계약은 [그림 4]와 같이 조달청에서 구매계획 수립(필요시 구매대상 선정을 위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모집공고 가능), 적격성 평가, 가격협상, 계약체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까지 모든 절차를 담당하고, 수요기관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조달청과 계약된 업체에 원하는 수요물자의 납품을 요구하여 납품받는 방식이다.

[그림 4] 다수공급자계약 처리 절차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구매계획 수립→입찰공고→적격성 평가(최소 결격사유만 확인)→가격협상→계약체결 ※ 다수공급자계약은 사전 경쟁이 아닌 사후 품질·가격경쟁의 일종이기 때문에 통상의 적격심사에 비해 적격성 평가가 간단
수요기관	납품요구	나라장터를 통해 전산으로 요구 1회 납품요구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2단계 경쟁 실시
계약업체	계약 이행	계약업체는 수요기관에 해당 물품 납품 후 나라장터를 통해 검사·검수 요청
수요기관	물품인수 및 검사·검수	수요기관은 물품 인수 및 검사·검수 후 나라장터를 통해 '물품 납품 및 영수증'을 계약업체에 발급
조달청·수요기관	대금지급	계약업체의 대금청구에 따라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이 대금 지급 ※ 조달청 대지급이 원칙, 수요기관 직접 지급도 가능하나 그 경우 조달청에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로부터 국·공채 매입필증을 제출받아야 함



Check!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다수공급자계약은 기존의 1품목 1계약자와 달리 1품목 다수 계약자를 공급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나 일부 수요 기관이 특정업체만 선정함으로써 수의계약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등의 문제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다.

그에 따라 조달청은 [표 22]과 같이 계약업체별 일정금액 이상인 납품요구 건에 대해서는 5개 업체 이상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경쟁을 하게 하는 2단계 경쟁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3조 /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장)

[표 2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대상

구분	2단계 경쟁 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납품요구 대상 금액 1억 원 이상 물품(의무), 용역(의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납품요구 대상 금액 5천만 원 이상 물품(의무), 용역(의무) ※ 단,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인 경우(물품은 제조에 한정) : - 물품 : 1억 원 이상(의무),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선택) - 용역 : 1억 원 이상(의무)

3. 단년도계약,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계약이행기간을 기준으로 회계연도(1. 1.~12. 31.)내에 계약체결 및 이행이 완료되는 단년도계약과 계약의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다년도계약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년도계약에는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이 있다.

(1) 단년도계약

단년도계약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계약하는 통상적인 계약방식으로, 당해 회계연도에 이행이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계약체결)에는 다음년도까지 이행 완료하게 할 수 있다.

유권해석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가능 여부

- Q. 예산 확정 전인 상태라 하여도 계약준비 단계인 입찰공고는 실질적인 계약 상대가 없는 행위이므로 업무 진행을 할 수 있는지?
- A. 지방계약법 제23조에 따라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운송·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에는 예산 확정 전이라도 입찰공고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입찰공고문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추후 예정가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입찰공고 후 확정된 예산으로 인해 예정가격이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공고하거나 변경공고를 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함
-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670, '14.2.24.】

(2) 장기계속계약

장기계속계약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을 말한다.

장기계속계약은 사업내용은 확정되었으나 장기간 계속될 사업으로, 업체가 바뀔 경우 하자 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확보가 불확실한 경우 또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해 국회·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계속비 또는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주로 활용된다.

장기계속계약은 사업내용이 확정되어야 하고, 입찰은 총 공사(제조, 용역)금액을 대상으로 하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2차년도 이후는 부기(덧붙여 적음)된 총 공사(제조, 용역)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지 않는 이상 계약시 부기된 총 공사(제조, 용역)금액의 범위 내에서 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한편,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나 장기계속계약의 낙찰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8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9항)

유권해석

□ 혼재된 사업의 장기계속계약 가능 여부

Q. 물품구매·용역·공사가 혼재된 사업을 협상절차를 거쳐 장기계속계약 체결할 수 있는지?

A. 지방계약법 제24조에서 장기계속계약은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에 대하여 총액으로 입찰해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에서 연차별로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서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로 적용범위가 규정  
- 따라서 단순 물품구매, 공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대상이 아니며, 완성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장기계속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202, '20.10.12.】

(3) 계속비계약

계속비계약은 국가재정법 제2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사업(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필요금액인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계속비계약은 총액으로 한번만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연부액을 부기하고 매년마다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다.

Check! 장기계속계약 vs. 계속비계약

□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은 모두 2년 이상의 이행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계약을 차수별로 나누어 체결(장기계속계약)하는지 아니면 한번만 체결(계속비계약)하는지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 즉 예를 들어 [표 23]과 같이 소요기간 3년에 총 제조금액 50억 원인 물품제조사업을 추진할 경우 장기계속계약은 2018년도에 편성된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1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편성예산으로 2차 계약을, 2020년 편성예산으로 3차 계약을 각각 체결하나, 계속비계약은 2018년에 이미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결로 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므로 계약금액 50억 원으로 한번만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표 23]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예시

사업내용	
■ 소요기간 : 3년(2018~2020년)      ■ 총 제조금액 : 50억 원 ■ 예산편성 : 총 50억 원(2018년 20억 원, 2019년 20억 원, 2020년 10억 원)	
↓	↓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 50억 원을 예정가격으로 입찰 및 낙찰자 선정 ■ 2018년 1차 계약(계약금액 20억 원) 체결 - 계약서에 총 제조금액(50억 원) 부기 - 2차 이후 계약은 부기된 총 제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 ■ 2019년 2차 계약(계약금액 20억 원) 체결 ■ 2020년 3차 계약(계약금액 10억 원) 체결	■ 2018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위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의결 ■ 50억 원을 예정가격으로 입찰 및 낙찰자 선정 ■ 2018년 계약(계약금액 50억 원) 체결 - 계약서에 연부액(2019년 20억 원, 2020년 10억 원) 부기

□ 그리고 위와 같이 차수별로 각각 별개의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선금, 지체상금 등의 사항들은 해당 차수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처리하나 계약보증금 수납, 인지세 납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적용대가는 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 제조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계약절차별 적용 기준과 두 계약방식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표 24]와 같다.

[표 24]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의 차이점

구분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제21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지방계약법 제24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	좌동
사업내용 확정여부	• 확정	• 확정
총예산 확보 여부	• 미확보(해당 연도분만 확보)	• 확보(총액과 연부액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결로 미리 편성)
입찰 및 입찰보증금	• 총 공사(제조, 용역)을 기준으로 예정가격 작성 및 입찰 실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6조 제6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6조 제6항) • 입찰보증금도 총 공사(제조, 용역)금액 기준으로 납부	좌동
계약체결	• 각 회계연도에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차수별로 각각 계약 체결 -계약서에 총 공사(제조, 용역)금액 부기 -2차 이후 계약은 부기된 총 제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	• 총 공사(제조, 용역)금액으로 계약 체결 -차수계약이 없고, 계약서에 매 회계연도 연부액 부기
계약보증금	• 부기한 총 공사(제조, 용역)금액을 기준으로 납부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 반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 총 공사(제조, 용역)금액 기준으로 납부
인지세	• 부기한 총 공사(제조, 용역)금액 기준으로 납부	• 총 공사(제조, 용역)금액 기준으로 납부
국공채 매입	• 해당 계약금액 기준으로 납부	• 총 공사(제조, 용역)금액 기준으로 납부

구분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선금	• 각 연차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 제6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제2절)	• 계약금액 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 제6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제2절)
지체상금	• 연차별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부과	• 준공기한 경과 후 총 제조금액을 기준으로 부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적용대가	• 부기한 총 공사(제조, 용역)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 총 공사(제조, 용역)금액 기준으로 산정
준공(납품)완료처리	• 연차계약별로 처리	• 총 공사(제조, 용역)계약 이행 완료 후 처리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 연차계약별로 해당 차수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제조의 준공검사 후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	• 총 공사의 준공검사 후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다만,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 부분에 한함)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인수하여 사용관리 중인 경우에는 그 기성부분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의2에서는 국가계약법과 다르게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인한 발주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내에서도 장기계속계약 방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단년도 차수계약”이라고 함

유권해석

□ 장기계속계약 관련 질의

- Q1.** 민수차량 획득 시 장기계속계약이 가능한지?  
**A1.** 민수용 차량구매계약의 경우 계약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 및 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 등과 달리 차량 구매는 그 성질상 중단없이 상시적으로 공급이 필요하여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470, '11.5.4.】
- Q2.** 장기계속계약에서 각 차수계약의 완성의 의미는?  
**A2.** 장기계속계약은 총 공사 등에 대하여 입찰하나 실제 계약은 각 차수별로 체결하는 것이고 계약상대자는 각 차수계약을 완성한 경우 준공(완료)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각 차수계약의 완성은 차수별 준공에 해당함【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106, '09.7.3.】
- Q3.** 장기계속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권리범위는?  
**A3.** 장기계속용역계약은 1차 계약체결 시 총 용역금액을 부기하고, 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용역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부관으로 약정하므로, 총 용역에 대하여도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지 않는 이상 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할 권리·의무가 있는 것임【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557, '07.8.23.】
- Q4.** 장기계속계약 1차 계약의 이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여도 2차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A4.** 장기계속계약에 의하는 경우 각 연차별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당해 연도의 예산범위에서 체결, 이행되어야 하는 바, 1차 공사계약금액 중 일부금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경우로서 공사의 특성상 1차 계약의 이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여도 2차 계약 분을 이행할 수 있다면 1차 계약 이행 중이라도 2차 계약체결이 가능한 것임【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계 41301-723, '99.3.16.】
- Q5.** 장기계속계약 공사에서 1차 계약 이행완료 후 예산부족으로 2차 계약 체결이 지연 되고 있으며, 발주처의 공사중단 지시가 없는 경우, 업체는 2차 계약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는지 2차 계약 체결 후 진행하여야 하는지?  
**A5.**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각 연차별 계약은 당해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체결·이행되어야 하는 것인 바,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 없이 해당년도 계약을 이행할 수는 없는 것임【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계 45107-2477, '95.12.12.】
- Q6.** 장기계속용역계약에서 총 용역대금 대상 지체상금 부과 특약의 효력은?  
**A6.**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에 해당【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044, '04.11.9.】

□ 계속비계약 관련 질의

- Q1.** 관련 법령에서 계속비 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와 연차별 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 중 어느 것이 합당한지?  
 - 갑설 : 공사계약은 총액금액으로 1회만 하고 연차별 공사비는 총액계약서상 연부액 부기만을 명기  
 - 을설 : 당초 공사계약 시 총액계약으로 하고 추가로 매년마다 연차별 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  
**A1.** 계속비 공사계약은 총액(연부액 부기)으로 체결하는 것인 바, 매년마다 연차별 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계 45107-429, '95.3.30.】
- Q2.** 5년 계속비 사업의 경우, 사업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의회 승인을 받은대로 총액계약 체결하였다면, 5년간 연도별 예산확보와 관계없이 사업완성까지 별도 매 연도별 계약체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 진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1차년도 총액계약을 체결하였어도 매년 당해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A2.** 계속비 계약은 총액(연부액 부기)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총액에 대한 계약이 이행된 후에 준공(납품완료) 처리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계 45107-707, '95.5.17.】

4. 단독계약과 공동계약

계약상대자의 구성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독계약과 공동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5] 단독계약 및 공동계약의 개념

구분	단독계약	공동계약
개념	· 계약상대자가 1인인 통상적인 계약방법	·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제11조 · 지방계약법 제14조	· 국가계약법 제25조, 영 제72조, 「공동계약 운용요령」 · 지방계약법 제29조, 영 제8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7장

(1) 단독계약

단독계약은 계약상대자를 1인으로 하는 계약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5조 및 지방계약법 제2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공공계약은 단독계약이 원칙임을 알 수 있다.

(2) 공동계약

공동계약은 공사·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방법으로,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 면허 등에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 및 기술지원을 위해 1983년 3월 구 예산회계법 시행령(2007. 1. 1. 폐지)에 공동도급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처음 도입되었다.

위와 같은 도입 취지를 반영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공동계약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계약은 2인 이상의 업체가 결합함으로써 제조기술 및 자본의 보완 또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험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계약상대자가 다수이다 보니 계약이행 및 납품과정에 하자책임 등을 가리기 어려워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계약법규에서는 공동계약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국가계약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지방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에서 공동계약의 유형, 구성원의 책임관계, 공동수급체 구성방법 등을 별도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공동계약의 개략적인 개념과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위주로 작성하였으므로 공동계약을 추진할 경우에는 꼭 위 예규를 잘 살펴 처리해야 한다.

가. 공동계약의 유형

공동계약의 유형을 살펴보면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

방식, 혼합방식의 4가지 방식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상 공동계약의 유형

구분	내용
공동이행방식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
분담이행방식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
주계약자 관리방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
혼합방식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지 아니하면 입찰진행이 곤란하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음

먼저,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에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이익배분 및 손실부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분담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계약의 목적물을 분할하여 각자 그 분담부분에 대해서만 자기의 책임으로 이행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공동수급협정서에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과 공동경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될 뿐이고, 공동이행방식과 같이 출자비율과 손익배분에 관한 사항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두 방식의 차이점을 쉽게 설명하면 공동이행방식은 2인 이상의 업체가 같은 일을 나누어서 수행하는 것이고 분담이행방식은 2인 이상의 업체가 다른 일을 각각 수행하는 것이며, 보다 구체적인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차이는 [표 27]과 같다.

[표 27]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차이점

구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방식	• 출자비율에 따라 구성	•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 (면허분담 가능)
하자책임	• 구성원 연대책임	•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 각자 책임 (하자 구분이 곤란한 경우 구성원 연대책임)
하도급	• 다른 구성원의 동의 없이 하도급 불가	• 각 구성원은 자기책임 하에 분담부분 일부 하도급 가능
손익 배분	• 출자비율에 의한 배분	• 분담내용에 의한 배분, 다만, 공동비용은 분담금액의 비율로 배분
실적인정	• (금액) 구성원별 출자비율 상당금액을 실적으로 인정 • (규모·양) 공사의 성질상 구성원별 실제 시공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는 실제 시공부분, 분리할 수 없는 경우는 출자비율에 따라 실적 배분	• 구성원별 분담부분을 실적으로 인정
지연배상금	•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납부	•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이 납부 (야기한 구성원의 계약금액 기준)

“주계약자관리방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되어 공사를 종합 계획·관리·조정하고, 전문건설업자 또는 주계약자가 아닌 종합건설업자는 부계약자로서 시공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표 28] 주계약자 관리방식 주요 내용

구분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상공사	• 제한없음	•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종합공사로서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발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는 제외
공동수급체 구성방식	• 주계약자와 부계약자로 구성 (주계약자: 전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요건 부계약자: 분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요건)	• 주계약자와 부계약자로 구성 • 주계약자: 종합 조정·관리 및 분담시공(공사의 특성상 시공비율이 낮더라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주계약자가 될 수 있음)
구성원 수, 최소지분율	• 10인 이하, 5% 이상	• 5인 이하, 5% 이상
계약이행책임 (하자책임)	•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 각자 책임 (주계약자는 최종적으로 전체계약 책임) - (1차) 해당 구성원의 보증기관이 책임 - (2차) 주계약자가 책임 - (3차) 주계약자의 보증기관이 책임	•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 각자 책임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구성원 연대책임)
하도급	•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 원칙적 하도급 금지 • 다만, 종합건설업자인 구성원: 시공품질 향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계약자와 협의 하여 하도급 가능	• 부계약자 중 전문건설업자 또는 전문공종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직접 시공 의무
일부 구성원의 중도 탈퇴에 대한 조치	•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있으며, 불가한 경우 다른 구성원에게 재배분 하거나 보증기관 이행 • 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 : 보증기관이 이행	• (1차) 주계약자에게 재배분 • (2차) 주계약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잔여시공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새로운 구성원 추가
실적인정	• 구성원 : 분담부분 • 주계약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관리·조정한 경우 : 당해 부분의 건설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합산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를 계획·관리·조정한 경우 :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합산	• 주계약자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에 따라 인정 • 부계약자 : 분담시공부분
대가지급	•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 • 대가는 각 구성원에게 지급 •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	• 선금·기성금·준공금은 구성원 각각 청구를 받아 구성원별로 지급 • 선금은 각 구성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 가능
지연배상	•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이 납부	좌동

유권해석

□ 공사계약에서 주계약자 관리방식 관련 질의

**Q1.**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에서 주계약자는 종합건설업자 전체인지 종합건설업자 중 대표사 1인을 의미하는지 및 구성원에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모두 포함될 경우 구성원 전체가 부계약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전문건설업자만 부계약자에 해당인지?

**A1.** 주계약자는 종합건설업자 중 대표사 1인을 의미하며, 종합건설업자 중 주계약자를 제외한 나머지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는 모두 부계약자에 해당함【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806, '13.7.2.】

**Q2.**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에서 일반건설(토목) 부분에 대하여 공동이행형태의 공동수급체 구성이 허용된 경우 당해 일반건설(토목) 부분을 공동으로 이행하는 구성원은 연대책임을 지는지?

**A2.**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되, 주계약자는 최종적으로 전체계약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특정부분에 대하여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지는 형태는 원칙적으로 제도의 취지가 아닐 것임. 다만, 발주기관이 특정부분에 대해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고 계약상대자도 해당 부분을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해 부분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500, '12.11.20.】

나. 공동수급체 구성방법

① 자격요건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나 분담이행방식은 각 구성원이 해당 분담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 표와 같이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A사와 B사 모두 계약이행에 필요한 c면허와 d허가를 각각 보유하여야 하나 분담이행방식은 A사는 분담받은 甲파트 이행에 필요한 c면허를, B사는 乙파트 이행에 필요한 d허가를 보유함으로써 족하다.

【표 29】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자격요건 예시

구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	A사, B사	A사(甲파트 분담), B사(乙파트 분담)
필요 자격요건	c 면허, d 허가	
구성원별 자격요건 구비사항	A사 : c면허, d허가 B사 : c면허, d허가	A사 : 甲파트 이행에 필요한 c면허 B사 : 乙파트 이행에 필요한 d허가

유권해석

□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보유

**Q.**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일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개별적으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면허 등의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A.**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므로 구성원 각각이 당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반면에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 간에 각자 책임을 지며 면허보완이 필요한 경우 허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구성원 공동으로 면허보완을 통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됨【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729, '04.5.15.】

② 제한경쟁입찰 시 실적 등 평가기준

공동계약은 계약상대자인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여럿이다 보니 실적 및 시공능력 등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할 때에 각 구성원의 실적, 시공능력 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계약법령에서는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제한경쟁입찰에 있어서 시공능력, 공사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계약법령에서는 [표 30]과 같은 기준으로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보다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표 30] 지방계약의 공동계약 시 시공실적 등 평가 기준

구분	입찰참가 여부 결정(통과기준)	
시공능력평가액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함	
공동이행방식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발주기관이 제한한 실적 이상을 보유한 경우	
시공 실적	분담이행방식	발주기관이 제시한 실적기준을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려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실적을 보유한 경우(각각 보유한 경우 포함)
	혼합방식 (공동+분담이행방식)	발주기관이 제시한 실적기준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보유한 경우
기술보유상황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시공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기술을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유권해석

□ 설계 공모시 당선자의 입찰자격 보유 관련

- Q. 설계공모 당선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계약 체결 전까지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 체결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 A.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제2절 12-다-11)나)의 규정에 따라 공동계약에 있어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선자 결정 후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일 것으로 판단됨【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2358, '14.7.1.】

③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하게 해야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국가계약은 10% 이상, 지방계약은 5% 이상으로 해야 하며,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시 구성원 수와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표 31] 공동계약 유형별 공동수급체 구성 기준

구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국가계약	지방계약	
구성원 수/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인 이하 / 10% 이상	5인 이하 / 5% 이상	5인 이하

유권해석

□ 국가계약에서 공동계약 관련 질의

- Q1. 경쟁계약에서만 공동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수의계약시에도 가능한지?
  - A1.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의 목적,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봄
- Q2. 토목, 건축면허 업체가 도로 확장공사를 실시한 장소에 하자보수책임기간 이내에 포장공사를 할 경우, 전차시공자가 포장면허가 없어도 포장면허를 가진 자와 공동계약으로 수의계약 체결하여 공사 시공이 가능한지?
  - A2. 포장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포장면허 보유업체와 포장면허 미보유업체 간의 공동계약은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됨【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제 2210-1368, '87.6.17.】
- Q3. 공동계약이 국가계약법령상 의무사항인지?
  - A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도록 한 것은 공동계약이 비록 의무사항은 아니나 동 계약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956, '12.7.25.】
- Q4. 용역, 물품계약의 경우에도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적용 가능한지?
  - A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정한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제도는 공사입찰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용역 및 물품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음【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제 41301-472, '98.2.27】
- Q5. 공동계약에서 공동이행과 분담이행방식의 혼용이 가능한지?
  - A5.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혼용가능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입찰방식이나 종류에 따라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므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701, '11.6.21.】



**Q6.** 업종이 복합된 공사로서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한 공사입찰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 중 구성원별 지분율이 전체 금액의 5% 미만인 경우 최소지분을 위반으로 입찰무효에 해당하는지?

업체명	협정종류	출자비율(분담비율)	전체지분율	업종
A	분담	100%	19.73%	건축공사업
B	분담	100%	0.53%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분담	100%	47.16%	조경공사업
C	공동	90%	29.32%	토목공사업
D	공동	10%	3.26%	토목공사업

**A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제2절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을 5%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은 무효로 함.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최소지분율 조건의 예외로 하고 있음. 따라서, 혼합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의 계약참여 지분율이 업종 출자비율(전체지분율이 아닌)의 5% 이상이라면 입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1249, '16. 3.21.】

**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공동계약과 관련한 지역업체 지원제도로써 공사금액의 최소 20~40% 이상을 공사현장에 소재한 지역업체(특별시·광역시·도 기준)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물품·용역계약은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이 되지 않으며, 위 제도에 해당하는 공사계약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표 32]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대상**

구분	대상공사	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비율
국가기관	①고시금액(81억) 미만, 균형발전이 필요한 사업	30%
	② 저탄소 추진, 국토 지속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재부장관 고시 사업	20 or 40%
공기업·준정부기관	①고시금액(244억) 미만, 균형발전이 필요한 사업	30%
	② 저탄소 추진, 국토 지속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재부장관 고시 사업	20 or 40%
지방자치단체	지역제한경쟁이 아닌 계약으로서 균형발전이 필요한 사업	40%~49%

한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하고,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자격을 갖춘 업체가 10인 미만이면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없다.

**계열회사 여부 확인 방법**

□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계열회사는 기업집단정보포털(<http://groupopni.ftc.go.kr>) 공시현황을 통해 확인 가능  
 ※ 감사원에서 2012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각 발주기관에서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의 계약 체결 시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지역의무공동도급 발주 시 계열회사 여부 확인 부적정(2012. 12. 6. 통보)]

**유권해석**

- 공동계약에서 지역의무공동도급 가능 여부
  - Q.** 지방계약법을 따르는 공동계약에서 최소 시공참여비율 이상에 해당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갖춘 업체수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도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는지?
  - A.** 계약담당자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 이하로 조정할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을 갖춘 지역업체가 10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으나, 이 경우와 같이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 이하로 조정하더라도 시공능력평가액을 갖춘 지역업체가 10인 미만일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없음【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1901, '15.5.13.】

## 제3절 계약의 방법

국가계약법 제7조 및 지방계약법 제9조에서는 경쟁 형태 및 경쟁의 유무에 따라 ① 일반경쟁 입찰 계약(이하 일반경쟁계약), ②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이하 제한경쟁계약), ③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이하 지명경쟁계약), ④ 수의계약의 4가지 계약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①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② **제한경쟁**)하거나 참가자를 지명(➡③ **지명경쟁**)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④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0조(계약의 방법)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은 입찰방법이나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지방계약법령에서는 '경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국가계약법령상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표 33] 계약의 방법

구분	일반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개념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가 계약하는 방법 · 입찰방식의 기본원칙	·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경쟁 참가자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제한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신용과 실적 등에 있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다수인을 지명하여 입찰에 참가시키고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하는 방법

구분	일반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	· 국가계약법 제7조, 시행령 제12조~제13조 · 지방계약법 제9조, 시행령 제13조~제14조	· 국가계약법 제7조, 시행령 제21조~제22조 · 지방계약법 제9조, 시행령 제20조~제21조	· 국가계약법 제7조, 시행령 제23조~제24조 · 지방계약법 제9조, 시행령 제22조~제23조	· 국가계약법 제7조, 시행령 제26조~제32조 · 지방계약법 제9조, 제33조, 시행령 제25조~제32조

각 계약방법 중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제한경쟁계약이고 다음으로 일반경쟁계약, 수의 계약, 지명경쟁계약 순이다.

### 조달청 발주 계약의 계약방법 비중('21년 말 기준)

(제한) 221,557억 원(42.3%) → (일반) 183,508억 원(35.0%) → (수의) 118,141억 원(22.5%) → (지명) 1,905억 원(0.2%)

[출처 : 조달사업통계, 2021. 12.]

### 유권해석

□ 중개인을 통한 계약 가능성 여부

Q. 국가기관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보험중개사에게 의뢰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토록 하는 것이 국가계약법 상 허용되는지?

A.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계약의 방법과 관련하여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제한 또는 지명경쟁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은 계약을 이행할 당사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말하며,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당사자와 직접 수의시담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함.

- 따라서 국가계약법에서는 계약이행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중개인을 통한 계약의 방법은 인정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572, '12.12.7.】

## 1. 일반경쟁계약

일반경쟁계약은 입찰공고를 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입찰희망자를 경쟁입찰에 참가토록 한 후 미리 제시한 낙찰자 결정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고 그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 (1)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경쟁입찰이라고 하여 모든 희망자에게 입찰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표 34]와 같이 일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자 등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필요 최소한으로 정해 놓은 것이다.

[표 34] 입찰참가자격 요건

입찰참가자격 요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4조)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 6] "공사계약에 필요한 자격요건"</li> <li>[표 7] "물품계약에 필요한 자격요건"</li> <li>[표 9] "용역계약에 필요한 자격요건" 참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을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산업체, 방위사업청 위촉 전문연구기관, 방위사업 계약업체 또는 협력업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li> </ul>

이와 같은 자격은 일반경쟁계약 뿐만 아니라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및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제한경쟁계약을 추진할 경우 위 기본자격과 제한경쟁계약의 제한요건을 같이 제한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

그리고 일반경쟁계약에서는 국가계약법령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위 기본 자격요건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되고(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7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7조), 위 기본 자격요건 외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계약의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

### 유권해석

□ 국가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여부

**Q1.** 건설업체의 단순 부도 발생이 국가 및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한 입찰참가격사유가 되는지?

**A1.** 정부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서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 업자로 제재받은 경우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이외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음【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제 125-924, '89.1.17.】

**Q2.** 일반경쟁입찰의 입찰공고문에 특정자격요건 명시 가능한지?

**A2.** 일반경쟁입찰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만약 특정 자격요건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이를 입찰참가자격요건으로 본다면 시행규칙 제17조에 위반하여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569, '10.4.7.】

□ 중복제한 해당 여부

**Q.** 시공면허와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중복제한 해당하는지?

**A.** □□신호설비공사를 제한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발주하면서 당해 사업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규정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구하고 동시에 실적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중복 또는 과다 제한에 해당하지 않음【조달청 질의회신, 2006】

### (2)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경우가 있다.

#### ①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

국가계약에 있어 아래와 같이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며, 이는 조세포탈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2013. 8. 1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로 신설되었다.

-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②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국가계약법 제27조의4, 지방계약법 제31조의4)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규정(「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계약상대자가 통보일 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은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결국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는 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각각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유형별 별점(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별점과 다름)을 부과하여 과거 3년간 별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10점을 초과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 하도록 되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를 제외한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법제처13-0420, 2013.11.29.)

③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국가계약법 제27조, 지방계약법 제31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부정당업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제27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2년의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보다 상세한 제한사유는 제4장 제2절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경쟁입찰에 부칠 때에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설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절차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심사방법과 절차는 국가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요령」에서, 지방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에서는 입찰참가자들이 입찰때마다 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해소 하고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규정상 각 중앙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을 받아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교부하고, 등록 결과를 나라장터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업체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 있으며, 조달청 등록정보를 사용하는 자체입찰기관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 정보를 연계 받아 사용하고 있다.

※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서류의 적정성은 조달청이 확인하며, 자치단체 등 나라장터 이용기관은 별도로 등록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개별 계약건 발주시에 입찰업체가 해당 계약에 적합한 입찰참가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

### 등록서류 확인방법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주민등록표 등본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국가계약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지방계약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하고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함(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다만, 특정 기관(예: 학교)의 특정 물품(예: 특정금액 이하)의 구입을 위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분류된 ‘학교장터(S2B)와’, ‘공공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경우 별도로 입찰참가자격을 관리하며 조달청 등록정보를 사용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 (5) 입찰참가자격 확인방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입찰참가자격제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보완을 요구해야 하며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는 입찰참가 배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 Check! 유의사항

□ 입찰서류에 관한 사항의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서류가 입찰공고 등에서 명시한 서류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계약담당자가 제출된 서류의 형식 및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과정의 절차상 하자를 범한 것이므로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입찰과정이 취소될 수도 있을 것임

### ① 기본 입찰참가자격 유무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 자격요건과 보안측정 등의 적합판정은 관계기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를 포함)이 발행한 문서로, 「소득세법」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자격요건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는 교부받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의하여 상기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증명된다. 단,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으로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경우 등록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범위는 물품의 경우에는 등록증에 등재된 세부 품명 또는 품명, 품류의 입찰에 한하고, 공사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등재된 업종의 입찰에 한한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11조 제1항)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방법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은 업체가 나라장터에 로그인하여 발급받는 것이므로 등록증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 업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함. 다만, 계약담당자는 나라장터에서 등록증 형태로 출력하여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나 시스템에서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8조)

### Check! 유의사항

□ 각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면서 입찰참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스템에 변경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낙찰대상자의 입찰참가자격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함

### ② 부정당업자 여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인지 여부는 나라장터(홈페이지화면의 나라장터서비스-부정당제재정보공개\*)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낙찰선언을 하였을지라도 무효가 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 제재정보는 제재근거가 국가계약법인 경우만 공개되고, 지방계약은 공개근거가 없었으나 입찰참가자격 제한내용을 공개하도록 지방계약법 제31조 제7항을 신설(2019.6.25. 시행)하여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제재 정보도 함께 확인 가능하다.

### ③ 조세포탈 등 여부

국가계약에 있어 계약담당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상대방이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계약 체결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2013년 말에 도입

되었으나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반드시 대표이사가 경찰청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여 서약서로 대체하는 제도를 추후 도입하였다.

그에 따라 현재는 계약상대방이 위와 같은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조세포탈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약서에는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제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유권해석

□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

Q.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면허·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기준일?

- A. ① 물품제조·구매·용역 :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등록) 마감일  
 ② 공사 : 제조와 동일하나 현장설명 참가가 의무인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③ 부정당업자 제제 또는 영업정지 처분 : 위 서류접수 마감일 및 현장설명일 전일까지 제제·정지기간이 만료되면 입찰참가 가능  
 ④ 기타 : 현장설명일 또는 입찰참가등록일 이후 입찰일까지 계속 입찰참가자격 유지 필요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제 41301-793, '02.6.18.】

□ 신용평가 전송의무 위반 시 불이익 조치 관련

Q. 공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용등급을 평가한 뒤 3일 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할 의무가 있으나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불이익 조치를 받아야 하는지?

A.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의2에 따르면 신용등급 전송의무를 위반한 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6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로 처리하고 PQ심사에서 이를 감점처리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용정보업자의 고의·과실로 전송의무를 위반하게 된 경우에 감점처리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547, '12.11.30.】

2. 제한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은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계약이행의 완성도를 높이고 품질을 일정한 목표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모든 입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가·지방계약법령의 관련규정 등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2021년 조달청 발주 시설계약 중 69%를 차지하는 등 공공부문 공사계약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이다.

제한경쟁계약의 대상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은 [표 35]와 같이 지역제한의 대상금액 요건이 다르고, 특정지역 소재자 생산물품구매 요건을 두고 있는 국가계약과 달리 지방계약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요건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표 35] 제한경쟁계약의 대상 및 제한요건

구분	제한대상	분야	세부대상		제한요건
			국가계약	지방계약	
가. 실적·능력	①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계약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li> <li>추정가격 3억 원 이상 전문·그 밖의 공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종합공사</li> <li>추정가격 3억 원 이상 전문·그 밖의 공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공능력평가액</li> <li>공사실적</li> </ul>
	②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터널공사 등 30개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li> <li>스프링클러 등 3개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li> <li>※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 참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터널공사 등 30개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li> <li>스프링클러 등 2개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li> <li>※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별표1 참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 보유상황</li> <li>공사실적</li> </ul>

구분	제한대상	분야	세부대상		제한요건
			국가계약	지방계약	
가. 실적·능력	③ 특수한 설비가공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계약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한 품질 또는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li> <li>■ 한국산업표준(KS) 인증 물품을 제조 또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제조의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한 품질·성능보장을 위해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li> <li>■ 특수한 품질·성능보장을 위해 법령에 따른 특정인증 획득이 필요한 경우</li> <li>- 한국산업표준 인증 물품</li> <li>- 우수한 단체표준제품</li> <li>- 환경표지 인증 물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비가공 보유상황</li> <li>■ 물품제조실적(추정 가격 2.1억 원 이상 계약에 한정)</li> </ul>
	④ 특수한 성능·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 계약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산업표준 인증 물품</li> <li>■ 우수한 단체표준제품</li> <li>■ 환경표지 인증 물품</li> <li>■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li> <li>-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물품</li> <li>■ 특수설계·특수사양에 따른 선박의 제조(국가계약은 ②번사항의 특수공법 공사로 분류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인증 등 여부</li> </ul>
	⑤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용역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 보유상황</li> <li>■ 용역수행실적(추정 가격 2.1억 원 이상 계약에 한정)</li> </ul>
나. 지역	① 일정금액 미만의 계약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가격 81억 원 미만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li> <li>■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전문·그 밖의 공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li> <li>■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전문·그 밖의 공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li> </ul>
		물품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가격 2.1억 원 미만의 물품제조·구매, 용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가격 3.3억 원 미만 시·도(세종시 제외) 일반용역·물품</li> <li>■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세종시, 시·군·구 일반용역·물품</li> <li>■ 추정가격 2.1억 원 미만 건설·기술용역</li> <li>■ 추정가격 1.5억 원 미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li> </ul>	

구분	제한대상	분야	세부대상		제한요건
			국가계약	지방계약	
나. 지역	② 특정지역 소재자 생산물품구매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자</li> <li>■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 단지에 입주한 자</li> </ul>	관련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지역 소재자 해당 여부</li> </ul>
다. 중소기업	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li> </ul>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자</li> </ul>
	② 공동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물품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하여 제품화한 경쟁제품(물품·용역)</li> </ul>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li> </ul>
	③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시금액(2.1억 원) 미만의 물품 제조·구매 또는 용역</li> <li>※ 지방계약과 문구는 다르나 내용은 동일</li> </ul>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 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창업자</li> <li>-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 중소기업자</li> </ul>
라. 재무 상태 등	① 계약이행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 물품 용역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참가자의 재무 상태</li> </ul>
	② 미리 경쟁제한규정을 정해 경쟁참가 적격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 공사	공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된 경쟁참가 적격자</li> </ul>

한편, 위와 같은 제한경쟁계약 대상 이외의 사유로 입찰을 제한해서는 아니 되고, 중대한 하자로 법규를 위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입찰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권해석

□ 제한경쟁에서 제한 가능 사유

- Q. 국가기관에서 제한경쟁 입찰 진행시 제한할 수 있는 내용 및 범위는?
- A. 발주기관이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 이외의 사유로 입찰을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410, '15.4.9.】

### 감사원 지적사례

□ 경비용역 계약업무 부당처리

- 결정 요지**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하라고 지시하고, 업무상 이해관계자와 골프를 한 관련자에게 대해 문책 요구하는 한편, 앞으로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다르게 입찰참가 제한사항을 임의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업무 철저 및 관련자에 대해 주의요구
- 결정 의의** ○○○○○○은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가 당초 경비용역 입찰공고문(안)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해당 요건을 부당하게 완화하여 해당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약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요건을 추가하여 다른 업체의 참가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 관행적으로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에 특혜를 주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대해 관련자 징계요구로 경각심 고취
- 관련 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등
- 【○○○○○○ 기관운영감사, '20.7월 시행】

### (1) 제한경쟁계약 대상·요건

제한경쟁계약의 대상 및 요건이 복잡한 점을 고려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크게 분류해보면 실적·능력제한, 지역제한, 중소기업 제한, 재무상태 제한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실적 및 능력 제한

##### ①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계약 ➡ (제한요건) 시공능력 또는 공사실적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와 추정가격 3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②항에서 설명할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터널공사 등)는 위 금액 미만의 공사라도 기술의 보유 상황 또는 공사실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으로 함)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함

#### ①-가. 시공능력에 의한 제한

적용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 추정가격의 1배(국가계약) 또는 2배(지방계약) 이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

### 시공능력평가제도

- 제도개요 :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7. 31.까지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기초로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
- 제도운영 : 대한건설협회 등 업종별 건설협회에 위탁 운영(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종합(5종) : 대한건설협회, 전문(21종) : 대한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가스시설(2종)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시설물유지(1종)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 평가방법 : 평가액 = 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 활용현황 : 유자격자명부, 도급하한제, 입찰참가자 자격기준으로 활용

#### ①-나. 공사실적에 의한 제한

공사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실적의 '규모 또는 양'([예시]km, m<sup>2</sup>, m<sup>3</sup>, kg, 개, M, 개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실적의 '금액'으로 제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계약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모 또는 양'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실적의 '규모 또는 양'으로 제한하는 경우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국가계약) 또는 3분의1(지방계약) 이내로, 실적의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계약목적물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의 1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국가계약) 계약목적물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로 제한  
 (1순위) 실적의 '규모 또는 양'으로 제한 → (지방계약) 계약목적물 '규모 또는 양'의 3분의1 이내로 제한  
 ※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계약방법 등 고려, 1배까지 가능
- (2순위) 실적의 '금액'으로 제한 → 계약목적물 추정가격(관급자재비 포함 시 추정금액)의 1배 이내로 제한

유권해석

- 국가계약에서 실적인정 여부
- Q1.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을 하여 계약을 이행한 경우, 이들의 실적인정 범위는?  
 A1.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을 한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실적은 각각 실제 시공한 부분을 각자의 실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공사 관련 법령상 하도급의 범위 및 절차(하도급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 등에 위반한 불법 하도급계약의 실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2348, '06.10.19.】
- Q2. 해당 면허가 없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이행을 완료한 경우 이에 대한 실적 인정 여부  
 A2. 해당 공사 관련 면허·등록 등을 받지 아니한 자가 시공한 사항은 그 위법성으로 인하여 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임【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1480, '06.7.7.】
- Q3. 기술제휴한 자의 실적도 입찰자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A3.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부치는 경우로서 납품실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한 경우, 동일 국내면허를 가진 외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실적보완이 가능하나, 기술제휴를 통한 실적보완은 인정되지 않음【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2264, '05.10.25.】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실적 범위
- Q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르면, '실적의 규모, 양, 금액' 모두에서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하여 실적 제한을 걸도록 되어 있는데, 고시금액 미만인 계약에 대하여는 실적 제한이 불가한지?  
 A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제조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됨
- Q2. 고시금액 미만으로 실적 제한을 걸 수 없을 경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에서 입찰자격을 '제조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업체', '특정 전문가자격증이나 제조사의 공인 기술자 자격증을 갖춘 인력을 보유한 업체'로 한정하는 경우는 '실적의 규모, 양'에 해당되는지?  
 A2.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서 제조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업체, 전문가자격증이나 공인기술자자격증을 갖춘 인력 보유업체로 제한하는 경우 실적제한에서의 '실적의 규모, 양'과는 전혀 무관(실적제한이 아닌 다른 제한경쟁 사유이거나 근거 없는 경우)한 것으로 여겨짐
- Q3. 위 규정은 '공사, 제조 또는 용역'에 한정하고 있는데, '물품 구매'의 경우에는 위 규정과 상관없이 실적 제한을 걸어도 된다는 의미인지, 위 규정과 상관없이 실적 제한을 걸면 안된다는 의미인지?  
 A3. 물품제조계약이 아닌 단순 물품구매(공급)계약의 경우 실적 제한의 근거가 없어 실적 제한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도 제조납품실적이 아닌 구매납품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음【조달청 질의회신, 공개번호 1903060014, 2019】

공동계약의 시공실적 인정범위를 살펴보면, 분담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분담부분에 대해 실적을 인정하고, 공동이행방식은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모 또는 양'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공사의 성질상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제 시공부분을 구분할 수 있으면 실제 시공한 부분, 구분할 수 없으면 출자비율에 따라 실적을 배분해야 한다.

②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 → (제한요건) 기술 보유상황 또는 공사실적

특수한 기술·공법이 필요한 공사의 종류는 국가계약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에 서, 지방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데 '특수설계 또는 특수사양에 의한 선박 공사'를 국가계약은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로, 지방계약은 '특수설계·특수사양에 따른 선박의 제조'라는 명칭으로 특수한 설비 등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 나머지 내용은 같다.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	국가 계약	(1) 터널을 수반하는 공사, (2) 활주로 공사, (3) 지하철 공사, (4) 저수·유조하천공사 또는 수중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5) 댐 축조공사, (6) 취수장, 정수장, 유수지 또는 오수처리장 공사로서 수중 작업을 수반하는 공사, (7) 송·배수관공사, (8) 수중관·사이폰·저수지 또는 제방공사, (9) 매립지 등 연약지반에서 파일 또는 우물통공사를 수반하는 공사, (10) 독크 축조공사, (11) 간척(방조제포함) 또는 매립공사, (12)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항만시설공사 및 「어촌·어항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어항시설공사, (13) 장대교(길이 100m 이상인 교량) 제작 또는 가설공사, (14) 철도 및 철도 궤도공사, (15) 정밀한 시공을 요하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설치공사, (16) 발전·변전·송전 또는 배전설비공사, (17) 전기철도 또는 전차시설공사, (18) 정밀시공·고위험 전기기계 설치공사, (19) 신호집중제어 또는 특수제어장치설치공사, (20) 자동신호 또는 연동장치공사, (21) 원형차량 감지기 설치공사, (22) 문화재 보수공사, (23) 차선도색공사, (24) 도로봉합제를 사용한 신축이음 및 균열 보수공사, (25) 상수도관 세척갱생공사, (26) 하수도 흡입 준설공사, (27) 심정공사, (28) 산간벽지 등 특수지역에서 시공하여야 하는 군사시설공사, (29) 하천환경정비사업, (30) 기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공사
	지방 계약	(1) ~ (29) : 국가계약과 동일 (30) 그밖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입찰공고에 명시)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	국가 계약	(1) 스펀공법 또는 철골공법에 의한 공사, (2) 파·시공법 등 중앙관서장이 특수공법으로 지정·고시한 공법에 의한 공사, (3) 특수설계 또는 특수사양에 의한 선박 공사 <sup>2)</sup>
	지방 계약	(1) 스펀공법·철골공법에 따른 공사 (2) 파·시공법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수공법으로 지정·고시한 공법에 따른 공사

주: 국가계약은 '특수설계 또는 특수사양에 의한 선박 공사'를 특수공법을 요하는 공사로 정하고 있으나 지방계약은 이를 '특수설계·특수사양에 따른 선박의 제조'라는 명칭으로 특수한 설비 등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로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은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 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가. 기술 보유상황에 의한 제한

기술 보유상황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하는데 국가계약과 달리 지방계약에서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표 36]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기술보유상황에 의한 제한 기준 비교

국가계약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2항)	지방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3절2.다)
①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의 경우	① 기술 도입이나 외국업체 기술제휴방법으로 해당공사를 수행하거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기술도입 또는 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의 방법으로 해당 공사 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그 밖에 해당공사의 수행이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공법을 개발·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기타 해당 공사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공법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 기술 보유상황에 의한 제한과 관련하여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은 계약방식(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 결정이나 계약이행 과정에 특수한 사례가 많아 민원 또는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국가계약은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에서, 지방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 다.에서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물품제조·용역계약도 준용)에 대한 적용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계약의 경우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보유한 자와는 계약방식에서 지명경쟁계약을 삭제하고 수의계약만 체결하도록 2018년 1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하는 등으로 [표 37]과 같이 일부 내용에 차이가 있다.

[표 37]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등 제한 관련 국가·지방계약의 차이점

구분	국가계약(「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지방계약(「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보유한 자와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계약 단, 신기술 등 보유자가 다수*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 제한경쟁계약</li> <li>* 다수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2조의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지명경쟁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10인 초과인 경우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보유한 자와 수의계약* -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인 공사: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lt;별표2&gt;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가 90점 이상 (전체 공사 중 신기술 등의 적용부분이 85.72% 이상)인 경우</li> <li>-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인 공사: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lt;별표2&gt;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가 95점 이상 (전체 공사 중 신기술 등의 적용부분이 92.86% 이상)인 경우</li> </ul>
신기술 등 일부 포함시 입찰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사항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음</li> <li>- 설계반영단계에서 입찰공고 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 체결 필요</li> <li>- 협약 내용 입찰공고 명시 및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사본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함</li> <li>- 기본설계·실시설계 전에 기술보유자와(특허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제외) 사용협약 체결 필요</li> <li>- 협약 내용 입찰공고 명시 및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사본 제공</li> <li>-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낙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제외)에 한하여 기술보유자가 해당 공사에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 가능</li> </ul>
관련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공종 적용 가능 신기술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내지 경쟁입찰 실시 시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함(추정가격 2억 원 이하 건설공사 등 수의계약 대상은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부서는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사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신기술 등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 검토</li> </ul>

주: 지방계약에서는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는 '특정 공법을 선정한 후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을 체결하므로 지명경쟁입찰은 성질상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의계약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기준도 일정 요건 이상의 공사에 대해 적용하도록 '18. 1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개정

□ 한편, 특허공법을 이유로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때에 「특허법」상 특허권은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등 제3자에 대한 권리승계가 인정되어 '특허공법을 보유한 자'의 범위에는 당해 특허권자뿐만 아니라 전용 및 통상실시권자도 포함(계약제도와-704, '12. 6. 7.)되는데, 이 중 누구와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8] 특허공법 보유자의 범위 및 기술사용협약 체결 대상

구분	개념 (「특허법」 제94조, 제100조, 제102조)	실시권자	기술사용협약 체결 대상
특허권	특허권자는 특허공법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전용 실시권자가 그 특허공법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특허권자 (전용·통상실시권 ▶ 특허권자 미설정 시)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공법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	전용실시권자 (전용실시권 설정 시)	▶ 전용실시권자(특허권자 협약체결 불요)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통상실시권자는 통상실시권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공법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나, 이러한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하지 못함	특허권자, 통상실시권자 (통상실시권 설정 시)	▶ 특허권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통상실시권자와 별도 사용협약을 체결할 필요 없음 ▶ 다만, 통상실시권자와 협약 체결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협약 체결시 반드시 특허권자의 동의 필요 * 지방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으로 통상 실시권자는 협약체결대상에서 제외

유권해석

□ 신기술 공법이 포함되는 공사의 분리발주 가능 여부

Q. 신기술 공종이 일부 포함된 공사의 분리발주 타당성 관련 질의

A.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조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함이 없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는 신기술 등이 포함된 공종이 일부 포함된 경우에는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입찰공고 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의 체결이 곤란한 경우에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단일공사에서 일부 포함된 신기술 공종의 규모를 기준으로 분리발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것임. 반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 단서에 의하여 분리발주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신기술보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따른 수의계약은 가능하지 아니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1385, '10.8.26.】

□ 실용신안등록 물품의 경쟁입찰 가능 여부

Q. 유사한 규격의 실용신안등록 물품에 대한 경쟁입찰이 가능한지?

A. 「실용신안법」에서 실용신안권자(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포함)에게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하고 있는 실용신안등록 제품의 구매를 경쟁입찰에 의할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에 따라 실용신안권자와 물품공급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769, '10.5.18.】

□ 신기술 공법이 포함된 공사 계약방법

Q. 신기술 등이 포함된 공사의 계약방법은?

A.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1항에서 신기술보유자가 계약을 이행함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신기술개발자를 보호·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취지이며, 이는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동 조항에서 “객관적으로 타당” 및 “일부 포함”된 경우에 대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곤란하며, 구체적 사례에서 동 제도의 취지·공사의 특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252, '11.3.16.】

□ 특허공법이 포함되는 공사의 기술보유자 관련 질의

Q1.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서 기술보유자가 특허등록원부상의 특허권자 외 통상실시권자도 포함되는지?

A1.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서 해당 규정상의 ‘기술보유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특허공법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할 것임. 해당 특허공법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 상의 통상실시권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을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43, '15.2.9.】

Q2. 특허공법 기술사용협약 기술보유자의 범위는?

A2. 「특허법」 제102조 제5항 및 제6항에서는 통상실시권의 이전과 질권 설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공법의 기술사용협약을 할 수 있는 기술보유자에 통상실시권자도 포함된다 할 것임. 다만, 동법에서는 통상실시권의 이전과 질권 설정 시 특허권자(전용실시권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실시권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특허권자(또는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할 것임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709, '15.11.24.】

②-나. 공사실적에 의한 제한

공사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앞에서 설명한 내용(①-나. 공사실적에 의한 제한)과 같이 실적의 규모 또는 양으로 제한하거나 실적의 금액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 ➡ (제한요건) 설비·기술 보유상황 또는 물품제조실적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종류는 국가계약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 제2항에서, 지방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데, 지방계약이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과 ‘특수한 성능·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 대상을 합쳐 규정하고 있어 단순 직접비교는 어려우나 ‘특수설계·특수사양에 따른 선박’을 국가계약과 달리 물품제조계약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표 39]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

국가계약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 제2항)	지방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별표1)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 ① 특수한 품질 또는 성능의 보장을 위하여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호(「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 표준제품)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3. 특수한 설비 등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제10호관련) ① 특수한 품질·성능보장을 위해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 특수한 품질·성능보장을 위해 법령에 따른 특정인증 획득이 필요한 경우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 표준 제품 ㉡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 신기술을 활용한 물품 ③ 특수설계·특수사양에 따른 선박의 제조

그리고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은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가. 설비·기술 보유상황에 의한 제한

설비·기술 보유상황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②-가. 기술 보유상황에 의한 제한)과 같다.

③-나. 물품제조실적에 의한 제한

물품제조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2.1억 원) 이상인 물품제조에만 해당하고 제한방법도 아래와 같이 동일하다.

구체적인 제한방법은 실적의 ‘규모 또는 양’으로 제한하거나 실적의 ‘금액’으로 제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계약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모 또는 양’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실적의 ‘규모 또는 양’으로 제한하는 경우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3분의1 이내로 제한하되 계약목적물의 특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배까지 제한할 수 있으며, 실적의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계약목적물 추정가격의 1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순위) 실적의 ‘규모 또는 양’으로 제한	➡ 계약목적물 ‘규모 또는 양’의 3분의1 이내로 제한 ※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계약방법 등 고려, 1배까지 가능
(2순위) 실적의 ‘금액’으로 제한	➡ 계약목적물 추정가격의 1배 이내로 제한

한편, 물품제조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물품제조를 위해 소요되는 자재 중 일부를 불가피하게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을 스스로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인 제조업체가 당초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지 않은 여러 제조업체 각각의 생산물품을 조립 또는 혼합하여 납품하는 것은 국가계약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유권해석

□ 실적제한경쟁입찰에서 실적인정 범위

Q1. “가”라는 일반건설업체가 수주하여 발주처로부터 하도급 승인을 받아 “나”라는 일반건설업체(특수건설업 겸업)에게 특수건설업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 시공한 공사의 경우, 추후 상기내용 공사에 대한 실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시행할 경우 동 공사(하도급 공사)의 실적은 “가”와 “나” 업체 중 어느실적으로 인정되는지?

A1. 제한경쟁입찰에 있어서는 공사 또는 제조 등의 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실적은 국가기관에 대한 실적 뿐 아니라 민간에 대한 실적도 포함되며 하도급에 의한 실적도 포함됨【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제 125-1280, '87.6.8.】

Q2. 실적제한의 경우 실적은 준공 및 납품완료되어 계약이 종료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지, 시공 중이거나 제작 중인 것은 실적에 포함될 수 없는지?

A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의 “실적”은 준공실적 또는 납품실적을 의미하므로 현재 시공 중이거나 제작 중인 것은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제 125-2229, '91.9.9.】

Q3. 실적제한 입찰에서 실적 증명 방법은?

A3. 제조실적에 대한 증명은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에 의하되, 당해문서에 의한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등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음【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제 125-2276, '84.6.27.】

□ 특정물품이 일부 포함된 사업의 입찰방법

Q. 특수한 설비 등이 필요한 특정물품과 일반물품을 하나의 계약목적물로 하여 특정물품의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경쟁에 부칠 수 있는지?

A.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 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과 일반 설비 등으로 제조가 가능한 물품을 하나의 계약목적물로 하여 제한경쟁에 부치는 것은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계약법령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79, '12.2.20.】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 “물품제조실적” 의미

Q.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는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물품제조실적의 의미가 1. 물품을 제조한 실적인지 2.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한 실적인지 3. 물품을 제조하지는 않았지만 적절한 제조자로부터 구매하여 납품한 실적인지 위의 3가지 중에서 어떤 상황에 해당되는지?

A. “물품제조실적”은 발주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직접 제조하여 납품한(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실적을 의미【조달청 질의회신, 공개번호 1811280059, 2018】

④ 특수한 성능·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 → (제한요건) 품질인증 등 여부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한국산업표준(KS)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를 제한요건으로 하여 제한경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특수한 성능·품질을 만족하기 위한 품질인증의 종류는 국가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지방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데, 지방계약은 국가계약에는 없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물품'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표 40】 특수한 성능·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

국가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지방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별표1)
①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② 「산업표준화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③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④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3. 특수한 설비 등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제10호 관련) ① 특수한 품질·성능보장을 위해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 특수한 품질·성능보장을 위해 법령에 따른 특정인증 획득이 필요한 경우 ③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 표준제품 ④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⑥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 신기술을 활용한 물품 ⑦ 특수설계·특수사양에 따른 선박의 제조

※ KS인증은 한국표준협회 KS인증지원시스템(www.ksmark.or.kr-KS인증검색), 환경표지인증은 한국 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홈페이지(el.keiti.re.kr-서비스바로가기-월별 환경표지 인증현황 다운로드), 우수재활용(GR인증: Good Recycled Certification)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 GR정보시스템(www.buygr.or.kr-제품정보)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유권해석

□ 제한경쟁입찰에서 인증업체로 입찰참가자격제한 가능 여부

Q. 제한입찰에서 필요에 따라 ISO인증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A.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납품능력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특정상품 또는 특정제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계 41301-2280. '97.8.13.】

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

□ 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에 대한 계약방법 및 처리절차를 국가계약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에서, 지방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 라.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계약에서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하되, 그러한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계약은 수의계약과 지명경쟁만 언급하고 있을 뿐 제한경쟁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표 41] 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계약 관련 국가·지방계약의 차이점

구분	국가계약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지방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음.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음</li> <li>* 다수 : 10인 초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성능·품질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거나 물품계약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으로 할 수 있음</li> </ul>

□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서 '특수한 성능·품질 등이 요구되는 물품의 납품능력에 따른 제한'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점, 위 집행기준에서 별도로 제한경쟁을 언급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한경쟁), 제22조(지명경쟁), 제25조(수의계약)의 규정에 따라 요건에 맞는 계약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는 당연히 제한경쟁에 의해야 할 것이다.

□ 위와 같은 점을 제외하고는 국가·지방계약의 내용이 동일한데, 해당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

□ 또한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위 내용은 용역계약에도 준용된다.

유권해석

□ 국가계약에서 기술지원협약서 제출 관련 질의

Q1. 입찰공고에서 입찰 혹은 낙찰시 특정 물품의 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경우, 입찰자에게 협약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지?

A1.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의 체결 주체는 발주기관이 되는 것이므로 시공사는 발주기관의 동 협약서 제출요청을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음【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121, '11.9.23.】

Q2. 용역계약일반조건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지원협약서 제출요구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용역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이 해당 기술지원협약서를 체결 할 필요가 없는지?

A2.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0조 제2항은 일반경쟁의 경우에 발주기관은 당해 계약이행의 원활화 등을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지원 협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발주기관이 제조사 등과 입찰공고 전에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계약 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을 준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쟁원리에 비추어 타당함【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817, '09.5.4.】

□ 독점공급 물품에 대한 협약체결 필요 여부

Q. 특정업체가 물품공급을 독점하는 일반 품목에 대해 물품공급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A.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 제2항 및 제3항 규정은 물품 제조사(기술지원사)가 과도한 사용료 및 지원조건을 요구하는 등의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막아 낙찰자의 원활한 계약체결 및 이행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것으로서, 동 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특정업체가 물품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일반 물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568, '13.5.15.】

□ 기술지원협약서 미발급 상태로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Q.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 등과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입찰공고문에 계약 시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일부 제조사에서 낙찰자에게 협약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낙찰자와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A.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7-나21」에 따르면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기관과 당초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낙찰자와 물품공급·기술지원사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및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낙찰자가 협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 물품공급·기술지원사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기술 제공을 거부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협약변경 또는 분리발주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089, '19.3.13.】

⑤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 (제한요건) 기술 보유상황 또는 용역수행실적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은 용역의 다양성으로 인해 국가·지방계약법령이나 예규에서 그 대상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은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⑤-가. 기술 보유상황에 의한 제한

기술 보유상황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②-가. 기술 보유상황에 의한 제한)과 같다.

⑤-나. 용역수행실적에 의한 제한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앞에서 설명한 내용(③-나. 물품제조실적에 의한 제한)과 같이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1억 원) 이상의 용역에만 해당하고, 실적의 '규모 또는 양'으로 제한하는 경우 3분의1 이내, 실적의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1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유권해석

□ 제한경쟁에서 중복제한 가능 여부

Q. 제한경쟁입찰에서 실적제한을 할 경우, 다른 제한 사항과 중복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A. 계약담당공무원이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이라 판단하여 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다른 제한사유로 중복하여 제한할 수 없음. 또한 동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기술보유상황"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 당해용역 수행에 필요한 차량보유현황은 기술 보유상황에 포함되지 않음【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989, '09.6.7.】

나. 지역제한

① 일정금액 미만의 계약 ➡ (제한요건)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지역제한 대상 계약은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이 서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계약이 보다 넓고 상세하게 그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표 42] 지역제한 대상 계약

구분	국가계약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	지방계약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정가격 81억 원 미만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li> <li>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전문·그 밖의 공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li> <li>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전문·그 밖의 공사</li> </ul>
물품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정가격 2.1억 원 미만의 물품제조·구매, 용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정가격 3.3억 원 미만 시·도(세종시제외) 일반용역·물품</li> <li>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세종시, 시·군·구 일반용역·물품</li> <li>추정가격 2.1억 원 미만 건설기술용역</li> <li>추정가격 1.5억 원 미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li> </ul>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의 지역제한경쟁입찰 가능 금액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위 규칙 제2조에 따라 국가기관에 대한 고시금액(유권해석 당시 2억 1천만 원)임을 유권해석으로 확인함(계약제도과-487, '15. 4. 24.)

유권해석

□ 지역제한이 가능한 단가계약 기준금액

Q. 연간단가계약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지역제한 입찰한도액 1.5억 원(현행 2.1억 원)의 기준은?

- 갑설 : 연간 총예정물품에 단가를 곱한 금액
- 을설 : 일회 최대 납품지시 예정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

A. 단가계약에 있어서 지역제한경쟁입찰 가능여부는 총이행예정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갑설)을 기준으로 판단함【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제 2210-1043, '87.5.7.】

지역제한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이하 "본점")가 해당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하고, 제한기준을 공사, 물품, 용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3] 계약 종류별 지역제한 기준

구분	제한기준
공사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이 있는 자
물품제조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 입찰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봄
물품구매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본점이 있는 자
용역	용역 결과물의 납품지(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본점이 있는 자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다.

<b>(국가계약)</b>
· 공사 등의 현장·납품지 등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 공사 등의 현장·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b>(지방계약)</b>
· 공사 등의 현장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사업의 납품지가 있거나 인접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한 청사 등의 시설물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는 경우
· 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또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적이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Check! 유의사항

- 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도 인접 시·도까지 제한을 하여 민원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발주 전 나라장터, 관련 협회 통계자료 등을 통해 관내 입찰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지역제한을 해야 할 것임

유권해석

- 지역제한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 Q1.** 지역제한 경쟁입찰 진행시 일부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제한이 가능한지?
    - A1.** 원거리에 위치한 사업자가 선정되는 문제점이 있다 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일부 지역 사업자(당해 기초자치단체 소재 사업자와 인접 기초자치단체 소재 사업자)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는 없음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735, '04.5.15.】
  - Q2.**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법인이 동일한 시·도에 수개의 처리사업장을 허가받아 운영하는 경우에 광역자치단체 내에 본사 소재지로 제한하지 말고 개별허가사업장 단위로 제한할 수 없는지?
    - A2.**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사업장이 다를 경우 각각 시설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 특성상 다른 업종과 다르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폐기물처리업의 경우만 본점 및 지사여부에 관계없이 폐기물처리 허가를 취득한 동일법인명칭의 수개의 업체가 지역제한입찰에 참여케 하는 것은 대기업의 독점 현상을 가져오게 되어 지방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보하려는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 특히 동종업계 1개 사업체와의 형평성 또는 담합으로 인한 입찰의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어 국가계약법률에서 수용하기 어려움【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1061, '07.6.7.】
  - Q3.** 지역제한 경쟁입찰시 입찰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판단기준은?
    - A3.** 경쟁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종류가 상이한 복수의 사업을 각각 다른 지역에 두고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예: 서울소재 건설업, 부산소재 물품)에는 각각의 사업종류 및 사업장 소재지 별로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발급해주고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가능함【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1378, '05.7.7.】



② 특정지역 소재자 생산물품구매 → (제한요건) 특정지역 소재자 해당

다음과 같은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가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를 요건으로 제한경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아래의 사항은 국가계약에서는 제한경쟁계약의 요건으로 지방계약에서는 수의계약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지정기간만 해당)한 자 :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10개소 지정(20.2.27 지정(5년), 북평국가산업단지 외 9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2개소 지정(지정일로부터 2년, 목표대양일반산업단지 외 1개)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

다. 중소기업 제한

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 (제한요건) 중소기업자

중소기업 제품 관련 계약 시 유의사항

- 중소기업제품(용역 포함) 구매와 관련하여 판로지원법령에서 경쟁입찰대상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국가·지방계약법에서는 제한·지명경쟁 및 수의계약 조항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국가계약법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중소기업제품과 관련된 계약은 판로지원법이 우선 적용됨
- 따라서 계약담당자가 물품·제조·구매 및 용역계약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필히 판로지원법령을 우선 검토하여 계약대상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지,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해당하는 사항인지를 확인하여야 함
- 판로지원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대상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입찰방법 (원칙 <sup>주</sup> )	참가자격	직접생산확인 필요 여부
<b>&lt;품목기준&gt;</b>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공고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한경쟁	중소기업	■ 경쟁입찰 - 금액에 상관없이 필요
	지명경쟁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b>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b> : 판로지원법 제7조, 제7조의2	제한경쟁	소기업·소상공인	■ 수의계약 : -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 ⇨ 필요 - 추정가격 1천만 원 미만 ⇨ 불요
경쟁제품 중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물품·용역	제한경쟁	소기업·소상공인	
셋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하여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용역을 제품화한 경우	제한경쟁	공동사업 참여 소기업·소상공인	
	지명경쟁	조합 추천 소기업·소상공인	

구분	입찰방법 (원칙 <sup>주</sup> )	참가자격	직접생산확인 필요 여부
<b>&lt;금액기준&gt;</b>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제한경쟁	소기업·소상공인
<b>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b> (고시 금액 미만)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고시금액 고시금액(2.1억 원) 미만	제한경쟁	중소기업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물품·용역,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제외) : 판로지원법 제4조 2항, 시행령 제2조의2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용역	제한경쟁
		지명경쟁	조합 추천 3인 이상 제조 소기업·소상공인

주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대상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추천 소기업·소상공인과의 수의계약 대상은 수의계약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르면 중소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지방계약법령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2021년 12월 현재 613개가 지정되어 있고, 그 내용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홈페이지(www.smpp.go.kr-정보조회-제품정보-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확인 가능

Check!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예시 : 우수조달물품)
-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조합이 추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입찰 방법으로 새로 입찰을 진행하려는 경우
-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그리고 판로지원법 제7조의2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 2021년 12월 현재 석회석 등 29개(세부품명기준)가 지정되어 있고, 그 목록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 지정내역 공고” 제2019-415호)를 통해 확인 가능

여기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아래와 같이 모두 중소기업에 일정 요건에 따라 세분화한 것으로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개념		
구분	근거법령	개념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업종별 매출액·자산총액 및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맞는 기업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등의 요건을 갖춘 자

※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확인 가능

한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하거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야 한다.

Check! 지정정보처리장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을 위한 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전자조달입찰 중 단체급식 식재료 입찰 :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www.eat.co.kr)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기관의 경우로 추정가격 7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공사 및 용역의 입찰·계약,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금액 한도를 두지 아니함 :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www.s2b.kr)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입찰의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취득제외)을 위한 입찰 :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계약법 적용대상기관의 경우로 폐기물·순환자원·재활용가능자원·재활용제품의 처리용역 및 제조·구매·매각의 입찰·계약 :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www.re.or.kr)

유권해석

- 중소기업제품 제조 구매에 공사, 용역의 포함 여부
- Q.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 제2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 용역(전면책임관리용역)이 포함되는지?
- A.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고시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국제입찰에 부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적용제의 사유로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 하는 경우를 규정. 이 때 중소기업「제품」이라 함은 국가계약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중소기업 판로지원 및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용역·공사」를 모두 포함【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304, '13.9.24.】

② 공동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 (제한요건)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판로지원법 제7조의2 제2항에서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중 셋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아래의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을 하여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품화한 경우 해당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가·지방계약법령에서 이를 제한경쟁계약 사유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2021년 12월 현재 864개(세부품명기준 302개)가 지정되어 있고, 제도 활용가능 제품 및 조합·업체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홈페이지(www.smpp.go.kr-정보조회-제품정보-소기업 공동사업제품)에서 확인 가능

Check! 공동사업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사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상표를 활용하는 사업
- 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제공 사업

③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 (제한요건) 중소기업자

판로지원법 제4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제외)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세부적인 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표 44]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국가·지방계약 법령에서 이를 제한경쟁계약 사유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표 44] 판로지원법령상 우선조달계약 대상 및 입찰방법

우선조달계약 대상	입찰방법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물품·용역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의무) ※ 단, 입찰참가자격자가 3인 이하임이 명백한 경우 또는 입찰참가자가 2인 미만이거나 유찰된 경우 중소기업자 간 제한 경쟁입찰 가능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고시금액(2.1억 원) 미만 물품·용역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의무)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용역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Check!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으로 비영리법인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하였거나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 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
-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

1.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건설기술용역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의 계획, 조사, 설계, 설계감리, 안전점검, 안전성 검토, 건설사업관리 및 「시설물의 안 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엔지니어링활동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감리, 시험운전, 안전성검토, 유지 또는 보수를 포함한 사업의 경우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 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 또는 품질 확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발 주하는 경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전조사 및 기획, 국가연구개발 평가사 업의 추진 시 전담체계, 조사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보안체계를 요구하는 특허기술동향조사의 경우

그리고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 하거나 나라장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야 한다.

라. 재무상태 등 제한

① 재무상태 제한 ➡ (제한요건)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계약이행의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의 재무상태로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3항에서는 재무상태를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지방계약에서는 2018. 1. 1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하여 재무 상태 제한요건을 삭제하였고, 2018. 12. 24. 제한입찰 요건 중에서 재무상태를 삭제하는 것으로 지방계약법 제9조 제2항이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었다.

② 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 → (제한요건) 등록된 경쟁참가 적격자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 경쟁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신청을 하게 한 후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등급별로 경쟁참가적격자를 선정·등록하고, 공사 입찰시마다 당해 경쟁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주로 공사집행을 주업무로 하거나 다량으로 하는 경우 매 공사 입찰시마다 제한기준을 정하지 않고 미리 제한기준을 유형화하여 이에 맞는 공사를 집행하는 방법이다.

국가계약에 있어 경쟁제한규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아래와 같은 교량건설공사 등 11개 종류의 공사는 성질별·규모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조]

교량건설공사, 공항건설공사, 댐축조공사,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발전소 건설공사, 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폐수처리장 건설공사, 하수종말처리공사, 관람집회시설공사

한편, 조달청은 시공능력평가액을 7개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로 배정받을 수 있는 유자격자명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편성된다.[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공고)]

(2) 제한경쟁계약 시 유의사항

제한경쟁계약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이 다양하고 복잡해 법령을 잘못 이해하여 불필요하거나 부적정한 제한을 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 감사에서도 제한경쟁계약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는 편이다.

이에 국가계약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 지방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잘못된 자격제한 사례와 계약 시 유의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국가계약의 제한금지사항 및 계약 시 유의사항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6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구매)계약 등의 입찰·계약의 집행과 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특수조건에 특정업체에게 하도급하게 하거나 자재를 납품하게 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
2. 납품실적 등의 평가와 관련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 제한 금지사항을 평가기준으로 적용하는 사례
3.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발주 전에 기술사용(지원)협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체결한 사용협약서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로 인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는 사례
4.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발주기관이 사전에 체결한 기술사용(지원)협약 등과 다르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낙찰자와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게 하는 사례
5.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강요·유도하는 사례
6.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집행하는 사례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특정 항목에 대해 과다하게 배점을 부여하거나 기술과 가격의 평가비중을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사례
8.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등의 경우 평가기준 및 절차(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평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정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등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는 사례
9. 수의계약 시에도 규격서나 시방서 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를 명시하여 수의계약 대상제품을 효율성·안전성·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해야 함에도 부득이하게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사례
10. 법 제19조 등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의 조정 없이 추가 과업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과업을 변경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거부 또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11. 발주기관이 계약체결 이후 과업을 변경 시 계약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과업만을 변경하지 않고 빈번하게 과업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사례 또는 계약금액 감액 시 기준, 대상, 방식에 대한 협의 없이 자의적으로 업체의 적정대가를 보장하지 않는 사례
12.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연차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공사부분을 차년도 연차계약으로 이월하는 사례

13. 계약체결 부대비용 등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발주기관이 부담할 부분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거나 공사용지 확보, 사업관련 민원대응 등 발주기관의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14. 계약상대자에 대해 계약의 이행 및 관리과정의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를 서면으로 시행하지 않고 구두로 하는 행위
15. 발주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공사계약의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전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해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위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4항

-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음
  2.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유사한 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 가. 농공단지 조성공사에 있어 농공단지 조성실적이 있는 업체만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공사내용이 동일한 공업단지나 주택단지 등의 조성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를 배제
    - 나.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사에 있어 종합문화회관 건립 단일공사 관람석 000석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함으로써 시민회관, 강당 등 사실상 내용이 같은 공사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를 배제
  3.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만을 요구하고 다른 기관 및 민간의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예: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실적만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실적을 배제)
  4. 해당 공사이행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준공실적을 요구하는 경우(예:동일공사에서 교량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합산한 규모의 실적업체로 제한하여 1개 규모의 실적보유업체를 배제)
  5.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 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
  6.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 본점이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함에도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
  7. 일반경쟁입찰이 가능함에도 과도하게 실적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예:빛물 펌프장(유수지) 공사에서 펌프 용량으로 실적제한]
  8. 관련 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9. 교량이나 도로공사 발주시 공사의 실적을 평가하는데 주요한 기준의 규모(또는 양)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경우 및 폭, 연장, 경간장, 공법 등을 모두 제한하는 경우
  10.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 문화예술관련 용역에 대해서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11. 시행령 제73조의2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해당 용역의 주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만을 요구하는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지방계약의 제한금지사항 및 계약 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칙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 1)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례
  - 가) 입찰참가자격을 대표자의 본적·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자(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 나)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 (예: 3개사 이상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등)
  - 다) 입찰공고·특수조건 등에서 해당 지역업체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게 하거나 자재납품업체를 해당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 2) 특수한 기술·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
- 3) 해당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요건 등으로 제한하는 사례
- 4)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하수관거공사 입찰에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의 하수관거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농공단지조성공사 입찰에 공업단지·주택단지 조성공사의 실적을 제외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5)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특정기관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고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 민자·민간 실적 또는 해외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동일
- 6)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하여 실제 동일실적에 해당되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사례
- 7) 입찰공고나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특히,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특정 규격·사양 등을 명시하는 사례) 다만,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 8) 관련 법령 등에 따라 1개의 등록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사례
- 9) 교량·도로 등의 공사발주 시 실적평가의 주요 기준을 규모·양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사례, 또는 폭·연장·경간·공법 등을 모두 제한하는 사례
- 10)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의 특정 용역에 대해서 과도하게 용역 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 11)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감리용역이 주요 부분인데도 건설사업관리 실적만 요구하고 감리용역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12)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른 2단계 입찰 및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할 경우 평가 기준 및 절차(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평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정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 적용 등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는 사례

- 13) 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75조의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거부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14)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을 불필요하게 현장에 상주시키는 사례
- 15)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지 않음에도 실적을 지역제한이나 기술의 보유상황과 중복하여 제한하는 사례
  - \*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 1 특수한 기술·공법·설비 등이 필요한 공사와 물품의 제조·구매
  - ※ 예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가 아닌 일반 도로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과 기술보유상황 및 실적으로 중복 제한
- 16) 규모(양)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공사·용역·물품 규모의 1/3을 초과하거나,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추정가격의 1배를 초과하여 제한하는 사례
  - ※ 예시) 추정가격 4억 원의 물품 구매 시 납품실적 10억 원 이상 보유자로 입찰참가자격을 과다 제한
- 17) 규모(양)와 금액으로 또는 규모(양)와 다른 규모(양)로 이중 제한하는 사례
  - ※ 예시 1) 200병상 및 2억 원 이상
  - 2) 도로 5km 및 교량 2km
- 18) 과도한 시설요건으로 제한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특수한 설비요건을 요구하는 사례
  - ※ 예시) 기계설비공사 자격이 있는 업체를 참여토록 하면 자격이 충분하는데도 불필요한 특수 설비요건을 갖춘 업체로 과다하게 제한
- 19) 수의계약 시에도 규격서나 시방서 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를 명시하고 재무관(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 대상제품(규격)을 효율성·안전성·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해야 함에도 사업부서에서 특별한 경우(에너지 효율 등 특수한 기술 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 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등) 이외에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사례
- 20) 계약목적(물)과 관련이 없는 실적 제한이나 법령·예규에 근거가 없는 실적건수로 제한하는 사례
  - ※ 예시 1) 전기공사를 발주하면서 전기공사와 관련없는 생물안전실 100㎡ 이상 허가실적이 있는 □□도내 업체로 제한
  - 예시 2) “○○설치공사실적이 최근 5년간 5건 이상 있는 업체”로 제한
- 21)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기관과 당초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낙찰자와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발주자가 발주 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및 입찰보증금을 자치단체에 귀속하는 사례
- 22)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 전에 사용협약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체결한 사용협약서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사례
- 23) 발주기관이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협약을 체결 시 하도급대금 등에 대해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규정과 달리 협약을 체결하는 사례

- ※ 예시) 발주기관이 협약내용을 공고 시 하도급 계약금액으로 결정할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82%)보다 높게 책정(예 : 90%)
- 24)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이외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유도하는 사례
  - ※ 예시) 계약상대자가 신기술·특허 개발자로부터 기술지원만 받으면 직접 시공이 가능한데도 하도급 계약 체결
- 25) 현장설명 참가자에 한하여 투찰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사례
  - ※ 다만, 300억 원 이상 공사입찰 시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여해야 함
- 26)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사례
  - ※ 예시) 단순노무용역 등
- 27) 발주기관이 계약체결 이후 과업을 변경 시 계약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과업만을 변경하지 않고 빈번하게 과업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사례 또는 계약금액 감액 시 업체의 적정대가를 보장하지 않는 사례
- 28) 하도급자 승인조건으로 특정기관에 납품한 실적을 요구하거나 특정업체와의 하도급을 요구하는 사례
- 29) 계약체결 부대비용 등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발주기관이 부담할 부분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 30)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및 물품공급 기술지원 협약시 낙찰률을 고려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하는 사례
- 31)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입찰공고의 내용에 명시하지 않는 사례

(3) 중복제한 금지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의 제1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나, 지역제한과 중소기업자 제한은 중복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한의 기본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1. 제한의 기본원칙

나. 다음 각 호 중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 ① 동일실적 ② 기술의 보유상황 ③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④ 지역제한 ⑤ 설비제한
- ⑥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⑦ 물품의 납품능력 ⑧ 중소기업자 ⑨ 벤처기업 ⑩ 소상공인
- ⑪ 소기업 ⑫ 중소기업창업자

**예외** 우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별표 1에 해당하는 공사)의 ④와①, ④와② 또는 ⑧, ⑨, ⑩, ⑪, ⑫ 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는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예시] 중소기업자+동일실적, 중소기업자+기술의 보유상황, 중소기업자+지역제한, 중소기업자+설비제한 등]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각 호간 뿐만 아니라 각 호 내의 사항도 중복제한이 금지되므로 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상 공사계약'에서 시공능력과 공사실적으로 제한한다거나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에서 설비·기술 보유상황과 물품제조실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중복제한에 해당한다.

유권해석

□ 중복제한 가능 여부

- Q. 제한경쟁입찰에서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과 제조실적의 중복제한이 가능한지
- A.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과 물품제조실적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중복제한에 해당하여 국가계약법령상 불가【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579, '06.3.16.】

중복 제한이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❶ 지역제한은 국가 및 지방계약 모두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에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공사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와 중복 제한이 가능하다.

그리고 ❷ 중소기업자 제한에 있어서는 [표 45]와 같이 국가계약법령은 8호, 10호와 각 호, 지방계약법령은 8호와 각 호간 중복 제한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계약법령의 8호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와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포함하고 있어 차이가 없다. 그러나 같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제한인 국가계약의 8의2호(공동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와 지방계약의 11호(공동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는 법 조문상으로는 중복 제한 허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표 45] 중소기업자 관련 중복 제한 가능 대상

구분	국가계약		지방계약	
	제한조항	중복 제한 가능 대상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	제한조항	중복 제한 가능 대상 (시행규칙 제25조 제6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시행령 제21조 8호	8호와 각 호	시행령 제20조 8호	8호와 각 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시행령 제21조 10호	10호와 각 호	시행령 제20조 12호	12호와 각 호 or 12호 내 사항
공동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시행령 제21조 8의2호	미규정	시행령 제20조 11호	미규정

그러나 국가·지방계약법령의 중복 제한 관련 규정에서 모든 중소기업자 관련 제한사항의 중복 제한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위 중소기업자 관련 제한은 판로지원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국가계약법령상 제한사유와 판로지원법령상 제한사유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 국가계약법 제3조 및 지방계약법 제4조에 따라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유권해석

□ 제한경쟁입찰에서 중복제한 가능 여부 질의

- Q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사유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사유로 동시에 제한하는 것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에 의거 금지하는 중복제한에 해당하는지?
- A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동시에 제한하더라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에서 금지하는 중복제한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각기 다른 사항으로 중복하여 제한할지 여부는 입찰시의 제반 상황 및 재량권의 남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901, '13.7.12.】

- Q2.** 지역제한과 소상공인 제한을 동시에 했을 경우 중복제한 가능한지?
- A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과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을 동시에 적용한다 하더라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중복제한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871, '13.7.11.】
- Q3.** 제한경쟁 입찰에서 품질등급업체로 제한과 지역제한을 동시에 제한할 수 있는지?
- A3.** 품질등급업체에 의한 제한이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제한경쟁사유인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실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동 사유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한 제한과도 중복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임. 다만, 품질등급업체 등록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이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해당하게 되므로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에 따른 중복제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975, '11.8.12.】
- Q4.** “교통정보전광판” 물품제조 입찰공고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조설비 및 기술 보유상황으로 제한이 가능한지?
- A4.** 귀 기관에서 구매예정인 교통정보전광판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에 해당된다면 동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에 따라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중복 제한할 수 있을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278, '11.3.22.】
- Q5.** 공사계약에서 시공실적과 시공능력 공시액을 동시에 자격조건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 A5.**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입찰 건은 공사실적과 함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시공능력 공시액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하고 있어 중복 제한에 해당될 소지는 있으나, 시공능력공시액의 경우 입찰 난립을 방지하고 공공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의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서 도입된 제도로써 입찰참가 자체를 제한한다기보다는 적정한 공사 이행능력이 없는 업체를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이라기보다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517, '11.12.14.】

### 3. 지명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 등에 신용과 실적 등에 있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다수인을 지명하여 입찰에 참가시키고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이 제도는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가 우량한 업체를 지명하기 때문에 계약이행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함에 있어 특정인이

지명됨으로서 특혜 시비와 경쟁성 저해 우려가 있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명대상을 신중히 정하여야 한다.

지명경쟁계약의 대상은 국가계약(시행령 23조)은 10가지, 지방계약(시행령 22조)은 12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표 46]과 같이 일부 내용에 차이가 있다.

[표 46]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간 지명경쟁대상 비교

국가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	지방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2조)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좌동
· 추정가격 3억 원 이하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 ·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전문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물품 제조	· 추정가격 3억 원 이하 종합공사 ·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물품 제조·구매 계약 ·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용역계약
·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 예정임차료의 연액(年額)(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연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 포함)이 5천만 원 이하인 재산이나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
·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임차 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또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2호의 제품
· 법 제7조 단서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법 제9조 제1항 단서와 이 영 제25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좌동
-	·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좌동



국가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	지방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2조)
-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하여금 조합과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제조·용역수행하게 하는 경우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하여금 조합과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주: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나 일부 문안이 다른 경우는 같은 것으로 봄

### 유권해석

□ 지명경쟁 가능여부

Q. 고엽제전우회를 지명경쟁으로 입찰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A. 국가계약법 제7조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455, '15.10.13.】

### (1) 지명기준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한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표 47]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데, 지방계약에서는 시설물 보수·복구공사 단가계약, 유류 단가계약, 폐기물 운반·처리 등에 대한 지명기준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7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7조)

[표 47] 지명경쟁입찰 참가자 지명기준

구분	지명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을 보유한 자를 지명하되,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할 것</li> <li>▶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의 1배(국가) 2배(지방) 이내에서 지명</li> <li>▶ 시설물 보수·복구공사 단가계약은 해당 공사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자 또는 해당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임차 포함)한 자를 지명할 것(지방계약만 해당) ※ 지명업체 선정기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장 3절)</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지명대상</th> <th>선정기준</th> </tr> </thead> <tbody> <tr> <td>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지명하려는 경우</td> <td>→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td> </tr> <tr> <td>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td> <td>→ 기술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td> </tr> <tr> <td>특수한 공법을 요하는 공사로서 동종공사 실적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td> <td>→ 실적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td> </tr> <tr> <td>시설물의 보수·복구 단가계약의 경우 (지방계약만 해당)</td> <td>→ 해당 공사현장에 접근이 용이한 자나 필요 장비 보유자(임차 포함)를 지명</td> </tr> <tr> <td>3억 원 이하 건설공사, 종합공사, 1억 원 이하 전문·그 밖의 공사에서 지역 업체만을 지명하려는 경우</td> <td>→ 해당 지역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td> </tr> </tbody> </table>	지명대상	선정기준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지명하려는 경우	→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 기술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	특수한 공법을 요하는 공사로서 동종공사 실적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 실적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	시설물의 보수·복구 단가계약의 경우 (지방계약만 해당)	→ 해당 공사현장에 접근이 용이한 자나 필요 장비 보유자(임차 포함)를 지명	3억 원 이하 건설공사, 종합공사, 1억 원 이하 전문·그 밖의 공사에서 지역 업체만을 지명하려는 경우	→ 해당 지역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
지명대상	선정기준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지명하려는 경우	→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 기술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												
특수한 공법을 요하는 공사로서 동종공사 실적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 실적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												
시설물의 보수·복구 단가계약의 경우 (지방계약만 해당)	→ 해당 공사현장에 접근이 용이한 자나 필요 장비 보유자(임차 포함)를 지명												
3억 원 이하 건설공사, 종합공사, 1억 원 이하 전문·그 밖의 공사에서 지역 업체만을 지명하려는 경우	→ 해당 지역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수리·가공·용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 기구, 생산설비 및 판매망 등 납품능력을 가진 자를 지명할 것</li> <li>▶ 유류 단가계약, 폐기물의 운반·처리 등 특정한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정위치를 기준으로 지명할 것(지방계약만 해당)</li> </ul>												

### (2) 지명절차

지명경쟁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하고,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의 내용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입찰참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한편, 국가계약에서는 지방계약과 달리 지명경쟁계약을 체결한 때에 그 내용을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 4.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경쟁계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계약제도가므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자가 1인뿐이거나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 소액이어서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에 따라 국가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32조), 시행규칙(제32~37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장에서, 지방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32조), 시행규칙(제30~3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절차, 유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개별 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가 증가하는 등으로 그 요건이 복잡하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은 경쟁원리가 배제됨에 따라 계약담당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우려가 있어 감사를 많이 받는 분야이므로 업무처리 시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공공계약은 일반경쟁이 원칙이고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의계약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여 반드시 수의 계약에 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계약방법을 택할 것인지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유권해석

□ 수의계약의 일반경쟁 변경가능 여부

**Q1.** 지금까지 수의로 계약 체결해 왔으나, 향후 일반경쟁입찰로 집행 할 수 있는지?

**A1.**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방법(경쟁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바, 기존에 수의계약에 의하던 것을 경쟁입찰로 변경 하더라도 법령의 위반이나 기존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591, '11.12.29.】

**Q2.** 수의계약으로 물량 배정 후 잔여물량에 대하여 경쟁입찰이 가능한지?

**A2.**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모두 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계약체결방법 및 물량배정 등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판단·결정할 사항으로, 수의계약으로 먼저 물량 배정 후 잔여 물량을 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488, '12.2.22.】

□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

**Q1.** 수의계약시 공동계약 가능한지?

**A1.** 국가계약법 제25조에 따르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도 적용 가능함. 공동수급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나 계약목적물의 성격상 분리발주가 어려우며, 비영리단체의 건설업면허 보완과 같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당해 공동수급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76, '16.1.14.】

**Q2.** 설계공모의 당선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A2.** 해당 설계용역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요건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바 입찰절차를 통한 계약이든 수의계약이든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2358, '14.7.1.】

**Q3.**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자치단체 관공지에 방치된 건물 4개동을 리모델링하여 전시공간을 확보하고 특정인에게 수석 130여점을 기증 받기로 협의한 경우,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수석 기증자가 원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A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호에서 수의계약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 특정인에게 전시물을 기증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기증자의 의사에 따라 해당 전시공간의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음【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1309, '14.4.15.】

### 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설계용역 계약 관련【신청일: 2019.3.29.】

**개요** A교육청은 학교건물 증축공사를 위한 설계공모를 거쳐 설계용역을 실시한 후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민원제기로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협의를 거쳐 재설계를 추진

**쟁점** ① 학습권 피해 최소화 및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설계용역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② 설계공모 후 사정변경으로 재설계하는 경우 설계공모를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컨설팅 의견** ① 학습권 침해 우려·예산절감의 사유만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수의계약 체결 불가 ② 기존 업체와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변경계약이 불가능해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하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1)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지방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과,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수의계약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수의계약 사유는 국가계약에서는 크게 ㉠긴급한 사유 ㉡경쟁불성립 ㉢중소기업자 직접생산 제품 제조·구매 ㉣국가유공자, 장애인단체와의 물품·용역계약 ㉤기타 경쟁이 비효율적인 경우 ㉥재공고입찰 ㉦계약해제·해지 등으로 수의계약 사유를 구분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도 위 분류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여기서는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는 그 차이점을 알 수 있도록 기술하였고, 대분류사항(가~마)은 국가계약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가.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경우

- ①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 진단·시설물 개선(국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긴급'이란 긴급 입찰공고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하더라도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국가·지방계약 공통)

※ 지방계약은 '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을 다음과 같이 추가 규정하고 있다.

- 응급복구와 관련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의 경우
-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 의약품 등의 조달 및 임시구호시설 설치의 경우
- 방역, 소독 등의 용역의 경우
- 시설물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 구제역 방역, 병충해 제거 등 긴급한 방제사업의 경우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국가계약)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국가계약)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 ④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지방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나.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다음의 경우

※ 국가·지방계약법령에서는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아래 ①~③항의 공사를 '계속공사'라 칭하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9조), 이는 앞서 살펴본 '장기계속공사'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①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계속공사)

※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란 금차공사가 시공 중인 전차공사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를 말한다.(국가·지방계약 공통)

- 아울러 지방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수의계약 제외대상으로 추가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계약법령 적용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하천축제·하천호안·도로포장·도로개설·상·하수도접합·조경·토공·준설과 이에 유사한 토목공사
- 동일 구조물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 정보통신공사 등
-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유권해석

□ 공사 수의계약에서 '직전 시공자'의 의미

Q.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직전 시공자'의 의미는?

A. '직전시공자'라 함은 공정순서와 상관없이 금차공사와 수직적 기초를 공동으로 하는 전차공사를 시공한 시공자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공사의 경우 그 전차시공물을 시공한 시공자를 말함【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879, '15.7.6.】

□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와 수의계약 가능 여부

Q.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전차공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A.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르면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

- 질의와 관련하여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로서 금차공사 기간 대비 전차공사의 잔여공사기간 비율이 40% 이상인 공사라면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아니함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36, '17.1.23.】

②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계속공사)

※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 중에 있는 전차공사와 시공 과정상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를 말한다.(국가·지방계약 공통)

- 아울러 지방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수의계약 제외대상으로 추가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계약법령 적용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금차공사기간 대비 전차공사 잔여공사기간 비율이 40% 미만인 공사

③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계속공사)

※ '마감공사'의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

- 국가계약은 '시공중에 있는 전차공사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 옹벽, 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로

- 지방계약은 '기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옹벽·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로서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는 금차공사 추정금액이 2억 원 미만이고 마감공사의 공사추정금액이 금차공사 전체 예정금액의 2분의1 미만인 공사'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계약이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마감공사에 대한 내용을 더 정하고 있다.

- 아울러 지방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수의계약 제외대상으로 추가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계약법령 적용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마감공사 추정금액이 금차공사 추정금액의 1/2 이상인 경우
- 2종 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되면서 2억 원 이상인 공사
-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 이상 시공한 경우(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④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접적지역, 도서지역, 고산벽지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지역의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국가계약만 규정)

⑤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위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등으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유권해석

□ 수의계약 가능여부

Q. 기존 공동수급체 계약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A. '일반경쟁에 부치고자 하나 특허기술 등의 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 체결이 불가능하고, 분리발주 또는 다른 기술로 대체하는 것도 명백히 곤란한 경우라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가 정하는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수의계약요건의 충족 여부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1148, '10.7.21.】

㉞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지방계약은 시험가동 포함)하는 경우

※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공사를 제조·공급과 분리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것이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있어서 국가기관에 유리한 경우를 말한다.

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

□ 금융자동화기기 유지관리 계약 개선을 위한 법령 검토 관련【신청일: 2021.7.22.】

개요 A부는 전국 우체국에 사용되는 금융자동화기기에 대해 2년마다 일반경쟁 입찰로 유지관리용역을 발주하고 있으나 매년 제조사 단일응찰로 유찰되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행정력 낭비

쟁점 금융자동화기기 제품 특성상 국내 3개 제조사 모두 자사의 특허노출에 대한 우려로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예비부품 및 기술교육을 타사에 제공하지 않아 해당 제품별 제조사만 유지관리가 가능한 실정인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의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는지?

컨설팅 의견 단순장애가 아닌 제조사의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고, 국내 3개 제조사 모두 타사에 예비부품 및 기술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수의계약이 가능함

㉞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

□ 수하물처리시설(BHS) 사업에 대한 발주방안 관련【신청일: 2019.6.19.】

개요 A공사는 4단계 수하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3단계 처리시설과 연결하기 위한 개조·증설 사업이 필요

쟁점 4단계 설치사업과 3단계의 개조·증설사업에 대해 분리발주와 통합발주 중 적합한 방안은?

컨설팅 의견 2개 사업의 통합발주는 다른 공급사의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방안으로 사료되며, 분리발주 시 3단계 개조·증설사업은 공급사 전용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사목 및 자목에 해당하여 기존공급사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

㉞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응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조달청에서는 '적절한 대응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요기관에서 ①외부 위원이 참여한 심의회, ②제품선정 공고, ③경진대회 중 하나를 통한 제품선정결과서를 수의계약요청사유서에 첨부토록 하고 있다.

㉞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유권해석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에서 '물품 생산자 또는 소지자'의 범위

Q.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에서 생산자 또는 소지자는 국내만을 의미하는지 국외도 포함인지?

A.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는 국내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로 보아야 할 것임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258, '14.2.25.】

### 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

□반도체 소부장 관련 중고(재제조) 연구장비 구매 관련【신청일: 2021.12.1.】

**개요** ○○기술연구원은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들의 소재·부품개발 및 기술지원을 위해 필수 연구장비인 노광기를 구매하고자 하는데, 노광기는 장비 제조사에서 대기업 위주의 고사양만 생산해 중소기업에 필요한 사양의 장비는 신품 구매가 곤란한 상황

**쟁점** 조달청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신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이유로 조달구매가 어렵다는 의견인데 중고물품으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컨설팅 의견**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신품구매가 원칙이나 조달청 유권해석 및 기재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항이거나 구매목적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중고물품 구매도 가능함. 이견 ○○기술연구원에 필요한 노광기는 ●●●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고물품으로 판매하고 있어 국가계약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신품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해 중고물품 구매의 불가피성이 인정됨

- ⑩ (국가계약)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 (지방계약)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지방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

□ 지자체 출연기관의 설계용역 수의계약 관련【신청일: 2019.2.14.】

**개요** 개발사업 주관기관인 A는 수의처인 B사(A기관이 차량을 개발·제작하면 이를 양산)로부터 상용차 기본 설계도면을 제공받아 차량을 개발하기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진행하고자 B사에 설계업체 추천을 요청하였고, B사는 유사과제 개발경험 등을 사유로 C사를 유일하게 추천

**쟁점** C사가 지방계약법 수의계약 대상(제25조 제1항 제4호 자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컨설팅 의견** 본 설계용역 계약에서 ① 개발사업 참여를 희망한 업체는 B사가 유일하고 ② B사는 개발사업 전과정에서 기술 및 전문인력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협력관계가 중요한 특수성이 있으며 ③ B사가 유사과제 개발경험·기술보안 유지 등의 사유로 C업체를 단일추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계약법 상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

### 유권해석

□ 수의계약에서 '특정인'의 의미

**Q.**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차목에서 말하는 "특정인의 기술"의 의미

**A.**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차목에서 "특정인"이라 함은 당해 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법률적·제도적 또는 능력의 측면에서 그 사람이 아니면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함【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제 41301-949, '03.8.22.】

□ 특정인과 수의계약 가능 여부

**Q.** '12년 6월 설계용역 완료 후 기존 건물 증축 및 일부 시설물 신축 분 설계용역을 추가로 추진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하자책임 곤란)·차목(특정인의 기술) 등의 사유로 기존 설계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A.**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공사와 관련된 수의계약 조항이므로 용역계약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시행령 26조 제1항 제2호 차목의 '특정인'이라 함은 조사·설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이 아니면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 건에 대해 동 항목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음【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233, '13.3.4.】

- ⑪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국가, 지방)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국가)

### 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

□ 유치원 교사시설 임대 수의계약 관련【신청일: 2019.1.24.】

**개요** A공단 소유 건축물 및 토지에 운영 중인 B유치원은 설립자 사망으로 폐원 대상이 되었으나 B유치원 학부모들은 유치원 운영을 목적으로 "C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 이에, A공단은 공단소유 기존 유치원 시설을 학부모로 구성된 C사회적협동조합에 임대하고자 함

**쟁점** A공단이 C사회적협동조합과 체결하려는 임대계약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카목의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컨설팅 의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등 관련 법령 검토결과, 본 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의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A공단은 C사회적협동조합과 수의계약 가능

- ⑫ (지방계약)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 「지방계약」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 발굴 조사로 전환되는 등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성능인증제품, 우수조달물품, 신제품 등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은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구매 손실로 인한 책임이 면책됨  
 - 판로지원법 제14조(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③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제14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포함한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중소기업자 직접 생산 제품 구매를 위한 수의계약 가능 기간  
 - 주무부장관이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이 유효한 기간(유효한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까지 포함)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이 유효한 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까지만 수의계약 체결 가능

-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②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 ③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 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⑦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

⑧ 「국가계약」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 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라.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①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유권해석

□ 보훈단체 등과의 수의계약 관련 질의

**Q1.** 보훈복지공단 명의로 수의계약 후 다른 업체에게 하청하여 납품할 수 있는지

**A1.**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공장에서부터 직접 물건을 매입하거나 이로 하여금 제조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바, 수의계약을 체결한 국가유공자 자활집단공장이 다른 업체로 하여금 당해계약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동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제 125-2035, '85.7.25.】

**Q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가 국가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액 제한이 있는지

**A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수의계약은 계약금액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64, '13.1.18.】

②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③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유권해석**

□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수의계약 관련 질의

Q. 수의계약이 가능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범위는?

A.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지 않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대상이 아님【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297, '12.10.11.】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⑤ (지방계약)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목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 지역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의 수의계약 시 다음 요건을 갖춘 동-리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1조)

- 시공능력이 있을 것
- 동-리의 주민 다수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현물(마을소유재산 포함)을 확보하고 있을 것
- 계약상대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을 것

마.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다음의 경우

① 소액수의 계약

※ 국가계약에서는 아래 ①-가에서 ①-바까지의 경우를 ‘소액수의계약’이라고 칭하나(「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지방계약은 위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

①-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4억 원(국가), 2억 원(지방)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국가), 1억 원(지방)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6천만 원(국가), 8천만 원(지방)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①-나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①-다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1억 원(국가), 5천만 원(지방-단,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동안 1억 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 제1항 제3호(견적서 제출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다시 받더라도 1인 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전문적인 학술연구용역 등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포함

①-라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1억 원(국가), 5천만 원(지방-단,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동안 1억 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 학술연구, 원가계산, 타당성조사, 여론조사 용역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용역
- 법률자문·회계·감정평가 등 특정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
-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설비 등을 요하는 용역

①-마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초과 1억 원(국가), 5천만 원(지방-단,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동안 1억 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기업만 해당)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단,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2호의 취약계층을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30이상 고용한 자이어야 함(지방계약은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 고시)



※ (지방계약) 취약계층 고용비율 : 30%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기업 및 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2018. 7. 24. 행정안전부고시)

※ 기업·조합의 설립 근거

-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
-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 마을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 확인서 발급기관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자활기업 : 중앙자활센터 (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마을기업 : 관할 지방자치단체

①-바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 조합 추천 수의계약 제도

- 관계규정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
- 개념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구매조건에 맞는 대상업체(소기업, 소상공인)를 추천받아 이들 업체간의 가격 등을 비교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추천방법 : 공공구매정보망(www.smpg.go.kr) 내 설치된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을 통해 대상업체 추천 요청(5인 이상 추천 원칙, 2천만 원 미만은 2인 이상)
- 절차

공공기관 추천요청	→	중소기업 정보검색 추천신청	→	협동조합 적격심사 추천	→	공공기관 수의견적공고, 견적접수, 계약
--------------	---	----------------------	---	-----------------	---	-----------------------------

② 재외공관(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③ 물품을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유권해석

□ 매각계약에서 수의계약 가능 여부

**Q.** 발주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골재 매각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A.** 국가소유의 골재는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물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골재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물품관리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동 법 제39조는 국가계약법에 대한 매각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골재매각 시 수의계약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가능할 것임. 반면 동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나목(현재 제5호 다목)은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에 관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조항으로서 용역계약이 아닌 골재매각계약의 경우 동 규정에 근거한 수의계약은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548, '11.5.19.】

④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유권해석

□ 국가사업 위탁 또는 대행자와의 수의계약 관련 질의

**Q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에서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

**A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라 함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관청이 지시·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도 포함되는 것임【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제 2210-509, '90.3.2.】

**Q2.** 산림관계법령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병해충 예방·진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산림병해충 예방·진단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A2.** 산림관계법령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병해충 예방·진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산림병해충 예방·진단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으로 산림병해충 예방·진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위 조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 없을 것이며, 산림관계법령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위 조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임

**Q3.** 재단법인 대한통계협회가 영 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A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는 국가사업의 수탁 또는 대행기관으로서 다른 법령에 그 기관의 명칭이 명시된 기관만을 말한다고 할 것임

- 그런데 「통계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통계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는 것만 규정되어 있고, 재단법인 대한통계협회는 동 조항에 근거하여 통계청 훈령인 「통계청 통계자료 제공규정」 제9조 및 부칙에 따라 통계청의 통계자료제공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일 뿐임
- 그렇다면 재단법인 대한통계협회는 영 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법제처 07-044, '07. 3.23.】

**Q4.**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7호에서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한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및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7호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자신의 계약규정에서 수의계약 사항으로 정한다면 기획재정부의 승인사항인지?

**A4.**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7호는 새마을금고가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에 불과할 뿐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7호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자체 계약규정에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277, '12.3.15.】

⑥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유권해석

□ 국가계약법에서 ‘국가기관’의 범위

**Q.** 학교기업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에 포함되는지?

**A.**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다른 국가기관”은 「국가재정법」 제6조에서 정한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근거로 하여 설치된 독립기관과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를행정기관 등을 포함)을 의미하는 바, 학교기업은 독립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다른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음【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1139, '10.7.21.】

⑦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지방계약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을 구매하려는 경우

※ 조달청은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혁신장터(<https://ppi.g2b.go.kr>) 운영

- 혁신제품 전용물 : 혁신제품 상품정보 및 혁신제품 지정정보 조회 가능

※ 혁신제품 구매 시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토록 규정

- 제27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④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⑧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⑨ (지방계약)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⑩ (지방계약)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⑪ (지방계약)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⑫ (지방계약) 「과학기술기본법」 등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감사원 모범사례

□ “테스트베드 〇〇” 사업추진으로 혁신기술의 상용화가 판로개척에 기여

**결정 요지** 〇〇〇〇 본청 및 산하기관의 모든 현장을 혁신기술제품·서비스의 실증장소로 제공하는 “테스트베드 〇〇” 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 혁신기술제품의 상용화와 판로개척에 기여

**결정 의의** 〇〇시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혁신기술을 개발하고도 그 성능을 시험 적용할 장소나 납품실적이 없어 상용화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18년 6월부터 〇〇시 산하 모든 현장을 신기술 제품 등을 적용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11개 기업이 '19년 1월부터 '20년 4월까지 일반기업과 39억 상당 계약체결, 16억 상당 투자 유치 등 혁신제품 상용화 및 판로개척에 기여한 공로 인정

**관련 규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등

**【모범·적극행정사례 추천사항 확인점검, '20.9월 시행】**

바.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위 ㉠-㉡의 수의계약 사유 외에도 [표 48]과 같이 재공고입찰 결과에 따라서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는 입찰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재공고입찰을 하였는데도 역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어 계약상대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재량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표 48]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

국가계약(시행령 제27조)	지방계약(시행령 제2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①입찰자 또는 ②낙찰자가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입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sup>주)</sup></li> <li>② (입찰은 성립하였으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공고입찰을 할 때 ①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②낙찰자가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국가계약과 사실상 내용 동일)</li> <li>= ② (입찰은 성립하였으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li> </ul> </li> </ul>
-	<p>※ 이 경우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본·실시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p>

주: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는 재공고입찰에 부쳤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1인뿐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유권해석(계약제도과-712, '15. 6. 8.)

재공고입찰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은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재공고입찰 없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을 신설하여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지방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재공고입찰을 실시한 경우에도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수의계약 요건이 다른 것처럼 보이거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되어 있어 '입찰자가 없는 경우'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는 결국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사실상 그 내용은 동일하다.

- 입찰 성립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 입찰 불성립 : 입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Check! 유의사항

□ 재입찰과 재공고입찰은 용어가 유사하나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이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 같은 요건인 ①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②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재량으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재입찰	재공고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찰 결과 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어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②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 입찰은 성립되었으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b>다시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재차 입찰에</b> 부치는 제도</li> <li>-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음</li> <li>- 기한을 제외하고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 변경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찰 결과 ①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1인뿐이어서 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②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 입찰은 성립되었으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b>공고를 다시 하여 입찰에</b> 부치는 제도</li> <li>- 기한을 제외하고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 변경 불가</li> </ul>

- 재공고입찰의 경우 재입찰과 같이 입찰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입찰을 몇회까지만 실시할 수 있다는 제한규정도 없으므로 재입찰과 마찬가지로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입찰, 재공고입찰 모두 횟수에 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다.

한편,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즉, 재공고입찰에 따라 당연히 낮춰질 수밖에 없는 입찰공고기한, 계약기간 등 '기한'과 '보증금' 요건을 제외한 가격이나 다른 조건이 변경되면 이는 새로운 입찰이므로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유권해석

□ 재공고입찰시 입찰참가자격 변경 여부

Q. 재공고입찰 시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지?

A. 재공고입찰에 부칠 경우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임.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새로운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계 45101-2352, '96.10.11.】

□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여부

Q. A기관은 자산 처분을 위해 매각 공고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었음. 다시 자산처분을 위한 매각공고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처음 공고시 자산의 일부분만을 매각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었음. 이러한 경우 2회 이상 유찰로 인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A. 재공고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려면 수의계약을 하려는 계약목적물이 당초의 공고와 재공고시의 계약목적물과 동일해야 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656, '14.12.23.】

□ PQ계약에서 유찰판단 여부

Q. PQ공사계약에서 PQ참가자가 1인인 경우 본 공고가 유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가 필수적인 경우에 사전심사 참가자가 1인 뿐이면 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자가 1인이므로 당해 입찰은 유찰이 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가 필수인 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참가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경쟁입찰에서 유찰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404, '15.4.8.】

□ 일부조건 변경 시 재공고 판단 여부

Q. 유찰이 계속(3차)되어 4차 공고 시 일부 조건을 변경하여 공고하였을 경우 재공고로 볼 수 있는지?

A. 귀 기관의 상업시설 운영자선정 제4차 공고는 제1차~제3차 공고와는 다르게 최저수용가격 등의 조건을 정하였으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의 재공고입찰에 해당하지 않으며 새로운 입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843, '15.6.30.】

□ 기술용역(PQ) 재공고 유찰 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Q.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가 지방계약법 상 입찰인지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재공고 유찰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A.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는 것으로서 입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찰을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909, '20.6.19.】

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

□ 재공고입찰 유찰 후 수의계약 방법 관련【신청일: 2019.5.22.】

**개요** A공사의 항공기 착륙 지원시설 구축사업은 1차, 2차 모두 단일응찰로 유찰되어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 추진

**쟁점** 재공고입찰 후 수의계약 진행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단일응찰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는 방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계약수행이 가능한 다른 업체도 참여시켜 유리한 가격 제시자와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방법 중 우선 적용 방안

**컨설팅 의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이 모두 가능. 다만, 사업의 긴급성, 계약의 공정성, 입찰참가자격,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필요

사. 계약 해제·해지 등에 따른 수의계약

국가계약의 경우 [표 49]와 같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계약은 국가계약과 달리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의 수의계약 관련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지방계약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할 필요가 있음

[표 49] 계약 해제 등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

국가계약(시행령 제28조)	지방계약(시행령 제27조)
<p>■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u>기한을 제외하고는</u>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p>	-
<p>■ 위 규정은 낙찰자가 계약체결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그 경우 보증금과 <u>기한을 제외하고는</u>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p>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수의계약은 예를 들어 해당 사업을 특정 시점까지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데 입찰 등을 거치면서 시간이 많이 경과되거나 이미 계약 이행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경쟁

입찰절차를 다시 거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등 일반적인 신규 계약 추진과는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발주기관의 판단 하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그 경우 다시 입찰에 부쳐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며, 수의계약에 의할지 다시 입찰에 부칠지는 발주기관이 해당 사업의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제 또는 해지 후 수의계약하는 경우 국가계약은 ‘기한’을, 지방계약은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기한 및 보증금의 입찰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재입찰·재공고입찰 및 수의계약 등 사안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재입찰·재공고입찰 및 수의계약 시 최초 입찰조건 변경사항 정리

구분	최초 입찰조건 중 변경이 가능한 사항	
	국가계약	지방계약
■ 재입찰·재공고입찰	기한	기한
■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수의계약(국가계약만 규정)	기한/보증금	-
■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수의계약	기한/보증금	기한/보증금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수의계약(국가계약만 규정)	기한	-
■ 낙찰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의 수의계약	기한	기한/보증금

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

□ 설계용역계약 해지 후 기존 계약상대자와 재계약 관련【신청일: 2019.4.30.】

**개요** A시는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면서 '17.9월 B사와 실시설계용역, 설계VE용역 등을 체결한 후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는데, 사전협의를 지연됨에 따라 '17년말 사고이월한 사업예산의 출납폐쇄기한이 도래. 이에 A시는 '18.12월 B사와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기성대금 정산 후 '19년 남은 과업에 대해 B와 재계약 추진

**쟁점** 발주기관인 A시의 사정변경에 따라 용역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잔여과업에 대해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컨설팅 의견** 발주기관의 사정변경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기존 계약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이견 계약해지의 귀책이 오로지 발주기관에 있는 점, 다음연도 예산으로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도 있었던 점, 신규 입찰 시 A시가 얻을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잔여과업에 대해 가격 등 기타 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계약자와 수의계약 가능

한편, 국가계약의 공사입찰유 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 의서, 용역입찰유 의서와 지방계약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 의서’에 따르면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해당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는 계약체결 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와 같은 입찰무효 이외의 사유에 의한 부적격자도 포함하므로 기존 입찰의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으나,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더라도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고 새로운 입찰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해당 사업의 규모, 난이도,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판단하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유권해석

□ 계약부적격자 범위

- Q. 낙찰 후 계약 체결 전 낙찰자의 계약 부적격자 여부를 확인하여 배제해야 하는데, 이 때 부적격자 범위는?
- A. 「물품구매(제도)입찰유의서」 제16조 제10항에 따르면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된 낙찰자에 대해 낙찰 취소 후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함. 여기서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의 범위는 동 조항의 취지(불필요한 재공고·재입찰 절차의 생략을 통한 국가계약의 적시성 확보) 고려시 계약 체결 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와 같은 입찰무효 이외의 사유에 의한 부적격자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618, '15.5.21.】

□ 계약체결 전 낙찰자의 계약부적격 판단 시 추후 처리 절차

- Q. 공사계약에서 입찰마감일 이후의 사유에 의한 낙찰취소와 차순위자 심사 방법?
- A.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제6항 등에 따르면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 따라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의 사유라도 계약체결 전이라면 낙찰취소 후 차순위자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이 가능할 것임. 부적격자의 범위에는 동조항 등의 취지(불필요한 재공고·재입찰 절차의 생략을 통한 국가계약의 적시성 확보) 고려시 계약체결 전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대상이 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예정일까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와 같은 부적격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875, '15.7.6.】

□ 계약체결 이후 계약 취소 시 후속 처리 절차

- Q. 계약 체결 후 취소 시 후속 낙찰자 결정 방법
- A.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제6항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즉, 계약체결 이전에는 기존의 낙찰참가자를 대상으로 낙찰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그 낙찰 절차는 종료되기 때문에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이 취소된다면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을 할 수 없고 새로운 입찰절차를 거쳐서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함【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643, '15.5.26.】

□ 일부 계약해지 시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범위

- Q. 무기체계 수리와 관련된 계약 중 일부에 대해 계약해지 시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 범위는?
- A.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해야 할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우선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한편, 계약의 일부라도 다른 부분과 상호 관련성이 있어 일부에 대해 해제·해지하는 것은 곤란하나, 불이행 부분이 없더라도 전체 계약목적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고, 잔여 이행부분과 구조적·기능적으로 독립적이어서 분리가 가능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계약 일부에 대한 해제·해지가 가능할 것임
-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 일부의 해제·해지가 가능하다면 해제·해지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을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471, '21.3.24.】

입찰 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등에 대한 처리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재공고 등 입찰결과에 따른 처리방법

최초 입찰	<입찰결과>	<처리방법>	<가능여부>	<입찰결과>	<처리방법>	<가능여부>
→	입찰 불성립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	○	입찰 불성립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	가능
					재공고 입찰	가능
					새로운 입찰	가능
					수의계약	국가계약 가능 (입찰참가자 1인 뿐인 경우 <sup>주)</sup> ) 지방계약 불가능
					재공고 입찰	가능
					새로운 입찰	가능
	낙찰자 계약 미체결	재공고 입찰	○	낙찰자 계약 미체결	재공고 입찰	가능
					새로운 입찰	가능
					수의계약	국가계약 가능 지방계약 규정 없음
					재입찰	가능
					재공고 입찰	가능
					새로운 입찰	가능
낙찰자 계약 미체결	새로운 입찰	○	낙찰자 계약 미체결	재공고 입찰	가능	
				새로운 입찰	가능	
				수의계약	국가계약 가능 (입찰참가자 1인뿐인 경우 <sup>주)</sup> ) 지방계약 불가능	
				재공고 입찰	가능	
				새로운 입찰	가능	
				수의계약	국가계약 가능 지방계약 규정 없음	
낙찰자 계약 미체결	재공고 입찰	○	낙찰자 계약 미체결	재공고 입찰	가능	
				새로운 입찰	가능	
				수의계약	국가계약 가능 지방계약 규정 없음	

주: 입찰참가자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한 경우 (단,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동안 재공고입찰 없이 수의계약 가능)

(2) 수의계약대상자 선정 절차

①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단, [표 50]과 같은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데, 국가계약은 수의계약 대상 요건 중 경쟁이 성립될 수 없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1인 견적을 허용하고 있는 데 반해 지방계약은 금액 기준에 따른 소액수의 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대상 중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은 5천만 원)의 계약을 제외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1인 견적을 허용하고 있는 등 그 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정하고 있다.

※ 견적서 : 도급·매매 등의 계약목적물의 대가를 산정한 서류로서, 통상적으로 대가산정의 기초가 되는 산출내역(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가 등)이 포함됨

[표 50] 1인 견적 가능 수의계약 대상

국가계약(시행령 제30조)	지방계약(시행령 제3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5호 마목·사목·아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1항 1호 가목) 천재지변, 감염병예방 및 확산방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1항 1호 나목)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항 2호)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계속공사, 특허공법 적용 공사, 특허물품 등 11개 사항) (1항 5호 마목)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1항 5호 사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1항 5호 아목)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의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5조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 제26조 제1항·제3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li> </ul>

국가계약(시행령 제30조)      지방계약(시행령 제30조)

(27조)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28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 유의사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의 수의계약 대상 중 아래 사항은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항 1호 다목, 라목) 천재·지변 등 긴급사유, 국가안전보장 등 보안상 필요, 군용규격물자, 비상재해 시 국가소유 복구용 자재 매각  
(1항 3호) 중소기업자 직접 생산제품을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  
(1항 4호)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및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1항 5호 나목, 다목, 라목, 바목) 재외공관 사용 물품, 경쟁이 불합리한 물품의 가공·하역·운송·보관, 방산물자, 다른 국가기관·자치단체와 계약

■ 금액 기준에 따른 소액수의계약(5호)은 2인 견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는 1인 견적 가능  
-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또는 마을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금액 기준에 따른 소액수의계약(5호)은 2인 견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는 1인 견적 가능  
-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또는 마을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유권해석

□ 국가계약에서 복수견적 의미

Q. 국가계약법령에서 말하는 '복수견적' 제출의 의미

A.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1인의 사업자가 타 사업자의 견적서를 대신하여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견적서 제출제도의 취지가 발주기관이 여러 사업자가 제출하는 견적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상대자 및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토록 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다는 것은 2인 이상의 사업자 각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366, '10.11.11.】

□ 소액수의 계약에서 비교 가능 복수견적 의미

Q. 소액수의 계약에서 복수견적을 받았으나, 예정가격 초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으로 낙찰 가능한 견적서가 1개만 존재할 경우 2개 이상의 비교 가능한 견적서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 2개 이상의 유효한 견적서가 제출되고 1개의 견적서만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동 기준 제10조 제2항이 말하는 2개 이상의 비교 가능한 견적서를 확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1245, '09.7.31.】

□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여부

Q1.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공고 시 제출 대상을 여성기업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

A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및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인 견적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  
- 따라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의 경우 1인 견적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2인 이상의 견적 제출 시 여성기업만을 대상으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함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928, '19.11.1.】

Q2. 조례에 근거해 ○○도로부터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단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A2.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등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인 견적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  
- 질의와 관련하여 수의계약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해당 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자를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할 것으로 법령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그 사무에 대한 위탁·대행 대상 등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 않은 이상 조례를 근거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355, '20.3.20.】



[표 51] 소액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방법 등

소액 수의계약 유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선정방법	견적서 제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 건설공사(국가)· 2억 원 이하 종합공사(지방)</li> <li>▶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과 체결하는 추정가격 5천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 건설공사(국가)· 2억 원 이하 종합공사(지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국가)·1억 원 이하(지방) 전문공사</li> <li>▶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과 체결하는 추정가격 5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국가)·1억 원 이하(지방) 전문공사</li> </ul>	견적입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1억 6천만 원 이하(국가)·8천만 원 이하(지방) 전기 등 그밖의공사</li> <li>▶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과 체결하는 추정가격 5천만 원 초과 1억 6천만 원 이하(국가)·8천만 원 이하(지방) 전기 등 그밖의 공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공사</li> <li>▶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과 체결하는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공사</li> </ul>	1인 견적 가능	전자조달시스템 제출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국가)· 5천만 원 이하(지방-단,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동안 1억 원)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li> <li>▶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국가)· 5천만 원 이하(지방-단,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동안 1억 원)인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 기술 등 관련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li> <li>▶ 추정가격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국가)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과 체결하는 물품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li> </ul>	견적입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li> <li>▶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li> <li>▶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과 체결하는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계약</li> </ul>	1인 견적 가능	전자조달시스템 제출 예외

□ 소액수의 계약방법

- Q.**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고자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지정정보처리 장치로 안내공고를 했을 때 계약담당공무원이 견적서 제출을 요구한 업체 이외의 다른 업체에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지?
- A.** 견적서 제출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나라장터 안내공고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모두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조달청 질의회신, 공개번호 20140630699, 2013】

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

□ 항공등화시스템 구축사업 발주 관련【신청일: 2019.6.17】

- 개요** A공사는 공항 항공등화시스템 구축사업 계약을 추진하였는데, 2회의 재공고 입찰에도 1개 업체만 응찰하여 3회 모두 유찰. 이에 공사는 유일하게 입찰에 참여한 B사와 수의계약을 검토
- 쟁점** 재공고 유찰(단일응찰)에 따른 수의계약 진행 시 수의계약 대상을 당초 공고 입찰참가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잠재적 사업 참여 업체로까지 확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컨설팅 의견** 이 건 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 및 관련 업체들의 참여 의향 회신 등을 고려할 때, 기존 공고에 단독 입찰한 B사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추진 가능. 다만, B사의 입찰참가자격 요건 충족 등 별도 확인 필요

위 금액 기준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표 51]과 같이 계약 대상 및 추정 가격 범위 등에 따라 견적 방법이 달라지고 추가적인 기관 내부의 규정도 있으므로, 법령 외에 내부 규정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Check!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내부 지침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2015), 「2017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2017), 「수의계약 상한금액 확대 추진계획(2020)」으로 용역·물품의 소액수의계약 기준금액을 추정가격 2,000만 원으로 정하고
  -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차단을 위해 서울시 실·본부·국 및 사업소별 연 5회 이상 동일업체 수의계약을 금지(연4회까지 가능), 시 전체 연간 10회 이상 동일업체 수의계약 금지(연 9회까지 가능)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제도개선 추진계획(2020)」하고 있는 등
  - 각 기관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계약담당자들은 소속 기관의 관련 지침 등을 숙지하여 수의계약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임

한편, 계약 법령에서는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고 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과 일정금액(국가: 추정가격 100만 원, 지방: 추정가격 200만 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은 국가나 지방계약 구분 없이 생략가능 하고 지방계약은 이외에도 [표 52]와 같이 2가지 사항을 더 규정하고 있다.

[표 52] 견적서 제출 생략가능 수의계약

국가계약(시행규칙 제33조)	지방계약(시행규칙 제3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li> <li>■ 추정가격이 100만 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li> <li>■ 추정가격이 200만 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li> <li>■ 추정가격이 200만 원 미만인 물품을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li> <li>■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li> </ul>

② 견적서 제출방법

견적서는 금액 기준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 중 추정가격이 2천만 원(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국가계약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은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표 53]과 같이 품질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등을 이용하지 않고 제출할 수 있다.

[표 53] 나라장터 등을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국가계약 (시행규칙 제33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지방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4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적인 학술연구용역의 경우</li> <li>■ 농·수산물 및 음식물(그재료 포함)의 구입 등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li> <li>■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li> <li>-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용역 및 타당성조사용역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설계용역의 경우(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확인 등이 필요한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물품·용역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물(재료·공산품 구입 포함)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li> <li>- 국내·외 연수 등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수학여행·수련활동 제외)</li> <li>-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li> </ul> </li> <li>-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li> <li>-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고시한 물품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2인 이상 추천하는 경우</li> <li>-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항에 따른 재안내 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li> </ul>

나라장터 등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등에 일정기간(국가계약은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 전까지, 지방계약은 3일 이상,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해야 하고, 국가계약은 안내공고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계약상대자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경우,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 이하인 경우 등에는 재안내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계약은 재안내공고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3)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범위 안에 들지 아니한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표 54] 소액수의계약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국가계약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지방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 :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lt;별표 1&gt;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용역 :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청소용역, 검침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용역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lt;별표 1&gt;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li> <li>■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 구매 :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lt;별표 1&gt;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li> </ul>

그리고 선정된 계약상대자(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등 [표 55]와 같은 사유로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는데,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요건이 일부 상이하다.

[표 55] 차순위자 선정 사유

국가계약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차순위자 계약상대자 결정 사유”)	지방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li> <li>■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li> <li>■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li> <li>■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li> <li>■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 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li> <li>■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li> <li>■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 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li> </ul>

국가계약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차순위 자 계약상대자 결정 사유")	지방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 (법인은 대표자)</li> <li>-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li> <li>-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li> <li>-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li> <li>-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함)</li> </ul>

### 유권해석

□ 재공고 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관련 질의

**Q1.** 1인 입찰 유찰에 의한 재공고 입찰 수의계약 시, 기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자도 견적제출이 가능한지?  
**A1.** 재공고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도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견적가격)을 제시하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제 125-196, '88.1.27.】

**Q2.** 재공고까지 1인 입찰로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 또는 기존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해야 하는지?  
**A2.** 재공고입찰 후에도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면 되고, 자격은 입찰 공고서상의 참가자격을 고려하여 선정하면 될 것이므로 수의계약대상자는 현장설명참가자 또는 입찰참가신청자만이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님【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제 41301-1920, '97.7.5.】

**Q3.** 적격심사 낙찰제 대상 입찰에서 재공고입찰 후에도 유찰이 되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대상 업체는 적격심사 통과업체로 하여야 하는지?  
**A3.** 이 경우 "기타 조건"이란 최초의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등 당해 입찰참가에 필요한 자격 조건 등을 말하며, 계약체결방법이 수의계약의 형식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결정기준인 적격심사기준은 동 기타 조건에 포함되지 아니함【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제 41301-2130, '07.6.19.】

**Q4.** 재공고입찰횟수 및 재공고입찰에 의한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선정범위?  
**A4.**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동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함. 이 경우 수의계약대상자는 당초 입찰공고상의 참가자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면 될 것인바, 현장설명참가자 또는 입찰참가신청자만이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님. 재공고입찰 후 재차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나, 횟수 기타 새로운 입찰을 부칠 것인지 여부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임【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제 41301-1920, '97.7.5.】

### (4) 계속공사의 수의계약시 계약금액

계속공사(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에 있어 당해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1차 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로 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이 1차 공사의 낙찰률이 낮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표 56]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간 계속공사의 낙찰률 이하 수의계약 가능 경우 비교**

국가계약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조)	지방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7.75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 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등은 3억 원) 미만인 공사 →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7.75를 곱한 금액</li> <li>■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6.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10억 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등은 3억 원) 이상인 공사 →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6.75를 곱한 금액</li> <li>■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5.5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공사 →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5.5를 곱한 금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7.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 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 원, 전문·설비공사는 1.5억 원) 미만인 공사 →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7.75를 곱한 금액</li> <li>■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6.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10억 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 원, 전문·설비공사는 1.5억 원) 이상인 공사 →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6.75를 곱한 금액</li> <li>■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5.5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공사 →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5.5를 곱한 금액</li> </ul>

(5) 수의계약 대상 및 직접생산확인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①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② 수의계약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여부(지방계약은 '수의계약 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여부 및 용역의 직접수행 가능 여부'라고 규정)를 확인하여야 한다.

-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 포함)(지방계약만 해당)

(6)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

국가계약은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가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바목의 ① 하자책임 곤란, ② 작업상 혼란, ③ 마감공사, ④ 신기술 등 보유)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달청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4997호, 2019. 12. 20. 일부개정)

위 평가기준에 따르면 수의계약사유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고, 종합평점 80점 이상인 공사 중 예산절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도 계약심사협의회의에 부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

반면 지방계약은 위 4가지 경우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금차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은 95점, 50억 원 미만은 90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지방계약 기준)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		담당			(인)
		과장			(인)
평가 항목	평가요소	등급	신용평가등급	점수	
시공능력 공시액 (8)	■ 발주공사 추정금액의	A. 3.0배 이상		8.0점	
	■ 발주공사 추정금액의	B. 2.0배 이상		7.2점	
	■ 발주공사 추정금액의	C. 1.5배 이상		6.4점	
	■ 발주공사 추정금액의	D. 1.5배 미만		5.6점	
시공 여유율 (8)	■ 진행 중인 관급공사	A. 1건 이하		8.0점	
	■ 진행 중인 관급공사	B. 2건		7.2점	
	■ 진행 중인 관급공사	C. 3건		6.4점	
	■ 진행 중인 관급공사	D. 4건 이상		5.6점	
경영상태 (8)	■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체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 유동비율	A. 150% 이상	AAA ~ AA-	8.0점	
		B. 120% 이상	A+ ~ A-	7.2점	
		C. 100% 이상	BBB+ ~ BBB-	6.4점	
		D. 70% 이상	BB+ ~ B-	5.6점	
		E. 70% 미만	CCC+	4.8점	
계약질서 준수 (6) (부실시공의 제재처분 등, 수의계약요청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법·정보통신공사법 등에서 정한 영업정지 등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무		3점	
		유		△3점	
수의계약요청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방계약법령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무		3점	
		유		△3점	
기술 사항	사유별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점(70)	
	①하자	㉠공사규모비	(전차계약금액/금차추정금액)×100= %	[(㉠+㉡)/2]×70%=점수	
		㉡하자보수보증기간	(전차하자보수보증기간/금차공사기간)×100= %	[(㉠+㉡)/2]×70%=점수	
	②혼잡	㉢시간적중복도	(전차잔여기간/금차공사기간)×100= %	[(㉠+㉡)/2]×70%=점수	
		㉣공사규모비	(전차계약금액/금차추정금액)×100= %	[(㉠+㉡)/2]×70%=점수	
	③마감	㉤뒹머리공사규모비	(기시공물공사계약금액/금차뒹머리공사추정 금액)×100= %	㉤×70%=점수	
		㉥부대시설공사규모비	[시공중(기시공포함)인 공사계약금액/금차 부대 시설공사추정금액]×100= %	㉥×70%=점수	
	④특허 공법 등	㉦독점적 기술의 공사규모비	(특허·신기술 등 독점적 기술에 해당하는 공사 추정금액/금차추정금액)×100= %	㉦×70%=점수	
고용창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창출 100대 우수 기업으로 선정한 자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3회 우수기업 선정 2회 우수기업 선정 1회 우수기업 선정	+0.5 +0.4 +0.3 +0.2	
평가 결과	일반사항	점	입찰계약 추진대상		
	기술사항	점	수의계약 추진대상		
	합계	점			

(7) 가격협상 절차

실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협상(수의시담)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6] 가격협상(수의시담) 절차

협상일시	■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당초 정한 가격협상일(가격협상이 연기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에 가격협상을 실시한다.
계약조건 승낙	■ 가격협상 집행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과 구매규격(시방)등 주요 사항을 숙지하게 하고 이를 승낙 받은 후에 가격협상을 실시한다.
협상자격 확인	■ 가격협상 집행관은 가격협상 전에 참가자의 자격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에 의하여 확인한다.
가격협상실시	■ 가격협상 집행관은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에는 협상이 성립되었음을 선언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시 가격을 제출받아 예정가격 이하 여부를 확인한다.
결과 보고	■ 가격협상 집행관은 가격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계약담당 과장에게 보고한다.

(8) 수의계약 시 유의사항

① 수의계약시 예정가격 작성

수의계약도 경쟁입찰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바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및 금액 기준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사항(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5호)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분할수의계약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와 재공고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등의 수의계약에 있어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이나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③ 분할발주 금지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으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간 시공 목적물, 시공 시기, 시공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공사의 분할발주 금지는 아래와 같이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항이므로 업무처리 시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감사원 지적사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등을 제외하고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도 □□청 △△지청은 단일 공사인 “○○센터 설치 및 시설공사”(금액: 46,931만 원)를 추진하면서 “○○센터 철거 및 목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금액 계 9,620만 원)하는 등 같은 해 11. 30.부터 같은 해 12. 7. 사이에 위 단일 공사를 17건으로 나누어 1인 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회계질서를 어지럽게 함
  - ➔ □□청 △△지청에 앞으로 동일구조물 및 단일공사를 분할 발주하여 수의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 [2016. 4. 18. “분할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주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도 □□시는 ‘11년 설계한 “▽▽교 확장공사” 계약을 추진하면서 기초 및 교각 등은 ‘12. 6월 △△(주)와 계약을 체결하여 ‘14. 4월 준공하였고, 거더 및 상판공사는 분할하여 ‘13. 1월 ○○(주)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향후 구조물인 ▽▽교 확장공사에 대한 하자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 발생 우려

→ □□시에 앞으로 동일 구조물공사를 분할하여 계약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자와 수의계약을 맺는 일이 없도록 공사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함  
[2015. 4. 6.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위반 및 수의계약 부적정”(주의)]

#### ④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지방계약에서는 국가계약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방계약법 제33조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국가계약의 경우 계약법령에서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를 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5조의5에서 다음과 같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수의계약을 체결 제한사항

-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고위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됨
-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됨
-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됨

#### 유권해석

□ 신고 등 자격없는 자와 수의계약 가능 여부

- Q.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호에 의한 방역, 소독 등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경우에 소독업 신고증이 없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A.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에 제13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증명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
  - 질의와 관련하여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하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자를 수의계약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함【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540, '20.3.30.】

□ 견적제출 후 계약을 포기한 자를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Q.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공고 후 견적을 제출한 1~4순위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포기한 경우 모두 수의계약 배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 A.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⑥에 따르면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자는 수의계약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요령 제3절 “1-나-12)”에 따르면 선순위 견적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사업기간, 견적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따라서, 수의계약에서 1순위 견적자가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차순위자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지 새롭게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할지는 임의적인 사항이므로 1순위 견적자가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나 2순위부터는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954, '18.2.23.】

감사원 지적사례

□ 수의계약 체결 제한자에 대한 계약업무 등 부당처리

**결정 요지**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면서 제재 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하거나 제한기간을 임의로 단축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들에 징계·주의 요구

**결정 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인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방의회 의원 등과의 관련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하게 특혜를 주지 않도록 주지

**관련 규정** 지방계약법 제33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등

【☆☆☆구 등 6개 기관 중점분야 기관운영감사, '18.5월 시행】

## 제4절

### 입찰·낙찰자 결정방법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에서는 적격심사낙찰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그 외에도 종합심사낙찰제(지방계약은 종합평가낙찰제), 희망수량경쟁입찰,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계약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두고 있다.

이를 공사·물품·용역 및 국가·지방계약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므로 계약담당자는 추진하고자 하는 계약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적합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표 57] 낙찰자 결정방법의 적용대상 및 개념

구분	적용대상				개념
	공사	물품 구매	물품 제조	용역	
적격심사 낙찰제	해당	해당	해당	해당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종합심사 (평가)낙찰제	해당		해당	해당	▶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대형 일괄입찰 공사 (턴키입찰)	해당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입찰기본계획 등에 따라 입찰시에 설계서 등을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계약 대안입찰	해당				▶ 원안입찰과 함께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
기술제안 입찰	해당				▶ 발주기관이 교부한 기본·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희망수량 경쟁입찰		해당	해당		▶ 다량의 수요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구매하고자 할 경우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2단계 경쟁입찰 (규격가격 동시입찰)		해당	해당	해당	▶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적격자에 한해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구분	적용대상			개념
	공사	물품 구매	물품 제조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해당	해당	해당	▶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 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을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해당	해당	해당	▶ 시장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등 계약목적물의 세부 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기술적 대화를 통하여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을 조정·확정하고 평가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종합낙찰제)	해당	해당		▶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유사물품의 복수경쟁	해당			▶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설계공모			해당	▶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용역을 할 때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그리고 각 낙찰자 결정방법의 요건 및 근거법령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각 결정방법별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표 58] 낙찰자 결정방법의 요건 및 근거법령

구분	요건	근거법령
1. 적격심사 낙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계약의 원칙적인 낙찰제도 (공사) 추정가격 100억 원(국가), 300억 원(지방) 미만인 공사계약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계약 ※ 소액수의계약 대상도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적격심사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계약법 시행령 42조 1항, 「적격심사기준」</li> <li>지방계약법 시행령 42조 1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4장,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li> </ul>
	2. 공사에 적용되는 낙찰방법	
대형공사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정가격 100억 원(국가), 300억 원(지방) 이상의 공사</li> <li>문화재 수리공사</li> <li>(국가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정가격 2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용역</li> <li>-추정가격 15억 원 이상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기본설계 용역</li> <li>-추정가격 25억 원 이상 실시설계 용역</li> </ul> </li> <li>(지방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물품제조·용역</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계약법 시행령 42조 4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li> <li>지방계약법 시행령 42조 1항 1호, 42조의3,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일괄입찰 (턴키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의 공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계약법 시행령 78~92조,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조달청 예규)</li> <li>지방계약법 시행령 94~10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대안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의 공사</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기술제안 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계약법 시행령 97~109조,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조달청 예규)</li> <li>지방계약법 시행령 126~13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li> </ul>
3. 물품, 용역에 적용되는 낙찰방법		
희망수량 경쟁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그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 제조·구매</li> <li>1인의 능력으로는 그 매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매각할 경우</li> <li>수인의 공급자 또는 매수자와 분할계약하는 것이 가격·품질 기타 조건에 있어서 국가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 제조·구매·매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계약법 시행령 17조, 45조, 46조, 시행규칙 12조, 19~21조, 47조</li> <li>지방계약법 시행령 17조, 46조, 47조, 시행규칙 19~21조</li> </ul>

구분	요건	근거법령
(2) 2단계 경쟁입찰 (규격·가격 동시 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li> <li>■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계약법 시행령 18조, 42조 3항, 시행규칙 23조의3</li> <li>▶ 지방계약법 시행령 18조, 42조 1항 3호, 시행규칙 23조의2</li> </ul>
(3) 협상에 의한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 지식기반산업 우선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계약법 시행령 43조, 43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li> <li>▶ 지방계약법 시행령 43조, 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li> </ul>
(4)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li> <li>■ 물품·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li> <li>■ 상용화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li> <li>■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계약법 시행령 43조의3,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li> <li>▶ 지방계약법 시행령 44조의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li> </ul>
(5)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종합낙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에 따라 품질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 등 - ① 에너지 소비효율 평가제품 ② 환경우월성기준 적용제품 ③ 환경우월성기준 확대적용제품 으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 경우에 해당되는 펄프 등 15개 품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계약법 시행령 44조, 시행규칙 42조 6항, 44조, 46조</li> <li>▶ 지방계약법 시행령 45조, 시행규칙 40조 5항, 44조</li> <li>▶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조달청 훈령)</li> </ul>
(6) 유사물품의 복수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계약법 시행령 25조</li> <li>▶ 지방계약법 시행령 24조</li> </ul>
(7) 설계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용역 (공사 설계용역, 물품제조 디자인용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li> <li>▶ 지방계약법 제13조 2항 3호, 시행령 42조의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li> </ul>

### 1. 적격심사낙찰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국고 또는 지방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있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적격심사낙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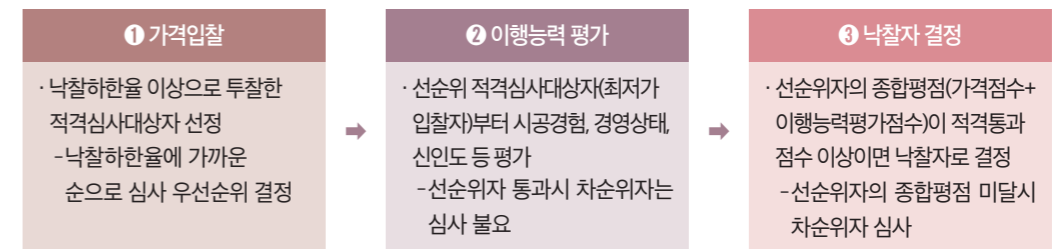
이 제도는 최저가낙찰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입찰가격이

적정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으로써 계약 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하여 낙찰되는 것을 예방하고 계약이행의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1995년 국가계약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고, 지방계약에서는 2005년 제정된 지방계약법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었다.

#### (1) 제도의 이해

적격심사낙찰제는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②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가격점수와 이행능력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③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즉, 가격 외에 이행능력을 함께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가격입찰을 통해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낙찰하한율’에 근접한 최저가 입찰자부터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가격점수+이행능력평가점수)이 ‘적격통과점수<sup>1)</sup>’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면 다시 차순위 가격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하는 방식이다. 이 때 주의할 것은 입찰자들에 대하여 가격과 이행능력을 모두 평가한 후 합산점수(종합평점)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서 최저가격이라 함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단순히 가장 낮은 입찰금액이 아니고 ‘적격통과점수’를 획득하기 위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의미하며, 이는 적격심사제도가 최저가낙찰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래의 ‘입찰가격

1)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점수로서, 국가계약은 별도의 용어 정의 없이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점수' 또는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로 언급되어 있으나 지방계약에서는 이를 '적격통과점수'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어 편의상 지방계약상 용어를 사용하기로 함

평가산식'에서 볼 수 있듯이 입찰가격을 너무 높거나 낮게 쓰면 오히려 평가점수가 낮아지는 구조의 심사방식을 정한 것이다.

적격심사 과정에 사용되는 '낙찰하한율'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heck! 낙찰하한율

낙찰하한율의 개념

□ 낙찰하한율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무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입찰가격을 제외한 비가격요소(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의 평점이 만점임을 전제로 했을 때 최저가격으로 낙찰이 가능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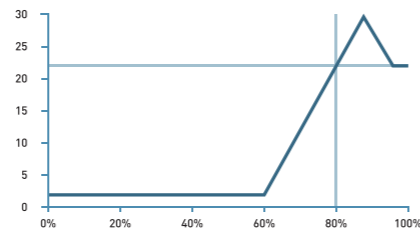
- 적격심사시 낙찰하한율은 적격통과점수(92점 또는 95점)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결정된다.
- 예를 들어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수행능력 평점과 입찰가격 평점의 배점한도는 각각 70점과 30점이고 적격통과점수는 92점이다.
- 이 경우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르면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8%인 경우 30점 만점을 주고, 그 미만(또는 초과)인 경우 1%당 1점씩 감점을 한다.
- 다만,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의 96% 이상인 경우는 평점 22점, 최저 평점은 2점을 부여하므로 입찰가격 비율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결정된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text{평점(점)} = 30 - \left|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A}{\text{예정가격}-A} \right) \times 100 \right|$$

\*A: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비율별 입찰가격 평점



□ 이때 적격통과점수 92점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수행능력 평점이 70점 만점이라도 입찰가격 평점이 22점 이상이어야 하는데,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대비 79.995% 이상인 경우에만 22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 \* 79.995% : 위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평점에 22점을 넣고 (입찰가격-A/예정가격-A)을 구한 값
- 따라서, (입찰가격-A)값이 (예정가격-A)값 대비 79.995%에 미치지 못하면 공사수행능력 평점과 관계없이 낙찰될 수 없게 되는데 해당 비율을 낙찰하한율이라고 한다.
-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공사 규모별 낙찰하한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용역·물품계약의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 배점, 적격통과점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관련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여기서 설명한 방식으로 낙찰하한율을 산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표 59] 공사규모별 낙찰하한율

공사규모 (추정가격)	평점한도		적격 통과 점수 (b)	낙찰 하한율 (%)	입찰가격 평점산식	비고
	공사수행 능력(a)	가격				
100억 원~ 300억 원 (지방계약만)	70	30	92	79.995 <sup>1)</sup>	22점 <sup>2)</sup> = 30 - $\left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A}{\text{예정가격}-A} \right) \times 100 \right $	1%당 1점 감점
50억 원~ 100억 원	50	50	95	85.495	45점 = 50 - 2 × $\left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A}{\text{예정가격}-A} \right) \times 100 \right $	1%당 2점 감점
10억 원~ 50억 원	30	70		86.745	65점 = 70 - 4 × $\left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A}{\text{예정가격}-A} \right) \times 100 \right $	1%당 4점 감점
3억 원~ 10억 원	20	80	87.745	75점 = 80 - 20 × $\left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A}{\text{예정가격}-A} \right) \times 100 \right $	1%당 20점 감점	
3억 원 미만	10	90	87.745	85점 = 90 - 20 × $\left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A}{\text{예정가격}-A} \right) \times 100 \right $	1%당 20점 감점	

주: 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평점이 22점일 경우의 (입찰가격/예정가격)을 구한 값  
2) 입찰가격 평점 22점은 적격통과점수(b)에서 공사수행능력 점수(a)를 뺀 값임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88%의 의미

- 왜 예정가격의 88%로 입찰했을 때 입찰가격 평가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일까? 88%의 정확한 산정 근거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이는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비율이 너무 낮으면 부실공사 등이 우려되고 너무 높으면 예산절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정가격의 88%를 적절한 수준으로 보아 정책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에 따른 낙찰하한율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을 제외한 비가격요소의 평점이 만점임을 전제로 했을 때 최저가격으로 낙찰이 가능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을 의미하나 뒤에서 설명할 적격심사 항목 중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시 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를 적용하여 비가격요소 평점이 만점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 따라서 [표 83]의 50억 원 이상 A~D등급 교량·터널공사 등은 아래와 같이 난이도계수에 따른 낙찰하한율을 별도로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그 경우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에서 만점에 부족한 점수만큼 낙찰률이 상승하게 된다.

[표 60] 난이도계수에 따른 낙찰하한율(조달청)

공사 규모 (추정 가격)	평점 한도		적격 통과 점수 (a)	낙찰 하한율 (%)	50억 원 이상 교량·터널공사 등의 난이도계수 적용에 따른 낙찰하한율				입찰가격 평점산식	난이도 계수에 따른 낙찰 하한율 (%)	
	공사 수행 능력	가격			난이도 계수	난이도 계수에 따른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최대 평점	난이도계수 적용 최대 평점	공사 수행 능력			가격
100억 미만 50억 이상	50	50	95	85.495	0.90	1	10	50	50	$45 = 50 - 2 \times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A}}{\text{예정가격-A}} \right) \times 100$	85.495
					0.95					$45.5 = 50 - 2 \times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A}}{\text{예정가격-A}} \right) \times 100$	85.745
					0.90					$46 = 50 - 2 \times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A}}{\text{예정가격-A}} \right) \times 100$	85.995
					0.85					$46.5 = 50 - 2 \times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A}}{\text{예정가격-A}} \right) \times 100$	86.245
					0.80					$47 = 50 - 2 \times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A}}{\text{예정가격-A}} \right) \times 100$	86.495

주: 1. 입찰가격 평점 22점은 적격통과점수(a)에서 공사수행능력 점수(b)를 뺀 값임  
 2.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평점이 45점일 경우의 (입찰가격-A/예정가격-A)을 구한 값

[표 61] 난이도계수에 따른 낙찰하한율(지방계약)

공사 규모 (추정 가격)	평점 한도		적격 통과 점수 (a)	낙찰 하한율 (%)	50억 원 이상 교량·터널공사 등의 난이도계수 적용에 따른 낙찰하한율				입찰가격 평점산식	난이도 계수에 따른 낙찰 하한율 (%)	
	공사 수행 능력	가격			난이도 계수	난이도 계수에 따른 자재와 인력 조달 가격의 적정성 최대 평점	난이도계수 적용 최대 평점	공사 수행 능력			가격
300억 미만 100억 이상	70	30	92	79.995	0.90	1	14	70	30	$22^{1)} = 30 -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A}}{\text{예정가격-A}} \right) \times 100$	79.995 <sup>2)</sup>
					0.95					$22.7 = 30 -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A}}{\text{예정가격-A}} \right) \times 100$	80.695
					0.90					$23.4 = 30 -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A}}{\text{예정가격-A}} \right) \times 100$	81.395
					0.85					$24.1 = 30 -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A}}{\text{예정가격-A}} \right) \times 100$	82.095
					0.80					$24.8 = 30 -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A}}{\text{예정가격-A}} \right) \times 100$	82.795
100억 미만 50억 이상	50	50	95	85.495	0.90	1	10	50	50	$45 = 50 - 2 \times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A}}{\text{예정가격-A}} \right) \times 100$	85.495
					0.95					$45.5 = 50 - 2 \times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A}}{\text{예정가격-A}} \right) \times 100$	85.745
					0.90					$46 = 50 - 2 \times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A}}{\text{예정가격-A}} \right) \times 100$	85.995
					0.85					$46.5 = 50 - 2 \times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A}}{\text{예정가격-A}} \right) \times 100$	86.245
					0.80					$47 = 50 - 2 \times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A}}{\text{예정가격-A}} \right) \times 100$	86.495

주: 1. 입찰가격 평점 22점은 적격통과점수(a)에서 공사수행능력 점수(b)를 뺀 값임  
 2.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평점이 22점일 경우의 (입찰가격-A/예정가격-A)을 구한 값

※ 참고자료 서울특별시의 “2021년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실무 매뉴얼”에 정리된 계약목적물·금액별 낙찰하한율(추정가격 기준)

구분	유형	하한율	구분	유형	하한율	
공사	·300억 미만 100억 이상	79.995	중기부 물품	·가점 0.2	87.945	
	·100억 미만 50억 이상	85.495		수출 우수기업		
	·50억 미만 30억 이상	86.745		·가점 0.1		
	·30억 미만 10억 이상	86.745		수출우수기업		
	·10억 미만 3억 이상	87.745				
	·3억 미만 2억 이상	87.745				
	·2억 미만	87.745				
행정안전부 기술용역	·30억 이상	79.995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00억 이상	72.995	
	·30억 미만 10억 이상	79.995		·100억 미만 30억 이상	77.995	
	·10억 미만 5억 이상	85.495		·30억 미만 15억 이상	82.995	
	·5억 미만	86.745		·15억 미만 5억 이상	85.495	
	·30억 이상	79.995		·5억 미만 2억 이상	86.745	
	·30억 미만 10억 이상	79.995		·2억 미만	87.745	
	·10억 미만 5억 이상	85.495		일반폐기물처리용역	·30억 이상	72.995
	·5억 미만 2억 이상	86.745			·30억 미만 10억 이상	77.995
	·2억 미만 1억 이상	87.745			·10억 미만 5억 이상	85.495
	·1억 미만	87.745			·5억 미만 2억 이상	86.745
					·2억 미만	87.745
학술용역	·2억 이상	80.495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만 평가시 (금액 관계없이)	87.745	
	·2억 미만 1억 이상	80.495		·30억 이상	72.995	
	·1억 미만	80.495		·30억 미만 10억 이상	77.995	
물품	·10억 이상	80.495	일반용역	·10억 미만 5억 이상	85.495	
	·10억 미만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1억) 이상	80.495		·5억 미만 2억 이상	86.745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1억) 미만	84.245		·2억 미만	87.745	
	·간행물평가기준	89.995				
중기부 물품	·10억 이상	87.995				
	일반기업	·10억미만 고시금액 이상	87.995	단순노무는 금액 관계없이 87.745		
		·고시금액 미만	87.995			

※ 상기 낙찰하한율을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적격심사 기준 원문의 입찰산식 확인 필요

(2) 적용대상 및 심사절차

① 적용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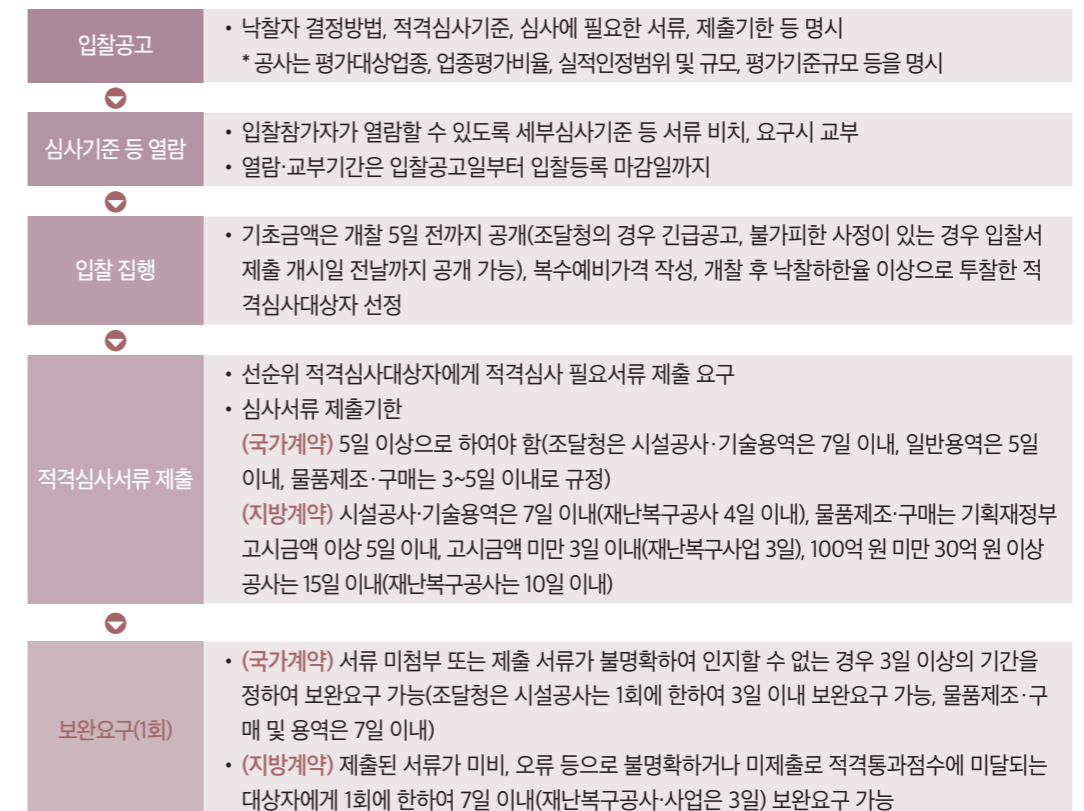
적격심사 적용대상을 살펴보면,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국가)종합공사 4억 원, 전문공사 2억 원, 그 밖의 공사 1억 6천만 원, (지방)종합공사 2억 원, 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공사 8천만 원) 초과, 100억 원(국가), 300억 원(지방)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고, 물품제조·구매 및 용역은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물품제조·구매 및 용역계약에 적용된다.

단, 소액수의계약 대상이라 하더라도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입찰에 부칠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심사절차

적격심사의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7] 적격심사 세부 절차



적격심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3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li> <li>* 지방계약의 재난복구공사·사업은 4일 이내에 심사, 2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li> <li>* 지방계약은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의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자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li> </ul>
낙찰자 결정·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의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li> <li>- [표 62]와 같은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li> <li>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서면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li> </ul>
재심사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순위자의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후순위자(지방계약만 규정)는 부적격 통보나 낙찰자 결정일(지방계약만 규정)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가능</li> <li>국가계약은 3일, 지방계약은 5일 이내에 재심사 실시</li> </ul>
계약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li> </ul>

### ③ 낙찰자 결정 시 고려사항

낙찰자 결정 시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를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등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이행 과정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처리 방법을 낙찰자 결정과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해보면 [표 62]와 같다.

[표 62] 낙찰자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별 처리방법

구분	처리 방법		
	낙찰자 결정 전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체결 전	계약체결 이후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의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	▶ 낙찰자 결정대상 제외 → 차순위자 심사	▶ 낙찰자 결정 취소 → 차순위자 심사	-
적격심사서류 미제출	▶ 낙찰자 결정대상 제외 → 차순위자 심사 ▶ (지방계약만 해당)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	-
보완·추가서류 미제출로 심사 곤란시	▶ 낙찰자 결정대상 제외 → 차순위자 심사	-	-
보완·추가서류 제출 후에도 적격통과점수 미달	▶ 낙찰자 결정대상 제외 → 차순위자 심사	-	-

구분	처리 방법		
	낙찰자 결정 전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체결 전	계약체결 이후
업체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 (국가계약) 낙찰자 결정대상 제외 → 차순위자 심사 ▶ (지방계약) 적격심사 대상 <sup>주)</sup> 제외 → 차순위자 심사 * 부도는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포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 (국가계약) 해당 구성원 제외,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 (지방계약) 해당 구성원 제외,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미배분	-
	낙찰자	-	▶ 낙찰자 결정 취소 → 차순위자 심사
	계약업체	-	▶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적격심사서류 부정 행사, 위조·변조·허위 작성	▶ 낙찰자 결정대상 제외 → 차순위자 심사 ▶ 입찰참가자격 제한	▶ 낙찰자 결정 취소 → 차순위자 심사 ▶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 해제·해지 ▶ 입찰참가자격 제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를 할 때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닐 경우	-	-	▶ 계약 해제·해지 ▶ 입찰참가자격 제한

주: '적격심사 대상 제외'는 모든 입찰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낙찰하한을 이상으로 투찰한 적격심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낙찰자 결정대상 제외'와 차이가 있음

### (3) 적격심사기준

국가계약의 「적격심사기준」은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물품 및 용역에 대한 기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공사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를 준용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에 따라 조달청 등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물품·용역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 1월 현재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적격심사’로 검색되는 행정규칙은 [표 63]과 같다.

[표 63] 국가계약의 적격심사기준

행정규칙명	행정규칙 종류
■ 「적격심사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공고
■ 「조달청 임대차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국방부 훈령
■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국방부 훈령
■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국방부 훈령
■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국방부 훈령
■ 「국외조달 적격심사기준」	방위사업청 예규
■ 「국제운송 적격심사기준」	방위사업청 예규
■ 「물품 적격심사 기준」	방위사업청 예규
■ 「수상함 적격심사 기준」	방위사업청 예규
■ 「수중함 적격심사기준」	방위사업청 예규
■ 「용역 적격심사기준」	방위사업청 예규
■ 「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기준」	방위사업청 예규
■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방위사업청 예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방위사업청 예규
■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산업자원부 훈령
■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정보통신부 예규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문화재청 고시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산림청 예규
■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국토교통부 훈령
■ 「용역적격심사기준」	국토지리정보원 예규
■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에 관한 적격심사 지침」	우정사업본부 예규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환경부 고시
■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한편, 지방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시설공사, 기술용역 및 물품에 대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아래 서울특별시의 사업별 적격심사기준 사례와 같이 다양한 적격심사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표 64] 서울특별시 사업별 적격심사기준

구분	적용기준	
공사	턴키-대안입찰	조달청 기준 적용
	종합평가 낙찰제(300억 원 이상)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PQ공사(18종)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용역	공사(300억 원 미만)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기술용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학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일반폐기물처리용역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반용역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물품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용역	「서울특별시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상·하수도 검침용역	「서울특별시 상·하수도 검침관련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반물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장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이와 같이 각 기관이 내부 지침 등의 형식으로 적격심사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계약담당자는 필히 해당 계약에 적용되어야 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Check! 적격심사 시 소수점 처리방법

본격적으로 적격심사 방법을 살펴보기에 앞서 평가점수를 계산할 때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

① 국가계약(조달청 기준)

국가계약에서는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8조)

□ 시공비율은 소수점 여섯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

□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에 대하여는 해당분야별 평가의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한다.

□ 기타 평가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올림 한다.

② 지방계약

지방계약에서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시공비율은 백분율(%)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린다.

[예] 83.13%(○), 0.8313→0.83→83%(×)

□ 시공비율 이외의 경우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예1] A등급 150% 이상(8점), B등급 120% 이상 150% 미만(7.2점)인 경영상태 유동비율 평가시 업종평균 유동비율이 132.81%, 해당 업체 유동비율이 199.21%라면  $199.21\% / 132.81\% = 149.9962352\cdots\%$ 이므로 반올림하지 않고 120% 이상 150% 미만 구간인 B등급점수 7.2점으로 산정

[예2]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중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의 일반관리비 배점은 기준율의 100% 이상 1점, 80% 이상 2점이고, 일반관리비율이 4.19%인 입찰에서 입찰자 반영비율이 4.18985...%라면  $4.1899\% / 4.19\% = 99.997613\cdots\%$ 이므로 반올림하지 않고 80% 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점수 2점으로 산정

시공비율·업종평가비율 등의 계산시 버림·반올림 등으로 인하여 그 합계(총계) 등이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합계 등이 초과되는 경우는 올린 수 중 가장 작은 수부터 버리는 방법 등으로 일치시킨다.

□ 합계 등이 미달되는 경우는 버린 수 중 가장 큰 수부터 올리는 방법 등으로 일치시킨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소수점 처리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는 '최근연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방법'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종평가비율(백분율)을 산정할 때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각 평가단계에서는 소수점 여섯째 자리에서 버린다.

(4) 적격심사 항목 및 평가방법

적격심사 항목, 각 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등 적격심사의 세부 기준은 공사·물품·용역별 각 적격심사기준에서 상세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모두 담기에는 한계가 있어 가장 복잡한 공사계약을 기준으로 평가방법 등을 설명하고자 한다.

가. 공사규모·심사항목별 배점기준

공사의 국가계약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적격심사기준」, 지방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심사항목, 배점한도 및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표 65]와 같이 국가계약이나 지방계약 모두 부실공사 시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대형 공사일수록 수행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소규모 공사는 입찰가격 위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65] 조달청의 시설공사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건설공사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전기·정보통신·소방 시설·문화재공사 등	5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8천만 원 이상	8천만 원 미만
계	100	100	100	100	100
수행능력평가	30	30	20	10	10
시공경험	15	15	10	5	-
기술능력	-	-	-	-	-
시공평가 결과	-	-	-	-	-
경영상태	15	15	10	5	10
신인도	±0.9	4~△1	4~△1	4~△1	4~△1
특별신인도	-	-	-	-	2
입찰가격	50	70	80	90	90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10	-	-	-	-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10	-	-	-	-
적격통과점수 (낙찰하한율)	95 (85.495%)	95 (86.745%)	95 (87.745%)	95 (87.745%)	95 (87.745%)
관련 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표 66] 지방계약의 시설공사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일반공사							
건설공사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미만	50억 원 미만	30억 원 미만	10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	2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	50억 원 이상	3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2억 원 이상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수행능력평가	44	30	25	30	20	10	10
시공경험	14	15	15	15	10	5	4.8
기술능력	15	-	-	-	-	-	-
경영상태	15	15	10	15	10	5	5
접근성	-	-	-	-	+0.5 <sup>주)</sup> (5억 미만공사)	+0.5	0.2
신인도	±1.2	±1.2	±1.2	-	-	-	-
특별신인도	-	-	-	-	+1	+1	+1
입찰가격	30	50	70	70	80	90	90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12	10	5~△3	-	-	-	-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14	10	-	-	-	-	-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10	△10	△10	△10	△10	△10
적격통과점수 (낙찰하한율)	92 (79.995%)	95 (85.495%)	95 (86.745%)	95 (86.745%)	95 (87.745%)	95 (87.745%)	95 (87.745%)
관련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1>	<별지2>	<별지3>	<별지4>	<별지5>	<별지6>	<별지7>

주 : ①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와 추정가격 5억 원 이상인 종합·전문공사 제외  
 ②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에 해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는 적용 제외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시·군 제외

재난복구공사						
건설공사	70억 원 미만	50억 원 미만	30억 원 미만	10억 원 미만	5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3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수행능력평가	30	22	27	18	13	13
시공경험	15	15	10	5	5	5
경영상태	15	7	12	8	7.5	7.5
시공여유율	-	-	-	0.5	0.5	0.5
접근성	-	-	-	+0.5	+0.5	+0.5
신인도	±1.2	±1.2	-	-	-	-
특별신인도	-	-	-	+1	+1	+1
입찰가격	50	70	80	85	85	85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10	5~△3	-	-	-	-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7	-	-	-	-	-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3	3	2	2	2	2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 여부	△10	△10	△10	△10	△10	△10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0	△10	△10	△10	△10	△10
적격통과점수 (낙찰하한율)	95 (85.495%)	95 (86.745%)	95 (87.745%)	95 (87.745%)	95 (87.745%)	95 (87.745%)
관련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8>	<별지9>	<별지10>	<별지11>	<별지11>	<별지11>

나. 수행능력평가

적격심사항목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분야는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으로, 여기서는 수행능력 분야의 심사항목인 ①시공경험, ②기술능력, ③경영상태, ④신인도, ⑤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⑥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의 평가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입찰가격 평가방법은 [표 59] “공사규모별 낙찰하한율” 참조)

① 시공경험

국가계약(조달청 기준)과 지방계약의 공사규모별 시공경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지방계약이 국가계약에 비해 심사기준 및 평가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세부 평가방법은 지방계약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표 67] 국가계약의 시공경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규모 (배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15점)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전문업무분야)의 공사실적(금액)(15점)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15점)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100%이상 : 15.0점 D : 50%이상 : 11.0점 B : 85%이상 : 13.7점 E : 30%이상 : 9.7점 C : 70%이상 : 12.4점 F : 30%미만 : 8.2점	▶ 점수 = 실적계수×15 (단, 평점상한은 15점임) *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전문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2) ▶ 단,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는 *토목공사 : 실적계수=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 *건축공사 : 실적계수=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2)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15점)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전문업무분야)의 공사실적(금액)(15점)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15점)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5.0점 D : 45%이상 : 11.0점 B : 65%이상 : 13.7점 E : 30%이상 : 9.7점 C : 55%이상 : 12.4점 F : 30%미만 : 8.2점	▶ 점수 = 실적계수×15.0 (단, 평점상한은 15.0점임) *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전문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

공사규모 (배점)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10점)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전문업무분야)의 공사실적(금액)(10점)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10점)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0.0점 D : 45%이상 : 7.6점 B : 65%이상 : 9.2점 E : 30%이상 : 6.6점 C : 55%이상 : 8.4점 F : 30%미만 : 5.5점	▶ 점수 = 실적계수×10점 (단, 평점상한은 10점임) *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전문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	최근 5년간 공사실적(5점)
3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5점)	-	▶ 점수 = 실적계수×5점 (단, 평점상한은 5점임) * 실적계수 = 공사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2억 원 미만		▶ 특별신인도 가점(2점) : 업종(전문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전문업무 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

[표 68] 지방계약의 시공경험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규모 (배점)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 (14점)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14점) [유형1]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14점) [유형2]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10% 이상 : 14.0점 B: 80% 이상 110% 미만 : 12.8점 C: 50% 이상 80% 미만 : 11.6점 D: 20% 이상 50% 미만 : 10.4점 E: 20% 미만 : 9.2점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4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8)  ▶ 등급별 입찰 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의 경우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2)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15점)  «재난복구 공사»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14.3점) [유형1]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0.7점) [유형2]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14.3점 B: 70% 이상 100% 미만 : 12.9점 C: 40% 이상 70% 미만 : 11.4점 D: 20% 이상 40% 미만 : 10.0점 E: 20% 미만 : 8.6점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등급별 입찰 제한 기준에 따른 입찰공사의 경우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2)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공사규모 (배점)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13.5점) [유형1]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1.5점)[유형2]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15점) [유형3]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 (15점)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 100%이상 : 13.5점 B: 70%이상100%미만 : 12.2점 C: 40%이상 70%미만 : 10.8점 D: 20%이상 40%미만 : 9.5점 E: 20%미만 : 8.1점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  ▶ 종합점수=업종별 점수의 합(합) • 업종별점수=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A등급</th> <th>B등급</th> <th>C등급</th> <th>D등급</th> </tr> </thead> <tbody> <tr> <td>평가비율</td> <td>100% 이상</td> <td>90% 이상</td> <td>80% 이상</td> <td>80% 미만</td> </tr> <tr> <td>점수</td> <td>15.0</td> <td>13.0</td> <td>11.0</td> <td>9.0</td> </tr> </tbody> </table> 나) 전문·그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80% 미만	점수	15.0	13.0	11.0	9.0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80% 미만														
점수	15.0	13.0	11.0	9.0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A등급</th> <th>B등급</th> <th>C등급</th> <th>D등급</th> </tr> </thead> <tbody> <tr> <td>평가비율</td> <td>80% 이상</td> <td>70% 이상</td> <td>60% 이상</td> <td>60% 미만</td> </tr> <tr> <td>점수</td> <td>15.0</td> <td>13.0</td> <td>11.0</td> <td>9.0</td> </tr> </tbody> </table>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수	15.0	13.0	11.0	9.0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수	15.0	13.0	11.0	9.0														

공사규모 (배점)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13.5점) [유형1]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1.5점) [유형2]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15점) [유형3]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이상 : 13.5점 B: 70%이상100%미만 : 12.2점 C: 40%이상 70%미만 : 10.8점 D: 20%이상 40%미만 : 9.5점 E: 20%미만 : 8.1점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 ×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재난복구공사는 1.5))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 ▶ 종합점수=업종별 점수의 합(합) • 업종별점수=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30억 원 미만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10억 원 이상 (15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 1>에 따른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및 전문·그밖의 공사에 적용																																
《재난복구 공사》	※ 재난복구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 1>에 따른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및 전문·그밖의 공사 및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실적제한대상 종합건설공사에 적용																																
50억 원 미만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A등급</th> <th>B등급</th> <th>C등급</th> <th>D등급</th> </tr> </thead> <tbody> <tr> <td>평가 비율</td> <td>100%</td> <td>90%</td> <td>80%</td> <td>80%</td> </tr> <tr> <td>(일반 공사)</td> <td>이상</td> <td>이상</td> <td>이상</td> <td>미만</td> </tr> <tr> <td>평가 비율</td> <td>150%</td> <td>140%</td> <td>130%</td> <td>130%</td> </tr> <tr> <td>(재난 복구)</td> <td>이상</td> <td>이상</td> <td>이상</td> <td>미만</td> </tr> <tr> <td>점수</td> <td>15.0</td> <td>13.0</td> <td>11.0</td> <td>9.0</td> </tr> </tbody> </table>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비율	100%	90%	80%	80%	(일반 공사)	이상	이상	이상	미만	평가 비율	150%	140%	130%	130%	(재난 복구)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점수	15.0	13.0	11.0	9.0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비율	100%	90%	80%	80%																													
(일반 공사)	이상	이상	이상	미만																													
평가 비율	150%	140%	130%	130%																													
(재난 복구)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점수	15.0	13.0	11.0	9.0																													
10억 원 이상	나) 전문·그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A등급</th> <th>B등급</th> <th>C등급</th> <th>D등급</th> </tr> </thead> <tbody> <tr> <td>평가 비율</td> <td>80%</td> <td>70%</td> <td>60%</td> <td>60%</td> </tr> <tr> <td>비율</td> <td>이상</td> <td>이상</td> <td>이상</td> <td>미만</td> </tr> <tr> <td>점수</td> <td>15.0</td> <td>13.0</td> <td>11.0</td> <td>9.0</td> </tr> </tbody> </table>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비율	80%	70%	60%	60%	비율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점수	15.0	13.0	11.0	9.0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비율	80%	70%	60%	60%																													
비율	이상	이상	이상	미만																													
점수	15.0	13.0	11.0	9.0																													

공사규모 (배점)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9점) [유형1]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1점) [유형2]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10점) [유형3]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이상 : 9.0점 B: 70%이상100%미만 : 8.1점 C: 40%이상 70%미만 : 7.2점 D: 20%이상 40%미만 : 6.3점 E: 20%미만 : 5.4점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 ▶ 종합점수=업종별 점수의 합(합) • 업종별점수=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10억 원 미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 1>에 따른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 적용																																
30억 원 이상 (10점)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재난복구 공사》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10억 원 미만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A 등급</th> <th>B 등급</th> <th>C 등급</th> <th>D 등급</th> </tr> </thead> <tbody> <tr> <td>실적 인정 기간</td> <td>70% 이상</td> <td>60% 이상</td> <td>50% 이상</td> <td>50% 미만</td> </tr> <tr> <td>평가 비율</td> <td>4년 이상</td> <td>4년 이상</td> <td>4년 이상</td> <td>4년 미만</td> </tr> <tr> <td>실적 인정 기간</td> <td>60% 이상</td> <td>50% 이상</td> <td>40% 이상</td> <td>40% 미만</td> </tr> <tr> <td>4년 미만</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점수</td> <td>10.0</td> <td>9.0</td> <td>7.0</td> <td>6.0</td> </tr> </tbody> </table>			구분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실적 인정 기간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50% 미만	평가 비율	4년 이상	4년 이상	4년 이상	4년 미만	실적 인정 기간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0% 미만	4년 미만					점수	10.0	9.0	7.0	6.0
구분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실적 인정 기간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50% 미만																													
평가 비율	4년 이상	4년 이상	4년 이상	4년 미만																													
실적 인정 기간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0% 미만																													
4년 미만																																	
점수	10.0	9.0	7.0	6.0																													

공사규모 (배점)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최근 10년간 동일 실적(5점) [유형1]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5점) [유형3]																										
3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5점)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이상 : 5.0점 B: 70%이상100%미만 : 4.6점 C: 40%이상 70%미만 : 4.1점 D: 20%이상 40%미만 : 3.7점 E: 20%미만 : 3.2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 1>에 따른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 적용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  ● 종합점수=업종별 점수의 합(합) ● 업종별점수=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재난복구 공사》 3억 원 미만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A</th> <th>B</th> <th>C</th> <th>D</th> </tr> <tr> <th>등급</th> <th>등급</th> <th>등급</th> <th>등급</th> <th>등급</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평가 비율</td> <td>실적 인정 기간 4년 이상</td> <td>60% 이상</td> <td>50% 이상</td> <td>40% 이상</td> <td>40% 미만</td> </tr> <tr> <td>실적 인정 기간 4년 미만</td> <td>50% 이상</td> <td>40% 이상</td> <td>30% 이상</td> <td>30% 미만</td> </tr> <tr> <td>점수</td> <td>5.0</td> <td>4.0</td> <td>3.0</td> <td>2.0</td> </tr> </tbody> </table>	구분	A	B	C	D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평가 비율	실적 인정 기간 4년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0% 미만	실적 인정 기간 4년 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점수	5.0	4.0	3.0	2.0
구분	A	B	C	D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평가 비율	실적 인정 기간 4년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0% 미만																							
	실적 인정 기간 4년 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점수	5.0	4.0	3.0	2.0																								
2억 원 미만 (4.8점)		점수 = 3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시공 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8/5																										

위 표와 같이 지방계약의 시공경험 평가방법은 공사 규모에 따라 다르나, 기본적으로 3가지 유형([유형 1] 동일 종류 공사실적, [유형 2] 업종별 실적계수, [유형 3] 업종별 등급실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유형별 세부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유형 1]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평가

▶ 평가방법 및 기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공사의 금액이 아닌 **규모 또는 양**([예시] km, m, m<sup>3</sup>, kg, 개, M, 개소 등)을 의미하고, 공사의 특성상 규모·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액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등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가방법

■ 단일 업체

$$\frac{\text{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합계}}{\text{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times 100 \rightarrow \text{등급에 해당하는 점수}$$

■ 공동수급체

$$\frac{A\text{업체(최근 10년간 동일실적}\times\text{시공비율)}+B\text{업체(최근 10년간 동일실적}\times\text{시공비율)}+\dots}{\text{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times 100 \rightarrow \text{등급에 해당하는 점수}$$

■ 등급별 점수(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 기준)

- A: 110% 이상 : 14.0점      D: 20% 이상 50% 미만 : 10.4점
- B: 80% 이상 110% 미만 : 12.8점      E: 20% 미만 : 9.2점
- C: 50% 이상 80% 미만 : 11.6점

☞ 평가기준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공사실적(규모·양)을 말함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 발주기관이 실적으로 인정하려는 1건 공사의 하한실적(규모·양)을 말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규모를 원칙으로 함. 즉, 발주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라 하더라도 인정규모보다 적은 규모의 공사는 평가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에서 제한한 규모의 70%까지 하향 조정 가능하고 하향 조정시 입찰공고에 명시)
- **평가기준규모** : 발주기관이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정한 기준물량·규모로 발주하려는 공사의 규모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 (해당공사 규모의 70%까지 하향 조정 가능하고 하향 조정시 입찰공고에 명시)

☞ 평가사례

■ 단일 업체

- 전체 공사규모 : 100만㎡ 준설(추정가격 150억 원)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시공실적) : 준설실적 30만㎡ 이상
- \*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이 원칙, 필요시 1배까지 가능
-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 100만㎡,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 30만㎡
- A업체의 동일한 종류의 모든 공사실적 : a공사 20만㎡, b공사 30만㎡, c공사 40만㎡
- 평가대상이 되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b공사 30만㎡ + c공사 40만㎡ = 70만㎡
- \* a공사(20만㎡)는 인정규모(30만㎡) 미만이므로 제외
- 계산 결과

$$\frac{70\text{만}\text{㎡}}{100\text{만}\text{㎡}} \times 100 = 70\% \rightarrow \text{C등급}(50\% \text{ 이상 } 80\% \text{ 미만})\text{에 해당되므로 } 11.6\text{점}$$

■ 공동수급체

- 전체 공사규모 : 100만㎡ 준설(추정가격 150억 원)
- 입찰참가방식 : A업체 60%, B업체 40%의 공동이행방식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시공실적) : 준설실적 20만㎡ 이상
- \*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이 원칙, 필요시 1배까지 가능
-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 100만㎡,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 20만㎡
- 동일한 종류의 모든 공사실적 :
- A업체 : a공사 40만㎡, b공사 30만㎡, c공사 10만㎡
- B업체 : d공사 5만㎡, e공사 20만㎡, f공사 30만㎡
- 평가대상이 되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 A업체 : a공사 40만㎡, b공사 30만㎡(인정규모 미만인 c공사 제외)
- B업체 : e공사 20만㎡, f공사 30만㎡(인정규모 미만인 d공사 제외)
- 계산 결과

$$\frac{\text{A업체}(70\text{만}\text{㎡} \times 0.6) + \text{B업체}(50\text{만}\text{㎡} \times 0.4)}{100\text{만}\text{㎡}} \times 100 = 62\% \dots \rightarrow \text{C등급에 해당되므로 } 11.6\text{점}$$

▶ 실적 증명 및 인정방법

시공실적은 별도로 정한 서식인 '실적증명서'에 따라 관련 협회나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국외공사실적은 해외건설협회의 확인서나 증명서)로 심사하고, 외국인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에 관하여는 다음에 따른 방법으로 심사한다.

- ☞ 외국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에 대한 실적증명(「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1호 바목)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건설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로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발행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거나 자기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감리자가 발행하고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이 확인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유권해석

□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평가 시 최근 5년의 판단 기준

- Q. 도로개설공사 관련 최근 5년간 실적평가에 있어 2013~2016년(4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를, 2017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을 인정할 수 있는지?
- A.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II-1-가' 및 'II-2-가'에 따르면 관련 협회에서 실적 관리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지하수협회 등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 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5년간) 업종별 실적증명서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가 있으나 업체가 실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

□ 최근 3년간의 시공실적 중 일부 누락된 실적을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 시 인정 여부

- Q.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최근 3년간의 시공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2018년도 실적 중 일부를 누락하여 관련 협회에 신고하고 누락된 실적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 A.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II'에 따르면 관련 협회에서 실적 관리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 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 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5년간) 업종별 실적증명서로 평가하며, 1회계연도 내의 실적에 누락신고분이 있는 업체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만으로 평가한다고 규정
- 따라서 제출한 실적 중 1회계연도(2018년) 내의 실적에 일부 누락분이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에서 발급 받은 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830, '20.11.11.】

□ 적격심사 시 공사실적으로 물품과 시공비 합산 실적의 인정 여부

Q. 입찰공고 시 적격심사 실적 인정 범위를 최근 3년 이상 해당 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으로 평가한다고 명기하였으나 적격심사 대상업체에서 공사실적증명서에 물품대와 시공비를 합하여 '납품 및 시공액'으로 제출하고 실적 인정을 주장하는데 이를 인정해야 하는지?

A. 공사계약과 물품계약은 적용 법령과 계약 이행방법 및 절차 등이 다르므로 공사계약에 따른 자재 등의 납품·설치를 물품실적으로 사용하거나 물품계약에 따른 자재 등의 납품·설치를 공사실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동일한 이행경험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사계약서에 따라 이행하여 준공이 완료된 공사실적만을 인정하여 평가하여야 함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130, '17.6.21.】

□ 내부 규정을 근거로 위임·귀속한 용역실적의 인정 여부

Q. ○○국립대학교 내부 규정에서 "○○국립대학교의 연구소가 수행한 실적은 산학협력단에 위임·귀속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용역 입찰에 참가한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해당 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A. 용역의 이행 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해당 입찰자가 입찰공고문의 용역과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준공 완료한 용역 실적을 평가하고, 예외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거나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82, '17.2.7.】

한편, 평가기준에서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이라고 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은 1건의 동일한 용도의 단일구조물(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인공구조물 포함))로서 해당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란 시공실적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동일구조물을 말한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를 정하고 있는 점(국가계약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이나 유권해석 사례 등으로 볼 때 동일한 종류의 실적은 명칭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용도나 종류의 공사라면 이를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입찰 및 계약시 금지해야 할 사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예) 하수관거공사 입찰에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의 하수관거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예) 농공단지조성공사 입찰에 공업단지·주택단지 조성공사의 실적을 제외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유권해석

□ 설계용역에 대한 동일실적 인정 범위

Q. 선박설계용역 입찰 공고 시 "최근 10년 이내 총톤수 25톤 이상의 소방정 설계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최근 5년 이내 총톤수 25톤 이상, 최고속도 25노트 이상의 선박설계실적"을 보유한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을 경우 선박에 대한 인테리어 및 개보수 설계실적을 동일한 종류의 선박설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A.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별표 2> '1-주1)-가'에 따르면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는 발주용역과 용역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용역실적을 의미함  
- 따라서 질의의 경우 선박제조 설계실적과 선박 인테리어 및 개보수 설계실적은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1576, '15.4.17.】

한편, 동일 종류의 실적이 1건의 실적 속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는 1건의 실적에 인정되는 실적 규모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을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기타 실적 인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는 공동도급, 하도급, 부분시공 등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한 시공실적 심사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동도급으로 시공한 실적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의 기본요소(경간·접안능력·높이·주차장·기계실 등)는 구성원 각각 모두 인정하되, 시공규모·양 등은 출자비율(지분율)을 곱한 실적으로 인정

**기본요소의 의미**

□ 교량공사(L=100m, 경간 50m)를 공동이행방식으로 A사(60%)와 B사(40%)가 시공한 경우  
 → A사 실적은 L=60m, 경간 50m, B사 실적은 L=40m, 경간 50m로서 경간 50m는 A사와 B사 모두에게 각각 인정된다

-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이행한 실적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주 공사)
    -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자의 시공실적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자의 시공실적을 가산하여 인정
    - 주계약자인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 → 다른 전문건설업자의 시공 실적의 2분의 1을 주계약자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
    -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자가 다른 종합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 → 다른 종합건설업자의 시공실적 2분의 1을 주계약자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
    - 주계약자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 →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을 각각 실적으로 인정
- ※ 2020년 12월 31일 이전 발주 건의 경우 실적 인정 시 차이가 있으므로 규정 확인 필요

**공사 하도급 실적인정(2021년 1월 1일 이후 발주 공사)**

-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도급받아 종합건설사업자에 하도급 → 원도급자는 전체실적을, 하수급자는 하도급 부분 실적만 인정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도급받아 종합건설사업자에 하도급 → 원도급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가산하여 인정
  -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전문건설사업자에 하도급 → 원도급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가산하여 인정
  -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건설사업자가 전문건설사업자에 재하도급 → 하수급자는 재하도급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가산하여 인정
  - 전기공사 등 기타공사의 하도급 → 원도급자는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 실적만, 하수급자는 하도급 부분 실적만 인정
- ※ 2020년 12월 31일 이전 발주 건의 경우 실적 인정 시 차이가 있으므로 규정 확인 필요

**연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인정**

- 동일구조물 공사를 연차별로 계약하여 준공한 계속공사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마지막 연차의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전체 연차의 시공분 중 동일한 용도의 구조물을 1건 실적으로 인정. 이 경우 각 단위구조물별로 공사규모와 준공금액이 명시된 시공실적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 (여기서 위 계속공사라 함은 지방계약법 제24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공사를 의미함)

**장기계속공사(계속비 공사)의 실적인정**

-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와 계속비 공사는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나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 중인 시설물은 그 부분을 실적으로 인정

**[유형 2] 해당 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공사실적(실적계수)으로 평가**

업종별 실적은 공사물량이 아니라 공사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평가방법(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 기준)**

평가점수 = A업종 점수 + B업종 점수 + C업종 점수

단일업체 : 실적계수	$\frac{\text{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text{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times 1.8}$	$\times 14\text{점} \times \text{업종평가비율}^*$
공동수급체 : 실적계수	$\frac{(a\text{업체 실적금액} \times \text{시공비율}) + (b\text{업체 실적금액} \times \text{시공비율})}{\text{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times 1.8}$	$\times 14\text{점} \times \text{업종평가비율}^*$

\* 업종평가비율 =  $\frac{\text{해당 업종별 추정가격}}{\text{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의 합계금액}}$

※ 업종평가비율은 복합 업종인 경우에 사용하며 단일 업종인 경우에는 업종평가비율이 100% 이므로 사실상 '실적계수×배정'이 평가점수임

**평가대상업종**

- 평가대상 업종은 발주하는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평가하려는 공사 관련 법령상 업종(業種)을 말함(토목·건축·조경·산업·환경설비·전문·전기·정보통신 등)
- 평가대상 업종이 동일 법령 내 업종 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업종별 평가비율에 따라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

예)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A업체)와 조경공사(B업체)가 복합되는 경우 평가방법  
 → (A업체 토목공사 실적평가 점수×업종평가비율)+(B업체 조경공사 실적평가 점수×업종평가비율)

-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업종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업종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에서 제외 가능. 다만, 제외대상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제외하는 업종의 합산비율은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공사에 해당하는 동일 법령 내 업종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은 평가에서 제외 가능

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조경공사와 「전기공사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가 복합된 경우 전기 공사는 제외하고 평가 가능



-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업종”과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고, 다만, 복합 업종 중 일부 업종만 평가하는 경우는 평가대상 업종만을 대상으로 “업종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추가 명시해야 함

예) A업체 토목 30%, B업체 조경 30%, C업체 소방 30%로서 소방공사를 제외하고 평가하는 경우  
업종평가비율은 A업체 50%, B업체 50%가 됨

☞ **평가사례(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 기준)**

■ **단일 업체**

- 공사명 : ▲▲공원 조성공사(3개 공종 복합공사)
- 추정가격 : 100억 원(토목 70억 원, 조경 20억 원, 전기 10억 원)
- 입찰참가업체 : 토목 등 관련 업종의 면허를 모두 보유한 A업체에서 입찰참가
- 업종평가비율 : 토목 70%(70억/100억), 조경 20%(20억/100억), 전기 10%(10억/100억)
- A업체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 토목 150억 원, 조경 15억 원, 전기 12억 원
- 계산 결과 : 토목 9.8점 + 조경 1.1667점 + 전기 0.9333점 = 11.9점

☞ 계산값은 1.19048이나 실적계수는 1을 넘지 않으므로 1임

- 토목 :  $[150억 원 \div (70억 원 \times 1.8)] \times 14점 \times 70\% = 9.8$
- 조경 :  $[15억 원 \div (20억 원 \times 1.8)] \times 14점 \times 20\% = 1.1667$
- 전기 :  $[12억 원 \div (10억 원 \times 1.8)] \times 14점 \times 10\% = 0.9333$

■ **공동수급체**

- 공사명 : ▲▲공원 조성공사(2개 공종 복합공사)
- 추정가격 : 100억 원(토목 40억 원, 조경 60억 원)
- 입찰참가방식 : A업체 50%, B업체 50%의 공동이행방식
- 업종평가비율 : 토목 40%(40억/100억), 조경 60%(60억/100억)
- 업체별 실적 : A업체 최근 3년간 토목 60억 원, 조경 40억 원  
B업체 최근 3년간 토목 40억 원, 조경 40억 원
- 계산 결과 : 토목 3.8886점 + 조경 3.1111점 = 6.9997점

$$\text{토목} : \left[ \frac{(A업체 60억 원 \times 0.5) + (B업체 40억 원 \times 0.5)}{40억 원 \times 1.8} \right] \times 14점 \times 40\% = 3.8886점$$

$$\text{조경} : \left[ \frac{(A업체 40억 원 \times 0.5) + (B업체 40억 원 \times 0.5)}{60억 원 \times 1.8} \right] \times 14점 \times 60\% = 3.1111점$$

[유형 3] 해당 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공사실적(등급점수)으로 평가

해당 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공사실적을 등급점수로 평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평가방법(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 기준)**

■ 평가점수 = A업종 점수 + B업종 점수 + C업종 점수

$$\text{해당 업종 등급점수} \times \text{업종평가비율}^*$$

[단일 업체]

$$\frac{\text{최근 5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text{해당 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times 100 \cdots \text{등급에 해당하는 점수}$$

[공동수급체]

$$\frac{(a업체 실적금액 \times 시공비율) + (b업체 실적금액 \times 시공비율) + \cdots}{\text{해당 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times 100 \cdots \text{등급에 해당하는 점수}$$

\*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 전문·그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80% 미만	평가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수	15.0	13.0	11.0	9.0	점수	15.0	13.0	11.0	9.0

$$* \text{업종평가비율} = \frac{\text{해당 업종별 추정가격}}{\text{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의 합계금액}}$$

※ 업종평가비율은 복합 업종인 경우에 사용하며 단일 업종인 경우에는 업종평가비율이 100% 이므로 사실상 ‘해당 업종 등급점수×배점’이 평가점수임

☞ **평가대상업종 등**

- [유형2]의 평가대상업종과 동일
- 실적이 없는 경우 최저 등급 적용

☞ 평가사례

■ 단일 업체

- 공사명 및 공종 : ▲▲ 공원 및 문화관 건설공사(4개 공종 복합공사)
- 추정가격 : 40억 원(토목 17억 원, 건축 17억 원, 조경 4억 원, 전기 2억 원)
- 입찰참가업체 : 토목 등 관련 업종의 면허를 모두 보유한 A업체에서 입찰참가
- 업종평가비율 : 토목 42.5%(17억/40억), 건축 42.5%(17억/40억), 조경 10%(4억/40억), 전기 5%(2억/40억)
- 주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와 업종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조경공사는 평가 제외
- 재산정 업종평가비율 : 토목 50%, 건축 50%
- A업체의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 토목 20억 원, 건축 15억 원, 조경 2억 원, 전기 1억 원
- 계산 결과 : 토목 7.5점 + 건축 5.5점 = 13점

· 토목 : 업종별 실적금액 비율 : (20억 원÷17억 원)×100 = 117.65%  
 업종등급점수 : 15점(100% 이상 A등급)  
 평가점수 : 15점×50% = 7.5점

· 건축 : 업종별 실적금액 비율 : (15억 원÷17억 원)×100 = 88.24%  
 업종등급점수 : 11점(80% 이상 90% 미만은 C등급)  
 평가점수 : 11점×50% = 5.5점

■ 공동수급체

- 공사명 및 공종 : ▲▲ 공원조성공사(2개 공종 복합공사)
- 추정가격 : 30억 원(조경 20억 원, 토목 10억 원)
- 입찰참가업체 : A사가 조경공사를, B사가 토목공사를 분담하여 이행하는 분담이행방식
- 업종평가비율 : A업체 조경 66.67%(20억/30억), B업체 토목 33.33%(10억/30억)
- 업체별 실적 : A업체 조경 80억 원, B업체 토목 10억 원
- 계산 결과 : 조경 10.0005점 + 토목 4.9995점 = 15점

· 조경 : 업종별 실적금액 비율 : (80억 원÷20억 원)×100 = 400%  
 업종등급점수 : 15점(100% 이상 A등급)  
 평가점수 : 15점×66.67% = 10.0005점

· 토목 : 업종별 실적금액 비율 : (10억 원÷10억 원)×100 = 100%  
 업종등급점수 : 15점(100% 이상 A등급)  
 평가점수 : 15점×33.33% = 4.999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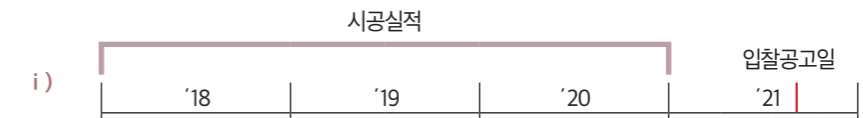
[유형 2]와 [유형 3]에서 업종별 실적 인정기준

유형2와 유형3의 업종별 실적과 관련하여 관련 협회의 실적관리 등 여부와 ‘최근 3(5)년간’ 또는 ‘최근 3년 이상’의 두가지 경우별로 인정기준이 달라지는데, 다음과 같이 i)연도 기준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ii)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최근 3(5)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실적, iii)연도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실적을 합한 실적의 세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최근 3(5)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 인정기준

☞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지하수협회 등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 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5년간) 업종별 실적증명서로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 협회에서 통보한 최근연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3(5)년간 실적을 적용(※ '21년 입찰공고 시 협회에서 '19년까지의 실적만 통보하였다면 '20년을 제외한 '17~'19년간 실적으로 평가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가 관련 협회에 제출한 신고내용 중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고, 해당 업체가 평가 자료를 정당하게 신고했으나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의 누락·오류·불명확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의 책임은 관련 협회에 있음



☞ 관련 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 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와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
- 연도단위별로 관련 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 협회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 다만, 1회계연도 내의 실적에 누락신고분이 있는 업체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만으로 평가

i)

☞ **관련 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 협회에서 해당 공사의 업종(業種)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 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5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

ii)

▶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 인정기준(10억 원 미만 공사에 적용)**

☞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 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관련 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관련 협회 증명서로 인정)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일부 공종이 아닌 전체공사의 준공에 한한다)된 공사실적(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으로 인정)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각각의 실적을 중복평가하지 않도록 세부내역을 확인해야 함

iii)

☞ **관련 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 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에도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는 경우'와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에 따라 평가
- 연도단위별로 관련 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 협회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받은 실적을 합산. 다만, 1회계연도 내의 실적에 누락신고분이 있는 업체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만으로 평가

iii)

☞ **관련 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 관련 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業種)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 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

ii)

② **기술능력**

입찰참가자가 기술적으로 해당 공사를 수행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국가계약(조달청)과 지방계약에 차이가 있는데, 국가계약은 적격심사 대상 변경(기존 300억 원 미만→현행 100억 원 미만)으로 '기술능력' 평가항목이 없는 데 반해, 지방계약은 100억 원 이상의 공사는 '기술능력' 항목에서 기술자 보유상황,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등 5가지 세부항목을 평가하고 100억 원 미만의 공사는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항목에서 기술자 보유상황만을 평가하고 있다.

국가계약(조달청)		지방계약	
심사항목	심사대상	심사항목	심사대상
▶ 기술능력 및 시공평가 결과	해당없음	▶ 기술능력(시공평가 결과 포함)	100억 원 이상
		▶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 여부	100억 원 미만

**[표 69] 지방계약 기술능력 평가기준·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등급	평점	비고	
①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보유상황 (회사 보유인력으로 평가)	▶ 해당 업종 경력기술자	A. 3.6 이상	10.0	필요시 평가	
		B. 2.4 이상 3.6 미만	8.0		
		C. 1.2 이상 2.4 미만	6.0		
	▶ 일반기술자	A. 15인 이상	14.0	배점한도 (만점)	
		B. 12인 이상 15인 미만	12.2		
		C. 10인 이상 12인 미만	10.4		
② 신기술개발·활용실적	▶ 신기술 개발	A. 2건 이상	0.5	배점한도 (만점)	
		B. 1건	0.3		
		A. 60억 원 이상	1.5		적용
		B. 6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1.4		
C.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1.2				
	D. 1억 원 미만	1.1			
③ 시공평가결과	▶ 시공평가점수	A. 90점 이상	3.0	필요시 평가	
		B. 80점 이상 90점 미만	2.8		
		C. 75점 이상 80점 미만	2.6		
		D. 70점 이상 75점 미만	2.4		
		E. 70점 미만	2.2		
④ 그밖에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 적격심사시 제출한 동일공사 실적의 준공기간 경과에 따른 시공경험 축적 정도 *입찰공고일 기준	A. 2년 이내 시공실적	2.0	배점한도 (만점) 적용	
		B. 2년 초과 5년 이내 시공실적	1.8		
		C. 5년 초과 7년 이내 시공실적	1.6		
		D. 7년 초과 10년 이내 시공실적	1.4		
⑤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 업종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A. 100% 이상	4.0	필수평가	
		B. 75% 이상 100% 미만	3.8		
		C. 50% 이상 75% 미만	3.6		
		D. 10% 이상 50% 미만	3.4		
		E. 10% 미만	3.2		

▶ 계산방법 :

$$\text{최종 평가점수} = \text{각 평가요소의 해당 평점 합계} \times \frac{15(\text{기술능력 항목 배점})}{35(\text{각 평가요소의 최고등급 평점 합계})}$$

▶ 평가 시 세부심사항목 5개 사항을 필수적으로 모두 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발주기관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항목을 정할 수 있고, 심사하지 않는 항목은 해당 항목의 배점한도, 즉 만점을 적용하여 총 평점을 산정하여야 한다.

- ▶ ⑤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은 필수적으로 평가
- ▶ ①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보유상황”과 ③ “시공평가결과”는 해당공사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심사항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심사항목을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배점한도 적용
- ▶ ② “신기술개발·활용실적”과 ④ “그밖에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 방법과 시기를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배점한도 적용
- ※ ②와 ④의 경우 평가방법은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 행정안전부에서 적용할 계획이 없어 배점한도를 적용해야 함

**①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

▶ 건설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과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르고, 해당업종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 협회 확인서에 따른다.

▶ 경력기술자 평가방법(<별지 제5호 서식>)

- 일반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 해당 업종 경력기술자 평가 등급 : 등급계수×경력계수×관리능력계수 ➡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경력계수 : 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경력) : 1월 이상 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 미만 1.1, 5년 이상 1.3

-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공사(업종)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공사(업종)인 경우에는 업종별로 산출한 점수에 업종평가비율(평가업종만을 대상으로 다시 백분율로 산정한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업종과 업종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 해당공사(업종)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위 “경력기술자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한 실적을 말하며, 다음 표와 같이 2021년 12월 현재 신기술별로 54건 내지 273건이 유효한 상태이다. 신기술은 보호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확인하고자 하는 신기술이 보호기간 내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표 70] 신기술현황 및 확인방법

제도명	관련법률	유효신기술 (‘21.12월 현재)	확인방법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260건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천기술검색
환경신기술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7조	165건	• 환경기술정보시스템(www.koetv.or.kr)-인·검증환경기술-인증 기술현황
교통신기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54건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추천기술검색
방재신기술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273건	• 한국방재협회 홈페이지(www.kodipa.or.kr)-방재신기술-신청 및 지정현황

- ▶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 ▶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을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 ▶ 활용실적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확인된 자료로 평가한다.
- ▶ 활용실적은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최근연도까지의 보호기간 동안 활용된 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 ▶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술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신기술 활용실적을 평가할 때 신기술 미보유업체에 대해서는 D등급으로 평가한다.
- ▶ 공동수급체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평가한다.

### ③ 시공평가 결과

#### ▶ 시공평가 제도

- **개념** : 발주청이 그가 발주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
- **근거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제2항, 시행령 제82조, 제83조, 시행규칙 제44조,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 **평가대상** :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다만, 단순·반복적인 공사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2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설공사(포장도 덧씌우기 공사, 준설공사, 단순 토공사 등)는 제외
- **평가시기** :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공사비 대비 공정률이 90퍼센트 이상 진척 되었을 때부터 해당 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시공평가 실시
- **평가방법**
  - 평가기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종합평가 업무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은 시공평가 대상을 관련 발주청에 통보
  - 발주청은 통보받은 시공평가 대상을 참고하여 평가대상 선정 후 건설업자 및 감독자로부터 시공평가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시공평가위원회에 제출
  - 시공평가는 발주청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청 소속 직원 포함) 및 전문가가 실시
- **평가항목**

대분류	I. 공사관리(65점)						II. 목적물의 품질 및 성능(35점)		
중분류	품질관리	공정관리	시공관리	하도급 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시공품질	구조 안전성	창의성

-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만 평가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공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 해당 입찰에서 제출한 시공경험(동일실적)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시공평가 점수는 시공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 시공경험 중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시공평가 대상공사로서 평가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70점을 적용한다. 다만, 2000년도 이전에 준공된 공사는 80점을 적용한다.
- 건설기술진흥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사는 80점을 적용한다. 다만, 해외에서 시공한 공사는 90점을 적용한다.

- 시공경험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한다.
- ▶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시공경험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평가한다.

### ④ 시공경험 측정정도

- ▶ 기간계산은 입찰공고일부터 제출실적의 준공일까지 기간을 일수로 계산하고, 발주기관에 제출된 실적(공동수급체의 경우 그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 중 최근연도에 준공한 1건 실적을 평가한다. 단,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액으로 평가하는 공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⑤ 기술개발투자비를 평가방법

- ▶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과 기술개발투자비율을 말함)에 관하여는 다음의 ④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③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평가(지방계약만 해당)

-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한다.

건설업 등록기준	
■ 근거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업종	기술능력
토목공사업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
건축공사업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포함한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1명 이상 1)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2)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이상 기술자 또는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 또는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2명 이상
조경공사업	▶ 조경기사 또는 조경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 이상 ▶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이상
:	: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기술 인력이 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50일을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 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한다.
- ▶ 관련 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 ④ 경영상태 평가

경영상태 평가 방법에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그리고 두가지를 혼합한 종합평가방법의 3가지가 있다.

먼저 재무비율 평가방법은 평가대상 업종평균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대비 입찰참가업체의 재무비율의 수준으로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이고, 신용평가방법은 입찰참가업체가 발행한 회사채나 기업어음 또는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종합평가방법은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국가계약(조달청 기준)은 신용평가방법과 재무비율 평가방법 2가지 방법 중, 지방계약은 위 두가지 방법에 종합평가방법을 추가하여 3가지 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계약의 경우 공사규모 등에 따라 평가 방법에 차이를 두고 있다.

[표 71]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간 경영상태 평가방법 비교

구분	평가방법
국가계약	■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선택
지방계약	■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공공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 (※ 발주기관이 평가방법을 선택하지 않음) ■ 100억 원 이상,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 업종 : 종합평가방법 ■ 비영리법인 : 신용평가방법

#### ④-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조달청은 부채비율, 유동비율, 영업기간의 3가지 항목만 평가하고, 지방계약은 부채비율 등 최대 9개 항목을 평가하며, 조달청과 지방계약의 공사규모별 재무비율 평가기준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2] 국가계약의 재무비율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심사항목	추정가격 구간별 평점							
	건설공사		건설공사		건설공사		건설공사	
평가요소	100억 미만		50억 미만		10억 미만		10억 미만	
	30억 이상	50억 이상	10억 이상	30억 이상	3억 이상	3억 이상	3억 이상	3억 이상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A. 50%미만	22.0	7.0	A. 100%미만	7.0	5.0	3.0	5.0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 비율	B. 75%미만	19.7	6.2	B. 130%미만	6.2	4.5	2.7	4.5
	C. 100%미만	17.5	5.4	C. 160%미만	5.4	4.0	2.4	4.0
	D. 125%미만	15.2	4.6	D. 190%미만	4.6	3.5	2.1	3.5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E. 125%이상	13.0	3.8	E. 190%이상	3.8	3.0	1.8	3.0
	A. 150%이상	21.0	7.0	A. 100%이상	7.0	5.0	2.0	5.0
	B. 120%이상	18.7	6.2	B. 90%이상	6.2	4.5	1.8	4.5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 비율	C. 100%이상	16.5	5.4	C. 80%이상	5.4	4.0	1.6	4.0
	D. 70%이상	14.2	4.6	D. 70%이상	4.6	3.5	1.4	3.5
	E. 70%미만	12.0	3.8	E. 70%미만	3.8	3.0	1.2	3.0
영업기간	5년이상	2.0						
	5년미만 3년이상	1.8						
	3년미만	1.5						
	3년이상		1.0	3년이상	1.0			
	3년미만 1년이상		0.9	3년미만 1년이상	0.9			
1년미만		0.8	1년미만	0.8				
구간별 심사항목의 최고등급 평점 합계		45	15		15	10	5	10
경영상태 항목 배점		15	15		15	10	5	10
최종 평가점수 <sup>주)</sup>		평점합계 × 15/45		평점합계		평점합계	평점합계	평점합계

주: 최종 평가점수 = 추정가격 구간별 심사항목의 해당 평점 합계 ×  $\frac{[표 65] \text{ "조달청의 시설공사 심사항목별 배점기준"의 경영상태 항목 구간별 배점}}{\text{추정가격 구간별 심사항목의 최고등급 평점 합계}}$

[표 73] 지방계약의 재무비율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일반공사

심사항목	추정가격 구간별 평점									
	건설공사		건설공사		건설공사		건설공사		건설공사	
평가요소	300억 미만		100억 미만		50억 미만		30억 미만		10억 미만	
	100억 이상	100억 이상	50억 이상	30억 이상	10억 이상	10억 이상	10억 이상	10억 이상	3억 이상	2억 이상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A. 50%미만	8.0	10.0	7.0	8.0	A. 100%미만	5.0	5.0	5.0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 비율	B. 75%미만	7.2	9.3	6.3	7.2	B. 130%미만	4.5	4.5	4.5	
	C. 100%미만	6.4	8.6	5.6	6.4	C. 160%미만	4.0	4.0	4.0	
	D. 125%미만	5.6	7.9	4.9	5.6	D. 190%미만	3.5	3.5	3.5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E. 125%이상	4.8	7.2	4.2	4.8	E. 190%이상	3.0	3.0	3.0	
	A. 150%이상	8.0	10.0	7.0	7.0	A. 100%이상	5.0	5.0	5.0	
	B. 150%미만	7.2	9.3	6.3	6.3	B. 100%미만	4.5	4.5	4.5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 비율	C. 120%미만	6.4	8.6	5.6	5.6	C. 90%미만	4.0	4.0	4.0	
	D. 100%미만	5.6	7.9	4.9	4.9	D. 80%미만	3.5	3.5	3.5	
	E. 70%미만	4.8	7.2	4.2	4.2	E. 70%미만	3.0	3.0	3.0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A. 50%미만	4.0								
업종(업체)평균 차입금 의존도에 대한 해당 업체 비율	B. 75%미만	3.6								
	C. 100%미만	3.2								
	D. 125%미만	2.8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 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E. 125%이상	2.4								
	A. 150%이상	4.0								
	B. 150%미만	3.6								
업종(업체)평균 영업이익 대비 이자 보상배율에 대한 해당 업체 비율	C. 100%미만	3.2								
	D. 50%미만	2.8								
	E. 10%미만	2.4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율(순이익/매출액)	A. 100%이상	3.0								
업종(업체)평균 매출액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 업체 비율	B. 100%미만	2.7								
	C. 75%미만	2.4								
	D. 50%미만	2.1								
업종(업체)평균 매출액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 업체 비율	E. 10%미만	1.8								



심사항목	추정가격 구간별 평점								
	건설공사	300억 미만	100억 미만	50억 미만	30억 미만	건설공사	10억 미만	3억 미만	2억 미만
평가요소	건설공사	100억 이상	50억 이상	30억 이상	10억 이상	건설공사	3억 이상	2억 이상	10억 미만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A.150%이상	2.0							
	B.150%미만	1.8							
	C.120%미만	1.6							
	D.100%미만	1.4							
	E. 70%미만	1.2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A.150%이상	3.0							
	B.150%미만	2.7							
	C.100%미만	2.4							
	D. 50%미만	2.1							
	E. 10%미만	1.8							
영업기간	A.10년이상	2.0							
	B. 5년이상	1.8	1.0						
	C. 3년이상	1.6	0.9	1.0					
	D. 3년미만	1.4	0.8	0.9					
구간별 심사항목의 최고등급 평점 합계		35	21	15	15		10	10	10
경영상태 항목 배점		15	15	10	15		10	5	5
최종 평가점수 <sup>주)</sup>	평점 합계×	평점 합계×	평점 합계×	평점 합계		평점 합계	평점 합계×	평점 합계×	
	15/35	15/21	10/15			5/10	5/10		

주: 최종 평가점수 = 추정가격 구간별 심사항목의 해당 평점 합계 ×  $\frac{[\text{표 66}] \text{ "지방계약의 시설공사 심사항목 배점기준"의 경영상태 항목 구간별 배점}}{\text{추정가격 구간별 심사항목의 최고등급 평점 합계}}$

○ 재난복구공사

심사항목	추정가격 구간별 평점								
	건설공사	70억 미만	50억 미만	30억 미만	건설공사	10억 미만	5억 미만	3억 미만	
평가요소	건설공사	50억 이상	30억 이상	10억 이상	건설공사	5억 이상	3억 이상	10억 미만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A. 50%미만	10.0	7.0	8.0	A.100%미만	5.0	5.0	5.0	
	B. 75%미만	9.3	6.3	7.2	B.130%미만	4.5	4.5	4.5	
	C.100%미만	8.6	5.6	6.4	C.160%미만	4.0	4.0	4.0	
	D.125%미만	7.9	4.9	5.6	D.190%미만	3.5	3.5	3.5	
	E.125%이상	7.2	4.2	4.8	E.190%이상	3.0	3.0	3.0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150%이상	10.0	7.0	7.0	A.100%이상	5.0	5.0	5.0	
	B.150%미만	9.3	6.3	6.3	B.100%미만	4.5	4.5	4.5	
	C.120%미만	8.6	5.6	5.6	C. 90%미만	4.0	4.0	4.0	
	D.100%미만	7.9	4.9	4.9	D. 80%미만	3.5	3.5	3.5	
	E. 70%미만	7.2	4.2	4.2	E. 70%미만	3.0	3.0	3.0	
영업기간	A. 5년이상	1.0							
	B. 3년이상	0.9	1.0						
	C. 3년미만	0.8	0.9						
구간별 심사항목의 최고등급 평점 합계		21	15	15		10	10	10	
경영상태 항목 배점		15	7	12		8	7.5	7.5	
최종 평가점수 <sup>주)</sup>	평점합계	평점합계	평점합계		평점합계	평점합계	평점합계		
	×15/21	×7/15	×12/15		×8/10	×7.5/10	×7.5/10		

주: 최종 평가점수 = 추정가격 구간별 심사항목의 해당 평점 합계 ×  $\frac{[\text{표 66}] \text{ "지방계약의 시설공사 심사항목 배점기준"의 경영상태 항목 구간별 배점}}{\text{추정가격 구간별 심사항목의 최고등급 평점 합계}}$

### 지방계약법상 재무비율 평가방법

- ▶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건설업계 평균비율은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을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 ▶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종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직전 회계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되, 관련 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고, 사업연도가 1. 1.부터 12. 31.까지인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통상 3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관련 협회에는 세무서에 신고한 표준재무제표를 4. 15.까지 제출하며, 관련 협회는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평균비율 작성 후 해당연도 7월 1일부터 적용함

- 따라서 '21년 4월에 입찰공고를 하였다면 아직 2020회계연도의 업종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2019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하고, '21년 8월 입찰공고분이라면 2020회계연도 결산서로 평가하여야 함

- ▶ 관련 협회가 있으나 협회에 경영상태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해당 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경영상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해당 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직접 제출받아 평가한다.
- ▶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함)로 평가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에 합병하여 평가한 업체는 ‘최근년도 자산회전율’을 계산할 때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합병으로 소멸된 업체의 결산서를 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외감법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이어야 한다.

- ▶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단, 해당공사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따른 평가는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할 수 있고, 해당공사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인 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등록을 할 때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할 수 있다.
- ▶ 직전 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관련 협회에서 확인한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최초결산서로 본다.

■ 정기 결산서가 있는 A·B업체와 신설 법인인 C업체가 합병하는 경우 : C업체를 제외한 A·B업체의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

- ▶ 직전 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한다.
- ▶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의 정기결산서와 최초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 ▶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제출된 감사보고서(외감법을 적용받지 않는 업체의 감사보고서를 포함)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에는 재무비율 평가의 최종점수(가산점이 있는 경우 가산점 적용가산)에서 5/100를,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10/100을 감점한다.
- ▶ 세부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부(-)의 수치없이 “0”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세부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동시에 “0”인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표 74] 평가요소가 "0"인 경우 처리 방법

세부심사항목	분모 "0"	분자 "0"
최근연도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연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율(순이익/매출액)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율(순이익/총자산)	-	최저등급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	최저등급
최근연도 자산회전율[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최저등급

▶ 2022.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주가계약자 공동도급 포함)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아래와 같이 선금의 부채산정에 제외한다.

- 선금대상 :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 ※ 업체가 선금정산 증빙서류 발급요청 가능 : 계약금액, 선금액, 정산액 등
  - 입찰공고문에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함을 명시
  -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 확인

- ▶ 평가요소별 업종 전체 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 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 ▶ 평가결과 부(-)의 수치가 나타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 업종 전체 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 업체의 비율이 (+)인 업체는 A등급, (-)인 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여구성원만으로 평가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그 공동수급체를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여성기업 등에 대한 가산평가와 관련한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차이점

국가계약에서는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포함),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함)에 10%를 가산평가한다. 이에 반해 지방계약에서는 유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특별신인도'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 특별신인도 (+1점)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인정·확인하는 여성기업 : +1점
  -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으로 여성기업 확인증(서) 제출 및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확인하여 평가
  -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

④-나. 신용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Check! 유의사항

- 회사채 등의 유효기간 : 통상 기업신용평가등급은 1년, 회사채는 회사채 만기일까지, 기업어음은 익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 회사채, 기업어음 및 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할 때에 유사한 시기에 여러 가지 신용평가를 한 번에 받을 경우는 먼저 평가한 등급과 연동하여 평가하므로 각 평가등급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은 없으나, 입찰참가업체가 최근 1년 이내에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신청하지 않고 등급이 더 높은 직전의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나라장터에 등재된 자료를 확인하거나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는 등의 그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임

국가계약(조달청 기준)과 지방계약의 신용평가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5] 국가계약의 신용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 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별 점수		
			등급제한 이외 공사	등급제한 공사	
			종합건설 사업자	전문건설 사업자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34.5	34.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	33.5	34.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30.3	30.0

- 주: 1. '등급제한공사'란 '조달청 등급별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를 말함
- 2.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계산하여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3. 경영상태 평가 점수

추정가격 구분	평가점수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등급별 점수×15/35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등급별 점수×15/35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등급별 점수×10/35
3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3억 원 미만 8천만 원 이상)	등급별 점수×5/35
2억 원 미만(8천만 원 미만)	등급별 점수×10/35

\* : 괄호안은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표 76] 지방계약의 신용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일반공사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② 기업 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③ 기업신용 평가등급	건설공사	300억 미만 100억 이상	100억 미만 50억 이상	50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10억 이상	10억 미만 3억 이상	3억 미만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5.0	21.0	15.0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5.0	21.0	15.0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35.0	21.0	15.0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5.0	21.0	15.0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35.0	21.0	15.0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34.5	20.0	14.0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34.0	19.0	13.0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16.0	10.0		6.0	
최고등급 평점				35	21	15	15	10	10
경영상태 항목 배점				15	15	10	15	10	5
최종 평가점수 <sup>주)</sup>				평점× 15/35	평점× 15/21	평점× 10/15	평점	평점	평점× 5/10

주) 최종 평가점수 = 해당 등급 평점 ×  $\frac{[\text{표 66}] \text{ "지방계약의 시설공사 심사항목 배점기준"의 경영상태 항목 구간별 배점}}{\text{최고등급 평점}}$

○ 재난복구공사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③ 기업신용 평가등급	재난복구공사	70억 미만 50억 이상	50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10억 이상	10억 미만 5억 이상	5억 미만 3억 이상	3억 미만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1.0	15.0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1.0	15.0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21.0	15.0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21.0	15.0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1.0	15.0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0.0	14.0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9.0	13.0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6.0	10.0			6.0	
최고등급 평점				21	15	15	10	10	10
경영상태 항목 배점				15	7	12	8	7.5	7.5
최종 평가점수 <sup>주)</sup>				평점× 15/21	평점× 7/15	평점× 12/15	평점× 8/10	평점× 7.5/10	평점× 7.5/10

주) 최종 평가점수 = 해당 등급 평점 ×  $\frac{[\text{표 66}] \text{ "지방계약의 시설공사 심사항목 배점기준"의 경영상태 항목 구간별 배점}}{\text{최고등급 평점}}$

지방계약법상 신용평가방법

-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아래와 같이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관련 협회에 신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할 수 있다.

신용정보업자 현황

신용평가기관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신용평가기관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나이스 디앤비	2122-2308	www.nicednb.com	한국기업평가	368-5500	www.korearatings.com
나이스평가정보(주)	2122-4000	www.niceinfo.co.kr	한국신용평가	787-2200	www.kisrating.com
에스씨아이평가정보	1577-1006 3445-5000	www.sci.co.kr	나이스신용평가(주)	2014-6200	www.nicerating.com
			(주)이크레더블	2101-9100	www.ecredible.co.kr
한국기업데이터	3215-2777	www.kedkorea.com	서울신용평가(주)	6966-2432	www.scri.co.kr

- ▶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용정보업자가 변동되거나 추가하는 때에는 수시로 신용정보업자 현황을 통보하거나 게재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하려는 신용정보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미리 등재(등록)를 요청해야 하며, 미등재(미등록)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의 책임은 그 신용정보업자에게 있다.

유권해석

□ 입찰공고일 기준 신용평가등급서의 인정 여부

Q. 물품 적격심사의 경영상태평가 시 ① 입찰공고일 당일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을 인정할 수 있는지? ② 입찰 공고일 전일 만료되는 신용평가등급 인정할 수 있는지?

A.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에 따르면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고 규정

- 질의 ①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기간 계산은 민법의 초입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초일은 제외하고 기산하므로 입찰공고일 당일에 평가된 신용평가등급서는 유효한 적격심사서류로 인정될 수 없음【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068, '20. 9. 29.】

- 질의 ②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일 전에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라면 해당 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안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한 적격심사서류로 인정될 수 없음【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405, '20.10.21.】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경영상태 평가방법 변경 가능 여부

Q. 입찰참가자가 신용평가방법을 선택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한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달이 된 상황에서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로 보아 재무비율 평가방법으로 다시 심사가 가능한지?

A.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제4절 '7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

- 위 조항은 제출된 서류자체의 미비, 오류에 한하여 보완토록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격심사대상자가 당초 선택한 경영상태평가방법을 변경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263, '19.3.21.】

□ 관련 협회가 없는 경우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인정 기준

Q. 석면해체·제거업의 경우 실적을 관리하는 관련 협회가 없음에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의 신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III-9'에 등재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업종 관련 협회가 아닌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29, '17.4.4.】

⑤ 신인도

국가계약(조달청)은 모든 공사에서, 지방계약은 30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신인도를 평가

하며, 국가계약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항을 평가하고 있는데 반해 지방계약에서는 해당 항목을 평가하지 않고 있는 등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신인도 평가항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각 평가항목별로 관련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7】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신인도 평가항목 비교 및 확인 방법

평가여부		평가항목	확인 방법
국가	지방		
○	○	■ 최근 1년간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건설협회 증명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KON, www.kiskon.net)
○	○	■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건설협회 증명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KISKON, www.kiskon.net)
○	○	■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건설협회 증명서
○		■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
○		■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공정거래위원회 확인
	○	■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
○	○	■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		■ 조달청이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프로그램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	○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 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건설협회 증명서
○	○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평가여부		평가항목	확인 방법
국가	지방		
○	○	■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 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건설협회 증명서, 고용노동부 확인
○		■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	○	■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건설협회 증명서, 고용노동부 확인
○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
○		■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	-
○	○	■ 녹색건축 인증등급	-
○		■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
○	○	■ 상습 또는 고액 임금체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		■ 종합건설업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에 따라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
○		■ 최저임금법 위반	-
○		■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
○		■ 일자리 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자	-
○		■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5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 최근 1년 이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고용탄력성 결과가 우수한 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고용위기 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	-
○		■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

**[국가계약의 평가기준·방법](「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의 신인도평가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실시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조달청지침)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공사규모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0.9)	50억 원 미만(+4~△1)
종합공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의한 신인도 평가점수 × 18/100	건설재해, 일자리, 근로단축 부문별 평가점수의 합
평가점수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성실성, 하도급, 건설재해, 일자리, 근로단축 부문별 평가점수 × 30/100	건설재해, 일자리, 근로단축 부문별 평가점수의 합

※ 단,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표 78]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3] 신인도 평가 (+5, -7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최근 1년간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2	A.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B.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A. 1점 이상 2점 미만	-0.2
			B. 2점 이상 10점 미만	-1.0
			C. 10점 이상 15점 미만	-2.0
나. 하도급 관련 사항	2)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발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발점)	-5	D. 15점 이상 20점 미만	-3.0
			E. 20점 이상	-5.0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3.0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2.0
			C.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1.5
다. 하도급 관련 사항	3)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3	D.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1.0
			E.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0.5

		A. 계약금액의 30% 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1 (-2)	
4)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3 (-6)	B. 계약금액의 40% 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2 (-4)	
		C. 계약금액의 1% 이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1 (-2)	
		5) 최근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7	A.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 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6)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에서 하도급 상승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7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에서 하도급 상승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7	
7)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A: 최우수	2	
		B: 우수	1	
8)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A: 최우수	1	
		B: 우수	0.5	
나. 하도급 관련 사항		<제1차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1.0 (-1.0)	
		B. 성장지원 기업(우수)	+0.5 (-0.5)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0.5 (-0.5)	
		D. 성장희망 기업(우수)	+0.3 (-0.3)	
		<제2차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1.5 (-1.5)	
	9) 조달청이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프로그램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2)	B. 성장지원 기업(우수)	+1.0 (-1.0)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1.0 (-1.0)
			D. 성장희망 기업(우수)	+0.5 (-0.5)
			<제3차년도 평가결과>	
		A. 성장지원 기업(최우수)	+2.0 (-2.0)	
	B. 성장지원 기업(우수)	+1.5 (-1.5)		
	C. 성장희망 기업(최우수)	+1.5 (-1.5)		
	D. 성장희망 기업(우수)	+1.0 (-1.0)		

10)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1 ~ +1	A. 평균환산재해율 0.2배이하	+1.0
		B. 평균환산재해율 0.4배이하	+0.6
		C. 평균환산재해율 0.6배이하	+0.3
		D. 평균환산재해율 1.0배이하	0.0
		E. 평균환산재해율 1.0배초과	-0.5
		F. 평균환산재해율 1.5배초과	-1.0
11)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1.0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0.8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0.6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0.4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0.2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0.0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	1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13)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5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14)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0.5
		B. 3회 이상 받은 자	-1.0
15)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A. 1회 받은 자	1.0
		B. 2회이상 받은 자	0.5
라. 녹색건설 관련 인증실적	1	A. 1등급	+1.0
		B. 2등급	+0.9
		C. 3등급	+0.8
		D. 4등급	+0.7
		E. 5등급	+0.6
17) 녹색건축 인증등급	1	A: 최우수	+1.0
		B: 우수	+0.5
18)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2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2	



	19) 상승 또는 고액 임금체불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
	20)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
마. 고용개선 관련	21) 종합건설업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에 따라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2	A. 평균비율 0.5배 미만	+2.0
			B. 평균비율 0.6배 미만	+1.5
			C. 평균비율 0.7배 미만	+1.0
			D. 평균비율 0.8배 미만	+0.5
			E. 평균비율 0.8배 이상 및 미공시한 경우	0
	22) 최저임금법 위반	-2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2
	23)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자	+3	A. 1등급인 자	+3
B. 2등급인 자			+2	
바. 일자리 창출 관련	24) 일자리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2.5
			B. 국제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 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 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준용) 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금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금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0.5
사. 기타	25)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자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업체 조정지분율의 합	+1.0
			A. 10%이상 20%미만	+1.5
			B. 20%이상 30%미만	+2.0
			C. 30%이상 35%미만	+2.5
			D. 35%이상 40%미만	+3.0
E. 40%이상				

평가방법

- ▶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전문공사 및 소방공사는 신인도를 평가하지 않되, 준설공사를 사전심사로 집행할 경우는 신인도를 평가한다.
- ▶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 ▶ '가' 목 1)의 평가요소중 영업정지기간 등은 소송등으로 효력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기 제재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 ▶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 ▶ '나' 목 3)의 평가는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이 조달청에 통보한 자료로 평가하며, 2011년 이전에 통보된 자료로 평가할 경우로서 평점 90점 이상(95점 이상 포함)인 자는 2점으로 평가한다.
- ▶ '나' 목 7) 및 8)의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음.
  - PQ신청 마감결과 대기업들만 참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 관계기관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로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 ▶ '나' 목 9)의 평가는 조달청이 발표한 자료로 평가하며, 조달청이 발표한 인센티브 부여기간 내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n차 년도에 해당하는 등급별로 점수를 산정하고, n차 년도 평가결과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평가결과 등급은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따른 협약이행 결과 평가등급을 말한다.
  - 조달청은 평가대상 기업이 허위자료 제출, 불공정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공공시설분야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기간의 2배 이내 기간 동안 감점할 수 있다.

- ▶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 ▶ ‘다’목의 14)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3.18. 이후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을 말한다)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 ▶ ‘다’목 10)부터 14)까지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 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 ▶ ‘라’목의 의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부 고시 제2020-574호, 2020.8.13.)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 녹색건축 인증등급은「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82호, 2021.5.17.)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또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 심사신청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또는 확인 받은 내용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단, 인증서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실적과 녹색건축 인증실적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가대상 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 ‘나’목의 하도급관련사항 심사항목의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평가는 다음과 같다.
  - 신청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 신청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은 A, B등급 중 하나의 등급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하도급자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제외)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신청자가 16-2)에 따라 신청하여 심사에서 가점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공사의 낙찰자(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낙찰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적격·PQ 심사 관련사항 이행) 제3항에 따라 당해 공사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53조 제5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낙찰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낙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낙찰자가 16-3)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 이행시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낙찰자는 16-4)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향후 3년 내에 입찰공고되는 사전심사기준의 적용을 받는 입찰에 참가할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받은 가점 대비 미사용 비율에 해당되는 부분의 2배를 감점한다. 이 경우 산정된 감점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한다.
    - 감점산정방법(예) : 표준하도급계약을 계약금액의 30%로 사용계획서를 제출 후 사용계획서 대비 88%를 미사용한 경우  
 $\Rightarrow 0.88(\text{미사용비율}) \times 1\text{점(가점)} \times 2(2\text{배 감점}) = 1.76 \rightarrow \Delta 1.7\text{점}$
  - 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른 가점 부여 및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 부여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신청자)에게만 부여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을 받은

- 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에서 제8조 제2항에 따라 평가에 포함 한다.
-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타 공공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하여 표준계약서 이행여부에 대한 감점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심사자는 통보된 감점을 그대로 사전심사평가에 반영하며, 동일한 업체가 2건 이상의 감점을 받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반영하되, 감점의 한도는 12점으로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 이외의 업종은 감점한도를 8점으로 한다.
-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이 경우 16-1) 내지 16-8)은 적용하지 않는다.
- ▶ ‘마’목 19)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 ‘마’목 20)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 ▶ ‘마’목 21)의 평가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 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공시된 고용인원 정보로 평가한다.
  -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은 [(기간없는 단시간근로자수+기간제 근로자수+소속 외 근로자수)/(소속근로자수+소속외 근로자수)]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종합건설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종합건설업)’업종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평균을 말한다.
- ▶ ‘마’목 22)의 평가는 PQ신청 마감일(적격심사의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제28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확정일자 시점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2018. 1. 1. 이후 최초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 ▶ ‘바’ 항목과 관련하여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23)과 24)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24)로 평가한다. 24)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 23) 건설고용지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자료로 평가한다.
- 23) 평가등급은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24)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 ▶ ‘사’목 25)의 평가는 당해 공사현장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7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지역’)을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산업위기지역 업체의 참여지분율과 해당 지역소재기간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비율(이하 ‘조정 지분율의 합’)로 평가하며, 그 외 평가방법은 제8조제4항을 적용한다.

**[지방계약 평가기준·방법]**(「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계약의 신인도평가는 3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공사규모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 (±1.2)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1.2)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 (±1.2)
평가점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40/10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2]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40/100

※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함

**[표 79]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가방법
1.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3.0	• 평점 90점 이상인 자
	+2.2	•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1.4	•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0.5	•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2.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1.0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 벌금 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최근 1년간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0.5	• 1회 받은 자
	-1.0	• 2회 이상 받은 자
4.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 과징금 부과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 과징금 부과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와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가 배분된 자	-0.4/건	•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가방법
6.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4.0	•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2.5	•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7배 이하
	+1.5	•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0.0	•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7.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0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0.8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0.6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0.4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0.2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0.0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8. 국토해양부장관이 통보한 부실벌점(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부실벌점)	-0.1	A. 1점 이상 2점 미만
	-0.5	B. 2점 이상 10점 미만
	-1.0	C. 10점 이상 15점 미만
	-1.5	D. 15점 이상 20점 미만
	-2.5	E. 20점 이상
9.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0.5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B.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5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자	+0.5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0.4	3회 우수기업 선정
	+0.3	2회 우수기업 선정
	+0.2	1회 우수기업 선정
11.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A. 최우수
	+1	B. 우수
12.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고용탄력성 결과가 우수한 자	+1.0	1등급
	+0.8	2등급
	+0.6	3등급
	+0.4	4등급
	+0.2	5등급
13.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0.4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1회 공개
	-0.8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2회 공개
	-1.2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3회 공개
	-1.6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4회 공개
	-2.0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5회 이상 공개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가방법
14. 최근 1년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으로 인정한 자	+1.0 +0.5 +0.3	A. 1년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B. 6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C. 3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15.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에서 영업 행위를 하는 자	+0.5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16.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 등급	+1.0 +0.5	A. 1등급 B. 2등급
17. 녹색건축 인증등급	+1.0 +0.5	A. 최우수 B. 우수
18.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1.0 +0.5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 전일까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표 80]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2])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가방법
1.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1.0  -2.0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와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0.4/건	•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3.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사고사망만인율 의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 인자	+1	•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7배 이하
4.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0 +0.8 +0.6 +0.4 +0.2 0.0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5.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5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자	+0.5 +0.4 +0.3 +0.2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3회 우수기업 선정 2회 우수기업 선정 1회 우수기업 선정
6.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0.4 -0.8 -1.2 -1.6 -2.0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1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2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3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4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5회 이상 공개
7. 최근 1년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으로 인정한 자	+1.0 +0.5 +0.3	A. 1년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B. 6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C. 3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8.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에서 영업 행위를 하는 자	+0.5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9.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 등급	+1.0 +0.5	A. 1등급 B. 2등급
10. 녹색건축 인증등급	+1.0 +0.5	A. 최우수 B. 우수
11.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1.0 +0.5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 전일까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평가방법

- ▶ 신인도 관련 항목은 업종구분 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 ▶ 신인도 평가를 할 때 1개의 업체가 동일항목 안에서 가점이나 감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절대 값으로 가장 큰 평점만 적용한다.
- ▶ [표 79] 제2호, 제3호 및 [표 80] 제1호의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적용은 형이 확정된 사항을 해당 발주기관에서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 ▶ 각 심사항목의 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표 79]의 심사항목 “6”은 3년) 이내에 해당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분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여 업체가 분할, 합병, 사업양도·양수를 한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 ▶ 전문공사는 [표 79]의 제2호·제3호 및 [표 80] 제1호만 평가하고,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공사·그밖의 공사는 [표 79] 제3호만 평가한다.
- ▶ [표 79] 제5호·제6호·제7호·제9호·제10호·제12호·제13호·제14호·제15호 및 [표 80] 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제8호의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 ▶ [표 79] 제6호의 사고사망만인율과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년도 1년전이나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 ▶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가장 최근 1년 이내 고용탄력성 등급(표준화 점수 기준) 자료로 평가한다.
- ▶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 [표 79] 제11호의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동반성장지수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 동반성장지수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입찰참가 마감결과 대기업들만 참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 관계기관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로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 ▶ [표 79] 제16호 [표 80] 제9호 건축물 에너지 효율 및 [표 79] 제17호 [표 80] 제10호 녹색건축 인증등급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로 평가한다.
  - 녹색건축 인증등급은 「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인증서’로 평가한다.
  - 입찰참여자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받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유효기간

이 경과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과 녹색건축 인증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 [표 79] 제18호 [표 80] 제11호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의 해당지역 범위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 전입일은 가장 최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 유권해석

□ 신인도 평가 시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된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의 인정 여부

- Q.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신인도 평가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가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우 유효한 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 A.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시간 단축 시행일 이전에 노동시간 단축 행위가 있었음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인한 서류라면, 확인서가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된 경우라도 조기단축 시행일을 기준으로 유·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823, '20.4.20.】

□ 신인도 평가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에서 해당지역의 의미

- Q.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의 신인도 평가기준 중 “해당지역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업체가 신인도 평가대상이 될 수 있는지?
- A.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 [별표 4] ‘주13)에서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에 대해 평가함에 있어 해당지역 범위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을 말한다고 되어 있음
- 질의와 관련하여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710, '20.6.9.】

### ㉞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하도급 관리계획과 관련하여는 국가계약(조달청 기준)과 지방계약에 일부 차이가 있는데, 국가계약이 하도급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만을 평가하는데 반해 지방계약에서는 추가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준수여부까지 포함하여 평가하고 있다.

(※ 국가계약은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사항을 ④ 신인도 항목에서 평가)

또한 평가대상 공사규모도 국가계약(조달청 기준)이 50억 원 이상, 지방계약이 30억 원 이상으로 지방계약이 국가계약에 비해 다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가계약(조달청 기준)과 지방계약의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1] 국가계약의 하도급 관리계획 적정성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평점	
단일공종공사 등		10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금액 비율	A:77%미만	5	주 2)에 따라 평가
	B:77%이상~80%미만	6	
	C:80%이상~82%미만	7	
	D:82%이상	8	
하도급 대금 직불계획	A : 30% 이상	2	직불비율=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 직접 지급할 금액 / 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
	B : 20% 이상	1	
계		10	

※ 주

- 1)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가점 1점 부여(다만, 배점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지역소재는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도를 기준으로 한다.
- 2) 다음 두 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하여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는 만점(D등급)을 부여하고, 두 가지 항목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①에 의해 하도급금액비율을 평가하여 등급(C, B, A 중)을 부여한다.
  - ①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 일 것
  - ②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조달청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이상일 것
  -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이나 조달청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미만인 경우 C등급을 부여한다.

[표 82] 지방계약의 하도급 관리계획 등 적정성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세부심사항목	등 급	평 점 ※추정가격기준			비고
		100억 이상	100억 미만 50억 이상	50억 미만 30억 이상	
1. 단일공종공사 등		12.0	10.0	5.0	
2. 종합공사	계	12.0	10.0	5.0	
①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 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 : 82% 이상	6.0	4.5	2.0	
	B : 80% 이상 ~ 82% 미만	5.0	3.0	1.5	
	C : 77% 이상 ~ 80% 미만	4.0	1.5	1.0	
	D : 77% 미만	3.0	0.5	0.5	
②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A : 10% 이상	2.0	1.5		
	B : 10% 미만	1.5	1.0		
③ 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A : 사용	3.0	3.0	3.0	
	B : 미사용	0.0	0.0	0.0	
④ 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A : 불이행	-3.0	-3.0	-3.0	감점
	B : 부당변경	-2.0	-2.0	-2.0	
⑤ 비교란에 하도급대금직불계획 제출	A : 20% 이상	+0.5	+0.5		가점
	B : 10% 이상	+0.2	+0.2		

지방계약법상 평가방법

-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 ▶ 심사항목 ①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아래 ‘하도급관리계획서’ 예시에서 (C/B×100)

하도급관리계획서(예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단위 : 천 원)

하수급 예정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비고 (하도급대금 직불 계획)
상 호 와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소재지	면허종류 (시공능력 평가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모 (물량)	금 액		
00건설(주) 홍길동(인)	000-00-000 서울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식	1,800,000	1,620,000	원
	( )						( )%	
00건설(주) 김길동(인)	000-00-000 충남	철콘공사업 (3,000,000)	지명 입찰	구조물 공 사	1식	1,500,000	1,320,000	원
	( )						( )%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원
						하도급비율(B/A):33.0%	하수급금액비율 (C/B):89%	( )
•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사 용 ( )	미사용 ( )			

- ①의 평가는 A와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이상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 만점을 부여하고 A는 충족하나 발주기관 조사

금액의 합계가 100분의 64미만인 경우는 B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과한다.

-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 등을 하지 아니했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하수급 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 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 심사항목 ② ‘하도급 대금 직불실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계약에 대한 직불실적만 평가하며, 구체적인 세부 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최근연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

- 평가대상 관급공사
  - 최근연도 신규 계약금액 20억 원(최초 계약금액 기준) 이상 관급공사 중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
  - 최근연도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관련 협회에서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증명발급을 시행한 날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1년)
- 평가방법
  - 점수산정 : 10%이상 1점, 10%미만 0.5점
  - 단독입찰인 경우

$$P = \frac{\text{적용직불건수의 합}}{M} \times 100(\%)$$

- P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비율
- M = 평가대상 관급공사 건수
- 적용직불건수의 합 =  $\sum_{n=1}^M Dn/Sn$
- Sn = 개별 평가대상 관급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건수
- Dn = 개별 평가대상 관급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건수

n	평가대상 관급공사	하도급계약 건수(Sn)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건수(Dn)	적용직불건수 (Dn/Sn)
1	○○건설공사	3	1	1/3 = 0.33333
2	△△건축공사	2	2	2/2 = 1.00000
3	□□토목공사	4	0	0/4 = 0.00000
합계	M = 3			적용직불건수의 합 = 1.33333



※ 계산식

$$P = \frac{1.33333}{3} \times 100(\%) = 44.44 \dots \rightarrow 10\% \text{ 이상이므로 1점}$$

▶ 공동도급에 따른 입찰인 경우

- 구성원 각각의 평가대상 관급공사 건수(M)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건수 대비 각각의 적용직불건수의 합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한 수의 비율로 평가

평가사례

- ▶ 시공비율 : A업체 60%, B업체 40%
- ▶ 구성원별 관급공사 건수(M) : A업체 3건, B업체 2건
- ▶ 구성원별 적용직불건수의 합(Dn/Sn) : A업체 1.33333, B업체 0.66663

$$P = \frac{(1.33333 \times 0.6) + (0.66663 \times 0.4)}{(3 \times 0.6) + (2 \times 0.4)} \times 100(\%) = 41.03 \dots \rightarrow 10\% \text{ 이상이므로 1점}$$

▶ 소수점 처리방법

- 최종평가비율(백분율)을 산정할 때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각 평가단계에서는 소수점 여섯째 자리에서 버림

■ 실적 인정범위

- ▶ 하도급 직불합의(발주기관·원도급자·하수급자)가 이루어진 공사
  - 1건의 공사 중 원도급자 1명에 하도급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로서 그 중 일부만 직불합의가 이루어지면 직불 합의한 건수의 구성비율을 곱하여 건수를 산정  
예) 원도급자 A가 하수급자 B, C, D와 하도급계약을 하고 B사만 직불합의한 때에는 1건÷3 = 0.33333건이 됨
-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는 원도급계약 체결 후 해당 하도급계약에 대한 제1차 기성대가 지급전까지 직불 합의한 경우 이어야 함
- ▶ 과거 구성원의 하도급 직불실적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을 불문하고 구성원 직불실적이 있는 구성원은 각각 1건의 직불실적으로 인정  
※ 1건의 공사 중 원도급자 1명에 하수급자가 여러 업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만 직불실적이 이루어지면 직불업체가 차지하는 구성비율을 곱하여 건수를 산정

■ 평가자료 확인방법

- ▶ 대한건설협회에서 하도급 직불건수, 총하도급 계약건수 및 관급공사 계약건수가 명시된 확인서를 발급하여 그 확인서에 따라 평가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후 직불이행이 되지 않으면 하수급자는 해당 사실을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협회 등은 대한건설협회에 통보하여 직불실적에서 제외해야 함

- ▶ 대한건설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거나 내용이 틀린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
  - 20억 원 이상인 관급공사 건수와 하도급계약 건수
- 업체별로 최근연도에 계약한 20억 원 이상 공사목록과 하도급계약 내역을 제출받아 확인
- 발주기관은 국토연구원 등의 전산망(Kiscon)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 확인
  - 하도급 직불실적 확인
- 입찰참가자가 증빙서류(직불합의한 발주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 부정·허위 작성된 자료(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후 직불이행이 되지 않은 건수를 직불실적으로 제출한 경우 포함)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

■ 직불합의가 없어도 직불실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예외 인정

- ▶ 최근연도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 중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원도급자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회수보다 원도급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현금대가 지급회수가 더 많은 경우로서 원도급자와 하수급자 연명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의 확인을 받아 발주기관이 최종 확인한 경우에는 직불실적으로 인정. 이 경우에도 해당 계약만 예외를 인정 하되 원도급자 1개 업체에 하도급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해당 비율만큼만 실적건수로 인정  
예) 1건 공사 중 하수급자 A, B, C 중 C업체만 직불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1건÷3 = 0.33333건만 인정하고, 나머지 A, B업체는 일반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 최근연도 20억 원 이상 관급공사 실적이 없는 업체는 만점 처리
- 협회 신고와 증명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확인된 내용에 따라 평가(이 경우 허위신고는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 원도급자의 합병, 분할, 사업양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4-나-8) 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 방법을 준용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자료 제출방법
  - ▶ 최근연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평가받으려는 자는 이 기준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관련 서식을 작성·제출해야 함
  - ▶ 발주기관·수급인·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직불에 합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 작성된 합의서 사본에 발주기관의 원본대조필을 한 경우 포함)나 발주기관·수급인·하수급인 및 관련 협회의 서면확인인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음

- ▶ 심사항목 ③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④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준수여부에 대하여 평가하며, 이행보증에관한사항은 제외한다.
- ▶ 심사항목 ④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는 최근 1년 이내 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되거나 관계 기관에서 통보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불이행자·부당변경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 담당자는 계약 이행 중에 불이행자·부당변경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처리장치 운영자 등에 통보·게재해야 한다.

- ▶ 심사항목 ⑤ ‘하도급대금 직불 계획’은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의 10% 이상을 직불계획 금액으로 표기하여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이 경우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점수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유권해석

□ 새로운 하수급자 선정 시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의미

- Q.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후 하수급예정자의 계약포기로 새로운 하수급자를 선정하여야 할 경우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이상의 기준이 무엇인지?
- A.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12절에 따르면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히 이행하되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이상의 하수급자를 선정하도록 규정  
-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이란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 내용과 비율 등을 유지하되, 당초 하수급자 보다 시공능력, 시공기술, 시공실적 등이 우월한 자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며, 특히, 새로운 하수급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 계약금액에 하수급자가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이어야 함【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818, '19.12.12.】

⑦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은 국가계약(조달청 기준)은 ‘100억 원 미만 50억 이상’, 지방계약은 ‘3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비율로 평가한다.

평가방법은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이 동일하므로 같이 서술하고, 평가기준은 내용이 달라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적정성 평가방법(국가/지방계약 공통)

평가산식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

■ 노무비 평가점수

$$\frac{\text{입찰서상 노무비 반영비율} \left[ \frac{\text{직접노무비} + \text{간접노무비}}{\text{입찰금액}} \times 100 \right]}{\text{노무비 적용기준율} \left[ \frac{\text{노무비}}{\text{기초금액}} \times 100 \right]} \times 100 \rightarrow \text{다음 "노무비 및 제경비 배점기준"의 해당 등급 점수}$$

■ 제경비 평가점수(기타경비 기준, 일반관리비 및 이윤도 동일한 방식으로 각각 산출)

$$\frac{\text{입찰서상 기타경비 반영비율} \left[ \frac{\text{기타경비}}{\text{입찰금액}} \times 100 \right]}{\text{기타경비 적용기준율} \left[ \frac{\text{기타경비}}{\text{기초금액}} \times 100 \right]} \times 100 \rightarrow \text{다음 "노무비 및 제경비 배점기준"의 해당 등급 점수}$$

■ 노무비 및 제경비 배점기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구분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배점	등급	배점	등급
조달청	노무비	해당없음	7점	기준율의 100% 이상 7점 기준율의 90% 이상 6점 기준율의 90% 미만 5점
	기타경비	해당없음	1점	기준율의 100% 이상 0.5점
	일반관리비		1점	기준율의 85% 이상 1점
이윤	1점		기준율의 85% 미만 0.5점	
지방 계약	노무비	기준율의 100% 이상 8점	7점	기준율의 100% 이상 7점
		기준율의 90% 이상 7점		기준율의 90% 이상 6점
		기준율의 90% 미만 6점		기준율의 90% 미만 5점
	기타경비	기준율의 100% 이상 2점	1점	기준율의 100% 이상 1점
		기준율의 80% 이상 2점		기준율의 85% 이상 1점
		기준율의 80% 미만 1점		기준율의 85% 미만 0.5점
일반관리비	기준율의 100% 이상 1점	1점	기준율의 100% 이상 0.5점	
	기준율의 80% 이상 2점		기준율의 85% 이상 1점	
이윤	기준율의 80% 미만 1점	1점	기준율의 85% 미만 0.5점	

■ 평가방법

-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적용기준율은 기초금액 기준으로 산정, 기초금액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
-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반영비율은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나 공사원가계산서에 따름
- 공사종류별 적용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

☞ 평가사례

■ 전제 조건

- 공사명 : ○○시 ▲▲터널공사(단일공종공사)
- 기초금액 : 120억 원
- 기초금액 상 노무비 및 제경비 금액 : 노무비 40억 원, 기타경비 2억 원, 일반관리비 4억 원, 이윤 12억 원
- 적용기준율 : 노무비 33.3333%(40억/120억), 기타경비 1.6667%(2억/120억), 일반관리비 3.3333%(4억/120억), 이윤 10%(12억/120억)  
 ➔ 기초금액 발표 시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적용기준율 함께 발표
- 입찰금액 : 110억 원
- 입찰금액 상 노무비 및 제경비 금액 : 노무비 36억 원, 기타경비 3억 원, 일반관리비 5억 원, 이윤 10억 원

■ 계산 결과

- 반영비율 : 노무비 32.7273%(36억/110억), 기타경비 2.7273%(3억/110억), 일반관리비 4.5455%(5억/110억), 이윤 9.0909%(10억/110억)
- 항목별 평가점수
  - 노무비 : 98.182%(32.7273%/33.3333%)  
 ↳ “노무비 및 제경비 배점기준”에서 기준율의 90% 이상에 해당하므로 7점
  - 기타경비 : 163.6347%(2.7273%/1.6667%)  
 ↳ “노무비 및 제경비 배점기준”에서 기준율의 100% 이상에 해당하므로 2점
  - 일반관리비 : 136.3664%(4.5455%/3.3333%)  
 ↳ “노무비 및 제경비 배점기준”에서 기준율의 100% 이상에 해당하므로 1점
  - 이윤 : 90.909%(9.0909%/10%)  
 ↳ “노무비 및 제경비 배점기준”에서 기준율의 80% 이상에 해당하므로 2점
- 최종 평가점수  
 [7점(노무비)+2점(기타경비)+1점(일반관리비)+2점(이윤)] × 0.85(터널공사 난이도계수) = 10.2점

[표 83]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난이도	공사종류		기본계수	적용 난이도계수	비고
	조달청	지방계약			
A	① 현수교, 사장교, 연육교, 연도교, 해상교량, 아치교,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① 연육·연도교, 해상교량, 사장교, 현수교,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0.80	▶ 전체공사금액 대비 해당 등급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 70% 이상은 해당 등급의 기본계수 적용 ▶ 70% 미만, 50% 이상은 해당 등급의 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 50% 미만, 30% 이상은 해당 등급의 차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 30% 미만은 해당 등급의 차차 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 최하 기본계수는 1.00 적용	▶ 난이도계수는 예비가격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A~D등급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주공종(금액이 큰 공종)을 기준으로 함
	② 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② 담축조공사 ③ 발전소 건설공사 ④ 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B	① 경간50m 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 이상의 교량공사	① 경간50m 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 이상의 교량공사	0.85		
	② 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③ 터널공사 ④ 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사)건설공사	② 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③ 터널공사 ④ 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사)건설공사			
C	⑤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⑥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⑦ PQ대상 건축공사	⑤ 에너지 저장시설공사 ⑥ 정수장공사 ⑦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⑧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⑨ PQ대상 건축공사	0.90		
	① A 및 B등급 이외의 교량공사 ② 항만공사(준설, 매립공사 제외) ③ B등급 이외의 건축공사	① A와 B등급 이외의 교량공사 ② 항만·간척공사(준설, 매립공사 제외) ③ PQ대상 송전·변전공사 ④ B등급 이외의 건축공사			
D	① 철도공사(지상구간지하철 포함) ② 고속도로공사	① 철도공사(지상구간지하철 포함) ② 고속도로공사	0.95		
	① 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일반 공사 ②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기타 공사	① 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종합 공사 ②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그밖에 공사			
E			1.00		

유권해석

□ 일괄입찰공사에서 설계 제한 평가 방법

- Q. 일괄입찰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시공경험 평가대상과 다른 설계제안을 한 경우 정당한 입찰 인지, 또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시공경험 평가대상과 다른 설계제안을 한 경우 그 설계제안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지?
- A. 지방계약법 제95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일괄입찰에서 입찰공고의 공사내용 및 입찰참가 자격심사기준과 다른 형태의 구조물로 설계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설계평가를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구체적 사항은 입찰공고문 등 입찰안내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최종 판단해야 함. 참고로,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공사내용에 부합되도록 정한 평가지침의 심사분야 및 평가항목별 내용, 배점에 따라 평가해야 하므로 정당한 입찰이라 하더라도 공고내용과 다르게 설계서를 제출한 경우 현실적으로 낙찰자로 선정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됨【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691, '14.2.25.】

□ 자격심사 경영평가 기준인 재무제표 오류 반영 가능 여부

- Q. 적격심사의 경영평가기 기준인 재무제표에 오류가 있어 해당 '금융기관의 사실확인서'와 '세무사의 오류확인서'를 받아 입찰기관에 제출하였을 경우 오류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받는 것이 가능한지?
- A.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 상의 재무제표가 아닌 '금융기관의 사실확인서' 및 '세무사의 오류확인서'로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영(재무)상태를 평가하고 있지 않음【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305, '13.9.24.】

□ 입찰자격 면허 말소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 시 낙찰자 선정 가능 여부

- Q. 적격심사를 통과한 1순위 업체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토목공사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음을 확인하였으나 법원이 이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 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 A. 발주기관이 적격심사를 1순위로 통과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업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더라도 낙찰자 결정전에 해당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라면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해당 업체를 건설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자로 보기는 곤란【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491, '13.10.29.】

□ 시설공사 적격심사에서 수행능력 결격 사유 해당 여부

- Q. 토목공사업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기술자 보유현황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에는 관련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관련 협회에 신고가 지연된 경우 수행능력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 A.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별지2> '5-나-2'제외)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실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술자 보유현황이 해당 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일부 기술자를 관련 협회에 등록하지 아니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협회에서 발급받거나 전산망으로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상 해당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로 감점 처리하며, 별도로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하지 아니함【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279, '15.9.8.】

2. 종합심사(평가)낙찰제

종합심사(평가)낙찰제는 추정가격 100억 원(국가), 300억 원(지방) 이상인 공사 등에 대하여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평가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지방계약에서는 종합평가낙찰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015년까지는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였으나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하여 덤핑낙찰, 공사품질 저하, 건설 산업재해를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공공 공사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고, 2년간('14년~'15년)의 시범사업기간을 거쳐 2016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2019년 국가계약법령 개정을 통해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였으며, 지방계약의 경우도 2016년부터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 등에 대하여 종합평가낙찰제를 도입하였다.

국가계약의 종합심사낙찰제와 지방계약의 종합평가낙찰제는 적용대상, 평가방식 등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적용대상

종합심사낙찰제는 100억 원(국가), 300억 원(지방) 이상의 공사, 일정 금액 이상의 용역 및 문화재수리 공사 입찰 등에 적용되는데,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기술형입찰(일괄입찰, 대안입찰, 기본설계·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입찰하는 경우를 제외한 고액(추정가격 100억 원(국가), 300억 원(지방) 이상)의 공사와 문화재수리 공사에는 공통적으로 적용하나 용역 등에 있어서는 국가계약이 용역금액 및 종류별 적용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계약은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용역 뿐만 아니라 물품의 제조까지 적용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한편, 문화재수리공사의 경우 규모는 작으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문화재 중요도, 수리난이도 및 복잡성, 수리 규모 등에 따라 종합심사(평가)낙찰제 적용대상 공사를 별도로 고시하고 있고, 별도의 기준[「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문화재청 예규),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므로 문화재수리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표 84] 종합심사(평가)낙찰제 적용대상

국가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지방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li> <li>추정가격 2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용역</li> <li>추정가격 15억 원 이상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기본설계 용역</li> <li>추정가격 25억 원 이상 실시설계 용역</li> <li>「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재 수리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공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인 공사</li> <li>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li> <li>「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재 수리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공사</li> </ul>

(2) 입찰금액 등 심사기준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에서 종합심사(평가)낙찰제의 심사는 공사 규모 및 난이도에 따라 고난이도 공사와 일반공사로 구분하고 다른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가계약의 경우 고난이도 공사란 [표 85]와 같이 물량·시공계획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공사를 말하는데 일반공사의 심사항목에 투입물량·시공계획 등이 추가되고, 지방계약은 특정 공종을 고난이도 공사로 분류하고 배치 예정 현장대리인, 해당 공종 경력기술자 등을 심사에 반영한다.

[표 85] 고난이도 공사

국가계약 (「공사업법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	지방계약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주기관이 물량·시공계획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종으로 구분 1) 교량, 2) 공항, 3) 댐 축조 4) 에너지 저장시설, 5) 간척공사, 6) 준설, 7) 항만, 8) 철도, 9) 지하철, 10) 터널공사, 11) 발전소, 12) 쓰레기소각로, 13) 폐수처리장, 14) 하수종말처리장, 15) 관람·집회시설, 16) 전시시설, 17) 송전공사, 18) 변전공사</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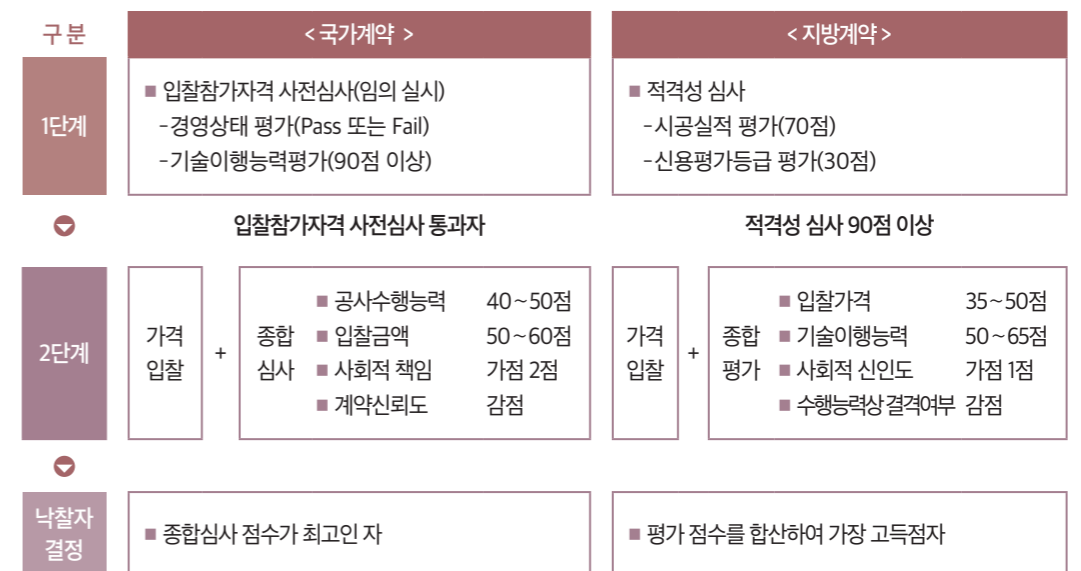
(3)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위원회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위원회(지방계약의 경우 입찰자종합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물량 및 시공계획을 심사하는 고난이도 공사의 경우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가계약에 있어 100억 원 이상 고난이도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위원회 구성을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종합심사(평가) 절차

국가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는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단계별 평가 없이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고, 지방계약의 경우 1차적으로 입찰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또는 적격성 심사를 하고, 심사통과자에 한해 가격입찰 및 종합심사 또는 종합평가를 하는 2단계 평가구조이다.

[그림 8]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종합심사(평가) 절차



※ 조달청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사전심사 대상 공사를 종합심사낙찰제에 의한 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로 규정

가. 적격성 심사(지방)

국가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르고, 지방계약 종합평가낙찰제의 1단계 적격성 심사는 시공실적 평가와 신용평가등급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90점 이상 획득하여야 가격입찰 및 종합평가 대상이 되며 시공실적 평가 기준은 [표 86]과 같다.

[표 86] 지방계약의 유형별 시공실적 평가 기준

구분	적용대상	평가기준
I 유형	고난이도 공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 규모 또는 금액 대비 20%~200% 이상)</li> <li>■ 최근 5년간 업종실적</li> </ul>
II 유형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10년간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 규모 또는 금액 대비 20%~150% 이상)</li> <li>■ 최근 5년간 업종실적</li> </ul>
III 유형	나머지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5년간 업종실적</li> </ul>

※ 상세한 배점 현황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참고

또한 신용평가등급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고,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업체의 경우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니면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나. 입찰금액 심사

① 균형가격 산정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가격평가는 입찰시장에서 형성되는 적정가격(균형가격)을 산출하고, 입찰가격과 균형가격을 비교하여 점수를 산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지방계약의 종합평가낙찰제 가격평가는 종합심사낙찰제의 심사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균형가격 산정, 단가심사 방식이 동일하나 국가계약과 달리 고난이도 공사에 있어 물

량 및 시공계획을 심사하지 않는다.

균형가격은 극단적 입찰로 인한 입찰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서 [표 87]에 나열된 입찰가격은 균형가격 산정 시 제외되고, [표 87]에 나열된 입찰금액 중 일부의 경우 균형가격 산정 시 제외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금액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에서 배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0조 제4항)

[표 87] 균형가격 산정 시 제외하는 입찰금액

균형가격 산정 시 제외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의 경우</li> <li>■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li> <li>■ 이윤 또는 세부공종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제외]</li> <li>■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이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해당 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의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반영하도록 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li> <li>■ 발주기관이 작성한 내역서상 세부공종에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로서 세부공종별 입찰금액이 발주기관내역서상 세부공종별 금액의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li> <li>■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가 발주기관이 작성한 내역서상 직접노무비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li> <li>■ 기타 발주기관의 세부 심사기준에서 제외토록 명시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심사 점수 미산정</li> <li>■ 낙찰자 배제</li> </ul>
<p>⇒ 위 입찰금액을 제외한 입찰금액의 상위 100분의 20 이상과 하위 100분의 20 이하는 균형가격 산정 시 제외. 단 위 입찰금액을 제외한 입찰금액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상위 100분의 50 이상과 최하위 1개를 제외하고,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에는 상위 100분의 40 이상과 하위 100분의 10 이하를 제외</p>	

유권해석

- 조달청 지침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7조 제2항 해석
  - Q. 제7조 제2항의 각 호에서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의 의미는?
  - A. “균형가격 산정 시 제외한다”는 의미이며, 심사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하지 않음
- 【조달청 토목환경과-5004, '17.12.22.】

## ② 입찰가격의 적정성 심사

입찰가격의 적정성은 세부공종의 단가, 하도급계획, 물량·시공계획을 심사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물량과 시공계획은 고난이도 공사에서만, 단가와 하도급 계획은 모든 공사에서 심사하며 각 항목별로 입찰금액배점의 20%를 한도로 감점 점수를 산정하여 입찰금액점수에서 차감한다.

[표 88] 입찰가격 적정성 평가

대상	평가항목	심사기준
모두	세부공종별 단가	■ 세부공종 입찰단가가 적정 기준단가 범위 내인지 여부를 평가
모두	하도급계획	■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하도급계약별로 하도급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지 평가
고난이도 공사	물량	■ 입찰물량이 최종물량 대비 ±2% 이내인지 여부를 평가
고난이도 공사	시공계획	■ 시공계획, 공사기간, 안전관리 역량평가, 안정성 확보 및 환경오염 방지, 품질 확보방안 등을 평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0”점을 부여하고, 시공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불이행한 경우 위반사실 통보 및 해당 발주기관 입찰에서 2년간 감점 부여

※ 상세한 배점 현황 및 평가방법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고

### 유권해석

□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심사 대상

Q.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심사에서 수정 가능한 물량 범위는?

A. 종합심사낙찰제의 물량심사는 입찰자가 설계도면 및 물량산출 근거 등을 기초로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물량 내역을 참고하여 산출내역을 작성하거나 직접 산출내역을 작성하고, 발주기관이 그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물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입찰자는 설계도면에 기초한 물량부분에 한하여 수정이 가능하며, 설계도면의 변경을 초래하는 물량의 수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039, '16.7.21.】

## 다. 공사수행능력 심사(국가)

### ① 시공실적(시공인력)

시공실적 심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준공된 해당 발주공사와 동일한 공법, 구조 형식 등의 시공실적경험을 건수, 금액, 규모 등의 기준으로 합산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공사의 특성상 동일공사 실적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세부 심사기준과 입찰공고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발주공사와 동일한 업종 또는 공종그룹실적(일반공사 실적)으로 심사하고, 시공실적은 관련 협회 및 발주기관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한편 입찰참가 업체가 시공실적 대신 동 공사 참여경험이 있는 인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공실적 심사를 시공인력 심사로 대체한다. 다만 일반공사 실적을 심사하는 경우와 동일공사 실적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시공인력 심사 대상이 아님을 명시한 경우에는 시공인력 심사로 대체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동일공종그룹 매출액비중

입찰참가 업체의 동일공종그룹(토목: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시설, 건축: 주거, 비주거) 실적이 동 업체의 해당 업종 실적(토목, 건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심사하는 것으로 기성실적 총액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확인한다.

### ③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배치기술자 심사는 입찰참가 업체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의 시공 참여 경력을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분야별 책임자는 시공책임자, 품질책임자, 안전책임자 각 1인(단, 시공책임자는 추정가격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2인, 추정가격 1,0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3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배치예정자의 경력심사는 동일공종그룹 공사 참여실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이 현장대리인의 특수한 공사 참여실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공종그룹에 포함되는 1개 이상의 세부공사 참여실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유권해석

□ 종합심사낙찰제 배치기술자 관련 질의

Q.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에서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심사기준은?

A.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은 배치기술자의 시공경력 심사에 있어 “시공경력은 건설기술인협회 또는 발주기관이 세부심사기준에서 명시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기술인협회 등에서 객관적으로 측정·관리될 수 있는 실적이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반드시 시공이 완료된 공사에 대한 실적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함【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304, '16.9.8.】

④ 시공평가결과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입찰자가 수행하였던 과거 공공공사의 시공평가결과(「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라 100억 원 이상 공공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이 시공결과를 평가)에 따라 발주기관이 정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자료를 활용하며, 입찰참가업체가 최근 3년간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평가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심사한다.

⑤ 공사규모별 시공역량

규모별 시공역량 심사는 공사 규모에 따른 적정 규모의 건설업체가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심사로 발주기관별로 작성한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따라 상위 등급에 속하는 업체의 참여 지분율에 따라 점수를 감하는 방식으로 심사한다.

⑥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여부 및 공동수급체 중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의 참여 비율을 심사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비율별 등급에 따라 발주기관이 정한 점수를 부여한다.

⑦ 건설인력 고용 심사

건설인력 고용은 2018년 신설된 항목으로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 도 기간에 대해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심사하며, 발주기관

이 작성한 고용탄력성 등급별 점수를 부여한다.

고용탄력성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표준화된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표준화된 기성액 증감률을 차감한 값이며,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3에 따른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횟수에 따른 차등 점수를 말한다.

⑧ 경영상태 심사

경영상태 심사는 2019년 신설된 항목으로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인면서 고난이도 공사가 아닌 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⑨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발주대상 공사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경우 공사수행능력 심사 항목들의 평가방법이 아래와 같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 시공비율 : 공동수급협정서상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산정
- 시공실적 :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
- 배치기술자 시공능력 심사 : 분야별 책임자는 하도급 수행 실적 및 경력을 일부 반영하여 평가가능
- 건설인력 고용 심사 :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자가 참여간 경우 항목별 기본점수 부여 가능

⑩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 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

시공경험 심사는 주력(업무)분야 실적 누계액으로 평가하며, 공동계약의 시공비율은(주력)업무 분야 시공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라. 기술이행능력 심사(지방)

① 동일실적 경과정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10년 이내 준공실적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한 동일실적 및 인정범위 이상



준공실적 중 적격성 심사시 제출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 점수 = 동일실적 준공기간 경과정도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② 기술능력(1,000억 원 이상 30점, 1,000억 원 미만 25점, 500억 원 미만 20점)

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인력,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해당부분 기술개발투자비율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사유형별로 배점·평점 등이 상이하야 주의하여야 한다.

- 점수 = 공사규모별 배점 한도 × 기술능력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40

※ 세부평가 등급 및 평점 등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참고

③ 시공품질(500억 원 이상 15점, 500억 원 미만 10점)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며, 최근 3년간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평가한다.

- 점수 = 공사규모별 배점한도 × 시공품질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10

④ 하도급 적정성(1,000억 원 이상 12점, 1,000억 원 미만 10점)

하도급 비율, 하수급금액 비율,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심사하며,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1>에 의한다.

- 점수 =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추정가격 1,000억 원 미만) ×10/12 (추정가격 1,000억 원 이상)

⑤ 사회적 신인도(최대 1점)

아래 항목들에 대해 세부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기술이행능력에 가산한다.

- 사고사망만인율 : 3개년 가중평균으로 산출하며, 평가점수에서 산업재채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를 차감하여 평가(차감 산정 점수가 음(-)인 경우 0 점 처리)
- 상호협력 :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한 협력업자와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

-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지역업체가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성실적 총액이 동 업체의 최근 10년간 업종별(토목, 건축) 국내 기성실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심사하며, 동일공종그룹이 없는 경우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건설인력고용 :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에 대한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점수를 감하여 평가

마. 사회적 책임(국가)

사회적 책임은 건설인력 고용(간이형 공사만 해당), 건설안전,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도 등 4개 분야로 평가하고, 「(3) 공사수행능력 심사」 결과에 최대 2점의 가점을 가산한다.

[표 89] 사회적 책임 항목별 평가방법

심사분야	평가방법
건설인력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건설인력 고용 기여도와 근로기준법 준수 정도를 평가</li> <li>- 고용탄력성 점수-근로기준법 준수 점수</li> </ul>
건설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재해율 등 건설안전 수준을 평가</li> </ul>
공정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협력평가 결과, 공정거래법 준수정도를 평가</li> <li>- 상호협력평가 점수 - 공정거래법 준수점수</li> </ul>
지역경제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공사 현장 소재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심사</li> </ul>

바. 계약신뢰도(국가)

계약신뢰도 심사는 입찰참여자 과거 해당 발주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하도급관리계획, 하도급금액 변경 초과비율, 시공계획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2년 동안 해당 분야 심사 점수에서 일정 비율을 감점하는 것을 말한다.

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지방)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사 당 종합평가점수에서 2점씩 감점

### 3. 설계·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 (1) 기술형공사의 입찰·낙찰방법

계약법령에 따르면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대형공사”라 하고,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된 공사를 “특정공사”라고 한다.

[표 90]과 같이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발주하는 일반적인 공사계약의 경우 입찰 시 입찰서와 산출내역서(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 방법으로 작성, 100억 원 미만인 공사와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는 입찰 시에는 제출하지 않고,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출)를 제출하는 내역입찰을 실시하되, 추정가격이 100억 원(국가)·300억 원(지방) 미만인 경우 적격심사낙찰제를, 100억 원(국가)·300억 원(지방) 이상인 경우 종합심사(평가)낙찰제를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반면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경우 입찰방식에 있어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지 않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또는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더라도 설계에 대한 대안을 제출받는 대안입찰의 방식을 채택할 수 있으며,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공사의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의 공사에 있어서는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표 90] 공사계약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입찰방식	추정가격	낙찰자 결정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액입찰</li> </ul>	100억 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격심사낙찰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역입찰</li> </ul>	10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량내역수정입찰</li> </ul>	100억 원 이상(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순수내역입찰</li> </ul>	300억 원 이상(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심사(평가)낙찰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계·시공일괄입찰 (턴키)</li> </ul>	300억 원 이상 (필요시 300억 원 미만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래 방식 중 선택</li> <li>-설계적합최저가</li> <li>-입찰가격조정</li> <li>-설계점수조정</li> <li>-가중치</li> <li>-확정금액 최상설계(턴키만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안입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제안입찰</li> </ul>		

또한 기술형공사들의 경우 [표 91]과 같이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 설계적합최저가방식, 입찰가격조정방식, 설계점수조정방식,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 및 확정금액 최상설계방식(턴키공사만 가능) 중 하나의 방식을 정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표 91] 기술형공사의 낙찰자 결정방식

구분	낙찰자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계적합최저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찰가격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li> <li>-조정가격 = 입찰가격 / (설계점수 / 1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계점수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li> <li>-조정점수 = [설계점수×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가격</li> <li>공사의 기술적 난이도에 따라 다음의 범위 내에서 가중치를 정하고 가중치가 반영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li> <li>-입찰공고 시 가중치를 명시하여야 하고 가중치 적용 시 세부 유의사항은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참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중치</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등급(유형)</th> <th>기술적 난이도</th> <th>설계가중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A 기술강조형</td> <td>① 고난도·고기술이 필요한 특수교량</td> <td rowspan="5">80%이하~ 50%초과</td> </tr> <tr> <td>② 공사여건이 극히 열악하여 시공자의 기술 및 경험이 요구되고 하자책임 보증이 중요한 공사</td> </tr> <tr> <td>③ 경간 100m 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 이상의 교량, 장대터널 (1,000m이상, 방재1등급 터널에 한함)</td> </tr> <tr> <td>④ 설계부실에 따른 안전사고 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커서 설계의 기술비중을 특히 중요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td> </tr> <tr> <td>⑤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는 공사로서 성능보장이 특히 필요한 공사</td> </tr> <tr> <td rowspan="3">B 균등평가형</td> <td>⑥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td> <td rowspan="3">60%이하~ 40%이상</td> </tr> <tr> <td>⑦ 폐수·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로 제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시설</td> </tr> <tr> <td>⑧ 관람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장, 체육관), 전시시설(전시장)</td> </tr> <tr> <td rowspan="2">C 가격강조형</td> <td>① 경간 100m 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 이하의 교량, 장대터널 (1,000m이상, 방재1등급 터널에 한함)</td> <td rowspan="2">50%미만~ 20%이상</td> </tr> <tr> <td>② 지하 10m이상의 복개식 도시철도(지하철) 등 이에 준하는 공사</td> </tr> <tr> <td></td> <td>③ 평균 높이 20m이상인 항만구조물(방파제, 안벽, 단, 잔교식은 제외), 배수갑문(2,000m/sec이상)</td> <td></td> </tr> <tr> <td></td> <td>④ 지능형 교통체계시설, 공동주택, 학교, 병원, 공용청사</td> <td></td> </tr> <tr> <td></td> <td>⑤ 가스공급시설</td> <td></td> </tr> <tr> <td></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및 B등급 이외의 공사</li> </ul> </td> <td></td> </tr> </tbody> </table>	등급(유형)	기술적 난이도	설계가중치	A 기술강조형	① 고난도·고기술이 필요한 특수교량	80%이하~ 50%초과	② 공사여건이 극히 열악하여 시공자의 기술 및 경험이 요구되고 하자책임 보증이 중요한 공사	③ 경간 100m 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 이상의 교량, 장대터널 (1,000m이상, 방재1등급 터널에 한함)	④ 설계부실에 따른 안전사고 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커서 설계의 기술비중을 특히 중요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	⑤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는 공사로서 성능보장이 특히 필요한 공사	B 균등평가형	⑥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60%이하~ 40%이상	⑦ 폐수·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로 제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시설	⑧ 관람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장, 체육관), 전시시설(전시장)	C 가격강조형	① 경간 100m 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 이하의 교량, 장대터널 (1,000m이상, 방재1등급 터널에 한함)	50%미만~ 20%이상	② 지하 10m이상의 복개식 도시철도(지하철)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③ 평균 높이 20m이상인 항만구조물(방파제, 안벽, 단, 잔교식은 제외), 배수갑문(2,000m/sec이상)			④ 지능형 교통체계시설, 공동주택, 학교, 병원, 공용청사			⑤ 가스공급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및 B등급 이외의 공사</li> </ul>	
등급(유형)	기술적 난이도	설계가중치																														
A 기술강조형	① 고난도·고기술이 필요한 특수교량	80%이하~ 50%초과																														
	② 공사여건이 극히 열악하여 시공자의 기술 및 경험이 요구되고 하자책임 보증이 중요한 공사																															
	③ 경간 100m 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 이상의 교량, 장대터널 (1,000m이상, 방재1등급 터널에 한함)																															
	④ 설계부실에 따른 안전사고 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커서 설계의 기술비중을 특히 중요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																															
	⑤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는 공사로서 성능보장이 특히 필요한 공사																															
B 균등평가형	⑥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60%이하~ 40%이상																														
	⑦ 폐수·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로 제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슬러지 건조시설																															
	⑧ 관람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장, 체육관), 전시시설(전시장)																															
C 가격강조형	① 경간 100m 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 이하의 교량, 장대터널 (1,000m이상, 방재1등급 터널에 한함)	50%미만~ 20%이상																														
	② 지하 10m이상의 복개식 도시철도(지하철)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③ 평균 높이 20m이상인 항만구조물(방파제, 안벽, 단, 잔교식은 제외), 배수갑문(2,000m/sec이상)																															
	④ 지능형 교통체계시설, 공동주택, 학교, 병원, 공용청사																															
	⑤ 가스공급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및 B등급 이외의 공사</li> </ul>																															

구분	낙찰자 결정
·가중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격점수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최저입찰가격은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함</li> <li>-가격점수 = 가격점수 가중치×(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li> </ul>
·확정금액 최상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li> </ul>

다만, 기술형공사의 경우 입찰방법,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 낙찰자결정방법 등을 정하는 데 있어 제2장 제1절 2. (2)의 내용과 같이 중앙건설기술심의회(지방의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회, 전문성이 필요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중앙건설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림 9] 기술형공사계약 업무 흐름도



(2) 설계·시공일괄입찰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입찰) 제도는 정부가 제시하는 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방법으로 설계·시공상의 기술능력 개발을 유도하고 설계경쟁을 통한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며, 설계용역과 공사입찰을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계약상대자 선정에 소요되는 입찰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턴키입찰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발주기관이 교부하는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를 제외한 모든 설계서를 직접 작성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아 낙찰율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입찰방법과 구분된다.

한편 실시설계적격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예산 또는 총공사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제출요구 전에 예산의 범위 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유권해석

□공사 수의계약 가능 여부

Q. 자치단체가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을 조달청에 설계시공일괄입찰 계약으로 요청하여 2회에 걸쳐 입찰공고를 했으나 2인 이상 입찰자가 없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A. 지방계약에서 유찰이 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고, 재공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동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일괄입찰의 경우는 계약의 목적, 성질, 입찰 및 계약절차 등의 특성에 비추어 동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 등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528, '13.5.14.】

### (3) 대안입찰

대안입찰의 경우 입찰 시 원안입찰서(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와 함께 대안입찰서(대안설계서, 가격입찰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 경우 대안입찰서는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출하는 것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다. 다만, 원안입찰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자가 제출한 원안설계서를 심의하여 설계점수를 산출하게 된다.

대안입찰 시에는 동시에 2개 이상의 대안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고, 대안입찰가격은 원안입찰 금액보다 낮아야 한다.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을 제출하는 제도의 특성상 낙찰자 결정방식 중 '확정금액 최상설계방식'은 적용되지 않는다.

### (4) 기술제안입찰

기술제안입찰 제도는 2007년 10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상징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거나 고난도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도입된 방식으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이 있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시공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자가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등이 포함된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방식이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고, 낙찰자가 아닌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과 다르다.

다만, 두 방식 모두 기술제안을 제출하는 제도의 특성상 낙찰자 결정방식 중 '확정금액 최상설계방식'은 적용되지 않는다.

## 4. 희망수량경쟁입찰

희망수량경쟁입찰은 물품 매각, 제조 및 구매계약에만 적용되는 제도로서, 다량의 물품을 매각하거나 다량의 수요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구매하고자 할 경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계약법령상 이 제도 관련 조문의 제목은 '다량물품의 입찰'이나 통상적으로 '희망수량경쟁입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1) 적용대상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그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할 경우
- 1인의 능력으로는 그 매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매각할 경우
- 수인의 공급자 또는 매수자와 분할계약하는 것이 가격·품질 기타 조건에 있어서 국가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매각할 경우

### (2) 입찰방법

입찰공고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할 사항 외에 i)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이라는 사항, ii)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 최후 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수요량 또는 매각량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수량은 이를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입찰수량과 낙찰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iii) 기타 희망수량경쟁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희망수량경쟁입찰 입찰공고 사례

공고번호 : △△ 2021 - 77호

입찰제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혈소판성분채혈키트 구매 및 기기 임차 희망수량경쟁입찰 제공고

□ 입찰내용

구분	수량	계약기간
혈소판성분채혈키트	107,800set	2021. 8. 1 ~ 2022. 7. 31
혈소판성분채혈기기 임차	167대	2021. 8. 1 ~ 2022. 7. 31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의료기기법 제6조, 제14조 및 제16조에 의거 의료기기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가 가능한 업체

3. 낙찰자선정방법

가. 혈소판성분채혈키트와 기기 임차 단가의 합계액, 혈소판성분채혈키트 납품희망수량을 입찰서에 기재하여 투찰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 입찰자 중 최저단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요구수량(예산의 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 결과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납품희망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기기 임차 수량은 혈소판성분채혈키트 납품 희망수량에 따라 결정하되 혈소판 성분채혈키트 645키트 당 기기 1대를 임차합니다.

마. 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의 낙찰률을 각 품목별 예정가격에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산출합니다.

바. 신규 현혈의 집 임대차

- 계약기간 중 신규 현혈의 집 신설로 인하여 장비가 추가 도입될 경우 낙찰순서대로 장비를 임대합니다.

(이하 생략)

(3) 낙찰자 결정

다량 물품을 매각 또는 제조·구매할 경우에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매각수량 또는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그리고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5.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적격자에 한해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2단계 경쟁입찰'과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구분된다.

(1) 적용대상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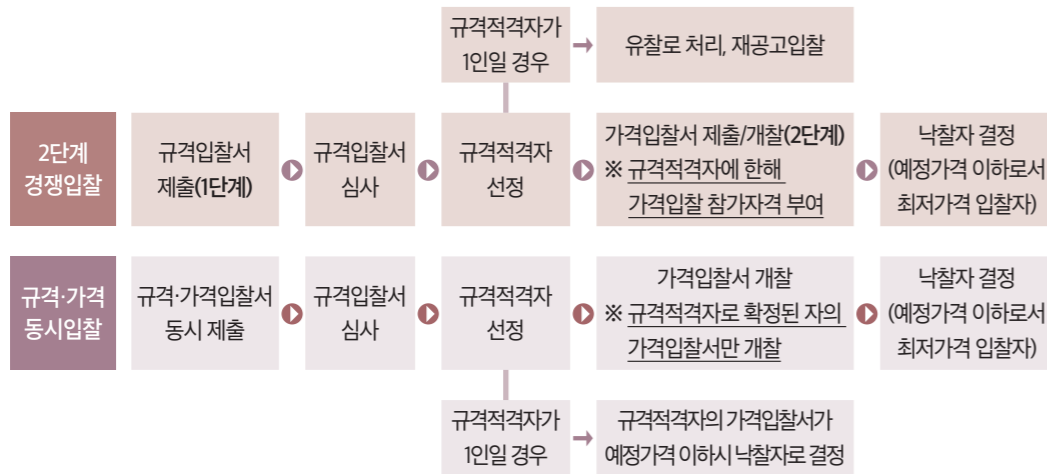
-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
-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예외) 청소용역, 검침(檢針)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용역은 제외

(2) 입찰방법

2단계 경쟁입찰과 규격·가격 동시입찰의 절차는 [그림 10]과 같은데,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 2단계 경쟁입찰은 1단계로 규격입찰서를 제출받고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2단계로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개찰하고, 규격·가격 동시입찰은 1단계와 2단계를 통합하여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받은 후 규격입찰서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한다.

[그림 10]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처리 절차



또한 규격적격자가 1인일 경우의 처리방법도 상이한데, 2단계 경쟁입찰의 경우 규격입찰서가 통과한 자만을 유효한 입찰자로 보기 때문에 2인 이상이 규격입찰서를 제출하고 규격심사 결과 합격자가 1인인 경우에는 유찰로 처리해야 하며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반면, 규격·가격 동시입찰의 경우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유효한 입찰로 보기 때문에 규격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유찰로 처리하지 않고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으며, 해당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가 예정가격 이하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유권해석

- 기술가격 동시입찰에서 입찰 유효 여부
  - Q. 2단계 경쟁입찰에서 기술·가격 동시입찰에서 기술제안서는 제출하였으나, 가격입찰서를 미제출한 경우, 해당 입찰은 유효인지?
  - A.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물품의 구매계약을 위해 기술·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 기술입찰서는 제출하였으나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3호(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에 따라 유효한 입찰로 보기 어려움【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76, '15.1.19.】

(3) 낙찰자 결정

가격입찰서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단,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그리고 규격·가격 동시입찰에 있어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 i) 규격적격자가 1인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하고, ii)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5조 제3항】.

유권해석

- 2단계 경쟁입찰 시 한 업체만 1단계를 통과한 경우 입찰성립 여부 판단
  - Q. 2단계 경쟁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최초 2개 업체 입찰 참가 후 1단계 적격심사에서 적합 판정받은 업체가 1개 업체 뿐이라면, 2단계에서 1개 업체에 대해서만 가격입찰을 진행하는지 아니면 1개 업체는 경쟁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유찰되어 재공고를 실시해야 하는지
  - A. 2단계 경쟁 입찰에서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되었지만 기술점수의 부족으로 낙찰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없다하더라도 이는 낙찰자 결정 방식에 따른 사항일 뿐 입찰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아니므로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 바,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서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확정된 적격자 중 2인 이상이 가격입찰에 참여하였다면 가격입찰 시 경쟁입찰 성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조달청 질의회신, 공개번호 1912200004, 2019】

6.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서, 국가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지방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에서 상세한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1) 적용대상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 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및 용역계약으로서 공사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아래 지식기반산업에 대해서는 이 방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엔지니어링사업(건설기술용역은 고난도·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함), 정보통신산업, 정보화사업,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문화산업,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기념탑, 기념비, 위령탑, 조각상 등 예술성·창작성이 수반되는 조형물 사업(지방계약만 해당), 공간정보사업(지방계약만 해당),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업(국가계약만 해당)

유권해석

□ 협상에 의한 계약 발주 시 공사계약 포함 가능 여부

Q.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면서 공사계약을 포함하여 발주할 수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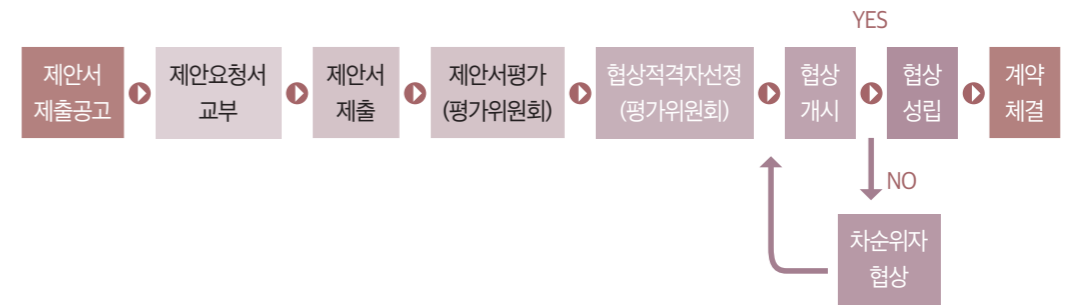
A.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물품(단순 구매는 제외)·용역(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의 안전성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

- 따라서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사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내용에 포함하여 발주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을 것임【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040, '17.4.24.】

(2) 입찰절차

협상에 의한 계약의 추진 절차는 [그림 11]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다른 계약 방식과 다른 주요 특징이다.

[그림 11]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절차



① 입찰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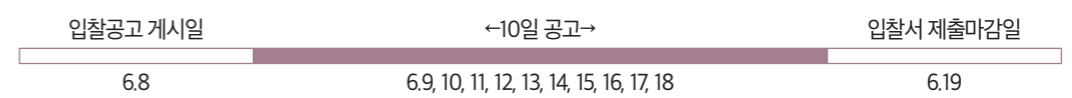
입찰공고는 국가계약의 경우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하여야 하는데, 지방계약은 이를 금액별로 세분화하여 10일, 20일, 40일의 공고기간을 두고 있으며,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표 92]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기간 비교

국가계약		지방계약	
기준	공고기간	기준	공고기간
-	40일	■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10일
-	40일	■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20일
-	40일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40일
■ 재공고	10일	■ 재공고	10일
■ 예산 조기집행에 필요한 경우		■ 예산 조기집행에 필요한 경우	
■ 다른 국가사업과 일정조정인 경우		■ 다른 국가·지방 사업과 일정조정인 경우	
■ 긴급 공고의 경우		■ 긴급공고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공고일은 입찰공고 게시일과 입찰서 제출마감일(제출일)을 제외한 기간을 의미함

예) 입찰공고 게시일(1일) + 공고기간(10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1일) = 12일



그리고 지방계약은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안요청서 설명일과 입찰 공고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안요청서 설명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표 92]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실시해야 하고 이 경우 입찰공고는 제안요청서 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찰공고 게시일	←7일 공고→	제안요청서 설명일	←10일, 20일, 40일→ (추정가격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5.31	6.1, 2, 3, 4, 5, 6, 7	6.8	6.9, 10, 11, 12, 13, 14, 15, 16, 17, 18	6.19

입찰공고에는 해당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등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 해당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 제안요청서의 교부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절차·내용(지방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 제안서의 제출기간
- 제안서의 내용
-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국가계약)
  - 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지방계약)
- 기술능력평가 실시 여부 및 평가점수 부여기준(국가계약)
- 가격 적정성 평가 실시 여부 및 평가대상 기준 금액(국가계약)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 설명을 실시할 경우 그 장소·일시에 관한 사항(국가계약)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지방계약)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유권해석

□ 협상 계약에서 불확정 예산금액으로 공고 가능 여부

Q. 협상에 의한 계약의 사업예산 공고 시 확정금액이 아닌 범위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는지?

A.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해당 규정에서 사업예산은 원칙적으로 확정된 해당사업 예산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나, 입찰공고 시 사업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 과-724, '14.6.2.】

### ② 제안요청서 교부 및 제출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과업내용, 요구사항, 계약조건,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제안서의 규격 등이 포함된 제안요청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지방계약)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 지방계약은 사업내용이 복잡하거나 제안요청서의 요청자가 다수여서 입찰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제안서와 세부제안서를 구분하여 기본제안서 평가결과 선정된 자를 제안요청서의 교부대상자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국가계약은 관련 규정 없음)

그리고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현장설명을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입찰공고 또는 현장설명 후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나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술(설계)제안서와 가격제안서(입찰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하고,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한다.

여기서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 입찰가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유권해석

□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시 입찰가격의 보완 요청 가능 여부

- Q.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서 평가시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서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입찰가격도 수정·보완할 수 있는지?
- A.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3항은 “제안서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그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 보완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이를 근거로 “입찰서”의 “입찰가격”을 정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458, '15.4.20.】

□ 협상에 의한 용역계약 관련 입찰기준일

- Q. 협상에 의한 계약 발주기관에서 제안응모신청서(청렴서약서, 공동수급협정서, 회사 일반현황 등) 접수일과 제안서(입찰참가신청서, 기술·가격제안서 등) 접수일을 각각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 제안응모신청서 제출을 입찰서 제출로 보아 입찰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 A.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제3절 “3”에 따르면 입찰공고나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기술(설계)제안서와 가격제안서(입찰서)를 구분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 가격제안서(입찰서)가 입찰공고에서 정한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호에 따라 무효임  
- 따라서 질의와 같이 제안응모신청서 접수일과 제안서 접수일을 달리하여 입찰공고한 경우 입찰참가신청서 및 기술·가격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한 제안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입찰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입찰공고 내용, 각각의 접수일을 달리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312, '17.5.11.】

③ 제안서 평가

제안서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으며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그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는데, 국가계약이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되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면 10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지방계약은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 10점을 초과하여 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할 수 없다.

그에 따라 국가계약은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 없이는 기술능력 평가 70~90점, 입찰가격 평가 10~3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 지방계약은 정량적 평가분야 10~30점,

정성적 평가분야 50~70점, 입찰가격 평가분야 10~30점으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지방계약에서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배점을 각각 6점씩 감하여 14점과 54점으로 하고 입찰가격 평가분야의 배점을 32점(+12점)으로 하는 것은 입찰가격 평가분야의 조정 한도인 10점을 초과하여 조정한 것이므로 불가능하다.

국가계약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지식능력</li> <li>• 인력·조직·관리기술</li> <li>• 사업수행계획</li> <li>• 지원기술·사후관리</li> <li>• 수행실적</li> <li>• 재무구조·경영상태</li> <li>• 상호협력</li> <li>•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등</li> <li>• 원가절감의 적정성 등</li> </ul>	80	•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 가격 평가		20	

지방계약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정량적 평가 분야 (계량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행경험(실적)</li> <li>• 경영상태</li> <li>•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 인력</li> <li>• 신인도</li> <li>• 용역근로자보호지침</li> <li>• 그밖에 필요한 사항</li> </ul>	20	•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정성적 평가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지식능력</li> <li>• 사업수행계획</li> <li>• 지원기술·사후관리</li> <li>• 상호협력 관계</li> <li>• 그밖에 필요한 사항</li> </ul>	60	• 평가위원이 평가
입찰 가격 평가 분야		20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등 상세한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 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서 정하고 있음

주: 1. 입찰가격 평점산식 등 상세한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음  
2. 계약담당자는 디자인사업·설계, 행사기획·운영 등 해당 사업의 특성상 기술능력을 위주로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2] 제안서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을 적용할 수 있음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3]을 적용할 수 있음. [별표2] 적용의 경우에는 정량적 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정성적 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함

Check! 유의사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text{· 평점} = \text{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frac{\text{최저입찰가격}}{\text{해당입찰가격}} \right)$$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위 밑줄 친 유효한 입찰자는 협상적격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요건을 갖춘 모든 입찰자를 의미한다.

국가계약은 계약예규에서 평가요령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지 않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여기서는 지방계약을 기준으로 평가요령 등을 설명한다.

■ 평가요령(「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제3절 4. 사.)

-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
-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위임)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다만,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항목별(항목을 세분화한 경우는 세부항목별)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세부기준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장소에서 동시에 가격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없이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 점수에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협상순위를 발표. 다만, 제안서 평가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제4절 1.)

-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함
-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계약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함. 다만,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시·도의 위원으로만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 ※ 추첨결과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
-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함

한편,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위원별 평가 결과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방계약은 최소한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보다 강화된 규정을 두고 있다.

【표 93】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간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규정 비교

국가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7조 10항 및 11항)	지방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3.)
제7조(제안서의 평가)	3. 평가결과의 공개
<p>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제5항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별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㉕ 제10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p>	<p>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p> <p>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p>

유권해석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원의 자격

Q.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위원회 구성원에 계약당사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배제되는지?

A.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제4절 '1-나' 및 '1-바'에 따르면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가위원회 구성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제외하여야 함【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425, '17.11.27.】

□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서와 다른 입찰가격의 입찰무효 해당 여부

Q.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자금소요계획과 실제 입찰가격이 다를 경우(제안서에 자금소요계획은 실제 입찰가격과 다를 수 있음 표기) 입찰무효에 해당하는지?

A. 경쟁입찰에서 입찰자는 낙찰자로 결정되기 위하여 입찰참가 전 본인이 계산한 충분한 비용 및 이윤 등을 반영한 가격보다 전략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찰행태라고 할 수 있음.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발주기관이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자금소요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 그 자금소요계획과 입찰가격 평가 시 투찰한 입찰가격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이에 따라 자금소요계획과 실제의 입찰가격이 상이하다는 것만으로는 입찰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입찰자가 기술 제안서에 자금소요계획은 실제 입찰가격과 다를 수 있음을 표기한 경우라면 더욱 그러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458, '15.4.20.】

□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무효인 제안서의 평가 시 처리방법

Q.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서평가 오류 시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A.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할 제안서가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제안서에 대한 심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4항에 따라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구체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안요청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제안서, 입찰공고문 등 제반서류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995, '13.7.25.】

④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제안서 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국가계약은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지방계약은 기술능력과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정보화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은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기준이 서로 다르다.

그리고 협상순서는 국가계약과 지방계약 모두 동일하게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는데,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협상순위 결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일부 차이가 있다.

(국가계약) ①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자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②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 ③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지방계약) ①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자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②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 ③ 추천

유권해석

□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입찰가격평가로 우선협상대상자 제외 가능 여부

Q. 전기검침 용역입찰 계약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예정가격산정 시 적용한 노임의 87.745% 미만 투찰업체를 입찰가격평가에 적용하여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국가계약법상 가능한지?

A.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면 입찰가격 평가는 노임기준이 아닌 추정가격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협상순위의 선정은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고 있으므로 입찰서상 노임이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의 87.745%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546, '12.11.30.】

⑤ 협상 및 계약체결

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고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지방계약만 해당)에 부칠 수 있다.

협상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고, 가격 협상시 기준가격은 국가계약의 경우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고, 지방계약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단,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가격 협상에 있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

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국가계약)/‘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지방계약)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나, 제안한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다.(밑줄친 부분은 국가계약에만 있는 내용이나 지방계약도 해석상 동일하게 적용됨)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유권해석

□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계약 가능 범위

**Q.**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았을 경우 계약가능한지?

**A.**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의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협상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일 뿐 낙찰자는 아니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5조 제1항에서의 “협상이 성립된 때를 낙찰자가 결정된 때로 볼 수 있을 것임. 계약일 이전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만료되거나 처분의 효력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436, '15.10.12.】

□ 부정당제처분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상실 여부

**Q.**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았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하는지?

**A.**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상 진행 중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0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았다고 곧바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일 이전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거나 처분의 효력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정지되면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434, '15.10.12.】

□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유찰판단 관련 질의

**Q1.**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복수 업체의 제안서 평가결과 적합 업체가 1인인 경우 유찰인지?

**A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1인인 경우라 하더라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었다면 재입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363, '13.10.7.】

**Q2.**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1인만이 통과한 경우 유찰인지?

**A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그러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기술능력 평가기준 등은 입찰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할 것임.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경쟁입찰이 성립되었다면 기술능력 평가를 1인만이 통과하였다고 할지라도 당해 1인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입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388, '11.4.14.】

**Q3.**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1인과 협상이 성립되었으나, 나머지 입찰참가자의 입찰이 최종적으로 무효처리된 경우 협상이 성립된 자와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A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을 경쟁입찰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유효한 입찰자가 1인밖에 없다면 당해 입찰은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찰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협상대상자에게 협상 성립을 통보하였다고 할지라도 당해 협상은 근거가 없게 되므로 무효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50, '12.1.11.】

□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협상의 내용과 범위

**Q.**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협상의 내용과 범위는?

**A.**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발주기관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내용을 모두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안서의 제안내용 중 중요 부분을 제외하고는 협상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협상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 입찰자와의 형평성이나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면 이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또한 제안서의 제안내용을 발주기관이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안요청서의 일부 내용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협상을 통하여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205, '15.2.24.】

□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우선협상적격자 및 추정가격 산정 기준

**Q.**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협상적격자를 가격평가도 합산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및 용역계약 특성상 금액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워 추후 업체의 입찰가격을 평균하여 추정가격 산정이 가능한지?

**A.**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를 구체화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는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토록 하고 있음. 그리고, 기술능력평가만을 재차 반복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나,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재차 반복하는 것은 현행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또한 시행령 제7조는 “추정가격”을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용역계약에서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은 계약기간 등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추정가격을 입찰가격 평균으로 하여 사후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에 위배되고 지나친 저가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아울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입찰가격이 “0원”일 경우 산술적 계산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산술적 계산이 가능한 화폐단위로 전환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임【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596, '10.4.13.】

감사원 지적사례

□ 해저지형조사 용역 계약자 선정 업무 부당 처리

**결정 요지** 부당하게 용역 계약자를 선정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업체 대표자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항응을 제공받은 관련자들을 문책요구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관련사실 통보

**결정 의의** ○○○○○○공단은 해저지형조사 용역 사업과 인공어초 추천 업무를 진행하면서 규정과 다르게 제안서를 평가하도록 하여 친분 있는 업체를 계약자로 선정하는 등 특혜를 제공하고, 특정업체의 물품이 선정 되도록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 인공어초 설치 및 해저지형조사 용역과 같이 전문적인 영역은 업체와 업무 담당자 간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 비위 사례를 적발하여 공정·투명한 사업추진에 기여

**관련 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2조, 제19조 등

【○○○○○○공단 기관운영감사, '19.10월 시행】

7.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은 시장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등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기술적 대화를 통해서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을 조정·확정하고 평가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2018.12.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3이 신설되어 국가계약에서 도입되었으며, 2019.6.25.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의 2가 신설 되면서 지방계약까지 확대되었다.

(1) 적용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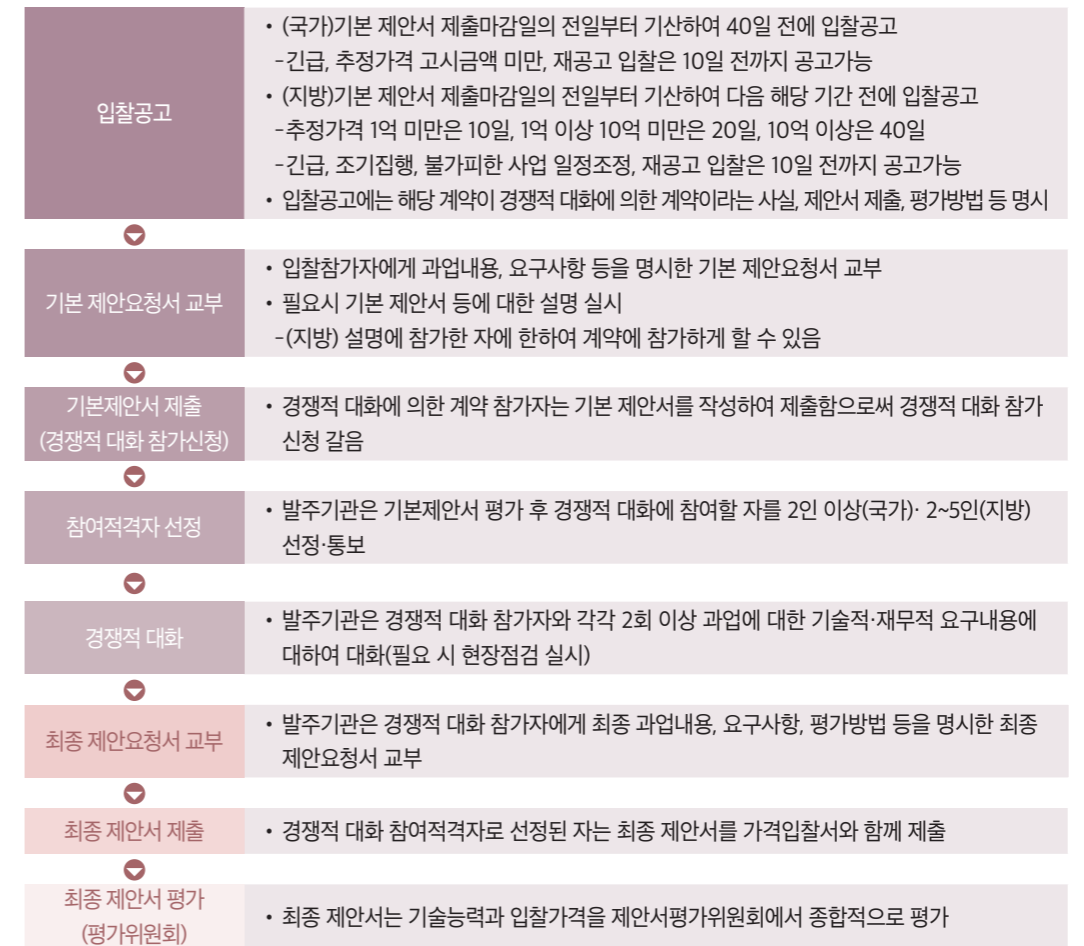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

-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 물품·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 상용화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입찰 및 경쟁적 대화 절차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입찰, 경쟁적 대화 및 제안서 평가 등은 [그림 12]와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그림 12] 경쟁적 대화 및 평가 세부 절차



(3) 낙찰자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기술능력평가와 입찰 가격 평가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국가계약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 기술·지식능력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사후관리 등	90	·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50점을 초과하지 못함 · 기술지원·사후관리는 1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 가격 평가		10	

주: 1. 입찰가격 평점산식 등 상세한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 방식은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서 정하고 있음  
2. 필요시 평가항목을 추가·제외 할수 있으며, 분야별 배점한도는 5점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 가능(5점 초과 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 필요)

만일 입찰금액이 총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찰자와 예산의 범위 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합계점수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그리고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에 탈락한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일정 점수이상 받은 자나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라 계약 절차가 중단된 경우로서 2회 이상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15/1,000에 해당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참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지방계약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 (예시)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 기술·지식능력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 관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90	· 평가위원이 평가
입찰 가격 평가	· 지역중소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	· 계약담당자

주: 1. 입찰가격 평점산식 등 상세한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2]에서 정하고 있음  
2. 필요시 평가항목을 추가·제외 할수 있으며, 분야별 배점한도는 5점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 가능(5점 초과 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 필요)

8.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종합낙찰제)

종합낙찰제는 최저가 낙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83년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물품의 입찰가격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1) 적용대상

이 제도는 조달청이 「종합낙찰제 세부운영기준」(조달청 훈령)을 정하여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통합 운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펌프, 엘리베이터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 100억 원(국가)·300억 원(지방) 이상의 공사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종합심사(평가)낙찰제와 용어가 유사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

- 에너지 소비효율 평가제품으로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펌프(구경 500mm이상, 산업용에 한함)
  - 냉동기(150냉동톤 이상에 한함)
  - 공기압축기(소요동력 20KW 이상에 한함)
  - 송풍기(소요동력 50KW 이상, 터보형은 제외)
  - 엘리베이터(승객용 정격속도 90m/min 이상에 한함)
  - 에스컬레이터(승객용에 한함)
- 환경우월성기준 적용제품으로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에어컨(일반/시스템 모두, 실내 가정용에 한함)
  - 세탁기(드럼/일반형 모두, 가정용에 한함)
  - LCD 모니터
  - 데스크탑 컴퓨터
- 환경우월성기준 확대적용제품으로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노트북
  - 텔레비전
  - 프린터
  - LED램프
  - 공기청정기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

이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i) 당해 물품에 대한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입찰 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고, ii) 입찰시에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와 함께 당해 물품의 품질·성능·효율 등이 표시된 품질 등의 표시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iii) 제출된 품질 등의 표시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 또는 개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종합낙찰제는 대부분의 절차를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을 받은 조달청이 처리하므로 필요시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을 참고하기 바람에 본 가이드북에서는 입찰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한다.

### 9. 유사물품의 복수경쟁

유사물품 복수경쟁 제도는 제조자별로 제품의 종류나 규격(품질, 성능 또는 효율 등)이 다양하고 차이가 있으나 어떤 규격품을 선택하여도 수요목적에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 일정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 (1) 적용대상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물품에 적용된다.

#### (2) 입찰방법

계약담당자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유사물품을 지정(선정)한 후 당해 규격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고 있는 자에게 입찰에 참가하여 줄 것을 통지하는 등 지명경쟁계약과 같은 절차로 입찰을 진행한다.

그리고 예정가격은 각 품목(모델)별로 결정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구매물품 1개에 대하여 지정된 품목(모델)수 만큼 수개의 예정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 (3) 낙찰자 결정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 낙찰자 결정 사례

- A물품 : 예정가격 1,000원, 입찰금액 920원

- B물품 : 예정가격 1,100원, 입찰금액 1,000원

➔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A는 92%, B는 90.9%이므로 B를 낙찰자로 결정

### 10. 설계공모

설계공모 제도는 2인 이상으로부터 공모안을 제출받아 심사하여 설계용역을 수행할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지방계약에서만 운용한다.

#### (1) 적용대상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공사의 설계용역이나 물품 제조 디자인용역에 적용된다.

#### (2) 입찰 등 방법

입찰공고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의 기간은 90일 이상(단, 시급한 경우 등 필요시 60~90일)으로 해야 한다.

- 설계공모의 목적, 공모개요, 응모자격, 공모일정 및 방법, 제출서류의 종류 및 규격, 공모안의 심사방법, 분야별 배점기준,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와 보상의 내용,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방법 등

설계공모에 참여하려는 자는 공고 절차에 따라 참가등록을 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참가등록자에게 공모안 작성지침서 및 설계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참고자료 등을 교부해야 한다.

그리고 설계공모 참가자는 공모 일정상 정한 기한 안에 설계지침서 등에 따라 공모안을 작성·제출해야 한다.

### (3) 낙찰자 결정

공모안은 설계공모심사위원회(10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에서 심사하여 당선작과 입상작을 선정하며,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설계공모에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4인 이내)에서 공모 작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 제5절 예정가격

### 1.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등의 구분

계약업무 과정에 사용되는 가격에는 ‘추정가격’, ‘추정금액’, ‘예정가격’ 등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각각의 가격에 대한 개념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추정가격’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제입찰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부가가치세 불포함)으로서, 국제입찰의 대상, 현장설명 대상공사, 제한·지명경쟁·수의계약 대상, 낙찰자 결정방법 등 국가 및 지방계약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기준금액이 ‘추정가격’이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

‘추정금액’은 공사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이하 “관급자재비”라 한다)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시공능력평가액의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 지방계약에서는 원가심사 대상 사업기준,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기준으로 사용한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

‘예정가격’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격을 말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

‘추정가격’, ‘추정금액’ 및 ‘예정가격’의 차이는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의 포함 여부에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계약상대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로부터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고,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통상 공사계약에 해당된다.

각각의 가격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추정가격’은 해당 계약 목적물의 순수가격으로 계약상대자가 수취하는 순액(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예정가격-부가가치세)을 의미하고, ‘예정가격’은 계약상대자가 수취하는 총액을 의미하며, ‘추정금액’은 해당 공사에 투입될 총 비용, 즉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예정가격+관급자재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추정가격'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징수한 후 다시 국가에 납부해야 해 계약 목적물의 순수가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부가가치세와 국가 등이 직접 공급하는 관급자재비가 포함되지 않고, '예정가격'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관급자재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추정금액'에는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가 모두 포함된다.

[그림 13] 추정가격, 예정가격, 추정금액의 비교

구분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비
<b>추정가격</b> (해당 계약목적물의 순수 가격)	불포함	불포함
<b>예정가격</b> (계약상대자 지급 예정 금액)	포함	불포함
<b>추정금액</b> (해당 공사에 투입될 총 비용)	포함	포함

그 외 '설계가격·조사가격', '기초금액', '복수예비가격' 등의 용어들이 있는데 이는 예정가격을 확정하기 위한 과정에 작성해야 하는 가격들로서 3. '예정가격' 부분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 2. 추정가격

추정가격은 예산에 계상(計上)된 금액이나 해당 목적물의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산정하는데, 국가계약(시행령 제7조)과 지방계약(시행령 제7조)의 내용에 큰 차이가 없어 국가계약을 기준으로 설명하였다.

-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중에서 선택한 금액**
  - 당해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 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 금액**
  -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 유권해석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 제3호에서 '개별적인 조달요구' 의미
  - Q.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에서 자재의 일부를 직접 구매하여 공급할 때, 회계연도 내 발주되는 각각의 공사에 공급하는 자재가 동일 물품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 제3호의 "개별적인 조달요구"에 해당되는지?
  - A. 이에 대한 판단은 당해 자재의 물품별이 아닌 각 공사 건별로 하여야 함【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제 45107-274, '97.2.10.】

추정가격을 실제로 어떻게 산정하는지 살펴보면, 일차적으로 예산에 계상된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예산은 보통 개략적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정가격을 산정할 때에 예산확정 후 추정가격 산정 시점까지 여건변화 등을 확인하여 예산편성 내역을 그대로 인정할 만한 경우는 예산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산정한다.

공사의 경우 일괄입찰을 제외하고는 입찰 전에 설계가 별도로 이루어지므로 설계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추정가격이 된다.

### 3. 예정가격

#### (1) 예정가격 작성 절차

예정가격은 [그림 14]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작성하는데, 지방계약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림 14] 예정가격 작성 절차(지방계약 기준)

① 추정가격 작성	▶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나 해당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 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공개)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기술 또는 설계 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운영기관 포함) 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 계산에 따른 가격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
③ 기초금액 작성·공개	▶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해당 비목의 반영기준에 비하여 과다·과소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조정한 후 부가 가치세 등을 합산하여 기초금액 작성 ※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 구매시에는 간행물의 정가를 기초금액으로 함 -계약심사부서는 원가심사를 통해 가격의 과다·과소를 검토 -계약담당자는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기초금액을 확정 -기초금액이 가감 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에 그 조정내용과 사유를 명시 ▶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전(조달청의 경우 긴급공고, 불가피한 사정 이 있는 경우 입찰서 제출 개시일 전날까지 공개 가능)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나 그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국가계약은 ±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
⑤ 예정가격 결정	▶ 입찰 실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 ※ 전자입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의사(조달청고시)」에 따라 모든 전자입찰자가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2개를 추첨하고, 예정가격은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평균하도록 되어 있음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예정가격은 비공개 -입찰종료 후에는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

※ 수의계약은 기초금액이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조정한 후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므로 ①, ②, ⑤의 절차만 해당

그리고 국가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기초금액 산정, 복수예비가격 작성과 같은 예정가격 결정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기획재정부에서 2018. 12. 31.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4를 신설하여 기초금액의 개념 및 작성방법, 복수예비가격 작성방법(기초금액의 ±2% 금액 범위 내 15개), 예정가격 결정 방법 등을 새로 규정하였다.

#### 유권해석

- 예정가격 초과 입찰의 유·무효
  - Q.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은 무효인지
  - A. 국가기관이 실시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사유만으로는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계 45107-121, '97.1.17.】

#### (2) 예정가격의 작성·비치 및 작성의 예외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은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고, 나라장터 등을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은 작성된 예정가격을 해당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계약
  - 일괄입찰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입찰자가 제출한 설계서에 따라 계약금액이 결정되므로 예정가격 작성 필요없음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로,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에 따라 계약금액이 결정되므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필요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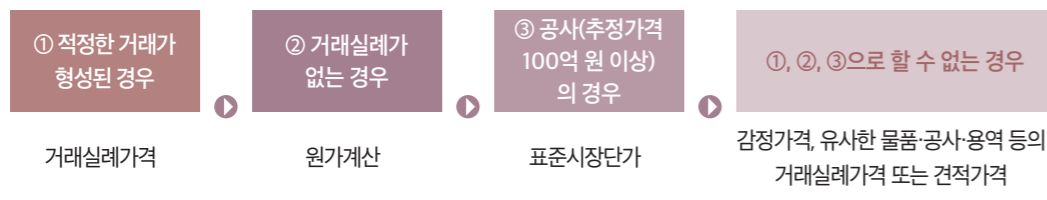
- 예정가격을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계약
  - 금액 기준에 따른 소액수의계약[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등은 5천만 원) 초과 소액수의계약은 제외]
  -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 협상에 의한 계약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 개산계약
  -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국제입찰 적용대상인 물품과 용역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지방계약만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1) 지역별·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 2)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 3)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3) 예정가격 결정기준

예정가격 작성과 관련하여 국가·지방계약법령에서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작성기준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국가계약)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계약)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예정가격은 다음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그림 15] 예정가격 결정 기준



예정가격의 결정은 [그림 15]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2가지 이상의 방법을 혼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유권해석

□ 유찰에 의한 예정가격 변경 가능 여부

- Q.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 후 흑한기경유에 대하여 16회에 걸쳐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정유회사와 원가산정방식의 불일치 등으로 계속 유찰된 경우 예정가격 산정방식 변경이 가능한지?
- A.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재공고입찰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의 체결도 불가능하다면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따라서 16회의 재공고입찰에도 불구하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었다면 예정가격의 변경이 가능
  - 이 경우 당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을 적용해서는 예정가격의 변경이 곤란한 경우라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가 정한 예정가격 결정기준인 유사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적용할 수 있음【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193, '12.9.11.】

□ 계약방법 변경에 의한 예정가격 변경 가능 여부

- Q.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수의계약 시 결정한 예정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지?
- A. 다른 법률에서 수의계약 사유와 수의계약에서 일반경쟁계약으로의 전환에 대한 사항을 국가계약법과 달리 정하고 있다면 다른 법률이 국가계약법에 우선하여 적용. 아울러, 경쟁에 의한 계약과 수의계약은 예정가격 작성방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수의계약을 경쟁에 의한 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 방법도 변경하는 것이 적절【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804, '13.7.2.】

### 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

□ 경쟁계약 유찰에 따른 예정가격 재산정 관련【신청일: 2021.9.14.】

- 개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도교 개설공사를 조달청을 통해 설계·사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입찰하였으나 6차례에 걸쳐 계속 유찰. 건설사 간담회 개최결과 공사비에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 등 물가상승요인이 미반영 되어 수익성이 없다는 의견 제시
- 쟁점**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원가를 재산정한 결과 총공사비가 10% 이상 증가되는데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는지?
- 컨설팅 의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입찰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을 부칠 수 있으며, 교량의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적정공사원가를 반영하여 예정가격을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예정가격을 변경할 경우 다수 업체가 참여하여 유효한 입찰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①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되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해당 거래실례가격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해서는 아니된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확인방법)** 나라장터 홈페이지의 나라장터서비스-가격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음. 다만 해당 가격은 예정가격 작성시 직접 적용하도록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은 아니며 참고자료로 활용도록 제공하는 가격임에 유의

유권해석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1호의 조달청장 통보 가격의 의미

**Q.**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의미?

**A.**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기준, 방법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각호를 거래실례가격으로 정하고 있음

①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그러나 실제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단가계약한 가격 등은 각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참고하도록 하는 가격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 기타 제반 여건을 참작하여 활용토록 제공하는 것인 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거래실례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실제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에 해당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임【조달청 질의회신, 공개번호 1610280051, 2016】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확인방법)		
전문가격 조사기관	물가정보지	확인방법
대한건설협회	거래가격	책자 구입 또는 해당 협회 등 홈페이지에서 확인(유료)
한국물가정보	물가정보	
한국물가협회	물가지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유통물가	
한국경제조사연구원	물가시세	
건설산업정보연구원	가격정보	

▶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확인방법)** 2이상의 사업자에게 직접 요구하여 납품가격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며, 나라장터에서 2개 이상의 동일 물품 계약사례를 확인한 가격이나 다음 유권해석과 같이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기관과 체결한 계약가격은 거래실례가격으로 볼 수 없음

▶ 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지방계약만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절 3.)

유권해석

□ 예정가격 결정시 '거래실례가격' 의미

**Q1.** 예정가격 결정 시 거래실례가격으로 적용 가능한 가격은?

**A1.** "2개 이상의 사업자가 타 기관과 체결한 계약단가"는 소수의 특정계약에서 형성된 단가로서 동종 거래에서 일반화된 거래가격으로 보기 어려워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개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타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유사한 물품의 단위당 계약단가"도 시행규칙 제10조 제2호의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임

- 또한 예정가격은 역사적 가격이 아닌 결정시점의 현재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5조 및 제10조에서 거래실례가격과 견적가격 등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타 기관이 과거 예정가격 결정 시 적용한 동일 또는 유사한 품목의 조사가격 및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02, '11.1.31.】

Q2. 타기관 계약단가 등을 검토하여 제조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거래실례가격'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지 및 본 계약이 '거래실례가격'으로 계약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2.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제조구매계약에 2개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2이상의 사업자"라 함은 동 물품을 직접 제조 생산하는 사업자를 의미함【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계 41301-3517, '97.12.22.】

□ 거래실례가격의 의미

Q. 거래실례가격이 견적서와 같은 의미인지?

A.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은 2이상의 사업자가 당해 물품의 실제 거래를 한 경우로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제 거래가 이루어짐을 인정하는 가격으로서, 견적서는 실제 거래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거래를 희망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2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받는 견적서는 2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받는 거래실례가격이 아님【조달청 질의회신, 공개번호 1411210002, '14.11.21.】

위와 같은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과 관련하여, 국가계약은 기획재정부가 위 어느 하나의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우선순위는 없으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고(회계제도과 125-519, '90. 3. 2), 지방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1절에서 '우선순위 없이 계약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사된 가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 물가정보지 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또는 각 물가정보지별로 가격이 다른 경우 등에 어떤 가격을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고, 기획재정부도 유권해석을 통해 물가지 중 어느 하나의 가격에 의하면 된다는 원칙적인 답변을 한 바 있으므로 발주기관의 재량으로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고 해도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나, 국가계약법 제10조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나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유권해석

□ 예정가격 작성 시 거래실례가격 관련 질의

Q1. 거래실례가격으로 신규비목의 단가 결정시, 발주기관은 해당 비목의 단가가 비교적 낮게 조사된 A정보지상의 가격으로 작성하려 하는 반면,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비목의 단가가 보다 높게 조사된 B정보지상의 가격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다수의 전문자격조사기관에서 공표한 가격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A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신규비목의 단가를 정하기 위해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를 구해보는 경우에 있어서 거래실례가격을 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자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이 발표한 물가정보지상의 가격에 의하면 될 것임

Q2. 예정가격 작성 시 다수의 거래실례가 존재하면 어느 가격을 적용해야 하는지?

A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의 거래실례가격'이라 함은 덤핑가격이 아닌 시장에서 정상적 거래에 따라 형성된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이한 구매수량 및 결제조건 등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는 거래가격 중 하나인 최저거래실례가격은 상기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거래실례가격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어느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동 거래실례가격의 적정성이 확보된 경우라면 거래실례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761, '12.6.12.】

□ 거래실례가격에 정부지원금이 포함된 경우 처리방법

Q. 예정가격 작성 시 조사된 거래실례가격에 정부지원금이 있는 경우 계산방법은?

A.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경우 등 재료비에 대해서는 거래실례가격을 적용. 질의의 경우 경유가격 계상시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동 유가보조금 해당금액을 거래실례가격에서 감액하여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1423, '07.7.30.】

②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방법은 국가계약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지방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여기서는 개략적인 내용만 설명하기로 한다.

②-가. 공사·제조·구매 및 용역

공사·제조·구매(수입물품 구매 제외) 및 용역에 대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포함해야 할 비목은 다음과 같다.

[표 94] 원가 구성 비목

비목	산정방법
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 × 단위당 가격
노무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 × 노임단가
경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소요(소비)량 × 단위당 가격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율 -일반관리비율 상한선(초과계상 불가) : 공사(100분의 6), 음·식료품의 제조·구매(100분의 14) 등 17개 분야별 100분의 5~100분의 14 ※ 상세한 비율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참조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율 - 이윤율 상한선[초과계상 불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초과계상 가능] : 공사 100분의 15, 제조·구매 100분의 25, 용역 100분의 10

한편, 위 원가계산 비목에 해당하는 비용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있다면 이는 계약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비용이 아니더라도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례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8절에 따라 계상이 가능하다.

또한 계약법규나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비용 또한 계상이 가능하다.

유권해석

□ 예정가격 작성시 노무비 산정 관련 질의

Q.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노무비에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해야 하는지?

A. 국가계약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더라도 그 비용이 해당 제조, 용역 등의 계약과 관련되고 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은 예정가격 작성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임  
- 발주기관의 장은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수행함과 관련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이 비용의 성격상 노무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1항 단서 등에 대한 특례를 동 기준 제33조 제1항에 따라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며, 한편 비용의 성격상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분류하고 있는 원가계산의 비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동 기준 제33조 제1항에 따라 계약특례를 결정하여 예정가격에 반영하여 계상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028, '14.8.12.】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경비 등 처리 방법

Q.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용역계약의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에 의해 작성하려 하는데, 관련 법령에 원가계산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을 경우 경비 등을 계상해야 하는지?  
A. 용역계약에서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에 의하여 작성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규정에 정한 비목외의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어야 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동 비용을 예정가격 작성시 포함할 수 있는 것임【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제 41301-286, '01.2.15.】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이윤율 조정 가능 여부

Q. 공사계약의 원가계산을 함에 있어 관련규정에 '이윤율은 15%초과 하여 계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한 15%를 공사의 난이도, 공사규모 등을 감안하여 조정·적용할 수 있는지?  
A. 회계예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상한을 규정한 것으로 발주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성격 및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동 비율을 축소 적용할 수는 있다고 봄【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제 41301-353, '03.3.29.】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각 호의 의미

Q.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규정 각 호의 의미는?  
A.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율은 상한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271, '13.9.23.】

②-나. 수입물품 구매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 ①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② 통관료, ③ 보세창고료, ④ 하역료, ⑤ 국내운반비, ⑥ 신용장개설수수료, ⑦ 일반관리비(① 내지 ⑥의 합계액×100분의 8), ⑧ ② 내지 ⑦의 합계액×100분의 10)

②-다. 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원가계산을 할 때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단위당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과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10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10조)

[표 95] 단위당 가격의 확인방법

적용 기준	확인방법 등
(1순위)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작성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 다만,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는 해당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작성지정기관은 「통계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li> <li>▶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각종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고시</li> <li>▶ 노무비의 경우 통계작성지정기관인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건설노임(일급), 제조노임(일급) 등을 조사·발표(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건설노임: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65004호) -제조노임: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직종별임금조사」(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40005호)</li> <li>▶ 승인통계 검색 -통계청-정책정보-국가승인 통계현황-작성기관 및 승인통계-승인통계 검색</li> </ul>
(2순위) 감정가격	▶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가격
(3순위)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4순위) 견적가격	▶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 노무비 노임단가에 대한 특례

- (1순위)에 따른 가격을 적용할 때,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포함)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노임단가에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음

유권해석

□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 작성 시 노임단가의 가산 가능 여부

Q.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으로 작성 시 기능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노임단가의 가산이 가능한지?

A.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1호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되어 기술계와 기능계 자격증이 통합된 상황에서는 기능계 자격증을 따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기술계와 기능계 자격증이 통합된 이후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063, '12.8.16.】

□ 인터넷 가격의 거래실례 해당 여부

Q. 단위당 가격 중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할 경우 관련 업체가 인터넷 또는 홈쇼핑에 게재한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A.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의 원가계산시 적용하는 거래실례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관련 업체가 인터넷에 게재한 가격 또는 홈쇼핑에 게재한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적용할 수는 없음【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제41301-253, '03.3.6.】

②-라. 원가계산서 작성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원가계산서를 작성(계약담당자가 직접 원가계산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원가계산서 작성 불필요)하여야 하는데,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표 96] 원가계산용역기관

국가계약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	지방계약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li> </ul>

국가계약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	지방계약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li> <li>■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li> </ul>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에 제7절에 원가계산용역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나열하고 있다.

- 정관 또는 학칙의 설립 목적에 원가계산 업무가 명시되어 있을 것
- 원가계산 전문인력 10명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 (국가) 기본재산이 2억 원(학교 연구소 및 산학협력단은 1억 원) 이상일 것
- (지방) 기본재산이 1억 원(학교 연구소 및 산학협력단은 5천만 원) 이상일 것

그리고 원가계산용역기관은 본부 외에 별도로 지사·지부 또는 출장소,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하여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유권해석

- 예정가격 작성기준 개정 관련 해석
- Q.**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개정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지사 등을 통한 업무의 제한 사유는?
- A.** 2010.4.15. 「예정가격 작성기준」 개정시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대해 지사·지부를 통한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제한한 것은 지사·지부라 하더라도 사실상 본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될 경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관이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등 부실화의 우려가 있기 때문임. 또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은 규정상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므로 지사·지부만으로 자격요건을 갖추더라도 그 명의로는 용역계약을 수행할 수 없음【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774, '10.5.18.】

#### □ 원가계산용역 기관의 자격

**Q.** 예정가격 작성 시 원가계산용역기관 자격요건은?

**A.**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될 수 있는 기관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동 예규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동 예규 제2호 “나”목에는 용역기관 구성인력 자격요건으로 “원가계산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인, 5년 이상인 자 2인”을 상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상기 조항에 규정된 “원가계산업무에 종사한 경력”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 및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도 포함(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상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구성인력 자격요건과 동일)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97, '18.2.13.】

#### □ 원가계산 적용 방법

**Q.** 각종 시설물 세척 및 한강 수중청소 사업의 원가계산 적용 방법은?

**A.** 시설물의 세척 및 한강 수중청소 하상 잔재물 처리 등은 용역에 해당될 것으로 용역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 단순노무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인 경우라면 동 기준에 따라 노임단가는 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중 보통인부노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특수한 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그에 따른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해당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인력이 아닌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기계경비 등 경비항목으로 용역원가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해당 사업의 목적, 종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정가격을 반영하여야 함【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015, '16.4.2.】

#### □ 단순노무용역의 노임단가 결정 기준

**Q.**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제5관에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보다 높게 원가 계산할 수 있는지?

**A.**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단위당 가격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질의사항의 경우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단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단위당 가격과 다르게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69, '15.6.3.】

#### □ 원가계산 시 외주용역비 제외 여부

**Q.** 용역계약에 있어 이윤계상 시 외주용역비 제외해야 하는지?

**A.** 국가기관이 사후원가검토조건부로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서 사후정산 시 외주용역비 등을 이윤계상에서 제외할 것인지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상 명문으로 규정한 바는 없으나 이윤의 경우 영업이익을 의미하고, 용역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조 및 공사계약과 동일하게 외주비용은 이윤계상 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610, '12.12.18.】



### ③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기존 ‘실적공사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이다.

과거 ‘실적공사비’ 제도는 공공건설 공사의 계약가격을 향후 유사한 공사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2004년 도입 이후 예산절감, 공사비 산정과정의 신뢰·효율성 제고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적공사비에 의할 경우 예정가격이 매년 작아지는 문제점이 있어 과당경쟁 등에 따라 점차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가격정보 조사 대상을 계약가격 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가격, 입찰가격 등으로 다양화하여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실적공사비 제도를 표준시장단가 제도로 개편하였다.

현행 표준시장단가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리자료 수집기관으로부터 매년 3월말과 9월말까지 표준시장단가 후보공종에 대해 예정단가, 계약단가(입찰단가), 시공단가 등 표준시장단가 자료를 제출받아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개정하고 있다.

표준시장단가는 도입 후 2016년까지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되었다가 2017년부터는 100억 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 ④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방법으로 원가계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가격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표 97]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의 적용 순위

적용 기준	내용
(1순위) 감정가격	▶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가격
(2순위)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3순위) 견적가격	▶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 유권해석

□ 원가계산 시 유사거래실례 적용 가능 여부

Q. 공사 원가계산 시 유사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지?

A.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호에 따라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을 말하는 것인 바, 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데에는 적용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120, '08.4.4.】

□ 예정가격 작성 시 견적가격 사용 관련 질의

Q1. 예정가격을 견적가격으로 작성 시 제비(일반관리비, 이윤 등) 계상 방법은?

A1.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계약에서 거래실례가격 및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 재료비를 거래실례가격 및 견적가격에 의하는 때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기획재정부 질의 회신, 회제 41301-335, '01.2.22.】

Q2. 최근 거래실례가격 및 유사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상황에서 예정가격 결정기준으로 견적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또한, 견적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4개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가격의 평균가격으로 할 수 있는지?

A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는 거래실례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토록 하고 있는 바, 거래실례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등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다만, 복수의 견적가격을 제출 받은 경우에 예정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할 사안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37, '12.2.8.】

### (4) 예정가격결정시의 세액합산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관세법」에 의한 관세,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 세액가산방법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합계액에 해당 세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총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10%)을 곱하여 산출한다.

한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부가가치세 등을

감한 금액으로 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원가계산한 금액에 합산한다.

부가가치세는 다단계거래세로서 최종 단계의 소비자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중간단계의 거래자에게는 매입한 재화 등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매입세액 공제제도)해 주고 있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최종 소비자가 되어 해당 사업자는 면세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국가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체결 시에는 공제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합산하도록 한 것이다.

### 유권해석

#### □ 예정가격 작성시 매입세액 반영 여부

**Q1.** 국민주택규모(85㎡ 이하)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A1.** 국가기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로 합산하는 것은 예정가격에 적정 원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바, 원가를 구성하는 경비 등에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제 41301-1032, '03.9.24.】

**Q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사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변경계약 또는 정산이 가능한지?

**A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5절 '4-라'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면세업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함  
- 따라서, 질의사항과 같이 계약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지 않아 계약의 수행 중 발생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협의 등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7, '18.1.4.】

# 공공계약 실무가이드

A Guide to Handling Public Contracts



# 03

## 입찰 및 계약단계

제1절 입찰	
1. 입찰공고	342
2. 현장설명·입찰참가신청 및 보증금	353
3. 입찰의 성립·무효 및 재입찰	356
제2절 계약	
1. 낙찰자 결정	362
2. 계약 체결	363

## 제1절

### 입찰

입찰은 계약상대자가 되고자 하는 다수에 대하여 가격 등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는 행위로 입찰공고 → 현장설명(선택사항)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 입찰서 제출 등 일련의 절차를 통해 진행되고, 입찰공고에서 제시된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선정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 1. 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필요시 국가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 지방자치단체는 설치·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과 병행가능) 하나, 보안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하지 않고 공고내용을 입찰참가 적격자에게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 (1) 공고 내용

입찰공고는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참가자, 낙찰자결정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공고내용에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을 정정할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계약법령상 입찰공고 시 명시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 공사입찰의 경우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지방계약만 규정)
- 협상계약에서 제안요청서 설명 실시 경우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지방계약만 규정)
-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낙찰자결정방법(적격심사낙찰제 또는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을 포함)
-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 입찰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 포함)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 부대입찰의 경우에는 그 취지(국가계약만 규정)
- 대안입찰·일괄입찰 또는 특정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등에 관한 사항
-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지방계약만 규정)
-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비율
-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열람·교부하여야 하는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열람·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입찰 관련 서류라 하면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입찰서·계약서 서식, 계약조건 등을 말하며 계약 종류에 따라 용역은 과업지시서, 공사의 경우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이 추가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공사), 제16조(물품, 용역), 시행규칙 제41조,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4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공사), 제16조(물품, 용역), 시행규칙 제3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제한·지명경쟁입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보안유지에 필요한 경우)
  - ※ 국가계약법령상 입찰참가통지 관련 규정 : 시행령 제13조(PQ), 제21조 제3항(제한경쟁), 제22조 제2항(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 제24조(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제34조(입찰참가의 통지), 시행규칙 제26조(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통지), 제30조(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통지), 제39조(입찰참가의 통지 등)
- 입찰유의서
- 입찰참가신청서·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 계약일반조건
- 계약특수조건
-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공사시방서(국가계약은 '공사설계설명서'라는 용어 사용)·현장설명서·물량내역서]
- 입찰안내서(대형공사,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 계약심사 조정내역 및 사유서(심사결과 요약서)
-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유권해석

□ 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관련 질의

- Q1.** 나라장터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OR조건)과 수요기관 입찰공고문 입찰참가자격(AND조건)의 규정내용이 다른 경우 입찰공고문 우선순위는?
- A1.**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에서 발주기관은 입찰에 부친 계약목적물을 이행함에 필요한 법적인 자격요건 등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하면 될 것으로 법적인 근거가 없는 추가적인 자격요건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나라장터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과 수요기관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의 규정 형식이 다른 경우 어떠한 공고문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Q2.** 열거된 입찰참가자격을 AND조건으로 보는 경우 열거된 하나의 자격만 갖춘 업체와 체결한 계약을 무효화하고 2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 A2.**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당해 계약상대자의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므로 계약체결의 근거인 낙찰자 결정은 무효가 되며, 무효인 낙찰자결정에 근거한 계약체결도 무효로 보아야 함. 따라서, 이 경우 입찰절차가 종료되어 계약까지 체결된 상태에서 계약체결 이전 입찰절차의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9, '13.1.3.】

□ 입찰공고 시 공동수급체로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 Q.**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건물종합위탁관리 용역을 입찰하면서 필수적으로 공동수급체가 입찰하도록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 A.**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따르면 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의 목적과 성질 상 공동계약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36조 제14호에는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 및 공동계약의 이행 방식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 이는 입찰공고 시 단독입찰을 허용하지 않고 공동수급체만 입찰참가가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사항은 아니므로 단독참가를 허용하지 않고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가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95, '17.1.19.】

(2) 공고 시기

입찰공고는 일반적으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하나, [표 98]과 같이 계약종류, 계약규모, 낙찰자결정방법, 국가계약 또는 지방계약 여부 등에 따라 공고시기가 다른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표 98] 계약별 세부 공고기간

구분	국가계약		지방계약	
	기준	공고 기간	기준	공고 기간
일반원칙	■ 물품 제조·구매, 용역	7일	■ 물품 제조·구매, 용역	7일
공 사 입 찰	■ 현장설명을 하는 공사	7일	■ 현장설명을 하는 공사	7일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공사	30일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공사	30일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7일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7일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5일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5일
현장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40일	■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고시금액(244억 원) 미만	30일
			■ 추정가격 고시금액(244억 원) 이상	40일

구분	국가계약		지방계약	
	기준	공고 기간	기준	공고 기간
긴급공고	■ 재공고입찰, 예산 조기집행,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 긴급한 행사·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5일	■ 재공고입찰, 예산 조기집행, 다른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연계, 긴급한 행사·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5일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㉔)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	■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0일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20일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40일
■ 긴급공고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10일	■ 긴급공고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10일
2단계 경쟁 입찰의 규격·가격 동시입찰(㉕)	-	-	상 동 (협상에 의한 계약과 동일)	상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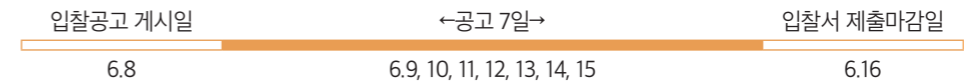
※ 공고기간의 기산시점

-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㉔) :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
-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㉔)/2단계입찰의 규격·가격 동시입찰(㉕)의 경우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
- 그 외의 경우 :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

▣ 입찰공고 시기 예시

☞ 공고일은 입찰공고 게시일과 입찰서 제출마감일(개찰일)을 제외한 기간을 의미한다.

(예) 입찰공고 게시일(1일) + 공고기간(7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1일) = 9일



☞ 적격심사제 입찰에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이 8월 31일인 경우, 일반공고 기한은?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8월 30일)부터 기산하여 7일 이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므로, 7일째가 되는 날(8월 24일) 이전까지 즉 8월 23일(24시)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유권해석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공고기간

Q.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학술연구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할 경우 공고기간은?

A.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입찰공고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까지 하여야 하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919, '13.7.16.】

□ 공고문 오기 처리 방법

Q. 계약체결 중 입찰공고에 낙찰하한울 오기가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 처리방법은?

A. 계약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입찰공고에 오류(낙찰하한울 오기 포함)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처리(낙찰자 결정, 계약체결, 계약해지 등)는 동 오류의 중대성, 계약 진행 정도 등 제반 사실과 민법 등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계약담당자가 결정하여 처리할 사항임.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5조 제6항에 따르면 낙찰자 결정 취소 후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격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결정하였다 하여 제3의 낙찰자(해당 입찰에서 적정 낙찰하한울을 적용할 경우의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음【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562, '16.4.21.】

Check! 유의사항

- 입찰공고시 필수 고려사항
  - ▶ 법령 및 예규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유효한지?
  - ▶ 법령에서 정한 기본 자격요건이나 제한경쟁계약 제한요건 외의 과도한 요건을 정해 입찰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은 아닌지?
  - ▶ 공고기간은 준수되었는지?
  - ▶ 필수적인 공고내용이 누락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 ▶ 공고내용 중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 없는지?
  - ▶ 특정업체에 유리한 공고내용은 없는지?
  - ▶ 낙찰자가 면세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부분을 설명하였는지?
  - ▶ 공고문 게시수단은(g2b 원칙, 일간신문, 홈페이지 병행 가능) 적정한지?
  - ▶ 정산조건이 있는 경우 정산사항, 기준을 제대로 명시하였는지?
- 관련 판례
  - ▶ 전자입찰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복수예비가격 작성기준(기초금액의 ±2%)을 ±3%로 잘못 입력한 경우 → 입찰자의 정당한 이익침해 및 입찰공정성 저해, 입찰취소(대법원 2010.4.8. 자, 2009마1, 결정)
- 기타 유의사항
  - ▶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하되, 다만 입찰공고일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과 입찰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함(전자조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 ▶ 재공고입찰의 경우 기한을 제외하고는 가격과 조건은 변경 불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9조), 가격이나 조건을 변경 하면 새로운 입찰이 됨
  - ▶ 긴급입찰이란 정상적인 공고기한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임

※ 입찰공고 사례

공사 입찰 공고

기초금액은 입찰참가업체가 입찰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사금액(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2022년 교량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	공사설명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022. 12. 31. 까지	기초금액	1,314,563,000
			추정가격	1,195,057,273
			부가가치세	119,505,727
			관급자대비	100,000,000

※ 공동도급 가능(공동이행 방식의 지역의무공동도급)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함(미시행 : 설계서 열람으로 같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시 △△과 6급 ○○○(☎ 02-1004-1004)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철근콘크리트, 방수 : 3년 / 포장, 철물 : 2년

다. 하자보수보증금

-포장공사 : 계약금액의 3/100, 포장 이외의 공사 : 2/100

전자입찰서의 접수시작 일시부터 제출마감 일시까지가 최소 48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해야 하며, 입찰서 접수 개시 일시는 입찰자의 편의와 변경공고 등에 따라 입찰서를 접수받는 경우를 적절히 고려하여 결정(10일 간 공고시 3일 내지 5일 기준)하고, 제출마감 일시는 근무일(토요일, 공휴일, 수요일 휴무일 제외)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여야 함(전자조달법 시행규칙 제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12조)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법령에 따른 공고기간 준수

공고기간	2022. 1. 10. (월) ~ 2. 18. (금)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2. 2. 15. (화) 10:00 ~ 2022. 2. 18. (금) 17:00
개찰일시	2022. 2. 18. (금) 18: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일시는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일시부터 1시간이 지난 때로 함(전자조달법 시행규칙 제2조)

법령 및 예규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유효한지 확인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dmf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법령에서 정한 기본 자격요건이나 제한경쟁계약 제한요건 외의 과도한 요건을 정해 입찰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됨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대상 공사이므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 계약체결일)까지 △△시에 주된 영업소를 준 자를 반드시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며,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은 49%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시에 소재한 업체는 단독참여가 가능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구성원 모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라. 공동 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서 제출마감일)에 전일까지 참가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2. 2. 17. (목)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에 관한 제한사항을 명시>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국가계약은 ±2%, 지방계약은 ±3% 적용>

적격심사기준은 국가/지방계약, 공사/물품/용역계약 등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해당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여 기재

-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합니다. <공시규모에 맞는 낙찰하한율과 적격통과점수를 적용>
- 다.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시설물유지관리업 100%입니다.
- 마.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바.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낙찰자 결정방법별로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처리방법이 다르므로 유의>
-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치방법을 명시>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 사항 <사후정산대상 보험료를 확인하여 기재>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7,736,106원)	국민연금보험료 (11,331,12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06,714원)
-------------------------	--------------------------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신고전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되고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2. . . .  
△△시 분임계무관

※ 위 입찰공고문은 서울특별시의 입찰공고사례를 재구성한 것으로서 계약의 종류 및 입찰방식 등에 따라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모두 다르므로 위 사례를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나라장터 등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약과 유사한 입찰공고문을 참조하는 등으로 검토를 철저히 하여 입찰공고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임

**유권해석**

□ 입찰공고의 성격

**Q.** 입찰공고 등이 지출원인행위에 포함되는지?

**A.** 「국고금관리법」 제20조의 “지출원인행위”의 개념에는 원가산정 및 입찰공고는 포함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1354, '10.8.19.】

□ 입찰공고 명시 서류 미제출시 처리방법

**Q.** 입찰공고에 기술사용협약서 제출조건이 부여된 경우에 입찰업체가 이를 미제출시 처리방법은?

**A.** 입찰공고 시, 낙찰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사후에 기술사용협약서를 제출하도록 입찰참가조건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봄. 따라서 입찰자는 동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협약서 미제출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됨【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제 41301-795, '02.6.18.】

□ 입찰공고 수정방법

**Q.** 정정공고를 하지 않고 공고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지?

**A.** 발주기관이 정정공고를 하지 않고 공고내용을 수정할 수 없음【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940, '10.6.18.】

**2. 현장설명·입찰참가신청 및 보증금**

**(1) 현장설명**

국가계약 공사입찰의 경우 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공사현장에서 적정한 시공을 위한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반면 지방계약 공사입찰은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현장설명을 실시하도록 하되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어 차이가 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또한 지방계약은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만 현장 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하고 있어 국가계약과 300억 원 미만의 지방계약 공사입찰에서 현장설명 참가자에 한해 투찰이 가능하도록 제한해서는 아니된다.

한편, 현장설명은 공사규모에 따라 실시시기에 차이가 있는데,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공사는 7일전,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공사는 15일전,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인 공사는 33일전에 실시하여야 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2) 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서와 입찰참가자격 증명 서류 및 인감증명서, 공고 등에서 요구한 서류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참가신청서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신청서류가 제출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를 한다.

한편, 입찰시마다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하면 입찰자나 계약담당공무원 모두에게 시간이나 비용의 낭비 등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되므로 사전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의 납부로서 입찰참가신청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입찰 참가신청 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로 한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

그리고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❶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과 ❷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는 두가지의 경우가 있으며, 국가계약은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만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계약은 국가계약과 달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의 제한입찰 요건 중 지역제한 뿐만 아니라 동일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Check!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 국가계약(「공사입찰유 의서」 제3조의2, 「물품구매(제조)입찰유 의서」 제3조의2, 「용역입찰유 의서」 제3조의2)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단,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 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지방계약(「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 의서’)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①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sup>주)</sup> ③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중소기업자, 설비)

주: 지역·동일실적은 지역제한 또는 동일실적 제한을 각각 의미하며 동일실적만 제한할 경우에도 적용됨

- ▶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함
- ▶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 ▶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함)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유권해석**

□ 입찰무효 해당여부

- Q. 지역제한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주소변경 등기를 신청하여 입찰공고일 당일에 주소변경 등기가 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인지?
- A.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 의서 제2절 “2-가”에 따르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 지역제한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소재지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위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자의 입찰은 무효에 해당할 것임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893, '16.7.27.】

**(3) 입찰서 제출**

입찰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접수된 입찰서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않고 보관하여야 한다.

공사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고 산출내역서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는데, [표 99]와 같이 추정가격 등에 따라 작성 방법 및 제출시기에 차이가 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표 99] 산출내역서 작성 방법 및 제출시기**

국가계약		지방계약	
구분	내용	구분	내용
■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	입찰참가자는 입찰 시 입찰서(입찰총액 기재)와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참가자가 단가를 적는 방법으로 작성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	입찰서와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작성한 산출내역서 첨부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입찰서와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되, 발주기관이 수정 허용한 부분은 수정 가능
		■ 물량내역서 가 열람·교부된 공사	

국가계약		지방계약	
구분	내용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li> <li>문화재수리 공사</li> </ul>	입찰참가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게 할 수 있고, 그 경우 입찰참가자는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 방법으로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량내역서가 열람·교부된 공사</li> </ul>	입찰서에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li> <li>재입찰 공사</li> </ul>	입찰 시에는 입찰 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 제출하고, 산출내역서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li> <li>재입찰 공사</li> </ul>	입찰 시에는 입찰 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 제출하고, 산출내역서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

### 3. 입찰의 성립 · 무효 및 재입찰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참여하더라도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등 무효 입찰이 확인되어 유효한 입찰이 1인이 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게 되며 이 때는 재공고 입찰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무효입찰을 확인하여야 하고,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무효 이유를 알려야 한다.

입찰무효 사유는 계약법령 및 예규 등에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유형화하면 다음 [표 100]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100] 입찰무효 사유

구분	국가계약	지방계약
<b>관련 규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li> <li>-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li> <li>-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li> <li>-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li> <li>-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li> <li>-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li> <li>-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li> <li>-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li> </ul>
<b>입찰 참가 자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li> <li>-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li> <li>-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입찰</li> </ul>	좌동
<b>입찰서 및 입찰 보증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부일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li> <li>- 입찰서가 도착일시까지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li> <li>- 동일인이 동일사항에 대하여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1인이 수개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수개 법인은 동일인으로 간주</li> <li>- 전자조달시스템,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한 경우 해당 규정과 다른 방식으로 제출한 입찰</li> </ul>	좌동
<b>계약 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계약시 품질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에서 품질 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li> <li>- 법령상 공동계약 방법을 위반한 입찰</li> <li>-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li> </ul>	좌동
<b>추정 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li> <li>-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 총계금액이 다른 입찰</li> <li>-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과 항목별 합산금액이 다른 입찰</li> <li>-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산출내역서상 누락·변경된 공종·물량에 대한 예정 가격 조서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5% 이상인 입찰</li> <li>-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를 정정하고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li> </ul>	좌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용역계약시 제안요청서 설명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에서 요청서 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입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설명을 하는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인 공사에 현장설명 불참자가 한 입찰</li> </ul>

구분	국가계약	지방계약
입찰 유의서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li> <li>-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li> <li>-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li> <li>-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li> <li>-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li> <li>-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 한 입찰</li> <li>-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li> <li>-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li> <li>-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등</li> <li>-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li> <li>- 「전기공사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li> </ul>	<p>좌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계약의 경우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li> <li>②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구성원 5인 초과 입찰(5백억 원 이상 공사는 10인 초과)</li> <li>③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미만 구성 입찰(분담이행 등은 예외)</li> </ol> </li> <li>-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한 입찰</li> </ul>

위 [표 100]의 입찰무효 사유 중 하나인 종합건설업체의 공사금액 하한제도는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공사(①) 발주시 대형건설업체(②)에 대하여 일정 금액(③)이하의 공사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01] 종합건설업체의 공사금액 하한

구분	내용
① 대상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81억 원) 미만인 공사</li> <li>•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44억 원) 미만인 공사</li> <li>※ 수의계약공사는 제외</li> </ul>
② 대상 건설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자로서 해당 업종 최근 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1,200억 원 이상인 건설업자</li> <li>•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자로서 해당 업종 최근 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4조 1,000억 원 이상인 건설업자</li> <li>• 조경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자로서 해당 업종 최근 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1,800억 원 이상인 건설업자</li> </ul>
③ 하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li> <li>•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한금액이 200억 원(산업환경설비공사는 180억 원, 조경공사는 2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li> </ul>

판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의3 (나)목이 계약담당 공무원이 입찰 절차에서 지켜야 할 내부규정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 변경등록을 해태한 경우 입찰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 참가자들에게 고지하거나 제시함으로써 이를 숙지하도록 하고 입찰 참가자들도 이를 전제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참가자의 입찰은 무효가 되어 해당 참가자는 입찰절차에서 배제(대법원 2012마 1097, '12.9.20)

유권해석

□ 입찰무효 관련 질의

**Q1.**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은 무효인지?

**A1.** 국가기관이 실시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이상으로 입찰한 사유만으로는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계 45107-121, '97.1.17.】

**Q2.**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대상업체가 입찰보증금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입찰의 무효인지?

**A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당해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바, 동 문서에 면제받은 금액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로는 볼 수 없어 무효입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후 보완이 가능함【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계41301-818, '98.4.28.】

**Q3.** 내역입찰에서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개별항목 금액의 합과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찰 무효인지?

**A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따르면 내역입찰에서 제출된 산출내역서 상의 각 항목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입찰무효로 볼 수 있으나 질의상황과 같이 발주처가 적용하도록 한 환율과 다른 환율을 적용하였거나, 공종별로 각기 다른 환율을 적용하였다 하여 이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음【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213, '16.8.24.】

**Q4.** 경쟁입찰에서 제출한 입찰서들의 팩스번호가 동일할 경우 입찰서는 유효인지?

**A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호에서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을 입찰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FAX번호가 동일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동일인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발주기관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동일인이라면 상기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로 볼 수 있음【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92, '18.2.13.】

**Q5.** 공동계약의 이행방법을 위반한 입찰의 경우 입찰서가 무효인지?

**A5.**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가 입찰공고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을 위반한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1호에 따라 입찰무효에 해당됨【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402, '16.6.16.】

□ 본점·지점의 입찰참가자격 인정 여부

**Q1.** 일반경쟁(전국) 입찰에서 본점만 참가가능한지, 지점도 참가가능한지?

**A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  
- 이번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법률행위능력을 갖춘 자연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대표자가 대표권 행사를 가짐)이 입찰자가 될 수 있으며, 대표권을 가진 법인 대표이사외 달리 대표권이 없는 지점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87, '20.2.12.】

**Q2.** 일반경쟁(전국) 입찰 시 동일 법인의 여러 지점이 동일 입찰에 중복 참여 가능한지?

**A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는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을 입찰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 법인의 여러 지점이 동일 입찰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것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87, '20.2.12.】

□ 개명 전의 대표자 명의로 입찰참가 가능 여부

**Q.** 대표자 성명이 개명되어 입찰 전에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였으나 나라장터에는 변경하지 않고 개명 전 대표자 성명으로 입찰한 것이 입찰무효에 해당하는지?

**A.**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르면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효로 한다고 규정  
- 따라서 입찰 전에 법인등기부 상 대표자 성명이 변경되었으나 이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한 것은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140, '17.5.1.】

## 제2절 계약

### 1. 낙찰자 결정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 낙찰자 결정 우선순위를 정리하면 [표 102]와 같다.

[표 102]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의 낙찰자 결정방법

구분	낙찰자 결정방법
물품	희망수량경쟁입찰 ①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 → (입찰수량이 같은 경우) ② 추첨
물품·용역	2단계 경쟁입찰 (규격·가격 동시입찰) ① 기술·규격 우위자 → (기술·규격 평가결과가 같은 경우) ② 추첨
공사·물품·용역	적격심사 ①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 → (이행능력 심사결과가 같은 경우) ② 추첨
공사·물품·용역	종합심사(평가) 낙찰제 (국가계약) ① 종합심사점수 최고점자 → (최고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②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책임점수의 합산 점수가 높은 자 → ③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단, 일반공사, 고난이도 공사, 간이형공사의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88%이상인 경우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 ④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이 적은 자 → ⑤ 추첨 (지방계약) ①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 → (평가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②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 ③ 입찰금액이 낮은 자 → ④ 추첨

구분	낙찰자 결정방법
물품·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계약) ①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자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②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 ③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지방계약) ①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자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②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 ③ 추첨

### 유권해석

- 계약체결 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가 참가한 입찰이 무효인지
- Q. 적격심사를 통과한 1순위자의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이 계약체결 전 개시될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 A.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 의서 제2절 '17-차'에 따르면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  
- 질의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이 개시된 경우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04, '17.7.31.】

### 2. 계약 체결

#### (1) 계약서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지체상금 등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국가계약법 제11조, 지방계약법 제12조)

계약문서에는 계약서 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첨부되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공사시방서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나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청구서, 각서, 협정서, 송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갖추어야 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9조, 시행규칙 제50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시행규칙 제48조)

-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국가계약)
-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지방계약)
- 경매에 부치는 경우
-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한편, 계약서 작성 방법에 있어 지방계약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지방계약법 제14조 제2항), 국가계약은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표 103]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계약문서명	내용 등
1 계약서	• 지방계약은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으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전자계약서 작성이 원칙, 국가계약은 관련 규정 없음
2 입찰유의서	• 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3 일반조건	• 「공사계약일반조건」, 「물품제조(구매)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4 특수조건	• 계약·공사관계 법령, 일반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단,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은 효력 불인정

계약문서명	내용 등
5 산출내역서	•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내역서 •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짐
6 (공사) 설계서 (물품) 규격서, (용역) 과업내용서	•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함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계약상대자
8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등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
9 수의계약각서	• 수의계약의 경우
10 정부수입인지, 지역개발 공채(해당되는 경우),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등	• 일반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짐

유권해석

- 계약문서의 종류 및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 불수용시 처리방법
- Q1. 유지관리용역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은 변경함이 없이 투입인력을 감축토록 해달라는 요구에 발주기관이 공문으로 수용한 경우 당해 승인공문이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및 효력이 있는 경우 다음 차수계약에도 적용해야 하는지?
  - Q2. 발주기관에서 이후 기존 계약내용대로 투입인력을 충원토록 하는 것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처리방법은?
  - A1, 2.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하여 계약상대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 제4항에 따라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이 인정. 따라서 유지관리용역에 대한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투입인력의 축소를 요청하여 발주기관이 공문으로 승인한 경우 동 승인공문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발주기관이 이를 일방적으로 부정하고 당초 계약내용대로 투입인력을 충원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차수별 계약목적물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계약내용의 변경사항은 다음 차수계약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임
  - 그러나 국가계약법령 등에 그 근거와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착오로 투입인력의 축소 시에도 계약단가의 증액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승인하였다면 계약단가의 증액에 관한 내용은 취소함이 타당【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685, '12.6.1.】

□ 국가계약 해당 여부

- Q. 「전자정부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청약에 의한 회선임대사업이 별도의 계약서가 없더라도 국가 계약법령의 적용대상인 국가계약에 해당하는지?
- A. 「국가계약법」 제2조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은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세출 또는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적용. “청약에 의한 회선임대사업”은 통신회선의 임차와 그에 따른 사용자 지급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청약에 의한 세출의 원인이 되는 임차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9조는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동 사업은 국가 계약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계약【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346, '12.3.28.】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 가능 여부

- Q. 학교 공사는 학습환경 유지를 위해 방학을 활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므로 지방계약법 제23조의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는지?
- A. 지방계약법 제23조에 따르면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운송·보관 계약 등 그 성질 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 요령 통보」(회계제도과-6737, 2016.12.6.)에 따르면 시설물 유지관리, PC 유지보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임차, 복구·보수 사업, 기타 1월부터 중단없이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대상으로 명시
  - 질의와 관련하여 신규 발주되는 시설공사의 경우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625, '18.11.8.】

(2) 계약의 이행보증

국가 및 지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고 불이행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유가증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납부할 계약보증금은 물품, 용역, 공사 등 계약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물품 및 용역계약은 계약금액의 10%이상(단,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동안 5%이상) 납부 하여야 하고, 공사

계약은 계약금액의 15%이상(단,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동안 7.5%이상)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계약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한정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제12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52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2조, 지방계약법 제1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0조)

\* 공사이행보증서: 해당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40/100(예정가격의 70/100 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50/10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

※ 참고자료 : 계약보증서 제출방법(서울특별시 “2021년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실무 매뉴얼”)

구분	종류	대상	보험가입기간	보험가입금액	제출 시점
입찰 보증서	세입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입찰서제출마감일 이전부터 ~ 입찰서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까지	입찰금액의 5% 이상	입찰참가 신청시
계약 보증서		공사·용역·물품	계약체결일부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계약금액의 15% 이상 (공사·용역)	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의 10% 이상(물품)	
선금 보증서		공사·용역·물품	선금지급일 이전부터 ~ 이행기간 종료일부부터 60일 이상	선금액+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	선금 신청시
손배 보증서	공사	300억 이상 대형공사, 대안입찰, 일괄입찰, 200억 원 이상 18개 공사	공사 착공일부부터 발주기관 인수일까지	공사계약금액에서 (관급자재비 포함) 부가가치세+손해보험료 제외한금액	계약 체결시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세+손해보험료 제외한금액	계약 체결시
					용역 완료전
	건설 기술	건설사업관리용역	공사 착공일부부터 공사 완공일까지		
		실시설계용역			
	건축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 체결시



구분	종류	대상	보험가입기간	보험가입금액	제출 시점
손배 보증서	용역	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평가, 견적	그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용역 완료전
		감리, 시험운전,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유지, 사업관리,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 분석 및 관리, 보수	용역 착수일로부터 완수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계약 체결시
	전력	전력기술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공사 착공일로부터 공사 완공일까지		공사 착수전
하자 보증서	공사	모든 공사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까지	공중별로 상이	준공시
	용역	학술, 정보통신용역		계약금액의 2/100	
	용역 물품	그 외 용역 및 물품		계약의 성질상 필요시 계약서류에 기재하여 적용 가능	

※ 공동수급 시 출자비율에 따라 구성원별 분할 납부가 원칙.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구성원 중 1인이 일괄 납부 가능  
 ※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동안 입찰보증서, 계약보증서 금액 한시적 인하

유권해석

□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계산방법

Q.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인 '단기계약의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의 구체적 적용 방법은?

A.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는 국가계약법 제22조에 따른 단기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해당 규정에서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 당초의 계약보증금 × [(이행완료량 × 단가) ÷ (총계약수량 × 단가)]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770, '14.6.16.】

감사원 지적사례

□ 시정계 구매계약 업무 처리에 대한 무책판정

**결정 요지** 시정계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상 변상 책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므로 무책 판정

**결정 의의** ○○○○공사는 시정계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성능미달 시정계를 합격 처리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계약기간 연장시 보증기간 미연장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이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 및 계약보증금을 지급받아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곤란하여 과도한 변상책임을 추궁하지 않음

**관련 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변상판정 청구사항 조사 및 처리, '19.11월 시행】**

# 04

## 계약이행단계

### 계

제1절 검사 및 대가지급	
1. 계약금액 조정	372
2. 검사 및 대가지급	384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93
제2절 부정당업자 제재 등	
1. 부정당업자 제재	397
2. 지체상금(지연배상금)	404

# 제1절 검사 및 대가지급

## 1. 계약금액 조정

국가 또는 지방계약은 계약 체결 후 ①물가변동, ②설계변경, ③그 밖에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위 세가지 조정 사유와 관련하여 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정요건, 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국가계약법 제19조, 지방계약법 제22조)

###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① 조정요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장기계속 공사·제조계약: 1차 계약시 부기한 총공사금액, 총제조금액) 조정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되고,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의 증감이 100분의 3 이상 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계약금액 조정은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기간과 가격증감의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위 2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 ①-가. 계약 체결 후 90일 이내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때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란 다음과 같이 계약관련 예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장 6절)

####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4)

- ① 공사, 용역,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5% 이상 상승한 경우
- ② 공사, 용역,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 이상(물품구매 6%이상) 상승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한 경우
- ③ 물품구매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 이상 상승한 경우

#### ②-나. 품목(지수) 조정률의 증감이 3% 미만

공사계약은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증감이 100분의 3 미만인 경우에도 특정규격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특정규격 자재의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계약관련 예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장 6절)

#### ■ 특정규격 자재의 계약금액 조정 방법(「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3)

- ①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품목조정률로 조정
- ②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후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품목조정률로 조정하게 되는 경우: 품목조정률 산출시 특정규격자재의 가격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은 합산)
- ③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후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지수조정률로 조정하게 되는 경우
  - 비목군 분류시: 특정자재가 속해 있는 비목군에서 특정자재 비목군을 따로 분류
  - 계수산출시: 단품조정금액을 제외하고 산출, 특정자재 비목군과 특정자재를 제외한 비목군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계수를 산출

- 특정자재 비목군의 지수변동률은 특정규격자재의 등락폭에 해당하는 지수상승률을 감산(하락률일 경우에는 합산)하고, 특정규격자재의 조정기준일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까지 지수상승률은 합산

④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조정요건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조정이 원칙이나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조정이 하수업체에 유리하거나 계약관리 효율성 제고 등에 필요한 경우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조정 가능

② 조정방법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계약서에 품목조정률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금액의 조정금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하며,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②-가. 품목조정률 산정방식

■ 품목조정률 =  $\frac{\sum \text{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 \times \text{등락폭} \textcircled{1}}{\text{계약금액} \textcircled{2}}$

① 등락폭 : 다음 3가지 상황에 따라 계산  
 계약단가 < 입찰당시가격 < 물가변동당시가격 ⇨ 등락폭 = 계약단가×등락률  
 입찰당시가격 < 계약단가 < 물가변동당시가격 ⇨ 등락폭 = 물가변동당시가격 - 계약단가  
 입찰당시가격 < 물가변동당시가격 < 계약단가 ⇨ 등락폭 = 0  
 \* 계약단가: 입찰서 제출시 첨부한 산출금액내역서상 단가

② 등락률 =  $\frac{\text{물가변동당시가격} - \text{입찰당시가격}}{\text{입찰당시가격}}$   
 \* 물가변동당시가격: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입찰당시가격: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②-나. 지수조정률 산정방식

■ 지수조정률 =  $(\sum \text{비목별 지수변동률} \textcircled{1} \times \text{해당 비목별 가중치} \textcircled{2}) - 1$

① 비목별 지수변동률  
 노무비 지수변동률 =  $\frac{\text{조정기준일 당시 노임단가 평균치}}{\text{계약 체결시 노임단가 평균치}}$   
 재료비, 경비 지수변동률 =  $\frac{\text{조정기준일 당시 표준품셈 가격 평균치}}{\text{계약 체결시 표준품셈 가격 평균치}}$

② 비목별 가중치 : 지수변동률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동 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지수조정률의 세부 산정방법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제6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장 6절 참조

③ 계약금액의 증액 및 감액

물가변동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증액예산이 없는 경우 공사량, 제조량 등을 조정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그리고 계약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감액 조정하되 조정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위탁하여 확인할 수 있고, 총액감액조정과 단품감액조정(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총액감액조정을 우선 적용한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장 6절)

유권해석

□ 계약금액 조정관련 질의

Q1. '13. 4.월 서울시철도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청소업무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위탁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청소미화원의 인건비 산정 기준을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제조업 보통인부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예정가격 작성 시 사용한 서울시 공무원 지침 단가를 적용하여 조정하는 것인지?

A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물가변동 당시 가격은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경우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2658, '14.7.22.】

Q2. 물가변동 지수조정률 산정 시 비목군 분류방법은?

A2.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 제1호에서는 지수조정률 산출시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 중 2개 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분(G1, G2, G3, G4)의 표준시장단가 비목군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견적에 의한 내역의 경우에는 내역서상 비목구분 및 견적서상 견적내용을 고려하여 해당 견적이 2개 이상의 비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비목군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314, '16.9.9.】

Q3. 감리계약과 관련하여 개산급사유서를 첨부하지 않고 이미 수령한 기성액부분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A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9절 '5-나'에 따르면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전에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대해 적용됨  
- 질의의 경우 공정예정표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되었어야 할 부분과 지연부분, 개산급 신청을 하지 않고 지급한 기성대가, 준공대가 등은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서 제외됨【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075, '17.6.20.】

Q4. 국고수입 계약(고철매각)에서 계약시점과 매각시점의 가격 변동시 계약금액 조정 가능한지?

A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국고의 수입이 되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음.  
- 물건을 매각하는 국고의 수입이 되는 계약에서 계약시점과 실제 매각시점간 해당 물건의 가격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령 외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국가법령 등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내용을 계약체결시 특수조건 등으로 명시 필요【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44, '15.2.9.】

□ 물가변동 금액 산정을 위한 공정표의 기준

Q.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산정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조정기준일 이전에 수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착공 시 제출된 예정공정표를 적용해야 하는지?

A. 질의의 경우가 조정기준일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정이 지연되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예정공정표가 변경승인된 경우라면 변경된 예정공정표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520, '18.7.18.】

□ 준공금 지급 후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Q1.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체육관 증축공사에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대가 지급 전에 물가변동 조정 요청을 받았으나 예산부족과 공사량 조정 불가로 준공 시에 물가변동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한 채 준공금을 지급하였는데, 준공금 지급 후에도 물가변동에 따른 인상분 지급이 가능한지?

A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7절 '3-다'에 따르면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  
- 질의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가 수령 전에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한 경우로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해당한다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501, '19.4.1.】

Q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관련 규정이 변경되어 입찰 당시의 가격 산정기준과 물가변동 시점의 기준이 다른 경우 동일가격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A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르면 물가변동 시점의 가격은 입찰 당시 가격을 산정할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  
- 질의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 당시 가격을 산정할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물가변동 시점의 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며, 물가변동 대가를 구성하는 품목·비목에 대하여 입찰 당시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 적용한 기준·방법 또는 거래실례가격이 없어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다른 거래실례가격 등을 동일하게 입찰 당시 가격과 물가변동 시점의 가격에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임【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003, '17.2.23.】

□ 물가변동 시 신규단가 적용기준

Q. 물량이 증가되는 설계변경 이후 물가변동 시 계약단가가 적용된 증가된 물량은 기존비목 또는 신규비목 중 어느 비목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A. 설계변경 이후 물가변동 시 신규비목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로서 증가된 물량은 비록 기존계약단가를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신규비목단가 또는 협의 단가를 적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비목은 설계변경당시(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물가변동을 산정함이 타당【조달청 질의회신, 공개번호 2009100004, 2020】

(2)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되는 ❶ 단가기준과

2 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1 적용 단가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 계약단가(산출내역서상의 단가)로 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에 대해서는 예정가격단가 적용
-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 정부, 지자체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단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합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두 단가의 평균을 적용

2 상황별 조정방법

-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려는 경우: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한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설계변경을 한 경우: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 계약금액의 증감액 산출 시 적용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음

유권해석

□ 공사계약 설계변경 단가 기준

- Q.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 이행 중 잔여공사의 설계변경 단가 기준은?
- A.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산정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바 상기 낙찰률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을 의미함. 또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가격, 감정가격, 유사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됨
- 상기규정은 동 시행령 제28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동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산정된 잔여공사에 대한 예정가격 대비 수의계약금액의 비율을 상기 낙찰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당초 계약상대방과의 계약조건 그대로 새로운 계약상대방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건의 낙찰률을 설계변경 단가산정시 적용할 수 있을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81, '16.1.15.】

□ 공사 설계변경 금지 가능 여부

- Q. 공사계약에서 특수조건으로 설계변경을 금지할 수 있는지?
- A.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으나, 그 조건에는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 따라서 계약금액의 증액이 필요한 설계변경을 금지하는 특수조건의 규정은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에 해당될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636, '14.12.19.】

□ 협상계약의 설계변경 시 금액 계약 조정방법

- Q.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 A.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 협상에 의한 물품제조계약에서 신규비목의 발생에 따른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을 것이며, 원래의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적용했던 가격협상의 방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190, '14.9.25.】

□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Q. 일괄입찰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시기가 다른 다수의 설계변경을 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방법 및 산출 내역서 처리 방법은?
- A.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은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동 규정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각 사유 또는 건별이 아닌 전체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과 감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라는 의미이며, 증액이 감액보다 많더라도 계약금액의 증액을 인정하지 않음
- 이 경우 각 사유 또는 건별 설계변경 시 내역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8항의 규정과 같이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83, '12.2.21.】

□ 총액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의 산출내역서 정정 가능 여부

- Q. 총액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에서 제출된 산출내역서가 단순 착오로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 정정이 가능한지?
- A. 설계서는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하며, 질의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순히 산출내역서의 과다·과소 사유로는 조정할 수 없으며, 내역입찰 시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착오 정정은 계약 체결 전에 할 수 있음【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997, '17.2.23.】

□ 발주자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시 비용부담 주체

**Q.** 일괄입찰 계약에서 계약특수조건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각종 심의결과에 따른 설계보완 및 수정, 시설물 등의 변경에 따른 비용은 본 사업의 범위에 포함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발주자가 설계보완 및 수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A.** 일괄입찰인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를 변경하거나, 기본계획서 입찰안내서 등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

- 따라서 계약특수조건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각종 심의결과에 따른 설계보완 및 수정, 시설물 등의 변경에 따른 비용은 본 사업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정한 경우 동 내용이 어떠한 경우에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부인하는 내용이라면 부당특약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설계보완 및 수정, 시설물의 변경 등 구체적인 사항이 시행령 제91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194, '12.9.11.】

□ 민원에 의한 사업변경 가능 여부

**Q.** 공사계약진행 중 민원으로 인해 당초 공사현장을 변경하여 사업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A.**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공사 시공 중 당초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설계한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으로, 당초 계약의 목적 및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변경을 의미. 귀 기관 사안의 경우 당초 공사현장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사현장을 타 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당초 계약의 목적 및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라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5 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 및 제20조 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동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이 당초 공사의 본질이 변경되는지 여부 및 계약체결시의 예측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308, '12.10.15】

□ 용역계약 변경 관련 국가계약법 해석 요청

**Q1.** 용역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현재, 계약금 증액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계약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변경(계약금 변경)이 가능한지?

**A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단서 조항은 최초 계약 체결 시 준수사항이며, 이후 계약 이행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 증액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변경 계약이 가능

**Q2.** 국가계약 관련 법령 중 계약금 증액범위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용역 계약에서 계약금이 최초 계약금액의 50% 이상 등 대폭 증액 되더라도, 최초계약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 합당한 금액범위에서 증액된다면 계약금 변경이 가능한지?

**A2.**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

- 이때 계약금액변경에 대한 상한규정은 없으며, 참고로 과업내용의 변경부분이 당초의 용역계약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발주 필요

【조달청 질의회신, 공개번호 2107080031, 2021】

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

□ 즉석식 인쇄복권 제조 용역 계약 변경 관련【신청일: 2021.7.21.】

**개요** A부로부터 복권발행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국가계약법을 적용해 인쇄복권 제조 용역을 발주해 인쇄업자와 5년간(2018년~2023년) 계약수량을 발행하는 계약을 체결

**쟁점** 복권판매가 증가해 당초 계약기간 보다 1년 빨리 계약수량이 달성될 것으로 보여 마지막 5년차에 추가 인쇄가 필요한데 발행물량의 증가 및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컨설팅 의견** 국가계약법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용역계약에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용역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업무의 수행 등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함. 다만, 인쇄단가에 반영된 설비 투자금액의 감가상각비가 계약수량이 조기달성되는 시점에 전부 회수되므로 추가물량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인쇄 단가에 포함된 설비 투자금액의 감가상각비는 제외하도록 협의 필요

□ 동일 부지 내 유사한 국비보조사업 통합 설계·공사 관련【신청일: 2019.11.11.】

**개요** A공단은 B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승강기 시험타워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19.6월)하여 진행 중인데, '19.7월 같은 부지에 복합관 등 건립을 위한 보조금을 재차 교부 받음. A공단은 두 보조사업 간 연계와 예산절감, 공사기간 단축 등을 위해 기존 설계용역(타워건립)에 신규 사업(복합관 건립) 설계과업을 추가하는 수정계약 방안을 검토

**쟁점** ① 기존 '타워설계용역'에 '복합관 건립 설계' 과업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설계용역의 과업추가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 각각 설계용역 완료 후 통합하여 공사를 발주하는 것의 적정 여부

**컨설팅 의견** ① '복합관 건립설계' 용역은 기존 계약인 '타워설계용역'의 계약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또는 그 부대·부속 업무라 보기 어려워 통합설계는 부적절 ② 국가계약법은 같은 부지 내 관련 사업 공사를 통합 발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의 연계성 확보, 예산절감 등을 위해 공사를 통합 발주할 필요가 있다면 각각 설계 후 공사 통합 발주 가능

□ 행정소송 사건위임 용역계약 변경 관련【신청일: 2022.1.20.】

**개요** ○○위원회는 A법무법인에 행정소송 사건 1심 처리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소송 장기화로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최소 1년 6개월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과도한 업무량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 예상

**쟁점** 사건의 중요성,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선임료를 증액하여 현실화 할 필요가 있는 등 계약 후 사정변경이 있으므로 계약금액(선임료)을 증액하는 계약변경을 할 수 있는지?

**컨설팅 의견** 과업내용에 A법인의 위임사무가 행정소송의 1심 처리로만 되어 있어 소송기간이나 변론기일 참석 횟수, 준비서면 제출 횟수 등이 늘어나더라도 과업을 추가하는 과업내용의 변경이 아닌 점, 계약서나 소송처리 지침 등에 선임료 지급기준액과 지급기준액의 증액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적정한 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약변경은 가능하지 않다고 사료됨

□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변경 관련【신청일: 2020.7.17.】

**개요** ○○사에서 하수처리장 내 수처리시설 및 찌꺼기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개량사업을 추진하면서 먼저 사업확정된 수처리시설에 대해 시공관리·감리 등을 위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과업을 수행하다가 나중에 사업확정된 찌꺼기처리시설 사업에 대해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를 준비

**쟁점** 수처리시설 용역업체에 찌꺼기처리시설 용역을 추가 수행하도록 할 경우 별도 발주할 경우에 비해 9.4억 원 절감이 예상되는데 계약법령 상 용역계약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컨설팅 의견** 수처리시설과 찌꺼기처리시설은 하수처리 계통 상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연결된 시설로서 상호공정 조정이 필요한 등 통합해서 수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용역 수행에 지장이 초래되는 점, 「건설산업진흥법」에 따르면 2개의 용역은 통합발주 대상에 해당되는 점, 2개 건설공사가 동일부지 내 수행되고 사업기간도 차이가 없어 통합해서 수행하는 것이 책임성 강화 등 여러 면에서 유리하고 예산절감 효과도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2개의 용역을 통합해서 수행하는 계약변경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3) 기타 계약금액 조정

공사, 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정하고, 이 때 적용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에 의하되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

한편, 국가계약 예규는 ① 공사이행기간의 변경, ②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계약 예규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7절)

① 공사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간접노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노무비 지급대상자의 노무량에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li> <li>•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li> </ul>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희장비비 등</li> <li>•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li> </ul>
기타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경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li> <li>•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li> </ul>

보증기간 연장비용	•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건설장비 유희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장비: 유희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li> <li>• 보유장비: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연간표준가동기간+365일)×유희일수×1/2</li> </ul>

②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정금액 = 당초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li> <li>•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중간금액</li> </ul>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li> <li>•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중간금액</li> </ul>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li> <li>•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중간금액</li> </ul>

유권해석

□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및 산정

- Q.**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를 시공자가 요청한 경우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지급시 간접비 산정은 발주기관이 검토·조정한 금액으로 하는지?
- A.**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의 변경 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임. 실비의 산정 시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에 따라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54, '12.2.13.】

□ 법정경비 반영 가능 여부

- Q.** 관계 법령의 개정에 의해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비용 부담(법정경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수수료)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 A.** 계약체결 후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다만, 구체적 사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 산출내역서 등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하여야 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009, '13.7.30.】



□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유휴장비비 인정 범위

Q. 공사 정지로 인한 건설장비의 유휴비용 산정 시 하도급자가 보유한 장비를 보유장비로 볼 수 있는지?

A.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7절 '2-바'에 따르면 불가피하게 건설장비의 유휴가 예상 되는 경우 그 사유 등 사실관계를 통지해야 하며, 계약의 이행여건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대장비는 유효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를, 보유장비는 유휴 장비비를 반영하도록 규정

- 이는 변경된 내용에 따른 실비를 반영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계약상대자 또는 하도급자가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를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보유장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86, '19.1.11.】

감사원 지적사례

□ 공사연장 비용의 사업비 조정제도 부적정

**결정 요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공사기간 연장 비용 산정방법과 총사업비에 대한 협의 조정 신청 시기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등 공사기간 연장 비용을 적절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통보

**결정 의의** ○○○○부에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비용과 부담을 업체에 전가하는 부당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공사기간 연장 비용 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공사품질 확보 및 안전을 도모하고 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비효율을 예방하는데 기여

**관련 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65조, 제66조, 「총사업비관리지침」 제64조 등

※ 참고사항 : ○○○○부는 2018.7.12.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총사업비 조정신청 횟수제한을 삭제하였고, 공사기간 연장 비용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중

【공공발주 건설공사 불공정관행 점검, '18.3월 시행】

2. 검사 및 대가지급

(1) 검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고 검사결과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국가계약법 제14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내지 제57조, 지방계약법 제17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

① 검사기간

(원칙)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이행 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경기침체 등 국가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기간을 정한 경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함

(예외)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14일 내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내 검사를 완료, 관급자재 대가 포함한 공사계약금액 100억 원 이상 또는 기술적 특수성 등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② 검사방법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 및 검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하여야 하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상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약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을 따로 정하여 검사 가능

③ 검사조서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하나 계약금액 3천만 원 이하의 계약은 생략 가능, 검사조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지출결의서 검수란에 검사자가 날인

④ 검사와 감독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적절하게 이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검사와 감독의 직무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겸할 수 없음

-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검사에 있어서 감독을 행하는 자 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등 계약의 이행 후 지체없이 검사를 하지 않으면 이행 확인이 곤란한 경우
- 계약금액이 3억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상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의 경우
-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 감사원 사전컨설팅 사례

#### □ 기술혁신 시제품 구매계약 및 불용 관련【신청일: 2019.7.15.】

**개요** A기관은 혁신 시제품을 구매하여 수요기관(테스트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적용해 본 후 테스트 결과를 공개하는 등으로 판로를 지원하는 '기술혁신 시제품 시범구매사업'을 추진

**쟁점** ① 시제품의 검사·검수 시 '테스트 수행계획서 수준'이 아닌 '조달시스템 등록 수준'으로 검사·검수하고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A기관 예산으로 구매한 혁신시제품의 소유권을 테스트 완료 후 수요기관에 이전하기 위해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할 수 있는지 여부

**컨설팅 의견** ① A기관이 법령에 의해 지정·고시된 시제품을 '조달시스템 등록 수준'으로 납품받는 내용으로 계약한 경우 해당수준에서 검사·검수 및 품질보증 요구는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다만, 기술혁신 시제품의 구매대상 및 시제품 추가특수조건 등에 과업 이행관련 제재사항 등을 명확히 할 필요

② A기관이 구매한 시제품이 '기술혁신 시제품 시범구매사업'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물품관리법령에 따라 불용이 가능

#### □ 저압전자식 전력량계 리콜업무 처리 관련【신청일: 2019.9.18.】

**개요** A기관은 24개 업체와 455만여 대 전력량계 계약 체결 후 10개 업체에서 납품된 150만여 대에서 내장 프로그램 오류로 검침시각 착오 전송 결함이 발생하여 리콜을 진행하고자 함

**쟁점** 계약특수조건(리콜업무기준)의 리콜항목에 따르면 하자 발생 기자재에 대해 수리·교체·환급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리 또는 교체 방식" 이 아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리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컨설팅 의견** 계약문서인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등을 고려할 때, 대단위 하자 발생 및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리콜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만, 충분한 기술검토 등을 거쳐 추가 부작용이 없도록 관리 필요

### 감사원 지적사례

#### □ 노면표시 설치공사 부당 준공처리 및 불법 하도급 목인

**결정 요지** 노면표시 설치공사 준공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징계요구 및 준공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고, 기준에 미달한 부분을 재시공하도록 시정요구. 또한, 불법 하도급하거나 계약을 부당하게 수행한 업체에 대해 적절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무단으로 감독공무원의 도장을 새겨 문서에 날인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업체 관련자를 고발토록 통보

**결정 의의** △△△의 노면표시 설치공사 준공업무 담당자는 업체로부터 부적합 판정된 반사성능 성적서를 제출받고도 제대로 준공된 것으로 준공처리하였을 뿐 아니라 업체가 불법 하도급한 사실을 알고도 목인.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도록 하는 한편 노면표시 반사성능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국민안전 제고

**관련 규정** 지방계약법 제16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 등

【노면표시 설치공사 관련 비리 점검, '20.11월 시행】

### (2) 대가의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① 검사를 완료한 후 지급하는 경우와 ② 기성부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계약 법령 등에 규정하고 있는 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국가계약법 제15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 지방계약법 제18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및 제68조, 「물품·용역·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15장)

#### ① 완성 대가의 지급

-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동안 3일) 지급
-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에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할 수 있고 반송 후 재청구 받은 날까지 기간은 대금지급 기간(5일)에 불산입
-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지급
- 대가지급을 청구받은 후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미지급액×금융기관 대출 평균금리×지연일수
-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시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
-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계약상대방의 지급내역을 비교·확인

#### ② 기성 대가의 지급

-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
- 검사완료 전에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 검사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
- 검사완료 후에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 대금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지급
-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에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할 수 있고 반송 후 재청구 받은 날까지 기간은 대금지급 기간(5일)에 불산입
- 대가지급을 청구받은 후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미지급액×금융기관 대출 평균금리×지연일수
-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시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
-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계약상대방의 지급내역을 비교·확인

유권해석

□ 장기계속공사의 기성대가 지급

- Q. 장기계속 공사에서 1~4차 공사는 기준공기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5차분 공사의 준공기간이 지난 시점(납기초과)에서 5차분 기성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 A.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의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성대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임【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계 45107-1664, '95.9.6.】

□ 계약금액 사후정산 가능 여부

- Q. 확정계약에서 계약금액의 사후정산이 가능 한지?
- A.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의 개산계약, 제73조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과 계약서에 일부비목에 대하여 정산하기로 정한 계약을 제외하고 총액 확정계약으로 체결된 국가계약에서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지출내역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확정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보다 비용을 적게 지출하였다고 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거나, 계약금액 지급 후에 그 차액을 반납토록 하는 것은 확정계약의 성질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158, '12.9.4.】

□ 건강보험료 사후정산 가능 여부

- Q.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사후정산이 가능한지?
- A.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3항에 의한 사후정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적정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39, '14.1.9.】

□ 용역보험료 사후정산 방법

- Q.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통학차량 임차용역계약의 상용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사후정산 시 해당 사업장에 실제 투입된 일자로 일할계산하여야 하는지, 용역기간 중 사업자가 해당 근로자에 납부한 금액 전부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 A.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2-다-2"에 따르면 상용근로자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실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고 규정  
- 질의의 상용근로자가 직접 용역을 수행한 경우라면 사후정산 시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는 확인을 하고 해당 사업장에 실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408, '19.5.17.】

□ 공사정지 시 적용 대출금리

- Q.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금액 산출 시 일반자금 대출금리는 지정금고에서 발주기관이 대출받을 경우의 금리인지, 계약상대자가 대출받을 경우의 금리인지?
- A.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8절 '6-라'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된 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 적용하는 금리를 의미함【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345, '20.8.31.】

□ 준공대가 지급 시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가능 여부

- Q.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준공대가 지급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는지?
- A.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급할 준공대가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경과하여 하자담보 책임의무가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반환하는 것이 타당함【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976, '17.9.18.】

(3) 선금의 지급

공사, 물품제조, 용역계약의 대가로서 계약의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 지급에 관한 지급범위, 채권확보, 사용방법 및 정산 등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1 선금지급 범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의 70%(단,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8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금 신청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공사 계약금액	물품제조, 용역 계약금액	선금의무지급률
- 10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 계약금액의 30%
- 20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 계약금액의 40%
- 20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	→ 계약금액의 50%

\* 수해복구공사 국가계약에서 선금의무지급율은 계약금액 기준 20억 원 이상인 경우 50%, 20억 원 미만인 경우 70%

**2 선금 지급대상**

선금을 신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의 선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요건 충족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함

- 공사, 물품제조, 용역 계약에 해당할 것(물품구매 계약은 지급대상이 아님)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을 것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지방계약만 규정)

**3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함

-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4 채권확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은 면제가능하고 이 경우 선금 반환사유 발생 시 현금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받기 위하여 지급확약서를 제출받음)

보증·보험금액	선금액+보증(보험)기간 이자상당액(한국은행 통계월보의 대출평균금리 적용)
보증·보험기간	개시일: 선금지급일 이전 종료일: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상(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

**5 선금 사용의 확인**

- 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지방계약은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
- (지방)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사용내역서를 제출받아 지급된 선금이 선금지급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단,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1억 원) 미만의 물품·용역에서 선금을 30%미만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음

**6 선금의 반환 청구**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지급 후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선금잔액에 대해 지체없이 반환을 청구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함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7 선금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 기납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정산 금액 = 선금액 × (기성부분 대가 상당액/계약금액)

유권해석

□ 선금지급 및 반환 관련 질의

**Q1.** 물품구매(제조 없이 납품)와 설치공사가 혼재된 경우 선금의 지급범위는?

**A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물품의 제조 없이 납품하는 구매계약과 구매물품을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동일한 계약으로 체결하였고, 구매계약과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각각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물품의 제조없이 납품하는 구매계약에 대해서도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3조 단서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음【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91, '15.2.23.】

**Q2. 선금 반환 시 이자 계산방법은?**

**A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선금액에서 동 집행기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함

- 이 경우 약정이자 상당액이란 동 집행기준 제35조 제2항의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의미하는바 사유발생 시점은 선금 보증채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된 시점이므로 선금을 신청한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동 집행기준 제38조 제2항에 따라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반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지급일로부터 반환 시까지로 하되, 미지급 하도급 직불 대가 및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우선적으로 동 대가와 상계하여야 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357, '12.3.29.】

□ 계속비 사용의 선금 사용

**Q.**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선금의 이월 사용이 가능한지?

**A.**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5-나'에 따르면 선금을 지급한 후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경우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임【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332, '14.1.28.】

□ 공사의 일시정지 관련 잔여계약금액 관련 질의

**Q.**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 '잔여계약금액'은 이전 지급된 기성대가만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성대가와 선금잔액을 모두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는지?

**A.**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이 초과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잔여계약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보상하는 취지는 계약상대자가 정상적 공사 이행에 따른 대가수급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이미 선금수급에 따른 이익(이자수익 등)을 향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선금잔액에 상당하는 대가수급의 이익은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의 "잔여계약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기성대가 이외에 선금잔액도 모두 공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61, '12.2.14.】

□ 선금지급 대상

**Q.** 공공기관에 기자재를 납품(물품구매)하는 경우에도 선금지급이 가능한지?

**A.**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는 선금의 적용범위를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계약과 500만 원 이상의 용역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기자재 납품계약은 위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자재 납품에 대해서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음【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595, '12.12.13.】

□ 선금 반환여부

**Q.** 회계연도 내 미처리 선금에 대하여 선금사용내역으로 정산하고 잔여 선금액은 반환해야 하는지?

**A.** 선금은 해당연도 선금지급분에 대한 선금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정산하고, 선금잔액이 발생된 경우에 반납 하셔야 할 것이며, 반납 받은 선금잔액을 이월사업에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월된 연도에 다시 지급 가능【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148, '14.1.13.】

□ 선금반환 시 하도급 대가와 기성대가 미지급액 상계 순서

**Q.**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 원도급사의 재정난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근거로 하도급사의 잔여 기성대가를 선금 총당에 앞서 지급할 수 있는지?

**A.**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제2절 '5-나-3'에 따르면 선금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 총당하여야 할 것이나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위 계약 집행 기준 제13장 제11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 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918, '19.12.17.】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국가 및 지방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 의무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에는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여 명백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하는 등 국가 및 지방계약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제 또는 해지 사유는 내용은 [표 104]와 같다.(국가계약법 제5조의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Check! 해제와 해지의 차이**

□ 해제 : 당초부터 그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조치

□ 해지 :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일정 시점부터 소멸시키는 행정행위

[표 104] 법령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구분	국가계약	지방계약
해지 강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li> <li>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청렴계약을 위반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li> <li>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li> <li>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li> </ul>
해지 가능 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li> <li>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li> </ul>

위와 같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외에 계약이행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계약변경 등으로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의 해제·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을 지급하고 동시에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 밖에 계약 관련 예규에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계약 예규의 내용을 요약하면 [표 105]와 같다.(지방계약 예규의 내용도 국가계약 예규와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같음)

\* 국가계약 예규 : 「물품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제15장

[표 105] 국가계약 예규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구분	사유	후속조치
발주기관에서 해제·해지 (계약상대자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준공기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납품(공사를 완공, 용역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li> <li>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 장기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li> <li>장기물품제조(장기계속공사,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li> <li>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li> <li>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li> <li>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li> <li>(물품계약)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 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li> <li>(공사계약)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li> <li>(용역계약)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li> <li>(공사·용역계약)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담당자</li> <li>- 기성 인수시 대가 지급</li> <li>계약상대자</li> <li>- 자재철거·반환</li> <li>- 선금 반환(이자 가산)</li> <li>※ 부정당업자 제재 필요</li> </ul>
발주기관에서 해제·해지 (사정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담당자(14일 이내)</li> <li>- 기성 인수시 대가 지급</li> <li>- 인력·장비 철수비용 지급</li> <li>- 계약보증금 반환</li> </ul>
계약상대자가 해제·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용역계약)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li> <li>(공사·용역계약) 공사, 용역수행의 정지기간이 공사기간, 용역계약 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상대자</li> <li>- 선금 반환(이자 미가산)</li> </ul>

유권해석

□ 계약해지(해제) 관련 질의

- Q1.** 낙찰자 결정방법을 '중기간 계약이행능력심사'로 한 입찰공고에서 낙찰자가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이행능력 심사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 A1.** 국가기관이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명시하여 입찰공고하여야 하는바, 귀 기관 사안의 경우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모든 입찰자를 기속하게 되는 입찰공고문 상에 낙찰자 결정방법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물품구매계약 체결 이후 계약이행능력심사시 제출받은 서류가 허위서류로 판명된 경우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의 계약해제(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공고문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당해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98, '12.1.26.】
- Q2.**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 A2.** 국가계약법령에서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사정변경', '계약상대자에 의한 해제 또는 해지'를 규정하고 있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국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757, '14.6.12.】

감사원 지적사례

□ 시정계 구매계약 업무 처리에 대한 무책판정

**결정 요지** 시정계 판매계약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법령 등이 없는 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상 변상책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므로 무책판정

**결정 의의** ○○○○공사는 시정계 판매계약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보다 높은 지체상금률을 정하여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불이행으로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계약을 미해제 하였으나, 국가계약 법령에 판매계약에 대한 지체상금률 규정이 없고 구매자의 요청으로 시정계 결함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기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과도한 변상 책임을 추궁하지 않음

**관련 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변상판정 청구사항 조사 및 처리, '19.11월 시행】**

제2절

부정당업자 제재 등

1. 부정당업자 제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부정당업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계약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대상 및 제재기간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가계약법 제27조, 지방계약법 제31조)

(1) 입찰참가 제한 사유

국가 및 지방계약에서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부정당업자는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를 한 자, 계약의 이행을 부실하게 한 자 등을 말하며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말한다.

그리고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해당 계약 소관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제한기간, 제한사유 등을 명백히 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하고,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7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7조)

국가계약의 경우 입찰참가 제한대상이 되는 부정당업자는 다음과 같다.

국가계약법 제27조

-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등의 위원회 위원 포함)에게 뇌물을 준 자
-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 계약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서 포함)를 위조·변조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하지 않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을 위반한 자
  -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의 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체한 자

-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 해당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정보시스템 등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非)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 등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한 자

유권해석

□대표자 변경 시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

- Q.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발주기관에서 계약해지를 한 계약에서 계약상대자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 대상이 종전 대표이사인지?
  - A.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그 위반행위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므로 대표자의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대표자를 제재처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679, '19.5.30.】

□법인 대표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력

- Q. 지방자치단체가 법인과 그 대표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대표자의 개인사업체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지?
- A.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6항에 따르면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1조 제1항 각호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 - 질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법인의 대표자와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동일하다면 해당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적용됨【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331, '20.8.28.】

(2) 입찰참가 제한 기간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부실벌점, 하자비용, 부정행위 유형, 고의·과실 여부, 뇌물액수 및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한 사유



별로 설정되어 있으며, 부정당업자가 위반한 여러 개의 행위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개별 제한 사유별 제재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을 제재기간으로 하면 된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2)

그리고 제재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06] 입찰참가제한기간 가중·감경 사유

구분	가중	경감
국가 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일부터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횡수 등을 고려 →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별 제재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가중할 수 있음(가중 후 제한기간은 2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시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횡수 등을 고려 →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별 제재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단,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7호(관계공무원에 뇌물제공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한기간을 줄여서는 안됨
지방 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일부터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별 제재기간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음(가중 후 제한기간은 2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시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 6개월 범위내에서 감경할 수 있음(경감 후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

유권해석

□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질의

- Q1. 입찰등록서류 위조로 형사처벌을 받은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가 면제되는지?  
A1. 입찰등록서류 위조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고 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기획재정부 질의회신 회계 125-79, '83.1.14.】
- Q2. 공기업이 발주하는 계약에서 조세포탈 업체에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는지?  
A2. 국가계약에 있어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확대 또는 유추해석을 해서는 아니 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를 준용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없음【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821, '17.6.30.】
- Q3. 기타 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도 국가계약의 입찰참가 제한되는지?  
A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1항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기타공공기관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음【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398, '18.3.28.】

- Q4.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일부 미이행하여 계약해지가 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이 가능한지?  
A4.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지가 된 경우라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대상임【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487, '16.5.23.】
- Q5.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입찰 담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뢰 공문이 접수된 경우 이에 근거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가능한지 아니면 혐의사실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 가능한지?  
A5. 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찰 담합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행정처분 의뢰 공문서 등이 접수된 경우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함【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750, '15. 6.29.】
- Q6. 착오에 따른 단순한 오기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사유가 되는 '허위서류'에 해당되는지?  
A6. 서류제출담당자의 단순한 오기가 명백한 경우라면 이를 '위조·변조·허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동 사항이 '계약상대자의 단순한 착오에 의한 오기'인지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380, '13.10.8.】
- Q7. 전기공사를 진행 중인 업체가 분리된 경우 면허를 양수한 업체와 변경계약 체결 가능 여부 및 기존업체의 계약보증금 세입조치와 부정당업자 제재가 가능한지?  
A7. 지방계약 관련 법령에서는 계약 체결 후 계약 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변경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전기공사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 변경 가능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해당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 변경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면, 계약보증금 세입 조치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3186, '13.12.10.】
- Q8. ○○○○조합의 조합원인 업체와 그 대표자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고 그 대표자가 당해 조합의 이사장인 경우 당해 조합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지?  
Q9. 당해 조합이 대표자의 부정당업자 제재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다면 조합이 이사장을 변경할 경우 입찰참가가 가능한지?  
A8, 9. ○○○○조합(이하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법」 제57조에 따라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는 바, 이사장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경우라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5항에 따라 당해 조합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조합의 대표자가 변경되고 조합과 변경된 조합의 대표자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 당해 조합은 변경된 대표자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가능【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648 '12.5.24.】
- Q10. 담합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고자 하는 업체(A)가 해당 사업부문을 양도·양수 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업체가 양도업체(A)인지, 당해 사업부분의 양수업체(B)인지, 아니면 양 업체 모두인지?  
A10. 영업양수도 계약을 통하여 양수법인이 부정당업자 제재와 관련된 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면 양수법인을 대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4항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도 제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대표자의 지위는 양도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를 발생시킨 양도법인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55, '13.1.16.】

4장 계약이행 단계

감사원 지적사례

□ 물품 구매계약 관리 부적정 및 체선료 지급업무 부당 처리

**결정 요지** 위조된 품질보증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계약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고, ○○공급사가 파산하였다는 허위보고로 ○○공급사가 선사에 지급하여야 할 체선료를 ◇◇◇◇주식회사가 대신 지급하도록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관련자에 인사 조치와 손해배상청구 방안 마련을 통보

**결정 의의** 발전사들이 해외 다수 업체로부터 유연탄 등을 지속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서 품질보증서 위조와 같은 공급사의 중대한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주식회사에 납품금액 감액 같은 경미한 제재를 하여 계약관계를 지속할 것이 아니라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 엄중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하였고, 허위 문서를 만들어 체선료를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발전사에 손해를 입히고 공급사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 관련자를 고발하는 등 유사 사례 재발 예방

**관련 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등  
**【공공기관 계약관리실태(에너지분야), '18.4월 시행】**

□ 하도급 업체를 통한 직원주택 무상수리 및 직무 관련 금품수수

**결정 요지** 임대주택 보수공사의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관련자와 기성 검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공사에 손해를 입힌 관련자를 각각 징계요구하고,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적절한 제재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및 관련업무 철저히 주의요구

**결정 의의** 공공부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사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관행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불법 하도급을 행한 도급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고발을 통해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한편, 불법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 등의 부작용 예방

**관련 규정** 지방계약법 제31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등  
**【공공부문 불공정관행 기동점검, '18.8월 시행】**

□ 구름다리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 및 직무 관련 금품수수

**결정 요지** 구름다리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해당 업체가 추천하는 특정 업체의 제품을 설계에 반영한 관련자에게 대하여 징계요구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특정 업체에 불법 하도급한 업체에 대하여 제재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및 하도급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

**결정 의의** ■■군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함에도 실시설계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고, 특정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면서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계약해지에 따른 선금 잔액을 반환받지도 않았음. 계약·공사 등을 둘러싼 공직자와 업체 간 유착 등이 빈번히 나타나는 상황에서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를 위법하게 처리하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지역 토착형 비리 적발

**관련 규정** 지방계약법 제31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지역토착비리 등 기동점검(1), '19.4월 시행】**

(3) 과징금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를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제27조의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2, 지방계약법 제31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

① 과징금 부과대상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입찰자가 2인 미만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2)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 국내·국외 경제 사정의 악화 등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
- 발주자에 의하여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 공동계약자나 하수급인 등 관련 업체에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
- 입찰금액 과소산정으로 계약체결·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공고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관련 기준 및 비율을 적용하는 등 책임이 경미한 경우(국가계약법 규정)
- 금액단위의 오기 등 명백한 단순착오로 가격을 잘못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며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이 경미한 경우

②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7항에 따라 중소기업부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 지방계약법 제33조 위반한 자(지방계약법 규정)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의 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간에 손해를 끼친 자
-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지방계약만 규정)
- 「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사전 누출 금지 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지방계약만 규정)

### 유권해석

#### □ 과징금 부과 관련 질의

- Q1.** 지방계약에서 하도급 계약을 허위로 통보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과징금 부과 대체가 가능한지?
- A1.** 하도급 계약을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라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대상이며, 과징금 부과 여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천재지변,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발주자 책임, 공동계약자나 하수급인 등과의 공동책임, 재발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나 제2항(입찰자가 2인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491, '16.5.23.】
- Q2.** 공립학교의 과징금 부과 사항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 A2.** 지방계약법 제32조의2 등에 의한 교육지원청 및 공립학교의 과징금 부과사항은 시·도교육청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임【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3116, '14.8.21.】

## 2. 지체상금(지연배상금)

계약상대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제외)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지방계약은 지연배상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이 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국가계약법 제26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지방계약법 제30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 유권해석

#### □ 지체상금 산정 관련 질의

**Q1.** 지체상금 산정시 지체일수 산정방법은?

**A1.**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지체상금이 부과되고 있는 공사에 대한 지체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과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연된 중지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임. 또한 공사지연으로 관급자재 구매 사업비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어 이월 승인기간이 발생한 경우도 동 기간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체된 기간으로 보기는 곤란하므로 지체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88, '13.2.19.】

**Q2.** 계약상대자가 일부 미설치된 상태(협문 미설치)로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발주기관의 시정요구를 받아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지체일수 산정방법은?

**A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8절 “1-바-1)”에 따르면 준공기한 안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도록 규정【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33, '18.2.6.】

**Q3.** 지체상금 산정시 기납부분 금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A3.** 발주기관이 분할 납품된 품목을 검사를 거쳐 인수·사용 중에 있는 경우에는 지연된 품목의 지체상금은 기납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428, '13.4.19.】

**Q4.**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포기 및 보증시공에 따른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은?

**A4.** 지방자치단체의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포기하여 연대보증인이 잔여공사에 대한 시공의 무이행을 개시하여 무이행을 완료하고,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에는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765, '16.7.20.】

#### □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부과 산정 기준

**Q.**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제90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부과 시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으로 변경되거나 사후 정산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A.**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은 최종 확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변경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의 경우에는 정산 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85, '19.1.11.】

□ 계약이행 지체 시 계약보증금 추가 산정 기준

**Q.** 계약상대자의 물품납품 지연으로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에 달하였으나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받아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A.**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지연배상금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으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30조 제4항에 따르면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규정  
- 질의와 관련하여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였으나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계약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계약 미이행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음【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986, '18.11.29.】

□ 지연배상금 외 추가부담 부과 가능 여부

**Q.**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또한 연장될 경우 시공사에 지연배상금 외에 추가로 건설사업관리 용역비를 부담하도록 특약이 가능한지?

**A.**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고, 지방계약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 상대방에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 성격인 지연배상금 외 추가 비용을 부과한다면 이중 배상의 여지가 있어 부당 특약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251, '19.10.1.】

□ 준공된 1차공사의 하자를 사유로 2차공사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 가능 여부

**Q.** 장기계속공사로 발주된 공사와 관련하여 준공된 1차공사의 하자가 보수되지 않아 이를 완료할 때까지 2차수 공사계약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A.**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의 지연배상금은 각 연차별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였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1차수 공사계약이 지연된 것이 아니라면 준공된 1차수 공사계약의 하자를 사유로 2차수 공사계약에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됨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748, '20.11.6.】

□ 지체상금 한도

**Q.** 단일계약으로 품목 및 납기가 상이함에 따라 분할납품을 2회 이상 허용하였으며 일부 분할납품 건이 납품 지연된 상황 → 납기1(납품완료), 납기2(지체 중), 납기3(미도래)

- 이 경우 이미 인수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체상금 산정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고, 아직 납기가 미도래한 납기3에 대한 것도 공제한 후, 지체상금은 납기2에 대한 계약금액만 대상으로 하고 지체상금 한도도 똑같이 납기 2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도 30%로 설정하는 것이 맞는지?

**A.**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서 지체상금 상한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 지체상금 상한액의 도입취지 등을 감안해 볼 때 납기 미도래 계약금액에 대해서도 지체상금 산정 계약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조달청 질의회신, 공개번호 2009100008, 2020】

$$\text{지체상금} = \text{계약금액} \textcircled{1} \times \text{지체상금률} \textcircled{2} \times \text{지체일수} \textcircled{3}$$

① 계약금액(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장기계속공사계약, 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 장기계속용역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을 의미하고,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함

② 지체상금률(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	지체상금률		
	국가계약	지방계약	
공사	0.5/1000	0.5/1000	
용역(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용역 제외)	1.25/1000	1.3/1000	
물품	제조·구매(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 포함)	0.75/1000	0.8/1000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지자체)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제조·구매	0.5/1000	0.5/1000
	수리·가공·대여	1.25/1000	1.3/1000
군용 음식료품 제조·구매	1.5/1000	-	

③ 지체일수(국가계약: 공사, 물품,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제15장)

구분	지체일수 계산
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제출한 경우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불산입</li> <li>• 불가항력의 사유(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상태의 발생)에 의한 경우</li> <li>•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li> <li>•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li> <li>•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li> <li>• 설계변경(계약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한함)으로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li> </ul>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기관이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 이행할 수 없을 경우</li> <li>•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의 구입 곤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li> </ul>
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제출 후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li> <li>• 준공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준공기한 다음날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li> </ul>

# 05

## 부록

구분	지체일수 계산
물품	<p><b>불산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품기한 안에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포함)을 납품한 경우 검사소요 기간은 불산입</li> <li>•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li> <li>•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li> <li>•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li> <li>•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li> <li>•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li> <li>•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li> <li>•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li> </ul>
	<p><b>산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품기한 안에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포함)을 납품한 후 납기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li> <li>• 납품기한을 지나서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포함)을 제출한 경우 :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li> </ul>
용역	<p><b>불산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역수행기간 안에 용역목적물(완료보고서)을 제출한 경우 검사소요 기간은 불산입</li> <li>•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li> <li>•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된 경우</li> <li>•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li> <li>•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할 경우</li> <li>•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li> </ul>
	<p><b>산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역수행기간 안에 용역목적물(완료보고서) 제출 후 용역수행기간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li> <li>• 용역수행기한을 지나서 용역목적물(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용역수행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li> </ul>
공사, 물품,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기한, 납품기한,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는 기한의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li> </ul>

※ 지체상금이 계약금액(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색인	410
참고문헌	412

색인

1인 견적	173~177, 187	균형가격	282~283, 362	입찰무효사유	360
감정가격	324, 332, 336	기초금액	60, 201, 210~211, 275~277, 320,	입찰서 제출	66, 145, 170, 201, 260, 298,
개산가격	69~71		322~323, 348~349		301~302, 304, 322, 342,
개산계약	28, 67~73, 388	낙찰자 결정방법	36, 38, 53~54, 58~59, 62,		345~347, 349~350, 353~354, 374
건설기술심의회위원회	61~62, 165, 292, 398		64~65, 191~193, 201, 319, 342,	입찰참가 제한기간	399
견적가격	37, 70, 180, 182, 324~325, 327,		350, 351, 357, 362~363, 396	입찰참가신청	38, 52, 134, 145, 182~183, 304,
	332, 336~337, 378	낙찰하한율	66, 175, 180, 195~201, 203,		342, 344, 350, 351, 353~354
경쟁입찰	365, 98		207~210, 347, 350	다수공급자계약	27, 33, 49, 50, 65, 75~77,
계속비계약	65, 80, 82~85, 87	난이도계수	197~199, 275~276~277		79~80, 326
계약금액 조정	37, 135, 138, 372~382	단가계약	25, 33, 38, 49, 50, 65, 75~79,	장기계속계약	65, 80~86, 135, 365,
계약금액 증액	374~395		125, 143~145, 321, 326, 369	제3자 단가계약	77~78
계약별 공고기간	366	대가지급	26, 32, 49, 71, 91, 259, 372,	조달계약	29, 36, 39, 49, 109, 128~130,
계약보증금	393~394, 401, 406		384, 387		132~133, 140~141, 319
계약심의회위원회	36, 38, 59~60, 113, 202	물품계약	44~45, 52~53, 60, 95, 100, 122,	조세포탈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01
계약의 종류	44,64~65, 67, 118, 362, 366		196, 220, 394~395, 386	주계약자관리방식	90, 222
계약의 해제	52, 167, 393~396	복수예비가격	201, 320, 322~323, 348, 350	지역의무공동도급	95~97, 137, 349, 354
계약이행보증	301, 345	부정당업자 제재	21, 38, 106, 181, 185, 273, 352,	지체상금	38, 52, 85~86, 363, 388,
고난이도 공사	280~282, 284, 287, 362		363, 395, 397, 400~401		393~396, 404~406, 407~408
공고내용	278, 342, 348, 362	분담이행방식	88~90, 92~96, 88~90, 113, 226,	직접생산	46, 65~66, 128~129, 148, 184
공고시기	345		272	추정가격	319~322
공공구매정보망	160	선금지급	244, 367, 390~393	추정금액	61, 111~112, 151, 185, 319, 320
공동도급 시공 실적인정	221	시공능력	27, 88, 91, 93~94, 97, 106~107,	품목(지수) 조정률	373
공동이행방식	88~90, 92~96, 113, 218,		110~111, 134, 140, 142, 145, 158, 185,	표준시장단가	51, 283, 324, 336, 376
	221~222,		270~271, 274, 287, 289, 319, 354, 359,	현장설명	353
	224, 235, 272, 349, 368	시공평가	41, 206~207, 230, 234~235,	협상에 의한 계약	29, 38, 52, 54, 58, 65, 82, 135,
공사계약	39		286		137, 139, 191, 194, 299~311,
공사금액 하한	358~359	신기술	64, 78, 108, 114~118, 121, 135,		344. 346~347, 367, 363, 379
공사실적	91, 93, 107, 110~114, 118,		138~139, 144, 151, 156, 163,	희망수량경쟁입찰	38, 65, 191, 295~296, 362
	136~138, 140, 142, 210~211		184~185, 229~233, 288~289		
	216~220, 223, 225, 228, 282, 287,	예정가격	319		
과징금	59, 185, 251, 252~255, 262, 264,	용역계약	46, 48		
	398, 403~404	입찰공고	66, 301, 342		

## 참고문헌

- 강인욱·최두선·최기웅, 「공공기관의 공공계약 법규 및 실무」, 광문각, 2017
- 강인욱·최두선·최기웅, 「예산회계실무 기본편」, 광문각, 2018
- 한국정책연구원 편저, 「정부계약유권해석집」, 도서출판 건설정보사, 2010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 경성문화사, 2016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20년 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 경성문화사, 2020
- 김대원, 「정부계약 질의회신」, 원기술, 2007
- 정원, 「공공조달계약법 I」, 법률문화원, 2016
- 정원, 「공공조달계약법 下」, 법률문화원, 2011
- 박현석, 「국가계약법 해설과 실무」, 건설경제, 2016
- 박현석, 「국가계약법 해설과 실무」, 건설경제, 2016
- 공공건설산업연구소, 「국가 공사계약 제도」, 2016
- 서울특별시, 「2021년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실무 매뉴얼」


# 공공계약 실무가이드

A Guide to Handling Public Contracts

**발행일** 1쇄 2022년 6월  
**발행처**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02) 2011-2736  
**편집총괄** 적극행정지원단장 박재용  
**편집** 적극행정지원담당관 조성익  
사전컨설팅팀 4급 김익섭  
" 5급 김준영  
" 5급 윤상준  
" 5급 장기성  
" 5급 남상민  
" 5급 김은경

**디자인·인쇄** (주)한결엠 02) 6952-0551

 중증장애인생산물생산시설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